



#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6호 2019. 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차례

## 논문

- 연민수 ▣ 『신찬성씨록』 편찬과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7
- 최진열 ▣ 『삼국지』 연대·지명의 오류  
- 손책·손권전의 시간 오류, 적벽과 오장원 논란 등을 중심으로 49
- 손성욱 ▣ 종번(宗藩)과 중화(中華)로 청제국을 볼 수 있는가  
- 왕위안충 ‘조선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115
- 김정현 ▣ 난징[南京] 점령지의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피해 161
- 공준환 ▣ 연합군 자료를 통해 본 버마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 205

## 서평

- 최재성 ▣ 일본인 학자, 한국의 뉴라이트를 겨누다  
-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 도리우미 유타카, 지식산업사, 2019 257

## 자료소개

- 서현주 ▣ 타이국립공문서관 소장 일본군 ‘위안부’ 자료 소개 273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297

# Contents

## Articles

Yeon Minsoo ■ The Publication of “Shinsen Shojiroku” and the Governing Principle of the Emperor System-Based Nation 7

Choi Jinyeoul ■ The error of the year, month, day and place in *Journal of the Three Kingdoms(Sanguozhi)*: inspection of the records of Sun Ce and Sun Quan brothers's regime, Chibi war, and Zhuge Liang's stationing and dead place 49

Son Sungwook ■ Qing-Chosŏn Relationship Seen through *Zongfan* and Chineseness: With a Focus on Yuanchong Wang's 'Chosŏn Model' 115

Kim Jeonghyun ■ Japanese military brothel an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damage in Nanjing Occupied Area 161

Kong Joonhwan ■ A Study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in Japanese-occupied Burma based on Allied Documents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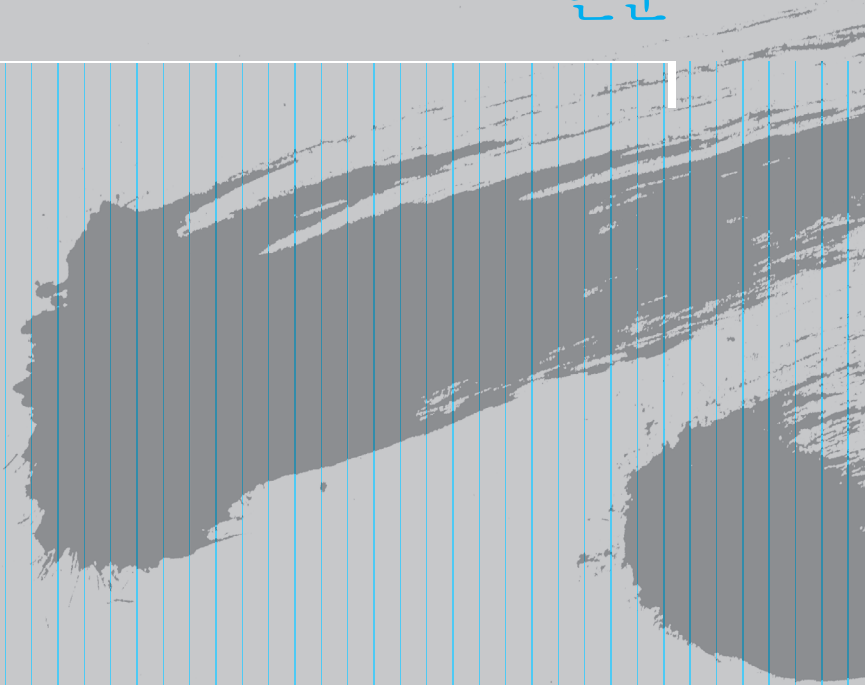
## Book Review

Choe Jaeseong ■ Colonial Modernization seen by A Japanese Scholar 257

## Introduction to Documents

Seo Hyun Ju ■ Research Findings: Materials in National Archives of Thailand Relating to 'Comfort Women' 273

# 논문





# 『신찬성씨록』 편찬과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연민수 |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천무조(天武朝)의 씨성제 개편과 신격화
- III. 계보의 장악과 씨성의 관리
- IV. 『신찬성씨록』의 구성과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V. 맺음말



## I. 머리말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은 헤이안[平安] 시대에 편찬된 칙찬 계보서로서 경기(왕경과 기내 5국) 지역의 1,182씨의 계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성씨록의 원본은 산일되어 현존하는 것은 초략본이지만, 일문(逸文) 등을 통해 각 씨족의 출자와 사적, 계보 등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의 구성은 황별(皇別), 신별(神別), 제번(諸蕃) 순으로 천황가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씨족들에서 시작하여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원조(元祖)로 하는 후예씨족들을 배열하고, 이어 도래계 씨족의 후손들을 제번으로, 미확정 씨족들을 ‘미정잡성(未定雜姓)’으로 마지막에 수록하였다. 이들은 일본 왕권을 구성하는 씨족들이며 현실의 천황에 봉사하는 관인층이다. 율령국가의 모든 공민을 대상으로 하는 호적이나 계장과 달리 이 성씨록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찬성씨록』 서문에서는 승보(勝寶) 연간(750~756)에 특별히 은혜를 내려 제번 출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성을 주어 번속(蕃俗)과 화속(和俗)이 뒤섞이게 되고, 삼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일본신의 후예라고 칭하는 등 씨성과 출자의 혼란이 야기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편찬하게 되었다는 동기를 밝히고 있다. 씨성과 출자는 상관 관계에 있으며 개사성(改賜姓), 서임 등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제 씨족 중에는 타씨의 계보에 가탁, 부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씨성의 문란은 국가질서를 혼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문의 내용은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를 사칭, 참칭하는 것은 황별, 신별, 제번 등 모든 씨족들에게도 공통된 현상이다. 씨성은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승인을 필요로 하며 그 통제하에 있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의 출발점인 서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편찬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

\* 투고: 2019년 10월 6일, 심사 완료: 2019년 11월 12일, 게재 확정: 2019년 11월 15일

있다.<sup>1</sup> 씨성의 혼란을 재정비하는 것은 사회질서 안정을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특히 씨성의 문란을 제번 탓으로 설명하는 것은 당시 일본 지배층의 대외인식이 투영된 명분론에 가깝다. 성씨록 편찬의 방향성은 천황제 율령국가의 지배질서의 안정이라는 거시적인 시야에서 추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sup>2</sup>

신분제로서의 씨성제는 율령을 기반으로 한 관료제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했으며, 이들을 천황권하에서 역사적, 제도적으로 종속시키는 새로운 장치와 원리가 필요했다고 본다. 8세기 말 나라조[奈良朝]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헤이안으로 천도를 단행한 환무(桓武) 천황의 율령제 재건이라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새로운 지배질서의 이념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권력의 핵심부가 모여 있는 왕경과 기내(畿内) 지역 씨족들의 계보 장악과 씨성 통제는 천황제 국가체제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고 생각된다. 바로 씨족들의 출자와 계보, 씨성은 성씨록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천황제 국가가 등장하는 천무조(天武朝) 씨성제의 개편과 신격화의 과정, 씨성의 운용과 관리, 그리고 성씨록에 편재된 씨족의 계보상의 특징을 통해 『신찬성씨록』이 천황제 국가의 어떠한 지배원리에서 편찬되었는지를 추구해보고자 한다.<sup>3</sup>

- 
- 1 關晃, 1951, 「新撰姓氏錄の編修目的について」, 『史學雜誌』 60-3; 關晃, 1997, 『日本古代の政治と文化』, 關晃著作集 第5卷, 吉川弘文館, 200~203쪽.
  - 2 『신찬성씨록』 편찬 과정 및 연구사에 대해서는 佐伯有清, 2007, 『新撰姓氏錄の研究』(研究編, 吉川弘文館)에 상세하다. 대부분 성씨록의 서문에 기초한 연구가 많다. 佐伯 자신은 ‘冒名冒陰’ 현상을 지적하면서 천황을 점점으로 한 계층화의 확립을 언급하였다.
  - 3 국내 연구에서는 서보경이 기왕의 사료와 연구를 분석하여 몇편의 중요한 기초적 성과를 내었다(서보경, 2012, 「新撰姓氏錄의 편찬목적」, 『韓日關係史研究』 41; 서보경, 2017, 「新撰姓氏錄의 기초적 연구」, 『한림일본학』 30; 서보경, 2018, 「新撰姓氏錄의 原型과 편자의 편찬태도」, 『한림일본학』 32). 이 외에도 성씨록에 나오는 도래계 씨족을 분석한 연구는 수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

## II. 천무조(天武朝)의 씨성제 개편과 신격화

고대의 한반도 제국에서 씨(氏)는 혈족을 의미하며 동일 조상으로부터 분지되어 새로운 분파를 만들어도 씨는 불변이고 동조(同祖), 동족 의식도 변하는 일이 없었다. 이에 비해 고대 일본 사회에서의 우지[氏]는 혈연 관계, 혈연의식으로 맺어진 수많은 가(家)로 구성된 동족집단을 표시하고, 가바네[姓]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신분을 상징하는 2중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된 정의도 연구의 진전으로 씨는 조정에서 일정의 정치적 지위와 특정의 직무를 띠고 대왕에 봉사하는 정치적 집단을 표시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즉 혈연집단으로 출발했다고 해도, 비혈연적이고 의제적인 동족집단인 경우가 많고 왕권에 봉사하는 정치적인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씨를 정치적 제도로 규정한 것은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이다. 그는 대화정권의 직업집단인 부명(部名)이 우지명[氏名]과 같은 의미가 되었고, 동족이라 하더라도 부의 소속이 다르면 씨도 달라지고, 타 지역에 거주하면 지명을 씨로 삼기도 하고, 동족의 씨족장으로 알려진 씨상(氏上)도 국가에서 정하라는 명이 내려지는 등 혈연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즉 일본 고대의 씨는 혈연을 통해 결합된 자연발생적인 혈연집단이나 사회조직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성으로부터 조직, 형성된 정치집단, 정치조직이라는 것이다. 이후 히라노 구니오[平野邦雄]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씨의 성립이 대화정권의 국토통일사업과 깊은 관계에 있고, 정치적 회기에 의도적으로 조직되어 씨성을 갖는 정치체제로 확립된 것이고, 그 시기는 5세기 후반 웅략조(雄略朝)로 보고 있다.<sup>5</sup> 다양한 씨족들이 하나의 우지[氏]로 구성된 직업집단 혹은 정치집단, 사회조직으로 전화되어 갔다고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우지[氏]의 원초적 구성원리는 혈연에

4 津田左右吉, 1963(初出 1930), 「上代の部の研究」, 『日本上代史の研究』(『津田左右吉全集』第3卷), 岩波書店, 90~97쪽.

5 平野邦雄, 1969, 「氏の成立と構造」, 『大化前代社會組織の研究』, 吉川弘文館, 1~6쪽.

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고대 일본에서의 우지[氏]란 일반민중의 혈연집단과는 거리가 있고, 중앙과 지방에 거주하며 왕권에 봉사하는 일정 이상의 혈연적, 의제적으로 맺어진 동족의식을 표방한 집단이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칭호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6</sup> 중앙로부터 인정받은 이들 씨는 왕권에 예속되어 봉사하는 대가로 관직과 직무 등 정치적 지위를 수여받고 동시에 세습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 이러한 특권을 뒷받침하는 것이 정치적 신분질서의 표상인 가바네[姓]이다. 신분 표시로서의 가바네는 씨족의 출자와 세력의 고하, 정치적 지위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고, 이에 따라 토지의 사적 소유, 부민, 예속민을 영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 고대사회에서 우지와 가바네는 혈연, 동족의식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개념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이처럼 씨성제는 일본 고대사회의 특질이자 왕권의 존재 형태를 설명하는데 유효한 성격을 갖는다. 일본 고대국가의 성립 이전 단계인 7세기 중반까지는 씨성제의 원리가 비교적 순조롭게 기능하였다. 대왕가에 대한 봉사와 협력의 관계를 통해 권력의 일부를 공유하던 유력 씨족들은 대화개신(大化改新)을 기점으로 왕권에 흡수되어 대왕을 중심으로 권력의 일원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후 백제 부흥전쟁의 파병과 실패, 고구려의 멸망, 신라의 통일이라는 격동하는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임신의 난이라는 내전에서 승리한 천무(天武)는 각종 제도의 개혁과 신격화를 통해 기왕의 호족 세력을 왕권에 예속시켜 나간다. 그중 하나가 정치적 신분질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8색(色)의 성'의 제정이었다. 기존에 통용되던 다양한 성을 8종으로 새롭게 재편한 것이다. 가바네[姓]의 개혁은 단순한 제도상의 변화가 아니라 특권적 호족들에 대한 압박이며, 이들을

6 前之圓亮一, 1987, 「ウヂとカバネ」, 大林太郎 編, 『古代の日本』 11, 中央公論社, 211~218쪽 참조.

7 고대 일본의 氏姓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는 그간의 연구를 정리한 이근우의 논고(2019, 「고대일본의 씨성개념과 『신찬성씨록』의 개성」, 『韓日關係史研究』 64)가 참조된다. 8세기에 들어가면 사료상의 많은 용례에서 나타나듯이 氏와 姓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하나로 통합되어 씨성 자체가 하나의 姓으로서 동시에 氏의 개념으로 되어간다.

왕권의 휘하에 편입시키는 정치 개혁이었다.

씨족제도 개혁을 위해 천무 11년(681)에 8색의 성 제정에 앞서 관인의 등용 기준인 고선(考選)에 족성(族姓)을 중시한다는 조(詔)를 내렸다.

【1-1】 무릇 모든 고선에는 그 씨족의 성 및 행적을 잘 조사한 후에 고려해야 한다. 만일 행적과 능력이 현저하더라도 그 씨족의 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고선에 들 자격이 없다.<sup>8</sup>

즉 관리 등용에 해당 씨족의 성이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행적과 능력에 앞서 족성이 우선시되는 씨성제 사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어 동년 12월 조에 내린 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2】 제씨의 사람들은 각기 씨상(氏上)을 정하여 신고하라. 또 그 일족이 많은 자는 나누어 각 씨족장을 정하라. 다 같이 관사에 신고하라. 연후에 그 상황을 짐작하여 처분하라. 관사의 판결을 받아라. 다만 조그만 일로 자기의 씨족이 아닌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이어서는 안 된다.<sup>9</sup>

상기 조의 내용은 호적을 통한 지배의 원리와는 다른, 씨족장인 씨상(氏上)을 통하여 씨족 전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씨족을 마음대로 내세워 씨족장으로 삼는 행위도 금지하여 씨성제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씨족을 지배하기 위한 조정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대보(大寶) 2년(702) 9월에는 천지(天智) 3년(664)에 내려진 ‘갑자(甲子)의 선(宣)’에서 씨상을 확정할 때, 기재에서 누락된 씨족에 대해 현재 성을 받고 있는 자로

8 『日本書紀』天武紀 11년 8월조.

9 『日本書紀』天武紀 11년 12월 임술조.

서 이미길(伊美吉) 이상으로 한정해서 신청하라는 조가 내려졌다.<sup>10</sup> 이미길은 천무의 8색의 성에서 4번째인 기촌(忌寸)으로, 이는 씨상을 낼 수 있는 계층의 범위가 고위 씨성을 갖은 관인층에 한정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갑자년에 정해진 씨상에 대한 규정은 중앙의 유력 씨족을 대상으로 한 ‘갑자년제씨계보(甲子年諸氏系譜)’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한편 관인 등용의 기준에 족성이 중시되었다고 해도 관료제 사회의 성격상 능력자에 대한 배려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호족의 출신법이라고 할 수 있는 천무 2년 5월에 내린 조에는 “공경대부 및 여러 신(臣), 연(連)과 반조(伴造) 등에 게 무릇 처음으로 관인이 되면 먼저 대사인(大舍人)으로 봉사하게 하라. 그런 연 후에 그 재능을 선별하여 알맞은 직책을 맡도록 하라<sup>12</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대사는 양로령제(養老令制)에서는 중무성의 좌우대사인료에 소속되어, 5위 이상인 자의 자손, 6위 이하 8위 이상인 자의 적자 가운데에서 선발되었다. 율령제하에서 음서제의 영향에 따르고 족성을 중시하는 씨성제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이 중에서도 재능은 제2의 선발기준이 되었다. 지방호족의 출신법이라고 생각되는 천무 5년 4월조의 내용을 보면, “지방[外國] 출신자로 벼슬을 하고자 한다면 신(臣), 연(連), 반조(伴造)의 자 및 국조(國造)의 자식은 가능하다. 다만 그 이하의 서민이라 하더라도 그 재능이 특별한 자의 경우는 역시 가능하다<sup>13</sup>”라는 칙을 내렸다. 족성이 빈천한 서민에게도 재능에 따라 출사의 길이 열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조항은 족성이라는 원칙 위에서 능력자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상위의 족성에 버금가는 관직에는 도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다음은 천무 13년(684)에 제정된 8색의 성에 대해 살펴보자. 동년 10월에 내린 조에 따르면, 제씨의 족성을 고쳐 8색의 성을 만들어 천하의 만성(萬姓) 통

10 『續日本紀』大寶 2년 9월 기해조.

11 仁藤敦史, 2013, 「七世紀後半における公民制の形成過程」,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78, 269쪽.

12 『日本書紀』天武紀 2년 5월조.

13 『日本書紀』天武紀 5년 4월조.

일하고, 진인(眞人)을 필두로 하여 조신(朝臣), 숙네(宿禰), 기촌(忌寸), 도사(道師), 신(臣), 연(連), 도치(稻置) 등 8개의 서열화된 성을 정한다고 하였다.<sup>14</sup> 종전에 신(臣)과 연(連)은 소아씨(蘇我氏), 물부씨(物部氏), 대반씨(大伴氏) 등 유력 호족들에게 수여된 최고의 성이었지만 개편된 8색 성에서는 하위에 서열되었다. 특히 신(臣) 성의 최고 집정관이었던 대신은 소아씨가 독점하였고, 연(連) 성의 최고의 지위인 대련은 물부씨와 대반씨의 성으로 대신과 함께 왜왕권의 권력을 분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족성체계에 대한 인식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8색 성의 제정은 기왕의 특권적 호족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걸맞은 새로운 성을 하사하는 것이었다. 즉 천황은 개편된 성을 하사함으로써 천황의 신민으로서 재탄생되어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8색의 성 중에서 최고위인 진인(眞人)은 조가 내려진 당일 수산공(守山公), 노공(路公) 등 13씨에게 하사되었다. 이들의 출자를 보면 계체(繼體) 이후 민달(敏達), 용명(用明) 등을 조상으로 하는 씨족들로서 과거 왜왕의 계보를 잇는 공(公) 성 계열의 구왕족 후손이라고 생각된다.<sup>15</sup> 천무는 계체의 6세손으로 『일본서기(日本書紀)』 편찬의 착수 시기에 체계의 즉위사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열(武烈)을 상대적으로 악인으로 서술하기도 하였다.<sup>16</sup> 이어 『일본서기』 천무 13년(685) 11월조에는 대삼륜군(大三輪君), 아배신(阿倍臣) 등 52씨에게 조신의 성을 하사하고 있다. 이들 씨족들의 대부분은 신(臣) 성 씨족들이고 연(連)과 일부 군(君) 성이 포함되어 있다. 대화전대(大化前代)의 왜왕권을 구성하는 유력한 씨족들로서 천무조에서도 전대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동천무 13년 12월에는 대반련(大伴連), 좌백련(佐伯連), 아담련(阿曇連), 기부련

14 『日本書紀』天武紀 13년 冬10월조.

15 繼體 이전의 應神으로부터 계보를 구하는 씨족도 보이나, 『古事記』, 『日本書紀』에 의하면 繼體 자신은 應神의 5세손이라고 하듯이 양자는 동일 선조주의식의 연상 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16 横田健一, 1990, 「古代王權の成立と豪族の原像」, 『歴史讀本』臨時増刊, 38쪽.

(忌部連), 미장련(尾張連) 등 연성(連姓)인 반조계(伴造系) 50씨에게 숙네의 성을 주었다. 동 천무 14년(686) 6월에는 대화련(大和連), 갈성련(葛城連) 등 기내의 국조와 도래계 유력 씨족 11씨에게 기촌의 성을 하사하였다. 이상 천무 13년 10월에서 이듬해 6월 사이에 8색 중에서 상위 4개 성 126씨에 대한 족성의 개편을 완료하였다. 한편 천무 12년 9월에는 직(直), 수(首), 조(造) 등의 성을 갖는 38씨에게 연(連) 성을 내렸고, 동 10월에도 길사(吉士), 조(造), 사(史), 직(直), 현주(縣主) 등의 성을 갖는 14씨에게 일괄적으로 연 성을 하사하였다. 이들 52씨는 이듬해 8색의 성 제정 시에 일부는 숙네로, 그 외는 대부분 기촌의 성으로 개성되었다. 천무 9~12년에 이르는 기간에 연으로 개성한 씨족을 보면, 조(造) 40씨, 직(直) 14씨, 수(首) 5씨, 사(史) 2씨, 길사(吉士) 2씨, 현주(縣主) 2씨 등이다. 특히 천무 11년, 12년도의 개성은 품부제(品部制)를 해체하고 그 반조를 4등관제에 편입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sup>17</sup> 이상 8색 성의 개편으로 천무 조 왕권은 관료제의 정비와 더불어 족성과 관위가 결합되었고, 신분의 사회적, 정치적 계층화가 표식화되어 천황제 울령국가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sup>18</sup>

한편 천무의 개혁정치 중에서 천황호의 제정은 새로운 국가 건설 영웅의 표상이었으며, 신적 권위를 갖는 군주상이었다. 천황호와 아울러 일본이라는 국호도 일신의 자손이 다스리는 국이라는 신화 관념이 반영된 칭호였다. 또 황조신인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그 제사와 신화의 정비가 행해지는 시기였다. 천조대신은 태양신이자 천상계의 지고신, 하늘에서 빛나는

17 阿倍武彦, 1984, 「天武朝の族姓改革について」, 『日本古代の氏族と祭祀』, 吉川弘文館, 319쪽.

18 8色姓制의 목적에 대해 종전에는 황친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고 천황의 절대성을 유지시키려는 것(竹内理三, 1950, 「天武八姓制の意義」, 『史淵』 34)이라는 설명에 대해, 3위 이상의 고위관인층은 朝臣이 압도적으로 많고 眞人の 경우는 1위는 보이지 않고, 2위가 19%, 3위가 10%로 宿禰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原島禮二, 1961, 「八色姓と天武政權の構造」, 『史學雜誌』 70-8, 6~7쪽). 이러한 통계는 황친인 眞人이 최고 신분이었지만, 왕권을 구성하는 것은 전통적인 臣, 連 씨족과 임신의 난 때의 공신그룹이 많았고, 이들이 천황권을 지지하는 주류 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위대한 신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이 시기에 편찬이 개시된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의 신대기에 왕권신화를 기록하여 천황권의 신성화, 정당성을 주장한 것도 유력 씨족들을 비롯한 인민통치의 수단이었다. 『만엽집(萬葉集)』에 실린 가요 중에 “대군(大君)은 신이시기 때문에 적마(赤馬)의 가슴까지 물이 차는 논이라도 왕도를 이루신다”(제19권, 4260), “대군은 신이시기 때문에 물새들이 군집해 있는 호수를 왕도로 만드셨다”(제19권, 4261)라고 하여 높이나 전야를 왕도로 변모시킬 정도의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천황임을 표현하고 있다. 「공식령」의 조서에 ‘명신어우일본천황조지운문(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云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듯이 ‘일본=천황=명신[現人神]’의 3자가 일체화되어 ‘울령국가=일본’이 형성되었다.<sup>19</sup> 천무는 신격화된 군주에 어울리는 각종 의식과 제도를 정비해간다. 전통적인 수확제인 신상제에 복속의례적 요소를 가미한 대상제를 창설하였고, 치세 중에 여러 차례 대상제를 거행하였다. 천무의 사후 지통(持統)의 즉위식에는 천무대의 신격화된 의식이 계승되었다.

지통 4년(690) 정월조에는 즉위식의 의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3】 물부마조신(物部麿朝臣)이 큰 방패를 세웠다. 신기백 중신대도조신(中臣大嶋朝臣)이 천신수사(天神壽詞)를 낭독하였다. 이어서 기부숙네색부지(忌部宿禰色夫知)가 신새(神璽)인 검과 거울을 황후에게 바쳤다. 황후가 천황에 즉위하였다. 공경, 백료가 배열하여 일제히 배례하고 박수를 쳤다.<sup>20</sup>

제사를 주관하는 씨족인 중신대도(中臣大嶋)가 천신수사(天神壽詞)를 올린다. 천신수사의 주상(奏上)은 신들이 천황을 축복하는 축사로서 신기관의 장관인 신기백이 이를 대신한다. 이어 기부숙네색부지가 천황 즉위의 상징인 검과 거울을 천황 계승자인 황후에게 바쳐 즉위의식을 거행하였다. 『일본서기』 신대기

19 田村圓澄, 1991, 「天照大神と天武天皇」, 『東アジアの古代文化』 67, 20~21쪽.

20 『日本書紀』 持統 4년 춘정월 무인조.

에는 “이때 천조대신은 우리 아들이 이 보경(寶鏡)을 보고 있을 때, 바로 나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sup>21</sup>”라고 하듯이, 천황의 몸을 지키는 주물(呪物)로서 인식되었다. 또 천조대신이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尊]를 지상으로 강림시킬 당시 팔판경(八坂瓊)의 곡옥, 팔지경, 초치검(草薙劍)의 3종 보물을 내렸다.<sup>22</sup> 이들 신새는 신으로부터 받은 징표이자 황위를 상징하는 신기로서, 천무조에 와서 즉위의례로 정착되었다. 대보울령에도 천조(天祚)의 날에는 기부(忌部)가 신새인 동검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3</sup>

이러한 신격화의 움직임은 문무(文武) 원년(697) 8월의 즉위식에서 발표된 선명(宣命)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1-4] 현어신(現御神)이신 대팔도국(大八嶋國)을 다스리는 천황의 대명을 여기 에 모인 황자들, 왕들, 백관들, 천하의 공민들에게 선언하노라. 고천원(高天原)에서 시작하여 먼 선조의 천황시대로부터 천황의 아들로 태어나 계속해서 대팔도국을 통치하였다. 친손으로서 친신에게 수여받아 대대로 이어온 천황위의 업과 현신으로 대팔도국을 통치하신 지통천황(持統天皇)이 주신 높고, 넓고, 두터운 대명을 이어받아 나라를 통치한다.<sup>24</sup>

천황의 즉위를 선언하는 선명체 형식의 포고문은 천무의 황손인 문무의 즉위식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것은 천무, 지통으로 이어지는 천황가 신격화의 일환으로 천황가의 유래가 고천원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황실, 백관,

21 『日本書紀』神代(下), “是時, 天照大神手持寶鏡, 授天忍穗耳尊而祝之曰, 吾兒視此寶鏡, 當猶視吾.”

22 『日本書紀』神代(下), “故天照大神, 乃賜天津彦彦火瓊瓊杵尊, 八坂瓊曲玉及八咫鏡, 草薙劍, 三種寶物.”

23 『令集解』, 「後宮職員令」藏司條, “古記云, 神璽, 謂踐祚立(之)日, 忌部上神璽之鏡劍也.”

24 『日本書紀』持統紀 원년 8월조.

천하공민에게 혈통의 신성성과 일본국 통치의 정당성을 신대로부터 계승하여 왔음을 선언한 포고문이다. 8색의 성 제정에서 시작된 천무의 신격화 작업은 문 무대에 와서 의식화되고 대보울령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 III. 계보의 장악과 씨성의 관리

#### 1. 계보서의 편찬과 관리

천황제 울령국가에서 씨성의 논리는 정치적 신분을 나타내고 관리 등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씨의 체계적인 파악과 관리는 국가 운용의 근간이며 지배의 원리였다고 생각된다. 『신찬성씨록』 편찬 이전에 씨족들의 기록을 조사·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 실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씨족들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지통기(持統紀) 5년(691) 8월조에 18씨에 대해 묘기(墓記)를 제출하라고 명한 것이 최초이다.<sup>25</sup> 묘기는 묘지명으로 사자에 대한 생전의 행정을 담은 기록이지만,<sup>26</sup>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조대로부터 조상의 유래, 계보, 업적 등을 기록한 씨족의 계보집으로 생각된다. 이보다 앞서 지통 2년(688) 11월에 거행된 천무의 상장의례인 빈궁에서 거행된 신료들의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1] 황태자가 공경, 백관 등과 여러 제번의 사신과 함께 빈궁에 가서 통곡하였다. 이에 제물을 올리고 순절무를 연주하였다. 여러 신료들은 각각 자신의 선조들

25 『日本書紀』持統紀 5년 8월 신해조.

26 菅澤庸子, 2001, 「新撰姓氏錄における姓意識と渡來系氏族」, 『史窗』 58, 212쪽.

이 섬겼던 상황을 말하고 차례로 나가 조사를 바쳤다.<sup>27</sup>

상기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경, 백관 각 씨족들은 그들의 선조가 천황가에 봉사해 왔던 유래를 말하고 있다. 조정에서 제출을 명 받은 묘기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요컨대 묘기의 제출을 명한 것은 국가가 씨족들에 대한 역사와 계보를 장악하고 각 씨족의 사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여, 천황가와와의 현실적 신료관계의 유래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들 18씨 중에는 등원(藤原), 석천(石川), 거세(巨勢), 춘일(春日), 상모야(上毛野), 대반(大伴), 평군(平群), 아배(阿倍), 수적(穗積), 아담(阿曇) 등 유력 씨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이들의 씨족지를 제출시켰다. 이때 수집된 묘기는 『일본서기』 편찬의 재료로서 수사국으로 이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서기』 편찬 이후 헤이안시대 홍인(弘仁) 3년(812)에 행해진 『일본서기』 강서인 『일본서기사기(日本書紀私記)』(甲本), 「홍인사기(弘仁私記)」(并書)에는 씨족의 본계(本系)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2】凡厥天平勝寶之前[感神聖武天皇年號也,世號法師天皇],每一代使天下諸氏各獻本系[謂譜講爲本系也],永藏秘府不得輒出,令存圖書寮者是也[雄朝妻稚子宿禰天皇御宇之時,姓氏紛謬,尊卑難決,回啞月槽丘,令探湯定眞僞,今大和國高市郡有是也.後世帝王見彼覆車,每世今獻本系,藏圖書寮也].

상기 기록에 의하면 천평승보(天平勝寶, 749~756) 이전에는 1세대마다 천하의 제씨는 본계를 바치고, 이는 영원히 비밀 문서고(秘府)에 보관되어 함부로 반출하기 어려웠으며 도서관에 보존되었다고 한다. 다음 [ ]안의 세주(細註)의 내용은 윤공(允恭, 412~452) 시대에 성씨의 존비를 판단하기 어려워 탐탕(探湯)을 통해 그 진위를 가렸다고 하듯이 당시 성씨의 혼란이 심각했음을 말해주

27 『日本書紀』持統紀 2년 冬11월 무오조.

고 있다. 이것은 많은 씨족들이 출자의 개편을 통해 유력한 가문에 가탁, 부회하는 풍조가 횡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천무조에 시행된 씨성의 존비가 고과의 기준이 되는 일은 8세기에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허위 씨성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마다 본계장의 제출을 명하고 이를 중무성산하의 도서료의 비밀 문서고에 보관하고, 함부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즉 세대마다 제출된 본계장에서 출자의 변동 등 진위를 판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인다.

『양로율령』의 호령(戶令) 「호적」조에는 “凡戶籍恒留五比, 其遠年者依次除[近江大津宮庚午年籍不除]”라고 하여, 호적은 항상 5회분(五比)을 보관하는데, 옛것은 점차 폐기 처분하지만 천지(天智, 近江大津宮) 때 만든 경오년적(庚午年籍)은 폐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적의 작성은 6년에 1회이므로 5회는 30년으로 상기 사료에 보이는 1세대마다 본계를 바친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즉 천하 제씨의 본계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일본기(續日本紀)』 천평보자(天平寶字) 8년(764) 7월조에도 영문(令文)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는 경오년적이 ‘씨성의 근본’이기 때문에 후세에 씨성을 허위로 속이는 자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sup>28</sup> 『신찬성씨록』 서문에도 “경오년에 이르러 호적을 편찬하여 만드니, 인민의 씨성[氏骨]이 각각 그 마땅함을 얻었다”라고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부터 천지(天智) 때 제정된 경오년적에 등재된 씨성이 그후의 변화와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속일본기』 연력 10년(791) 9월조에는 찬기국(讚岐國) 아야군인(阿野郡人) 공관마려(公菅麻呂) 등이 자신들의 선조는 경오년 이후 조신(朝臣)의 성을 받았는데, 양로 5년(721) 조적(造籍)의 날에 옛 경오년적과 교감하여 조신의 성이 삭제되어 우려하는 바가 크니 복원해줄 것을 청원하자 승인받았다<sup>29</sup>는 기록이 보인다. 경인년적(庚寅年籍)에 기초한 씨성도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이를 문

28 『續日本紀』天平寶字 8년 7월 정미조.

29 『續日本紀』延曆 10년 9월 무인조.

제삼아 개성을 청원하면 승인받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시대가 내려갈수록 호적 만으로는 씨의 전모와 개개의 개성 연차와 범위를 감정하기가 어렵게 되고, 호적 자체가 당시 어떤 이유로 본래의 호로부터 떨어져 나가 절호(絶戶)가 되거나 타가의 성을 함부로 사용하는 모성(冒姓)이 범람하여 신뢰도가 떨어지자, 각 씨의 본계장인 가첩(家牒)이 중시되어갔다.

『신찬성씨록』 서문에는 보자말(寶字末, 758) 이후의 씨족지 편찬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2-3] 이후 역대의 제왕이 수시로 개정하여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승보(勝寶) 연간(750~756)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제번 출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허락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이전의 성과 뒤에 받은 성이 같아지고, 외국과 일본의 씨족이 서로 뒤섞이게 되었다. 각지의 서민들이 고귀한 신분의 후손이라고 내세우고, 삼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일본 신의 후예라고 일컫게 되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니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게 되었다. 보자말에 그 다름이 더욱 빈번해져서, 이에 이름 있는 학자들을 모아 씨족지를 편찬하였으나, 초안이 만들어지는 중에 어려움이 있는 때를 만나서, 여러 학자들은 흩어지고 편찬은 중단되었다.

이 기록은 천지조(天智朝)의 경인년적 이후 씨성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승보 연간에 이민족에 대한 다량의 사성으로 씨성과 출자의 혼란이 생겨 새로운 씨족지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중단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신찬성씨록』에 앞서 씨족지 편찬이 추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제번 출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허락하였다”라는 내용은 『속일본기』 천평보자 원년(757) 4월 조에 “고려, 백제, 신라 등 오랫동안 성화를 흡모하여 일본의 습속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은 원하는 성을 모두 들어주었다”라는 기록을 말한다. 이때의 사성은 도래인에 대해 무제한으로 희망하는 성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sup>30</sup> 일본의

30 이때의 姓을 氏로 보는 설도 있다, 가바네는 물론이고 우지조차 갖지 않은 귀화인

습속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듯이, 이는 공민으로서 자격을 갖춘 이민족의 내민화 과정이다. 씨족지 편찬의 사유가 된 도래인에 대한 대량 사성 이후에도 사성정책은 계속되었다.

## 2. 사성과 씨족의 통제

우선 도래인의 사성에 대해 『속일본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신귀(神龜) 원년(724) 2월에 “제관에서 봉사하는 한인부(韓人部) 1, 2인에게 그 봉사하는 직에 따라 성명(氏姓)을 준다”라는 조를 내렸는데, 이들은 7세기 후반에 망명해 온 백제, 고구려계 관인층을 말한다. 그해 5월에 다시 20씨 22인에게 새로운 성을 내렸다.<sup>31</sup> 개성된 인명을 보면, 하상기촌(河上忌寸)을 비롯하여 신성련(新城連), 삼립련(三笠連), 남구련(男狹連) 등 21씨이다. 하상기촌을 제외하고는 전원 연(連) 성을 받았고, 관위는 종5위상에서 정8상위상까지의 중급의 실무관인들이다. 이들은 원래 본국의 출자를 알 수 있는 씨명이었으나 일본의 씨성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 천평 17년(745) 5월에는 “축전(筑前), 축후(筑後), 풍전(豊前), 풍후(豊後), 비전(肥前), 비후(肥後), 일향(日向) 등 7국에 있는 무성(無姓)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성을 주었다.” 구주 지역의 무성의 도래계 씨족에게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이어 천평보자 2년(758) 6월에는 여익인(余益人) 등 4인에게 백제조신(百濟朝臣)을 내리고 고구려계 관인 9인에게 다가련(多可連), 장배련(長背連)의 성을 내렸다.<sup>32</sup> 또 천평보자 5년(761) 3월에는 백제 131인, 고구려인 29인, 신라인 20인, 한인(漢人) 8인 등 총 188인에 대한 사성

---

에게 우지를 수여한다는 의미이고, 氏의 同化에 따른 혼란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平野邦雄, 1962, 「古代氏姓・人名に現れた階級關係-特に歸化系氏族を通じて-」, 『日本古代史論集』上卷, 坂本太郎博士還曆記念會, 吉川弘文館, 4~12쪽). 예리한 시각으로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31 『續日本紀』神龜 원년 5월 신미조.

32 『續日本紀』天平寶字 2년 6월 갑진조.

을 단행하였다.<sup>33</sup> 백제인 여민선녀(余民善女) 등 4인에게 백제공(百濟公)을 사성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연(連) 혹은 조(造) 성을 내렸다. 이것은 천평보자 원년(757) 4월에 도래인에게 내려진 칙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 칙이 근거가 되어 개사성이 이루어졌다.<sup>34</sup> 이보다 앞서 천평보자 2년(758) 4월에도 고구려계 씨족 11인에게 난파련(難波連)의 성을 내리고,<sup>35</sup> 동 8월에는 진사추주(津史秋主) 등 34인을 진사(津史)에서 진련(津連)으로 개성시켰다.<sup>36</sup> 천평신호(天平神護) 2년(766) 5월에는 상야국(上野國)의 신라인 193인에게 길정련(吉井連)의 씨성을 내렸고,<sup>37</sup> 신호경운(神護慶雲) 2년(768) 3월에는 좌경인 양호비등인마려(楊胡毘登人麻呂) 등 60인에게 양호기촌(楊胡忌寸)<sup>38</sup>을 사성하였다. 또 보귀(寶龜) 8년(777) 정월에는 좌경인 전변사광본(田邊史廣本) 등 54인에게 상모야공(上毛野公)의 씨성을 주었다.<sup>39</sup> 모두 특정 도래계 일족에게 준 집단적 씨성이었다. 보귀 11년(780) 5월에는 좌경인 하막위백족(下莫位百足) 등 6씨 69인의 도래계 씨족들에게 일본 성을 주었다.<sup>40</sup> 연력(延曆) 4년(785) 6월에 종3위 우위사독 판상대기촌예전마려(坂上大忌寸苑田麻呂) 등은 자신들의 선조가 후한 영제의 증손인 아지왕의 후예라며 숙네로 개성해줄 것을 청원하여 판상(坂上) 등 11씨 16인이 기촌에서 숙네로 개성하였다.<sup>41</sup> 천평승보(天平勝寶) 2년(750) 정월에는 고구려계 배나왕복신(背奈王福信)이 고려조신(高麗朝臣)을 사성받고,<sup>42</sup> 연력

33 『續日本紀』天平寶字 5년 3월 경자조.

34 伊藤千浪, 1985, 「律令制下の渡來人賜姓」, 『日本歴史』 442, 28쪽.

35 『續日本紀』天平寶字 2년 4월 기사조.

36 『續日本紀』天平寶字 2년 8월 병인조.

37 『續日本紀』天平神護 2년 5월 임술조.

38 『續日本紀』神護景雲 2년 3월 계축조.

39 『續日本紀』寶龜 8년 정월 무오조.

40 『續日本紀』寶龜 11년 5월 갑술조.

41 『續日本紀』延曆 4년 6월 계유조.

42 『續日本紀』天平勝寶 2년 정월 병진조.

9년(790) 7월에는 진련진도(津連眞道) 등이 관야조신(菅野朝臣)을 받았다.<sup>43</sup> 8색의 성에서 보면, 연(連)에서 조신(朝臣)으로의 개성은 5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승진이었는데, 이는 천황가와의 특별한 관계에서 나왔다. 도래계 씨족들에 대한 사성은 대부분 공적인 절차를 거쳐 승인되었다.

이들의 상당수는 7세기 후반 한반도의 전란으로 망명해온 사람들의 후손들이며, 이 시기 사성의 대상은 일본 정착 후에 능력을 인정받아 관인층이 된 인물도 적지 않다. 천황가와의 특별한 관계로 고위 성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무성, 무씨의 경우는 씨성의 사어로 ‘번인(蕃人)’의 일본화 과정을 통해 천황의 신민으로 재탄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일본씨족 賜姓 분류표<sup>44</sup>

	朝臣	宿禰	忌寸	臣	連	造	公	史	直	기타	총계
左京	87	14	42	3	14	18	14			1	193
右京	10	26		13	51	32	13				145
大和國	24						13				37
山背國							11	14		11	36
河內國	3			7	126					13	149
攝津國	4				18						22
和泉國	64										64
伊豫國	15	21		8	10						54
因幡國	15				19					7	41
安房國	2										2
近江國	4										4

43 『續日本紀』延曆 9년 추7월 신사조.

44 이 분류는 개사성이 집중되는 『속일본기』에 나오는 천평승보 3년(759)에서 延曆 10년(791)의 기록이다. 1인 단독의 사성인 경우에는 제외한 것도 있어 통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參河國			9								9
上野國							9				9
武藏國		1									1
伊勢國	2	3	3	5							13
讚岐國				127			52				179
美作國				4	1						5
阿波國		11			14						25
出雲國	26										26
土左國										41	41
尾張國		8		8							16
陸奥國	14			33	16		17				80
播磨國					19						19
備前國					7		64				71
信濃國					8						8
紀伊國									160		160
遠江國					1						1
越前國										1	1
常陸國	2										2
미상	21	96	11	125	170	406	13		59		901
합계	293	180	65	333	474	456	206	14	219	74	2314

한편 일본 관인층에 대한 사성도 천평승보 3년(759)에서 연력 10년(791)까지 8세기 후반에만 100회 이상 시행되었다. 분류표에서 보듯이 좌경과 우경에 많고 조신, 숙네 등 상위의 성도 경기와 주요 제국에 집중되어 있다. 유형별로는 조신(朝臣) 293인, 숙네(宿禰) 180인, 기촌(忌寸) 65인, 신(臣) 333인, 연(連) 474인, 조(造) 456인, 공(公) 206인, 사(史) 14인, 직(直) 219인 등이다.<sup>45</sup> 도래 계 씨족에게는 극히 제한된 조신과 숙네 등 고위 성만 293인이고, 실무관료에

해당하는 신, 연, 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는 울령국가의 공지공민제의 이념이 퇴색해지고, 울령체제의 이완과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순인조(淳仁朝)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라정토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어 천평보자 8년(764)에는 신라정토계획을 주도한 등원중마려(藤原仲麻呂)의 정변과 실패에 이어 순인 폐위 등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분 상승의 지표인 사성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보인다. 사성을 통한 인민들에 대한 통제였던 것이다. 요컨대 사성은 천황의 은혜로서, 관인층을 구성하는 씨족들과 충성과 봉사의 군신 관계를 강화하여 지배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천황제 국가의 이념에서 시행되었다고 생각된다.

## IV. 『신찬성씨록』의 구성과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1. 연력 18년의 본계장과 『신찬성씨록』 편찬

연력(延曆) 18년(799) 12월에 『신찬성씨록』 편찬을 위한 다음과 같은 칙이 내려졌다.

[3-1] ① 천하의 신민인 씨족은 이미 많아졌다. 어느 씨족은 출자는 같으면서[同源] 별파로 되어 있고, 어떤 자는 본종은 다르면서 동성으로 되어 있다. 보첩(譜牒)에 의거하려고 해도 개성(改姓)이 많이 되어 있어, 호적과 계장을 조사해도 그 본종과 지족을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천하에 포고하여 본계장을 진상시켜야 한다. 삼한제번도 동일하게 한다. ② 다만 이 본계장에는 시조 및 별조(別祖, 別氏)가 된 씨의 조상의 이름은 기록하지만, 지류(支流)와 계사(繼嗣)의 이름은 기입

45 眞人は 천황가의 후손에게 사여되는 것으로, 천무조의 8색의 성 제정 시 고정되었다고 본다.

하지 않는다. 만약 원래 귀족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자에 대해서는 본종(本宗)의 씨의 장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라. 씨성에 대해서는 잘못이 많아 마땅히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조작이 범람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도록 해서, 내년 8월 30일 이전까지 모두 제출을 완료하라. 제출된 본계장을 편찬함에 이전의 기록과 다르거나 기일을 넘기는 경우는 마땅히 사안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영원히 등재하지 못하도록 한다. ③ 무릇 유력하지 않은 보통의 씨족들은 모두 모아 1권으로 하고 유력 씨족들은 별도로 1권씩으로 작성하라.<sup>46</sup>

이때의 칙은 『신찬성씨록』 편찬에 즈음하여 씨성과 출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씨족들에게 본계장의 제출을 명하면서 의무조항과 처벌규정을 담았다. 사료 ①은 동조이면서 별파이고 출자는 다른데 동성인 까닭을 개성에 생긴 것으로 보고, 보첩, 호적, 계장으로는 판별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본계장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②는 시조명과 사성으로 분파되어 별도의 가문을 세운 조상명(別祖)을 기록하라는 것인데, 개성의 현황을 조사하여 본류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 귀족의 분지(分枝)에 대해서는 본종가의 씨족장(氏長)의 서명을 받아 동조임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중장자가 갖고있던 가기(家記)가 동조 관계의 증거로서 중시되었다고 본다.<sup>47</sup> 또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일을 넘기면 성씨록의 등재에서 배제시킨다는 조치이다. ③은 씨족의 신분에 따라 성씨록에 수록하는 권수에 차별이 있고, 그 정보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때의 본계장 제출에 ‘삼한제번’을 특기한 것은 한국계 도래인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보여주며, 이는 「제번조」를 구성하는 성씨록의 편찬방침으로 보인다.

『신찬성씨록』 서문에는 편찬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46 『日本後紀』 延曆 18년 12월 무술조.

47 義江明子, 1985, 『日本古代の氏の構造』, 吉川弘文館 참조.

【3-2】① 새로 바친 본계가 고실(故實)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두 씨를 섞고 합하여 함부로 한 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원류를 알지 못하여 조상의 순서를 거꾸로 뒤바꾸거나, 자기 조상을 잃어버리고 잘못 다른 씨에 들어가거나, 다른 씨에 교묘하게 들어가 자기 조상으로 삼기도 한다. 새로운 씨족과 오래된 씨족이 어지러워져 정리하기 어렵고, 이 씨족과 저 씨족이 잘못 뒤섞인 것이 헤아릴 수 없다. ② 이런 까닭에 하루빨리 이루고자 하였으나, 이미 10년의 세월이 지나버렸고 경기의 본계 중 바치지 않은 것이 반이 넘는다.

상기 서문의 사료 ①은 각 씨족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에 가상의 조상을 만들기도 하고, 남의 계보에 부회·가탁하여 조상의 계조와 본류를 알 수 없는 것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하여 혼탁한 본계장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동상표문에는 “서부(書府)의 오래된 문서와 진상된 신계(新系)를 교열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모아서 별권으로 하였다”<sup>48</sup>라고 한다. 서부는 도서관에 보관 중인 과거에 작성된 비장의 문서고를 말한다. 씨족의 보첩이나 장적으로는 씨의 본지를 분별하기 어려워 본계장을 제출시켰지만, “이 씨족과 저 씨족이 잘못 뒤섞인 것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신구의 문서를 막론하고 문제가 많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서문 ②에는 연력 18년(799)에 본계장의 제출명이 내려진 이후 10년이 되도록 반수 이상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의 칭찬 성씨록에 등재되는 일은 씨족이 국가로부터 공인받아 지배층 반열에 올랐다는 표시임에도,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씨족들이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씨족들이 본계장 자체가 없었거나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다른 이유는 허위 기재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두려워하여 처음부터 제출을 주저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후기(日本後紀)』 대동(大同) 4년(809) 2월조에 「왜한총력제보도(倭漢惣歷帝譜圖)에 노왕, 오왕, 고려왕, 한고

48 『新撰姓氏錄』上表, “然書府舊文, 見進新系, 讎校合之, 則摠以入錄, 其未詳者, 則集爲別卷.”

조 등이 천어중주존(天御中主尊)의 자손으로 되어 있는 등 일본과 외국의 계보가 뒤섞여 있어 천종(天宗)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하여 소각을 명하고 발각되면 중벌에 처한다<sup>49</sup>는 칙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또 『일본서기사기』(갑본) 「홍인사기」(병서)에도 <제왕계도(帝王系圖)>에 근거하여 천손의 후손이며, 신라왕, 고구려왕이 되고, 민간에서 제왕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 연력 연중에 제국에 명하여 이를 소각시켰지만, 지금도 민간에 남아 있다<sup>50</sup>고 한 사실이 이를 대변해준다. 여기에서는 유독 외국계의 조작에 대한 지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계보 조작은 씨족의 출자, 국적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일본계의 경우 황별과 신별만이 존재하듯이 이 자체가 많은 씨족들의 출자가 개변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출자와 씨성의 오류와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기대만큼 이루지 못하였다. 편찬의 기초자료로 삼은 문서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출자나 씨성의 허위를 밝혀냈으나, 이를 걸러내거나 바로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사 등 고기류(古記類)에 근거해서 확인되거나 불분명한 것은 별권으로 편집하여 대부분 제출된 그대로 수록하였다. 성씨록 서문에도 보이듯이, 본계장과 고기(古記)를 비교하여 본계장에 누락되었거나 다르면 고기에 의거해 고쳤지만, 본계장에는 있지만 고기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성씨록 편자가 출자의 검증에 극히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sup>51</sup> 즉 천황제 국가의 지배이념 추구라는 대전제 속에서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편찬국에서도 이들 허위문서를 묵인하거나 허용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홍인(弘仁) 6년(815) 7월 20일에 1,182씨가 수록된 본문 30권과 계도 1권이 완성되었다. 『신찬성씨록』은 기존의 많은 씨족지를 집대성하여 새롭게 편찬한 최초의 칙찬 계보서라고 할 수 있다. 완성된 성

49 『日本後紀』大同 4년 2월 신미조.

50 『日本書紀私記』(甲本) 「弘仁私記」(并序), “更有帝王系圖.[天孫之後, 悉爲帝王, 而此書云, 或到新羅高麗爲國王, 或在民間爲帝王者, 巨姪延曆年中, 下符諸國, 令焚之, 而今猶在民間也].”

51 關晃, 1997, 앞의 책, 209쪽.

씨록의 구성을 보면, 헤이안경[平安京]의 좌경과 우경을 필두로 산성(山城), 대화(大和), 섭진(攝津), 하내(河内), 화천(和泉)의 순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1,182씨를 황벌, 신벌, 제번이라는 출자에 따라 ‘3체(體)’로 대별하고, 제1권에서 제10권까지를 황벌 325씨, 제11권에서 제20권까지를 신벌 404씨, 제21권에서 제29권까지를 제번 326씨, 그리고 제30권에 미확정 씨족인 미정잡성 117씨로 분류하였다. 또 각 씨족의 출자를 ‘3례(例)’로 분류하여 ‘출자(出自)’, ‘동조지후(同祖之後)’, ‘지후(之後)’로 표기하였다. 이어 본종의 시조과 별조, 별조 지류의 인명, 후예씨족, 성씨명의 유래, 개사성, 본거지 등을 기록하였다.<sup>52</sup>

『신찬성씨록』 서문에는 ‘3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본종에서 갈라져 특별히 가문을 세운 선조는 ‘출자’라 하고, 고기(古記)와 본계 모두 혹은 어느 한쪽에 실려 있는 경우는 ‘동조지후’(~와 동조이고 ~후손이다)이고, 본종의 씨족과의 관계가 고기에 누락되어 본지 관계가 의심스럽지만, 선조를 세우는 ‘지후’(~의 후손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본종의 시조와의 원근·친소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출자의 서열을 나타내는 표기법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종의 시조와의 친소 관계이다. 본종의 시조가 누구이고, 이 시조의 계보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씨족의 서열에서 기준점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황벌의 경우 ‘동조지후’가 전체 335씨 중에서 184씨로 55%를 차지한다. 즉 천황가와 연결된 유력한 씨와 동조 관계에 들어간다면 본종가의 씨족장인 씨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당시에 씨상은 혈연적으로 뭉친 집단의 장이 아니라 정치집단의 수장이고, 씨족 간의 동조 관계는 연합적 성격이 강했으므로, 이해 관계만 일치되면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었다고 보인다. 신벌의 경우는 동조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신대로부터 천황가와 인연이 깊은 유력한 신으로부터 나온 몇 세대손의 후손이라고 하여 확인할 수 없는 중시조를 만들어 유력 씨의 계보에 연결시키고 있다. 제번에서는 ‘출자’가 142씨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한반도 제국의 많은

52 佐伯有清, 2007, 앞의 책 참조.

왕조의 제왕, 인물로부터 출자를 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미정잡성」의 경우는 예외 없이 ‘지후’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타씨족과의 동조 관계에 편입하고 싶어도 본종가 씨상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결국 편찬국으로부터 불확실한 씨로 간주되어 「미정잡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개개의 씨족의 본종은 동조 관계를 통해 씨족단을 구성하지만, 본종의 정점에 있는 존재는 말할 것도 없이 천황가의 본존인 천조대신이다. 이 성씨록은 천황가의 존엄과 정통성을 주장하고 이러한 신성성에 의해 천황제 국가를 지배해 나간다는 메시지였다. 신별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씨족들도 이 최고 본종과 분리할 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sup>53</sup> 성씨록에서 전체의 7할에 육박하는 황별과 신별의 씨족들은 천황제 국가의 지배계층이자 혈연적, 의제적 동족집단으로서 강한 연대의식을 공유한다. 즉 『신찬성씨록』의 편찬 목적 중에 가장 중시된 것이 바로 출자의식이고, 그 정점에는 황조신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3체의 순서도 ‘황별-신별-제번’ 순으로 배치하였다.

## 2. 황별씨족의 계보와 동조·동족 관계

황별씨족의 지역별 분포는, 좌경 104씨, 우경 81씨, 산성국 24씨, 대화국 18씨, 섭진국 29씨, 하나국 46씨, 화천국 33씨 등 335씨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왕경에 거주하는 씨족이 185씨로 전체의 55%이다. 이들의 출자를 보면 2대에서 9대까지의 이른바 결사(缺史) 8대가 187씨로 전체의 56%에 이른다. 결사 8대는 계보와 생몰년 이외에는 기록이 없이 가상된 왕통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들을 원조로 하는 씨족들의 계보는 후대에 조상의 계보를 부회한 결과이고,

53 『신찬성씨록』 편찬 목적을 氏上인 本宗氏를 확인하여 본종씨를 통해 씨족들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中村友一, 2002, 「新撰姓氏錄における氏と同祖同族關係」, 『駿台史學』 116; 中村友一, 2005, 「新撰姓氏錄と未定雜姓氏族について」, 『ヒストリア』 196). 본종씨 확인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본종의 정점에 있는 천황가의 본존을 시야에 넣지 않고는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대화정권 시절부터 유력 씨족들이 여기에 연결시키고 있다. 특히 결사 8대에서 5대 효소(孝昭)와 8대 효원(孝元)으로부터 출자를 구하는 씨족이 각각 41씨, 100씨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송신(崇神)부터 응신(應神)까지가 86씨이고, 일본 고대 왕통이 일원화되는 계체(繼體) 이후가 51씨 15%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다. 이러한 사실은 천황가의 후예라고 하는 씨족들의 출자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 왕족 후손의 씨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계체 이전의 황별로 구성되어 있는 씨족들은 대부분은 천황가와 관련이 없는 씨족들로서, 가상의 계보를 만들어 천황가에 가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계체의 경우 일본 고대의 왕통보에서 왕조 교체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일본서기』 계체기에 따르면, 그는 15대 응신의 5세손으로 월전국(越前國)에서 25대 무열(武烈)이 후사가 없자 중앙의 유력 호족들의 추대로 즉위했다는 전승을 전한다. 이것은 계보의 연속성을 주장하기 위한 기술이고, 계체를 응신과 계보적으로 연결하면 초대 신무로부터의 계체 이후까지 일계로 이어지는 왕통보가 성립하게 된다.

다음은 황별에 배치된 씨족들의 구성원리에 대해 살펴보자. 전체 335씨를 10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모두의 좌경·우경황별에서는 식장진인(息長真人)에서 위나진인(爲奈真人)까지 44씨로, 전원 진인(真人) 성을 갖는 씨족들이다. 이 중에서 필두인 식장진인은 응신의 황자인 치정모이오왕(稚瀍毛二侯王)의 후예라고 하는 씨족으로, 천무의 8색 성 제정 시에 진인을 받은 식장공(息長公)의 후예이다. 이 씨족은 『고사기』 등의 계보 전승을 보면 중애(仲哀) 비로 나오는 신공황후가 식장씨이고, 응신의 비도 이 씨족의 여성으로 식장의 씨명을 갖는 왕비를 배출하였다고 전한다. 이 계보는 대화정권을 구성하고 있던 유력 호족이었다. 게다가 천무의 일본식 시호가 천정중원영진인천황(天淸中原瀛真人天皇)이고, 아버지인 서명(舒明)의 화풍시호(和風謚號)는 식장족일광액천황(息長足日廣額天皇)인 점에서 천무조와의 매우 긴밀했다고 보인다. 다음에 나오는 노진인(路真人) 역시 8색 성 제정 시에 진인을 받았고, 다음 민달(敏達)의 후손인 대원진인(大原真人)과 더불어 이들과 동조라고 주장하는 씨족들이 다수 존재한다. 말미에는 천지, 천무의 황자들의 후손이다. 우경황별 역시 식장진인

과 동조라고 주장하는 산도진인(山道眞人)을 시작으로 게이타이에서 천무까지 각 천황의 왕자에서 출자를 구하는 진인계 씨족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성씨록의 기본적인 배열을 구상하는 데 천무조의 8색 성이 참조되었다고 보인다.

좌경항별상 이하의 씨들은 조신(朝臣), 숙네(宿禰), 신(臣), 공(公), 수(首) 등 다양한 성을 갖고 있다. 씨의 배열도 출자가 우선임을 알 수 있다. 필두에는 광인(光仁), 환무(桓武), 차아(嵯峨)의 소생들이 원조신(源朝臣)의 성을 받은 인물들이다. 원조신신(源朝臣信)은 사가의 아들로 홍인(弘仁) 5년(814) 5월 8일의 칙으로 동생 홍(弘), 상(常)과 함께 신적(臣籍)으로 내려간 씨족이다. 『일본후기』 연력(延曆) 11년(792)조에 “근년 경직(京職)에서 신속하게 제왕(諸王)들에게 성을 주어 호적과 계장에 등재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다. 금후는 6세(世) 이하의 왕이 성을 받기를 청원하면 희망하는 성을 주기해서 신청한 연후에 행하라”<sup>54</sup>라고 하는 조가 내려진 직후, 동 연력 24년(805) 2월 을묘조에 승려 2인과 제왕(諸王) 102인이 진인으로 사성되었다.<sup>55</sup> 6세 이하의 왕족에 대해 신적(臣籍)으로 바꾼 것으로, 환무조 이후 후궁 소생의 자녀들이 원조신으로 사성되었다. 이어 천지와 천무를 비롯한 역대 천황의 황자의 후손들이 나온다.

다음 결사 8대인 효원(孝元)의 후손으로 나오는 무내숙네(武內宿禰)는 많은 유력 씨족들의 공동 조상으로 되어 있다. 무내숙네의 계보를 잇는 씨족은 49씨로 모든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고, 조신(朝臣)이 22씨로 고위 신분이 많다. 『일본서기』 전승에 보이는 무내숙네는 경행(景行)에서 인덕(仁德)까지 5대에 걸쳐 천황에 봉사한 선설적인 인물이자 충신으로 묘사되어 있다. 무내숙네를 조상으로 하는 씨족들의 면모를 보면 소아씨(蘇我氏), 거세씨(巨勢氏), 평군씨(平群氏), 갈성씨(葛城氏), 기씨(紀氏) 등 중앙의 유력 씨들이고, 소아씨 이하 4씨는 대신을 배출한 명문가이다. 동 전승에 따르면 그는 경행 51년에 동량지신(棟梁之臣)으로 임명되고, 성무(成務) 3년에는 대신이 되었고, 중애(仲哀) 9년에는 응습

54 『日本後紀』延曆 11년 7월 을묘조.

55 『日本後紀』延曆 24년 2월 을묘조.

원정길에 천황이 급사하자 은밀히 사태를 수습한 지고의 충신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신공황후의 신라 원정 시에 신의 계시를 받아 무내숙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른바 삼한정벌설화와도 관련되어 있다. 무내숙네에 대해 쓰다 소키치는 추고(推古)와 소아씨를 비교하면서 그 이야기는 소아씨가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였다.<sup>56</sup> 그러나 7세기 후반에 중신겸족의 행적이 무내숙네와 유사함을 들어 중신겸족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sup>57</sup> 『속일본기』 경운(慶雲) 4년(707) 4월조에 내린 조서에 “등원조신(藤原朝臣)이 봉사해온 것은 지금만이 아니다. 선조 천황 대대로 봉사해왔고, ……대신의 아버지 등원대신이 봉사했던 모습은 무내숙네가 봉사해온 것과 같이 추앙되어야 한다”라고 특기하고 있듯이, 등원겸족을 무내숙네의 공업에 비유하고 있다. 이 전승은 등원씨의 행적과 유사성이 많으며, 대화정권 시대의 유력 씨족들의 후손들이 계보상의 동조 관계로 연결시켰다고 생각된다.<sup>58</sup>

결사 8대의 효소(孝昭)를 시조로 하는 씨족들도 41씨에 달한다. 「좌경항별하」의 필두로 나와 있는 대춘일씨(大春日氏)는 효소의 황자에서 출자를 갖고, 천무의 8색 성을 제정할 때 조신을 받은 씨족으로서 연력 20년(801)에 대춘일조신으로 개성하였다. 대춘일씨와 동조 관계에 있는 씨족으로는 화안부조신(和安部朝臣), 화이부숙네(和爾部宿禰), 역정신(櫟井臣), 엽율신(葉栗臣), 길전련(吉田連) 등 많은 씨족이 연결되어 있다. 상모야씨(上毛野氏)는 숭신(崇神)에 출자를 잇고 있으며 지전조신(池田朝臣), 지원조신(池原朝臣) 등 제씨와 동조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외에도 수인계(垂仁系) 12씨, 경행계(景行系) 22씨, 응신계(應神系) 13씨 등으로부터 많은 씨족들이 효소에서 출자를 구하고 계보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항별의 특징은 종적 혈연 관계뿐 아니라 횡적으로 확장된 계보망

56 津田左右吉, 1944, 『日本古典の研究』 下, 岩波書店, 113쪽.

57 岸俊男, 1966, 「たまきはる内の朝臣」, 『日本古代政治史研究』, 塙書房, 141쪽.

58 武内宿禰에 대해서는, 志田諄一, 1961, 「武内宿禰傳承の成立」, 『歴史評論』 136; 佐藤治郎, 1983, 「武内宿禰傳承の研究序説」, 『日本歴史』 416 참조.

을 통해 황조신으로부터 내려오는 범천황가의 동일 출자, 동족의식을 공유한다.

### 3. 신별씨족과 천황가

신별(神別)은 천신(天神), 천손(天孫), 지기(地祇)로 구분하고 있다. 좌경과 우경의 천신, 천손 계열의 유력 씨족들이 우선적으로 배열되었다.<sup>59</sup> 이들의 조신(祖神)과 그 후에 신들은 『기기(記紀)』 신화에 등장한다. 현실의 천황가와 협력·봉사하는 신료집단이 황조신인 천조대신의 시대부터 이러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신화의 세계에 투영시킨 것이다. 특히 천신 계열은 천조대신의 자손인 경경저존(瓊瓊杵尊)이 천손강림할 때 동반한 신들의 자손이 많고, 천손은 니니기노미코토에서 신무(神武) 직전까지 3대 사이에 갈라진 후손들이고, 지기는 천손강림 이전에 토착한 신들의 후예를 가리킨다.

신별의 필두는 일본 고대의 절대권력의 명문가인 등원조신이다. 동 조문에 따르면 등원조신은 진속혼명(津速魂命)의 3세손인 천아옥명(天兒屋命)으로부터 나왔고, 그 13세손이 되는 내대신(內大臣) 대직관(大織冠) 중신련겸자(中臣連鎌子)는 천지 8년에 등원(藤原)의 씨를, 천무 13년에는 정1위 태정대신 불비등(不比登)이 조신(朝臣) 성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신겸족이 받은 등원은 적자인 불비등과 그 자손만이 사용하였다. 이후 신호경운(神護景雲) 3년(769)에 중신조신청마려(中臣朝臣淸麻呂)가 대중신조신(大中臣朝臣)을 사성받고 신기관에 임명되었다.<sup>60</sup> 성씨록에는 대중신씨(大中臣氏)와 중신씨(中臣氏)의 수는 19씨이지만, 동조(同祖)라고 주장하는 씨도 25씨에 달하여 이 씨족의 번영을 말해준다. 중신씨의 조신인 『일본서기』 신대기에 나오는 천아옥근(天兒屋根)은, 천조대신이 그의 동생 소잔명존(素戔鳴尊)에 대한 불신으로 암옥호(岩屋戸)에

59 神別の天神 계열은 265氏, 천손은 109氏, 지기로부터 나온 씨족은 30氏에 달한다. 「未定雜姓」 117씨 중에서도 신별로 분류할 수 있는 씨족이 35건 정도 확인된다.

60 『續日本紀』神護景雲3년 6월 을묘조.

은거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축사를 주상하여 모습을 나타내게 했다는 전승이 있고, 천손강림 때에는 천손인 경경저존을 모시고 내려왔다는 5부신의 1인으로 나온다. 즉 중신씨는 천상의 세계에서부터 지상으로 강림하기까지 천황가의 조상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중신이라는 씨명 자체가 신과 인간을 중개한다는 의미도 있듯이 조정의 제사씨족으로서 봉사해온 유래가 있고, 현실의 권력자 등원가(藤原家)의 원조(元祖)라는 씨족의 특성상 성씨록의 필두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 神別 분류표

	좌경	우경	산성	대화	섭진	하내	화천	합계
天神	60	36	32	23	24	47	43	265
天孫	20	22	11	14	13	13	16	109
地祇	2	7	2	7	8	3	1	30
합계	82	65	45	44	45	63	60	404

신요속일명(神饒速日命)의 후예씨족으로 나오는 석상조신(石上朝臣)은 대화정권 시기에 유력 씨족이었던 물부련(物部連)의 계보를 잇는 일족이다. 석상의 씨명은 물부씨의 씨신(氏神)인 석상신궁의 진좌지(鎮座地)인 석상의 지명에서 유래한다. 『일본서기』 주조(朱鳥) 원년(686) 이후에는 물부련마려(物部連麻呂)를 석상조신마려(石上朝臣麻呂)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물부련이 조신을 받는 천무 13년(684)경에 석상의 씨명도 고쳤다고 보인다. 물부씨, 석상씨를 동조, 동족으로 하는 씨족만 해도 36씨에 이르고, 총 66씨가 신요속일명을 조신으로 하고 있다. 석상씨의 조신인 신요속일명은 『일본서기』 신무기 무오년(기원전 663)조에 신무보다 앞서 천반선(天盤船)을 타고 대화에 내려와 신무동정(神武東征) 시에 충성을 다해 돕는 인물로 나온다. 이 전승은 대화정권 시절부터 군사씨족으로서 봉사해온 연원을 기록한 것이다.

「좌경신별중」의 필두로 나오는 대반숙네(大伴宿禰)는 대화정권에서 물부씨

와 함께 유력 씨족으로 활약한 대반대런 계열의 씨족이다. 동 성씨록에는 고허산령존(高皇產靈尊)의 5세손인 천압일명(天押日命)의 후손으로 나온다. 『기기』 신화에는 천손강림 시에 함께 일향(日向)의 고천수봉(高千穗峰)에 내려와 천채부(天靴部)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대화정권하에서 궁성을 경비하던 채부(靴負)의 직무에서 유래한다. 특히 조신으로 나오는 고허산령존은 천조대신과 사돈간으로, 그의 딸과 천조대신의 아들 사이에서 태어난 천손은 바로 지상으로 강림한 경경저존이다. 신화의 세계에서 천황가와 맺은 인연으로 성씨록에서 상위에 배열되었다. 천황가와와의 친소 관계가 성씨록의 배열에서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허산령존을 조신으로 하는 씨족은 대반숙네 등 11씨에 이른다.

미장씨(尾張氏), 진수씨(津守氏), 해부씨(海部氏) 등 52씨의 조신인 천화명(天火明命)은 『일본서기』 신대(하) 일서(一書)에는 경경저존의 형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미장씨는 후에 천황가와 혼인 관계를 맺어 5대 효소의 황후를 배출하여 6대 효안(孝安)을 낳았고, 10대 송신 때 천황이 미장씨 딸을 비로 입실시켰다는 전승이 있다. 임신의 난 때에 대해인황자(大海人皇子)를 도와 천무 탄생의 공을 세워 그 후손들이 위계와 공전을 하사받는 등 씨족의 번영을 구가하였다.

성씨록에 견양숙네(犬養宿禰) 등 36씨의 조신으로 나오는 신흠명(神魂命)은 『일본서기』 신대기의 신허산령존(神皇產靈尊)으로 천지개벽 시에 천지어중주신(天之御中主神), 고어산소일신(高御產巢日神) 등과 고천원에 출현한 조화 3신의 하나이다. 출운(出雲)을 중심으로 한 신화세계의 수호신적인 존재이다. 견양숙네의 후손인 굴삼천대(橘三千代)는 천무에서 원정(元正)에 이르는 5대에 봉사한 여관으로 미노왕(美努王)에 입실하여 굴제형(橘諸兄)을 낳았고, 다시 등원불비등의 부인이 되어 성무(聖武)의 황후인 광명황후(光明皇后)를 낳아 씨족이 번영하는 기반이 되어 『기기』 신화의 조화 3신에서 출처를 구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일본서기』 신대(상)의 일서에 천조대신과 소전오존(素戔嗚尊)이 서약할 때 태어났다는 천수일명(天穗日命)과 천진언근명(天津彦根命)을 조신으로 하는 씨족은 각각 17씨, 20씨에 이른다. 이른바 황조신과의 인연으로 태어난 신이 조상신이 되어 신대의 인연이 현실의 봉사로 이어진다는 씨족의 계보가

형성되어 있다.

#### 4. 제번씨족과 천황제 국가의 신민화

「제번」조에는 한(漢) 163씨, 백제 104씨, 고구려 41씨, 신라 9씨, 임나 9씨 등 총 326씨를 수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왕경에 거주하는 씨족이 전체의 53%인 174씨이고, 기내 지역은 하내국이 55씨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들 도래계 씨족 중에서 한계(漢系)는 좌경제번의 진시황의 3세손 효무왕에서 나왔다는 태진공숙네(太秦公宿禰)를 필두로 이 씨와 동조라고 주장하는 31씨가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한고조 계열 8씨와 후한의 광무제 6씨, 헌제 2씨, 효헌제 2씨, 영제 18씨 등 28씨가 황제의 후손으로부터 출자를 구하고 있다. 그 외에 위(魏) 문제와 무황제(武皇帝), 수 양제, 연왕 공손연, 손권 등 역대 제왕을 조상의 계보로 하고 있다. 『속일본기』 연력 4년(785) 6월 계유조에는, 동한씨(東漢氏)의 후예인 판상대기촌예전마려(坂上大忌寸菟田麻呂)가 자신의 선조 “본래 후한 영제의 증손인 아지왕(阿智王)의 후예이다”라고 하면서 “선조의 왕족 성을 잃어버려 하급 사람의 비성(卑姓)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비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자신의 출자를 후한의 황제에게 가탁한 것이다. 게다가 <판상계도(坂上系圖)>에 인용된 『신찬성씨록』 일문(逸文)에는 그의 선조가 한고조로 되어 있어 『속일본기』의 후한 영제설을 압도하는 개편을 행하고 있다. 진씨(秦氏)의 시조설화는 『기기』의 응신조에 도래전승을 갖는 궁월군(弓月君) 설화가 원형이고, 진시황의 계보에 부회·가상되었다. 진시황 출자는 진씨가 한씨(漢氏)에 대한 대항의 식에서 한황제보다 앞선 진시황에서 구한 것으로 생각된다.<sup>61</sup> 특히 『기기』 전승에 진시황-궁월군 계열, 한 황제-아지사주(아지왕) 계열의 씨족들의 일본 도래 시기는 백제 초고왕(근초고왕), 귀수왕(근구수왕) 시대로 나온다. 진한의 황제를 출자로 하는 계보는 『신찬성씨록』 편찬시에 제출된 본계장에서 개편이 이루어

61 關晃, 1966, 『歸化人』, 至文堂, 94쪽.

졌다고 생각된다. 조상 계보의 유구함과 고귀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만연된 습속이고 관행처럼 되었다. 도래계 씨족들은 고귀한 왕조의 후예들로서 천황의 덕화를 흠모하여 이주했다고 하는 오랜 봉사의 연원을 주장하였다. 출자는 상위 성으로의 개성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계의 씨족 중에서는 백제 도모왕(都慕王)의 18세손 무령왕의 후손인 화조신(和朝臣)이 필두에 나와 있다. 이 씨족은 성씨록 편찬을 시작한 환무(桓武)의 외척으로 당시 도래계 씨족의 최고 위치에 있었다. 우경(右京) 제번하(諸蕃下)에서는 의자왕을 출자로 하는 백제왕씨로부터 시작한다. 의자왕의 아들인 선광(善光)의 후손들로서 도래씨족 중에서 특별 지위를 부여받은 씨족이다. 이어 도모왕의 10세손인 귀수왕으로부터 출자를 주장하는 관야조신(菅野朝臣)이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환무로부터 총애받던 관야조신씨의 우월한 지위에서 나온 현상이다. 특히 근초고왕, 근구수왕 계열의 출자는 18씨에 달한다. 이것은 『일본서기』 신공기, 응신기에 보이는 양국의 활발한 도래전승에 기초하여 대부분 만들어진 계보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가 『기기』의 도래전승의 획기라고 간주한 후대의 인식의 반영이다. 본국의 왕을 출자로 하는 씨족은 백제가 29씨로 가장 많고, 고구려는 추모왕, 호태왕 등 5씨, 임나는 하라하실왕(賀羅賀室王, 嘉悉王) 등 4씨이다. 이들의 출자는 모두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멸망한 왕조들이다. 신라 출자는 9씨에 불과하고 대부분 ‘신라국인+모’라고 표기하고 있고, 당 출신을 선조로 한 사례는 견당사 귀국선에 동행했다가 정주한 ‘당인(唐人)’ 심유악(沈惟岳) 등 10여 명에 불과하다. 즉 현실의 교류국인 신라와 당 출신의 씨족들은 본국에서 이탈하여 일본에 귀속된 자들이다.

성씨록의 「제번」조에 대한 두 가지 흥미로운 관점이 있다. 하나는 천황이 화외(化外)의 제번을 지배할 수 없다고 인식한 단계에서 영원히 지배해야 할 대상을 고정적으로 설정하여 천황 중심의 세계가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라는 설이고,<sup>62</sup> 다른 하나는 번국 지배의 외연을 확장해 주변제국을 번국으로 지배하

62 田中史生, 1997,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房, 136~137쪽.

는 신왕조의 창시를 천명하고자 만든 계보서라는 것이다.<sup>63</sup> 전자는 외부적 번국 질서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내부를 향한 것이고, 후자는 외부를 향한 천황의 제국주의적 인식을 논한 것이다. 양자 모두 일본판 중화주의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성씨록의 대상이 중앙의 일정한 씨족적 기반이 있는 관인층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제국주의적 성격을 논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즉 출자를 기반으로 천황가와와 친소 관계를 중심으로 특정 계층의 서열화된 구조를 갖는 성씨록의 성격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제번은 이미 멸망한 왕조의 후예들이 대부분이고, 천황제 국가의 지배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였다. 천황제 국가에서의 도래인의 활약상은 유학, 시문에 밝은 문장가를 비롯하여, 불교, 의술, 역법, 군사, 예능, 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 있고, 이들 중에는 황별이나 신별로 출자를 개변하거나 천황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포상을 받고 고위직에 올라간 인물도 적지 않다. 양로 5년(721) 정월에 “문인, 무사는 국가가 소중히 여기는 바이며, 의술, 점복, 방술은 고금으로부터 승상되어왔다”라고 하면서 백료 중에서 사범이 될 만한 뛰어난 인재를 분야별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후학을 격려, 양성하게 하였다.<sup>64</sup> 이들 중에는 배나공행(背奈公行), 여진승(余秦勝), 길의(吉宜) 등 11인의 도래계 인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 분야의 인재들이었다. 도래계에 대하여 왕권 내에서 배타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성씨록에서 제번은 천황제 국가의 지배체제의 한 축을 이루는 천황의 신민으로서 포섭, 융합된 존재임을 확인시키는 인증서였다.

63 서보경, 2012, 『新撰姓氏錄의 편찬목적』, 『韓日關係史研究』 41, 70쪽.

64 『續日本紀』 養老 5년 정월 갑술조.

## V. 맺음말

『신찬성씨록』의 구성원리에서 보면 성씨록 편찬의 목적은 천조대신으로부터 내려오는 천황가의 대동맥으로부터 수혈받은 수많은 씨족들이 새로운 혈통을 생성하여 거대한 혈연적 가족주의 지배구조를 가진 국가의 탄생이었다. 천황가와의 계보적인 연결망은 이미 『기기』의 세계에서 보이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성씨록이다. 계보의 장악은 천황제 국가의 존속과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었다. 지배계층인 씨족들 역시 천황가와의 친소 관계가 위계와 관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변된 본계장을 만들어 성씨록에 등재하였다. 천황가와의 계보적으로 출자를 공유한 것은 신격화된 천황가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권력의 중심부인 경기 지역의 관인층을 중심으로 현실의 천황가에 대해 충성·봉사하는 신민의 관계가 신화의 세계에 투영된 결과이다. 씨족 상호 간에도 수없이 동조 관계가 형성되어 수직적인 계보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의제적 동조 씨족군이 만들어졌다. 일본국의 지배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의 씨족단은 단순한 관인층이 아니라 계보적 연결고리를 통해 천황에 봉사하며 국가적 지배질서를 유지해나가는 동업자였다.

제번을 구성하는 씨족들은 황별, 신별과는 달리 외부에서 들어온 이종족으로 화내인(化內人)이 되어 천황의 지배질서 안에 편입되어 신민임을 공인받은 집단임을 나타낸다. 이들 중에는 조상의 출자를 중국이나 한반도의 역대 제왕에서 구하고 천황의 덕화를 흠모하여 이주했다는 도래전승을 통해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현실의 왕조인 당이나 신라, 발해의 제왕으로부터 나왔다는 씨족은 1건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제번조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들은 천황제 국가의 지배체제를 구성하고 확립하기 위한 존재였다.

이러한 출자와 계보는 오직 황별, 신별, 제번이라는 3개층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일반 공민은 여기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씨족들의 출자와 계보는 성씨록 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허위문서가 적지 않았으므로, 3체로 구분하

기 어려운 씨족들은 ‘미정잡성’으로 처리하고 대부분 수용하였다. 문서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은 조상의 출자에 있었고, 『기기』에 보이는 천황가와 씨족들의 혈연과 봉사의 인연이 성씨록의 이념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천황제 국가의 성립을 상징하는 관찬 역사서 『일본서기』 이후 100여 년 만에 이완된 천황제 국가의 지배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 『신찬성씨록』이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關晃, 1966, 『歸化人』, 至文堂.  
\_\_\_\_\_, 1991, 『日本古代の政治と文化』(關晃著作集第5卷), 吉川弘文館.  
佐伯有清, 2007, 『新撰姓氏錄の研究』研究編, 吉川弘文館.  
津田左右吉, 1963, 『日本上代史の研究』, 岩波書店.  
\_\_\_\_\_, 1944, 『日本古典の研究』下, 岩波書店.

### 논문

- 徐甫京, 2012, 「新撰姓氏錄의 편찬목적」, 『韓日關係史研究』 41.  
\_\_\_\_\_, 2017, 「新撰姓氏錄의 기초적 연구」, 『한림일본학』 30.  
\_\_\_\_\_, 2018, 「新撰姓氏錄의 原型과 편자의 편찬태도」, 『한림일본학』 32.  
李根雨, 2019, 「고대일본의 씨성개념과 『신찬성씨록』의 개성」, 『韓日關係史研究』 64.  
關晃, 1951, 「新撰姓氏錄의編修目的について」, 『史學雜誌』 60-3.  
菅澤庸子, 2001, 「新撰姓氏錄における姓意識と渡來系氏族」, 『史窓』 58.  
阿倍武彦, 1984, 「天武朝の族姓改革について」, 『日本古代の氏族と祭祀』, 吉川弘文館.  
岸俊男, 1966, 「たまきはる内の朝臣」, 『日本古代政治史研究』, 塙書房.  
原島禮二, 1961, 「八色姓と天武政權の構造」, 『史學雜誌』 70-8.  
義江明子, 1985, 『日本古代の氏の構造』, 吉川弘文館.  
伊藤千浪, 1985, 「律令制下の渡來人賜姓」, 『日本歴史』 442.  
仁藤敦史, 2013, 「七世紀後半における公民制の形成過程」,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78.  
佐藤治郎, 1983, 「武内宿禰傳承の研究序説」, 『日本歴史』 416.  
田中史生, 1997,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房.  
田村圓澄, 1991, 「天照大神と天武天皇」, 『東アジアの古代文化』 67.

- 志田諄一, 1961, 「武内宿禰傳承の成立」, 『歴史評論』 136.
- 前之圓亮一, 1987, 「ウヂとカバネ」, 大林太郎編『古代の日本』 11, 中央公論社.
- 竹内理三, 1950, 「天武八姓制の意義」, 『史淵』 34.
- 中村友一, 2002, 「新撰姓氏録における氏と同祖同族關係」, 『駿台史學』 116.
- , 2005, 「新撰姓氏録と未定雜姓氏族について」, 『ヒストリア』 196.
- 平野邦雄, 1962, 「古代氏姓・人名に現れた階級關係」, 『日本古代史論集』 上卷, 吉川弘文館.
- 平野邦雄, 1969, 「氏の成立と構造」, 『大化前代社會組織の研究』, 吉川弘文館.
- 横田健一, 1990, 「古代王權の成立と豪族の原像」, 『歴史讀本』 臨時増刊.

## 『신찬성씨록』 편찬과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연민수

『신찬성씨록』의 편찬목적은 천조대신(天照大神)으로부터 내려오는 천황가의 혈통이 수많은 씨족들과 동족(同族) 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었다. 천황가와 의 계보적인 연결망은 이미 『기기(記紀)』의 세계에서 보이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성씨록이다. 계보의 장악은 천황제 국가의 존속과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었다. 지배계층인 씨족들 역시 천황가와와의 친소관계가 위계와 관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편된 본계장을 만들어 성씨록에 등재하였다. 씨족 상호 간에도 수없이 동조(同祖) 관계가 형성되어 수직적인 계보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의제적 동조 씨족군이 만들어졌다. 제번(諸蕃)을 구성하는 씨족들은 황별, 신별 씨족과는 달리 외부에서 들어온 이종족으로, 천황의 지배질서 안에 편입된 신민임을 공인받은 집단임을 나타낸다. 천황제 국가는 성씨록에 수록된 씨족들을 통해 지배체제를 유지·확립해나갔다.

**주제어:** 신찬성씨록, 천조대신, 천황제, 본계장, 씨성, 일본서기

## ABSTRACT

# The Publication of “Shinsen Shojiroku” and the Governing Principle of the Emperor System-Based Nation

Yeon Minsoo

The purpose of publishing *Shinsen Shojiroku* was for the family of the Japanese emperor since Amaterasu Omikami to form the same race structure with numerous clans. The genealogical network of the family was readily available in the mythical world of *Nihon Shoki*, and its synthetic arrangement can be found in *Shinsen Shojiroku*. The domination of genealogy was an effective tool to preserve the emperor system-based nation and to its governing order. Since the genealogical connections with the emperor family had influence on the ranks and public posts, many clans in the ruling class submitted forged genealogy. As the genealogy of the same race was formed in numerous numbers among the clans, an enormous cluster of clans of the same race was built to be connected horizontally as well as vertically. Shoban (foreign clans) represented overseas races from

outside and were officially approved as part of the people included within the governing order of the emperor. The emperor system-based nation established its governing system through these clans.

**Keywords:** Shinsen Shojiroku, Amaterasu Omikami, emperor system, Shizikushi, Shisei, Nihon Shoki



# 『삼국지』 연대·지명의 오류

– 손책·손권전의 시간 오류, 적벽과 오장원 논란 등을  
중심으로

최진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삼국지·오서』기사의 연월 미표기와 오류
- III. 주요 사건사 장소의 오류
- IV. 맺음말



## I. 머리말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는 삼국시대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사서이다. 그러나 『삼국지』는 기전체 사서이지만 분류사에 해당하는 지(志)가 없고, 후한 말에 활동하고 죽은 사람의 열전을 실는 등 후한 말의 역사가 포함되어 『후한서(後漢書)』와 일부 내용이 겹치기도 한다. 청대 사가 조익(趙翼)은 『이십이사차기(二十二史劄記)』 권6과 권7의 21개 글에서 『삼국지』의 사료적 가치와 오류를 비판하였다. 이후 사학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삼국지』, 『삼국지』의 저자 진수<sup>1</sup> 및 주석자인 배송지(裴松之)의 인물 평가, 『삼국지』<sup>2</sup> 및 배송지주<sup>3</sup>의 사료적

\* 투고: 2019년 8월 10일, 심사 완료: 2019년 11월 13일, 게재 확정: 2019년 11월 15일

- 1 楊翼驤, 2002, 「裴松之和范曄」, 『學刀堂文集』(南開史學家論叢 楊翼驤卷), 北京: 中華書局; 李純蛟, 2002, 「陳壽生平考述」; 「陳壽生平事迹年表」; 「陳壽新傳」, 『三國志研究』, 成都: 巴蜀書社; 繆鉞, 「陳壽與《三國志》」, 張越 編, 2009,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2 李則芬, 1998, 「陳壽三國志」, 『中國歷史論文集(上)』(從先秦到南北朝), 黎明出版; 楊耀坤·伍野春, 1998, 「陳壽的修史態度及《三國志》的特點」; 「《三國志》的價值及後世對它的研究」; 「《三國志注》的史料價值」, 『陳壽裴松之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李純蛟, 2002, 「“直書”的嬗變-《三國志》研究中的一個重要理論問題-」; 「《三國志》: 三國歷史的實錄(上)-對趙翼批評《三國志》的辨正-」; 「《三國志》: 三國歷史的實錄(下)-對趙翼批評《三國志》的辨正-」, 『三國志研究』, 成都: 巴蜀書社; 劉威妍, 2009, 「《三國志》知意: 總論」; 陳登原, 2009, 「《三國志》義例辨錄」; 白壽彝, 2009, 「讀《三國志》札記」; 陶懋炳, 2009, 「陳壽曲筆說辯証」; 吳金華, 2009, 「《三國志》考釋」; 周一良, 2009, 「《三國志》解題」; 徐大英, 2009, 「陳壽修史“多所回護”說辨析」; 李純蛟, 2009, 「《三國志》的歷史地位」; 周國林, 2009, 「文質辨治: 陳壽的執著追求」,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3 楊翼驤, 2002, 「裴松之與《三國志注》」, 『學刀堂文集』(南開史學家論叢 楊翼驤卷), 北京: 中華書局;  
柳詒徵, 2009, 「《三國志》裴注義例」; 王鍾翰, 2009, 「《三國志》裴注考證」; 楊翼驤, 2009, 「裴松之與《三國志注》」; 遼耀東, 2009, 「裴松之與《三國志注》」;

가치, 『삼국지』 판본 분석,<sup>4</sup> 『삼국지』 「동이전(東夷傳)」의 사료 비판,<sup>5</sup> 『삼국지』의 주요 사건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삼국지』의 사료적 가치 분석이라는 원론에 치우쳤다. 필자는 『삼국지』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삼국지·오서(吳書)』 「손토역전(孫討逆傳)」과 「오주전(吳主傳)」에 연도나 월일이 기록되지 않은 사료가 많고, 심지어 연도가 잘못 기재된 기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삼국연의(三國演義)』를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적벽대전(赤壁大戰)의 적벽<sup>6</sup> 혹은 오림(烏林)과 제갈량(諸葛亮)의 마지막 북벌 주둔지이자 사망지(일반인에게는 ‘오장원’으로 잘 알려짐)<sup>7</sup>가 기록마다 다른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에 『삼국지』의 사료적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삼국지』는 『후한서』 및 『진서(晉書)』와 시기 혹은 내용상 일부 중복되므로, 후한 말 혹은 서진(西晉)시대 인물이 활동했던 삼

---

崔曙庭, 2009, 「《三國志》本文確實多於裴注」; 葉建華, 2009, 「從《三國志注》看裴松之的史學批評」; 伍野春, 2009, 「裴松之的歷史考證法」; 崔凡芝, 2009, 「裴注的史學意義」; 胡寶國, 2009, 「《三國志》裴注研究」,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馬艷輝, 2017, 「南朝宋裴松之《三國志注》史論統計表」, 『魏晉南北朝史論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 4 黃惠賢, 2010, 「隋鈔本《三國志·蜀志》蠡測-《北堂書鈔》研究資料之一-」; 「隋鈔本《三國志·吳志》蠡測-《北堂書鈔》研究資料之二-」; 「隋鈔本《三國志·魏志》蠡測-《北堂書鈔》研究資料之三-」, 『魏晉南北朝隋唐史研究與資料』,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 5 전해중, 『東夷傳의 文獻의 研究: 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 記事의 檢討』, 一潮閣, 1995; 기수연, 2005, 『『후한서』 「동이열전」 연구: 『삼국지』 「동이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산자료원; 권인한·김경호 엮음, 2013,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6 赤壁 및赤壁大戰에 대한 연구는 張大可, 1994(1988), 「赤壁之戰與三國鼎立」; 「赤壁之戰考辨」, 『三國史研究』,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陳長琦, 1997, 「赤壁之戰新論」, 『戰國秦漢六朝史研究』,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尹韻公, 2001, 「赤壁之戰辨」; 「赤壁之戰再辨」, 『尹韻公縱論三國』,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方詩銘, 2002, 「周瑜與赤壁之戰」, 『三國人物散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등 참조.
- 7 諸葛亮的北伐은 張大可, 1994(1988), 「論諸葛亮出師」, 『三國史研究』,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馬植傑, 1997, 「劉備托孤與諸葛亮的治蜀和北伐」, 『三國史』, 北京: 人民出版社; 尹韻公, 2001, 「論諸葛亮首次北伐」, 『尹韻公縱論三國』,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등 참조.

국시대의 사건은 각각 『후한서』, 『진서』와 비교함으로써 내용의 이동(異同) 등을 검증할 수 있다. 게다가 후한시대는 사초와 자료를 모아 정리한 『후한기(後漢紀)』가 있어서 『후한서』와도 비교가 가능하다. 필자는 『삼국지』에서 역사자료의 기본인 시간과 장소 표기 오류를 여러 사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장에서 『삼국지·오서』 「손토역전」<sup>8</sup>과 「오주전(吳主傳)」<sup>9</sup>의 기사를 『삼국지·위서(魏書)』 및 『삼국지·촉서(蜀書)』, 『후한서』, 『후한기』,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의 해당 사료와 비교하여 「손토역전」에서 연도 및 날짜를 표기하지 않은 이유(1절)나 「오주전」의 연도 오류 현상(2절)을 검토한다. 이어서 3장에서 소설 『삼국지』에서도 유명한 주요 전쟁터인 적벽(1절)과 제갈량의 마지막 주둔지 및 사망지(2절)에 관한 기록의 불일치 논란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정사 『삼국지』의 사료를 검증하는 최초의 작업으로 『삼국지』의 연도, 날짜, 지명 등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여 『삼국지』의 맹신을 지양하고 고증과 비판적 인용이 필요함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 II. 『삼국지·오서』 기사의 연월 미표기와 오류

### 1. 『삼국지·오서』 「손토역전」 연월 미표기와 날짜 오류

이 절에서는 손책(孫策) 시기를 다룬 『삼국지·오서』 「손토역전」의 기사와 『자치통감』의 편년 기사를 비교한다. 아래 <표 1>은 이를 위해 양자의 기사를 날짜

8 ‘孫討逆傳’의 ‘孫討逆’은 孫策을 지칭한다. 孫策은 曹操에게서 討逆將軍에 임명되었는데, 『三國志』의 撰者 陳壽는 孫策의 列傳 명칭을 ‘孫討逆傳’이라 명명하였다.

9 「吳主傳」의 ‘吳主’는 孫權을 지칭한다. 따라서 『三國志』 「吳主傳」은 孫權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부터 皇帝로 즉위한 후 죽을 때까지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孫權은 皇帝로 즉위했지만, 그의 일대기를 ‘本紀’가 아닌 ‘傳’으로 격하시킨 것은 魏를 정통으로 보고 吳·蜀은 지방정권으로 격하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다.

를 중심으로 비교한 표이다.

『표 1』 『삼국지』 「손토역전」과 『자치통감』 편년 비교

『三國志』 「孫討逆傳」 <sup>10</sup>	『資治通鑑』 편년 사료	
사건	연도	비고(출전 및 기타)
<p>(가) 徐州牧陶謙深忌策. 策舅吳景, 時爲丹楊太守, 策乃載母徙曲阿, 與呂範·孫河俱就景, 因緣召募得數百人. 興平元年, 從袁術. 術甚奇之, 以堅部曲還策. 太傅馬日磾杖節安集關東, 在壽春以禮辟策, 表拜懷義校尉, 術大將喬蕤·張勳皆傾心敬焉. 術常歎曰: 「使術有子如孫郎, 死復何恨!」 策騎士有罪, 逃入術營, 隱於內廄. 策指使人就斬之, 訖, 詣術謝. 術曰: 「兵人好叛, 當共疾之, 何爲謝也?」 由是軍中益畏懼之.</p>	<p>興平 元年</p>	<p>及堅死, 策年十七, 還葬曲阿; 已乃渡江, 居江都, 結納豪俊, 有復仇之志.<sup>11</sup></p>
<p>(나) 術初許策爲九江太守, 已而更用丹楊陳紀. 後術欲攻徐州, 從廬江太守陸康求米三萬斛. 康不與, 術大怒. 策昔曾詣康, 康不見, 使主簿接之. 策嘗銜恨. 術遣策攻康, 謂曰: 「前錯用陳紀, 每恨本意不遂. 今若得康, 廬江眞卿有也.」 策攻康, 拔之, 術復用其故吏劉勳爲太守, 策益失望.</p>	<p>興平 元年</p>	<p>丹楊太守會稽周昕與袁術相惡, 術上策舅吳景領丹楊太守, 攻昕, 奪其郡, 以策從兄賁爲丹楊都尉. 策以母弟託廣陵張紘, 徑到壽春見袁術. 涕泣言曰: 「亡父昔從長沙入討董卓, 與明使君會於南陽, 同盟結好, 不幸遇難, 勳業不終. 策感惟先人舊恩, 欲自憑結, 願明使君垂察其城!」 術甚奇之, 然未肯還其父兵, 謂策曰: 「孤用貴舅爲丹楊太守, 賢從伯陽爲都尉, 彼精兵之地, 可還依召募.」 策遂與汝南呂範及族人孫河迎其母詣曲阿, 依舅氏. 因緣召募, 得數百人, 而爲涇縣大帥祖郎所襲, 幾至危殆, 於是復往見術. 術以堅餘兵千餘人還策, 表拜懷義校尉. 策騎士有罪, 逃入術營, 隱於內廄. 策指使人就斬之, 訖, 詣術謝. 術曰: 「兵人好叛, 當共疾之, 何爲謝也!」 由是軍中益畏懼之. 術初許以策爲</p>

10 『三國志』 卷46 「吳書」 1 「孫波路討逆傳·孫策傳」, 1101~1109쪽.

11 『資治通鑑』 卷61 「漢紀」 53 獻帝興平元年條, 1957쪽.

		<p>九江太守，已而更用丹楊陳紀。後衛欲攻徐州，從廬江太守陸康求米三萬斛；康不與。衛大怒，遣策攻康，謂曰：‘前錯用陳紀，每恨本意不遂。今若得康，廬江真卿有也。’策攻康，拔之，衛復用其故吏劉勳爲太守；策益失望。<sup>12</sup></p>
<p>(㉔) 先是，劉繇爲揚州刺史，州舊治壽春。壽春，衛已據之，繇乃渡江治曲阿。時吳景尚在丹楊，策從兄賁又爲丹楊都尉，繇至，皆迫逐之。景·賁退舍歷陽。繇遣樊能·于糜(陳)(東)(橫屯江津)(屯橫江津)，張英屯當利口，以距衛。衛自用故吏琅邪惠衢爲揚州刺史，更以景爲督軍中郎將，與賁共將兵擊英等，連年不克。</p>	<p>興平元年</p>	<p>侍御史劉繇，岱之弟也，素有盛名，詔書用爲揚州刺史。州舊治壽春，衛已據之，繇欲南渡江，吳景·孫賁迎置曲阿。及策攻廬江，繇聞之，以景·賁本衛所置，懼爲袁·孫所竝，遂構嫌隙，迫逐景·賁。景·賁退屯歷陽。繇遣將樊能·于糜屯橫江，張英屯當利口以拒之。衛乃自用故吏惠衢爲揚州刺史，以景爲督軍中郎將，與賁共將兵擊英等。<sup>13</sup></p>
<p>(㉕) 策乃說衛，乞助景等平定江東。衛表策爲折衝校尉，行殄寇將軍，兵財千餘，騎數十匹，賓客願從者數百人。比至歷陽，眾五六千。策母先自曲阿徙於歷陽，策又徙母阜陵，渡江轉鬪，所向皆破，莫敢當其鋒，而軍令整肅，百姓懷之。</p>	<p>興平 2년</p>	<p>初，丹陽朱治嘗爲孫堅校尉，見袁衛政德不立，勸孫策歸取江東。時吳景攻樊能·張英等，歲餘不克。策說衛曰：‘家有舊恩在東，願助舅討橫江；橫江拔，因投本土召募，可得三萬兵，以佐明使君定天下。’衛知其恨，而以劉繇據曲阿，王朗在會稽，謂策未必能定，乃許之，表策爲折衝校尉。將兵千餘人·騎數十匹，行收兵，比至歷陽，眾五六千。時周瑜從父尚爲丹陽太守，瑜將兵迎之，仍助以資糧，策大喜，曰：‘吾得卿，諧也！’進攻橫江·當利，皆拔之，樊能·張英敗走。<sup>14</sup></p>
<p>(㉖) 策爲人，美姿顏，好笑語，性闊達聽受，善於用人，是以士民見者，莫不盡心，樂爲致死。劉繇棄軍遁逃，諸郡守皆捐城郭奔走。吳人嚴白虎等眾各萬餘人，處處屯聚。吳景等欲先擊破虎等，乃至會稽。策曰：‘虎</p>	<p>建安 元年</p>	<p>孫策將取會稽。吳人嚴白虎等眾各萬餘人，處處屯聚，諸將欲先擊白虎等。策曰：‘白虎等群盜，非有大志，此成禽耳。’遂引兵渡浙江。會稽功曹虞翻說太守王朗曰：‘策善用兵，不如避之。朗不從。發兵拒策於固陵。<sup>15</sup></p>

12 『資治通鑑』卷61「漢紀」53 獻帝興平元年十二月條, 1957~1958쪽.

13 『資治通鑑』卷61「漢紀」53 獻帝興平元年十二月條, 1958~1959쪽.

14 『資治通鑑』卷61「漢紀」53 獻帝興平二年條, 1970~1971쪽.

15 『資治通鑑』卷62「漢紀」54 獻帝建安元年條, 1985쪽.

<p>等羣盜，非有大志，此成禽耳。’遂引兵渡浙江，據會稽，屠東冶，乃攻破虎等。</p>		
<p>(甲) 盡更置長吏，策自領會稽太守，復以吳景爲丹楊太守，以孫賁爲豫章太守；分豫章爲廬陵郡，以賁弟輔爲廬陵太守，丹楊朱治爲吳郡太守。彭城張昭·廣陵張紘·秦松·陳端等爲謀主。</p>	<p>興平 2년 (195)</p>	<p>策以張紘爲正議校尉，彭城張昭爲長史，常令一人居守，一人從征討，及廣陵秦松·陳端等亦參與謀謀。策待昭以師友之禮，文武之事，一以委昭。<sup>16</sup></p>
	<p>建安 元年 (196)</p>	<p>策自領會稽太守，復命虞翻爲功曹，待以交友之禮。<sup>17</sup></p>
	<p>建安 4년 (199)</p>	<p>策分豫章爲廬陵郡，以孫賁爲豫章太守，孫輔爲廬陵太守。會僮芝病，輔遂進屯廬陵，留周瑜鎮巴丘。<sup>18</sup></p>
<p>(乙) 時袁術僭號，策以書責而絕之。曹公表策爲討逆將軍，封爲吳侯。</p>	<p>建安 元年 (196)</p>	<p>孫策聞之，與術書曰：……，術始自以爲有淮南之眾，料策必與己合，及得其書，愁沮發疾，既不納其言，策遂與之絕。<sup>19</sup></p>
	<p>建安 3년 (198)</p>	<p>孫策遣其正議校尉張紘獻方物，曹操欲撫納之，表策爲討逆將軍，封吳侯；……<sup>20</sup></p>
<p>(丙) 後術死，長史楊弘·大將張勳等將其眾欲就策，廬江太守劉勰要擊，悉虜之，收其珍寶以歸。策聞之，僞與勰好盟。勰新得術眾，時豫章上繚宗民萬餘家在江東，策勸勰攻取之。勰旣行，策輕軍晨夜襲拔廬江，勰眾盡降，勰獨與麾下數百人自歸曹公。</p>	<p>建安 4년</p>	<p>孫策惡勰兵強，僞卑辭以事勰曰：‘上繚宗民數欺鄙郡，欲擊之，路不便，上繚甚富實，願君伐之，請出兵以爲外援。’且以珠寶·葛越賂勰，勰大喜，外內盡賀，劉曄獨否，勰問其故，對曰：‘上繚雖小，城堅池深，攻難守易，不可旬日而舉也。兵疲於外而國內虛，策乘虛襲我，則後不能獨守，是將軍進屈於敵，退無所歸，若軍必出，禍今至矣。’勰不聽，遂伐上繚；至海昏宗帥知之，皆空壁逃遷，勰了無所得。時策引兵西擊黃祖，行及石城，聞勰在海昏，策乃分遣從兄賁·輔將八千人屯彭澤，自與領江夏太守周瑜將二萬人襲皖城，克之，得術·勰妻</p>

16 『資治通鑑』卷61「漢紀」53 獻帝興平二年條，1973쪽.

17 『資治通鑑』卷62「漢紀」54 獻帝建安元年條，1987쪽.

18 『資治通鑑』卷63「漢紀」55 獻帝建安四年條，2022쪽.

19 『資治通鑑』卷61「漢紀」53 獻帝建安元年條，1982~1983쪽.

20 『資治通鑑』卷61「漢紀」53 獻帝建安三年十一月條，2008쪽.

		子及部曲三萬餘人；表汝南李術爲廬江太守，給兵三千人以守皖城，皆徙所得民東詣吳。勳還至彭澤，孫贇·孫輔邀擊，跋之。勳走保流沂，求救於黃祖，祖遣其子射率船軍五千人助勳。策復就攻勳，大破之。勳北歸曹操，射亦遁走。 <sup>21</sup>
(자) 是時袁紹方彊，而策并江東，曹公力未能逞，且欲撫之，乃以弟女配策小弟匡，又爲子章取贇女，皆禮辟策弟權·翊，又命揚州刺史嚴象舉權茂才。	建安 3년	……以弟女配策弟匡，又爲子彰取孫贇女；禮辟策弟權·翊；以張紘爲侍御史。 <sup>22</sup>
(차) 建安五年，曹公與袁紹相拒於官渡，策陰欲襲許，迎漢帝，密治兵，部署諸將。未發，會爲故吳郡太守許貢客所殺。先是，策殺贇，貢小子與客亡匿江邊，策單騎出，卒與客遇，客擊傷策，創甚，請張昭等謂曰：‘中國方亂，夫以吳·越之眾，三江之固，足以觀成敗，公等善相吾弟！’呼權佩以印綬，謂曰：‘舉江東之眾，決機於兩陳之間，與天下爭衡，卿不如我；舉賢任能，各盡其心，以保江東，我不如卿。’至夜卒，時年二十六。	建安 5년	廣陵太守陳登治射陽，孫策西擊黃祖，登誘嚴白虎餘黨，圖爲後害，策還擊登，軍到丹徒，須待運糧。初，策殺吳郡太守許貢，貢奴客潛民間，欲爲貢報仇。策性好獵，數出驅馳，所乘馬精駿，從騎絕不能及，卒遇貢客三人，射策中頰，後騎尋至，皆刺殺之。策創甚，召張昭等謂曰：‘中國方亂，以吳·越之眾，三江之固，足以觀成敗，公等善相吾弟！’呼權，佩以印綬，謂曰：‘舉江東之眾，決機於兩陳之間，與天下爭衡，卿不如我；舉賢任能，各盡其心以保江東，我不如卿。’丙年，策卒，時年二十六。 <sup>23</sup>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지』 「손토역전」은 손책의 강동(江東) 정복 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나, 원술(袁術)에 의탁한 흥평(興平) 원년과 손책이 죽은 건안(建安) 5년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사건의 연월일(年月日)을 기록하지 않았다.

(가)~(마)의 기사와 이에 해당하는 『자치통감』 기사의 연도를 보면 시간 순서대로 서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라)의 기사에서 원술이 손책에게 강동

21 『資治通鑑』卷63「漢紀」55 獻帝建安四年條, 2019쪽.

22 『資治通鑑』卷61「漢紀」53 獻帝建安三年十一月條, 2008쪽.

23 『資治通鑑』卷63「漢紀」55 獻帝建安五年條, 2028쪽.

공격을 명령한 연도를 기록하지 않았다. 『삼국지·오서』 이외의 다른 사서에 기록된 연도는 다르다. 『삼국지·위서』<sup>24</sup>와 『후한기』는 초평 4년(193),<sup>25</sup> 『후한서』 「헌제기(獻帝紀)」는 흥평 원년(194),<sup>26</sup> 『강표전(江表傳)』은 흥평 2년(195)<sup>27</sup>으로 표기하였다. 사마광의 『자치통감고이(資治通鑑考異)』는 193년이 원술이 막 수춘을 점령한 이후이고, 오경과 유요의 전투가 흥평 원년까지 지속되었으므로 194년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배송지주에나 인용되는 『강표전』의 기록처럼 흥평 2년(195)에야 손책이 강동으로 진격했다고 고증하였다.<sup>28</sup> 『강표전』은 서진 시대 우부(虞溥)가 쓴 오(吳)의 역사책이다.<sup>29</sup> 우부의 『강표전』이 진수의 『삼국지』보다 먼저 쓰였다면, 진수는 『강표전』을 참조하지 않고 오의 역사를 기록한 셈이 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마)는 건안 원년(196), (바)는 흥평 2년(195), 건안 원년(196), 건안 4년(199) 등 다양한 시기에 해당한다. (사)는 건안 원년과 3년에 해당하므로 (바)는 (마) 혹은 (사)와 시간 순서상 어긋난다.

“다시 모두 장리(長吏)를 두었는데, 손책은 스스로 회계태수(會稽太守)가 되었

- 
- 24 『三國志』卷1「魏書」1「武帝紀」初平四年條, 11쪽, “是歲, 孫策受袁術使渡江, 數年間遂有江東.”
- 25 『後漢紀』(袁宏撰, 張烈點校, 『兩漢紀』下冊 後漢紀, 北京: 中華書局, 2002) 卷27, 526쪽, “是歲袁術使孫策略地江東, 軍及曲阿. 揚州刺史劉繇敗績, 將奔會稽.”
- 26 『後漢書』卷9「孝獻帝」興平元年條, 377쪽, “是歲, 揚州刺史劉繇與袁術將孫策戰于曲阿, 繇軍敗績, 孫策遂據江東. 太傅馬日磾薨于壽春.”
- 27 『三國志』卷46「吳書」1「孫破虜討逆·孫策傳」注引『江表傳』, 1102쪽, “策渡江攻繇牛渚營, 盡得邸閣糧穀·戰具, 是歲興平二年也.”
- 28 『資治通鑑』卷61「漢紀」53 獻帝興平二年十二月條考異, 1971쪽, “按術初平四年, 始得壽春. 策傳云術欲攻徐州, 從陸康求米, 專必在劉備得徐州後也. 劉繇傳稱吳景攻繇, 歲餘不克, 則策渡江不應在興平元年已前. 今依江表傳爲定.”
- 29 『晉書』卷82「虞溥傳」, 2141쪽, “注春秋經·傳, 撰江表傳及文章詩賦數十篇. 卒於洛, 時年六十二. 子勃, 過江上江表傳於元帝, 詔藏于祕書.”

고, 다시 오경(吳景)을 단양태수(丹楊太守), 손분(孫賁)을 예장태수(豫章太守)에 각각 임명하였다. 예장군(豫章郡)을 나누어 여릉군(廬陵郡)을 두고 손분의 아우 손보(孫輔)를 여릉태수(廬陵太守), 단양(丹楊) 주치(朱治)를 오군태수(吳郡太守)에 각각 임명하였다. 팽성(彭城) 장소(張昭), 광릉(廣陵) 장굉(張紘), 진송(秦松), 진단(陳端) 등을 모주(謀主)로 삼았다.”<sup>30</sup>

위의 인용문 <표 1>의 (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손책이 스스로 회계태수가 되고 오경, 손분, 손보, 주치 등 친인척과 측근을 태수로 임명하고 장소, 장굉, 진송, 진단을 참모로 임명하였다. 『자치통감』은 장소 등 4인을 참모로 임명한 기사를 흥평 2년(195)의 일로 보았다.<sup>31</sup> 또 손책이 스스로 회계태수를 자칭한 시기를 건안 원년(196)으로 기록하였다.<sup>32</sup> 마지막으로 건안 4년(199) 예장군을 분할하여 손분과 손보를 각각 예장태수와 여릉태수로 임명했다고 서술하였다.<sup>33</sup> 『삼국지·오서』 「손파로오부인전(孫破虜吳夫人傳)」에서는 오경이 원술의 황제 참칭 이후에 단양태수에 임명되었다고 기록되었다.<sup>34</sup> 원술은 건안 2년에 황제를 자칭했으므로 오경은 건안 2년 이후에야 단양태수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의 (사)에서 알 수 있듯이, 위의 인용문 다음에는 원술이 황제를 자칭한 기사가 있는데 『후한서』<sup>35</sup>와 『삼국지』<sup>36</sup>에 따르면 건안 2년의 일이다. 따라

30 『三國志』卷46「吳書」1「孫波路討逆傳·孫策傳」, 1104쪽, “盡更置長吏, 策自領會稽太守, 復以吳景爲丹楊太守, 以孫賁爲豫章太守; 分豫章爲廬陵郡, 以賁弟輔爲廬陵太守, 丹楊朱治爲吳郡太守. 彭城張昭·廣陵張紘·秦松·陳端等爲謀主.”

31 『資治通鑑』卷61「漢紀」53 獻帝興平二年條, 1973쪽.

32 『資治通鑑』卷62「漢紀」54 獻帝建安元年條, 1987쪽.

33 『資治通鑑』卷63「漢紀」55 獻帝建安四年條, 2022쪽.

34 『三國志』卷50「吳書」5「孫破虜吳夫人傳」, 1195~1196쪽, “術後僭號, 策以書喻術, 術不納, 使絕江津, 不與通, 使人告景. 景卽委郡東歸, 策復以景爲丹楊太守. 漢遣議郎王誦銜命南行, 表景爲揚武將軍, 領郡如故.”

서(바)의 기사는 건안 2년보다도 늦은 건안 4년뿐만 아니라 흥평 2년(195)과 건안 원년(196)의 사건이 섞여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표 1>의 (사)는 원술의 황제 자칭 때문에 손책이 편지를 보내 질책하고 원술과 관계를 끊은 일과 조조(曹操)가 손책에게 토역장군(討逆將軍) 오후(吳侯)의 관작을 준 기사를 실었다. 『삼국지·오서』 「손파로오부인전」에서도 원술이 황제를 참칭한 후 손책이 편지를 보내 간언했으나 원술이 받아들이지 않아 장강의 나루터를 끊고 원술과 통하지 않았으며, 오경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기록하였다.<sup>37</sup> 이처럼 『삼국지·오서』는 손책이 원술의 황제 자칭 이후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한 것처럼 기록하였다. 그런데 『자치통감』은 손책이 건안 원년(196) 원술이 황제를 자칭할 움직임은 보이자 원술에게 편지를 보내 항의하였는데 원술이 손책의 간언을 거절하였고, 이에 손책은 원술과 절교했다고 기록하였다.<sup>38</sup> 『자치통감』은 원술이 황제를 자칭하기 전에 손책이 원술과 관계를 끊었다고 본 것이다. 또 조조가 손책을 토역장군 오후로 추천한 시기는 건안 3년(198)이었다.<sup>39</sup> 즉 (사)는 건안 원년과 건안 3년의 기사를 하나로 합쳤으며, (바)에서 언급한 건안 4년 손분과 손보의 태수 임명 기사보다 빠르다. 즉 (사)의 기사 역시 두 해의 기록을 압축하였으며, 앞의 (마)·(바)와 같은 해의 기사도 포함하고 심지어 (바)보다 빠른 시기의 기사도 기록하였다. 또 (사)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후한서』 「헌제기」에 따르면 손책은 바로 건안 2년(197)에 사신을 보내 조정에 조공하였다.<sup>40</sup> 『강표전』에 따르면, 조조는 같은 해 5월 의랑 왕포(王誦)를 보냈다.

35 『後漢書』卷9「孝獻帝」建安二年條, 380쪽, “二年春, 袁術自稱天子.”

36 『三國志』卷1「魏書」1「武帝紀」建安二年條, 15쪽, “袁術欲稱帝於淮南, 使人告呂布.”

37 『三國志』卷50「吳書」5「孫破虜吳夫人傳」, 1195~1196쪽, “術後僭號, 策以書喻術, 術不納, 便絕江津, 不與通, 使人告景.”

38 『資治通鑑』卷61「漢紀」53 獻帝建安元年條, 1982~1983쪽.

39 『資治通鑑』卷61「漢紀」53 獻帝建安三年十一月條, 2008쪽.

40 『後漢書』卷9「孝獻帝」建安二年條, 380쪽, “是歲飢, 江淮閒民相食, 袁術殺陳王寵, 孫策遣使奉貢.”

손책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였다. 조조는 손책을 기도위에 임명하고 아버지 손견의 작위인 오정후(烏程侯)를 이어받게 하고 회계태수를 겸임하게 하였다. 이전에 회계태수를 자칭했다가 이때 조정으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은 것이다. 조조가 손책에게 벼슬과 작위를 준 것은, 여포 및 오군태수 진유(陳瑀)와 함께 황제를 참칭한 원술을 토벌하는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한 포석이었다. 즉 남북에서 원술을 포위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손책은 기도위보다 장군의 자리를 원하며 만족스럽지 못함을 드러냈다. 이에 왕포는 임기응변으로 손책에게 명한장군(明漢將軍)의 벼슬을 주었다.<sup>41</sup> 따라서 <표 1>의 (사) 기사에서 『후한서』 헌제기와 『강표전』의 두 기사를 생략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조조와 손책이 겹사돈을 맺는 혼인 정책을 다룬 (자)의 기사를 『자치통감』에서는 건안 3년의 기사로 보았는데, (아)보다 1년 앞선다. 즉 (아)와 (자)는 시간 순서상 뒤바뀌었다.

<표 1>에서 『삼국지』 「손토역전」의 사건을 『자치통감』의 기사를 통해 연도를 밝혔다. 즉 (가)~(다)는 흥평 원년(194), (라)는 흥평 2년(195), (마)는 건안 원년(196), (바)는 흥평 2년(195), 건안 원년(196), 건안 4년(199), (사)는 흥평 2년(195), 건안 원년(196), 건안 3년(198), (아)는 건안 4년(199), (자)는 건안 3년(198), (차)는 건안 5년(200)에 해당한다. (마)~(자)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바)와 (사)처럼 서로 다른 연도의 기사를 하나로 압축하거나 (바)와

41 『三國志』卷46「吳書」1「孫破虜討逆·孫策傳」注引『江表傳』, 1104쪽, “建安二年夏, 漢朝遣議郎王誦奉戊辰詔書曰: ‘董卓逆亂, 凶國害民. 先將軍堅念在平討, 雅意未遂, 厥美著聞, 策遵善道, 求福不回. 今以策爲騎都尉, 襲爵烏程侯, 領會稽太守.’ 又詔敕曰: ‘故左將軍袁術不顧朝恩, 坐創凶逆, 造合虛僞, 欲因兵亂, 詭詐百姓, (始)聞其言以爲不然, 定得使持節平東將軍領徐州牧溫侯布上術所造惑眾妖妄, 知術鷗梟之性, 遂其無道, 修治王宮, 署置公卿, 郊天祀地, 殘民害物, 爲禍深酷. 布前後上策乃心本朝, 欲還討術, 爲國效節, 乞加顯異, 夫縣賞侯功, 惟勤是與, 故便寵授, 承襲前邑, 重以大郡, 榮耀兼至, 是策輸力竭命之秋也. 其亟與布及行吳郡太守安東將軍陳瑀戮力一心, 同時赴討.’ 策自以統領兵馬, 但以騎都尉領郡爲輕, 欲得將軍號, (及)[乃]使人諷誦, 誦便承制假策明漢將軍.”

(자)처럼 앞의 구절과 시간이 바뀐 부분도 있었다. 여기에서 『삼국지·오서』 「손토역전」이 시간 순서대로 서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자치통감』과 『강표전』을 통해 『삼국지·오서』 「손토역전」에서 언급하지 않은 연도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진수가 『삼국지·오서』 「손토역전」을 기술할 때 고의로 연도와 월 일을 빼버렸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손책의 독립 시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손책이 정식으로 원술로부터 독립한 시기는 『자치통감』에 따르면 건안 원년(196)이고, 『삼국지』에 따르면 원술이 황제를 지칭한 건안 2년(197)이었다. 두 책에서 연도는 다르지만, 손책이 원술의 황제 자칭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고, 원술이 손책의 간언을 거절하자 인연을 끊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손책이 원술로부터 독립하게 된 계기였다. <표 1>의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원술이 황제를 자칭하기 전에 이미 자신과 친인척을 단양·예장·오·회계 4군의 태수에 임명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건안 2년(197)에 오군태수 진우가 존재하였고,<sup>42</sup> 손책이 회계태수를 자칭한 시기가 건안 원년(196)이었으며 손분과 손보를 예장태수와 여릉태수로 임명 한 시기가 건안 4년(199)이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손책이 건안 4년에야 예장군을 두 군으로 나누고 태수를 임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동 지배가 안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바)처럼 이를 원술의 황제 참칭 시기인 건안 2년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것은 원술의 황제 참칭 이전에 강동 5군(단양·오·회계·예장·여릉)의 지배를 확고히 다졌다고 강변하기 위한 왜곡이었다. 또 『자치통감』에서 건안 원년(196)으로 시간을 확정할 손책과 원술의 관계 단절 및 손책의 독립 시기를 원술이 황제를 참칭한

42 『江表傳』에 기록된 建安 2년 조칙에서 손책에게 여포·진우와 함께 원술을 토벌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진우의 직함이 오군태수였다(『三國志』 卷46 「吳書」 1 「孫破虜討逆·孫策傳」 注引『江表傳』, 1104쪽, “又詔敕曰: 「故左將軍袁術不顧朝恩, 坐創凶逆, 造合虛偽, 欲因兵亂, 詭詐百姓, (始)聞其言以爲不然, 定得使持節平東將軍領徐州牧溫侯布上術所造惑眾妖妄, 知術鴟梟之性, 遂其無道, 修治王宮, 署置公卿, 郊天祀地, 殘民害物, 爲禍深酷, 布前後上策乃心本朝, 欲還討術, 爲國效節, 乞加顯異, 夫縣賞俟功, 惟勤是與, 故便寵授, 承襲前邑, 重以大郡, 榮耀兼至, 是策輸力竭命之秋也, 其亟與布及行吳郡太守安東將軍陳瑀戮力一心, 同時赴討。」”).

건안 2년(197)으로 늦춘 의도는 손책의 독립, 바꿔 말하면 원술의 시각에서 손책의 배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4세대에 삼공 5인을 배출한[四世五公] 명문가 출신인 원술이 황제를 참칭한 역적이 되었고 얼마 후 비참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원술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이를 항의하고 ‘역적’ 원술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후한 헌제와 조정에 충성하는 행위로 미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삼국지·오서』에서 원술의 명령을 받고 강동을 공격했을 때부터 손책이 이미 독립된 군웅이었고 원술이 황제를 자칭하던 197년 무렵 점령하지도 않은 오·회계·예장 3군을 점령한 것처럼 분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삼국지·오서』에서 손책이 단양·오·회계 3군을 점령한 날짜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국지』보다 나중에 쓰인 『후한서』와 『후한기』, 『자치통감』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손책이 원술로부터 독립한 해나 3군을 점령한 날짜까지 고증해 놓았다. 진수는 어차피 원술이 황제를 자칭하여 한(후한)을 배신했으니 손책이 미리 원술을 배신한다고 기록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들이대며 손책이 원술을 ‘배신’한 연도를 의도적으로 2~3년 앞당겼다. 그리고 배신의 이유로 원술이 손책을 태수로 임명한다는 약속을 두 차례나 어긴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손책은 원술을 위해 싸우는 젊은 애송이 장교에 불과하였다. 손책보다 벼슬살이 경력이 화려한 인물들도 많은데 손책을 태수에 임명할 이유가 없었다. 『삼국지·오서』는 배신의 원인을 원술에게 돌려 손책의 배신을 감쌌다. 그 배신도 원술이 황제를 자칭한 것이 이유였으니, 손책은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어차피 원술이 역적이었으므로 모든 책임을 원술에게 전가하면 되었다. 요컨대 서진의 신하였던 진수는 손책의 강동 점령과 독립을 정당화하는 시각에서 『삼국지·오서』 「손토역전」을 서술하였다. 문제는 진수가 오의 역사책이나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발췌해서 『삼국지·오서』 「손토역전」을 만든 것인지,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손책의 행위를 미화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건의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사건의 전후를 바꿔서 기록함으로써 사서의 신빙성을 상실했음은 분명하다.

## 2. 『삼국지·오서』 「오주전」 연도 오류

『삼국지·오서』 「손토역전」과 달리 『삼국지·오서』 「오주전」에는 손권(孫權) 시기 사건에 연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 연도 표기가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후한서』, 『삼국지』, 『자치통감』 등의 기사와 비교하여 <표 2>를 만들었다.

<표 2> 『삼국지』 「오서」와 다른 사서의 연대 비교(199~222)

『三國志』 「吳書」 <sup>43</sup>		다른 史書	
연도	사건	연도	비고(출전 및 기타)
建安 4년	孫權, 孫策을 따라 廬江太守 劉勳과 黃祖 공격 참전		
建安 5년	孫策이 官渡 전투 틈타 許 楨을 습격하려고 준비하다 자객의 공격받고 죽음	建安 5년	曹操와 袁紹의 官渡 전투
		建安 5년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44</sup>
	曹操가 孫權을 討虜將軍 領會稽太守로 추천	建安 5년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45</sup>
	張昭·周瑜·程普·呂範·魯肅·諸葛瑾의 보필		

43 孫權 시기의 기사는 『三國志』 卷47 「吳書」 2 「吳主傳」, 1115~1126쪽의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출처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는다.

44 『資治通鑑』 卷63 「漢紀」 55 獻帝建安五年條, 2028쪽, “廣陵太守陳登治射陽, 孫策西擊黃祖, 登誘嚴白虎餘黨, 圖爲後害, 策還擊登, 軍到丹徒, 須待運糧. 初, 策殺吳郡太守許貢, 貢奴客潛民間, 欲爲貢報仇, 策性好獵, 數出驅馳, 所乘馬精駿, 從騎絕不能及, 卒遇貢客三人, 射策中頰, 後騎尋至, 皆刺殺之. 策創甚, 召張昭等謂曰: ‘中國方亂, 以吳·越之眾, 三江之固, 足以觀成敗, 公等善相吾弟!’ 呼權, 佩以印綬, 謂曰: ‘舉江東之眾, 決機於兩陳之間, 與天下爭衡, 卿不如我; 舉賢任能, 各盡其心以保江東, 我不如卿.’ 丙年, 策卒, 時年二十六.”

45 『資治通鑑』 卷63 「漢紀」 55 獻帝建安五年十月條, 2037쪽, “曹操聞孫策死, 欲因喪伐之, 侍御史張紘諫曰: ‘乘人之喪, 旣非古義, 若其不克, 成仇棄好, 不如因而厚之.’ 操卽表權爲討虜將軍, 領會稽太守.”

建安 8년	黃祖 공격, 山寇 토벌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46</sup>
建安 9년	孫權의 동생 孫翊이 살해됨	建安 9년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47</sup>
建安 10년	上饒 토벌, 建平縣 분리		
建安 12년	黃祖 정벌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48</sup>
建安 13년	春, 黃祖 정벌		『資治通鑑』에 正月 이후의 일로 기록 <sup>49</sup>
	孫權은 周瑜와 程普를 左右督으로 삼아 劉備와 함께 진격하게 하여 赤壁에서 曹操의 군대를 대파함(赤壁大戰)	建安 13년	十二月, 赤壁에서 劉備와 싸우다 不利하고 蒯棼이 걸려 吏士가 많이 죽자 후퇴함(『魏書』) <sup>50</sup>
		날짜 표시 없음	劉備, 孫權의 水軍 수만과 함께 曹操軍을 赤壁에서 대파. 劉備軍과 吳軍이 南郡까지 추격, 曹操  회군(『蜀書』) <sup>51</sup>

- 46 『資治通鑑』卷64「漢紀」56 獻帝建安八年條, 2052쪽, “孫權西伐黃祖, 破其舟軍, 惟城未克, 而山寇復動. 權還, 過豫章, 使征虜中郎將呂範平鄱陽·會稽, 盪寇中郎將程普討樂安, 建昌都尉太史慈領海昏, 以別部司馬黃蓋·韓當·周泰·呂蒙等守劇縣令長, 討山越, 悉平之. 建安·漢興·南平民作亂, 聚眾各萬餘人, 權使南部都尉會稽賀齊進討, 皆平之, 復立縣邑, 料出兵萬人; 拜齊平東校尉.”
- 47 『資治通鑑』卷64「漢紀」56 獻帝建安九年條, 2058쪽, “丹陽大都督媯覽·郡丞戴員殺太守孫翊, 將軍孫河屯京城, 馳赴宛陵, 覽·員復殺之; 遣入迎揚州刺史劉馥, 令住歷陽, 以丹陽應之.”
- 48 『資治通鑑』卷65「漢紀」57 獻帝建安十二年條, 2074쪽, “是歲, 孫權西擊黃祖, 虜其人民而還.”
- 49 『資治通鑑』卷65「漢紀」57 獻帝建安十二年條, 2078쪽, “權遂西擊黃祖, 祖橫兩蒙衝, 挾守沔口, 以拼閭大紮繫石爲碇, 上有千人, 以弩交射, 飛矢雨下, 軍不得前. 偏將軍董襲與別部司馬凌統俱爲前部, 各將敢死百人, 人被兩鎧, 乘大舸, 突入蒙衝里. 襲身以刀斷兩紮, 蒙衝乃橫流, 大兵遂進. 祖令都督陳就以水軍逆戰. 平北都尉呂蒙勒前鋒, 親梟就首. 于是將士乘勝, 水陸並進, 傳其城, 盡銳攻之, 遂屠其城, 祖挺身走, 追斬之, 虜其男女數萬口.”
- 50 『三國志』卷1「魏書」1「武帝紀」建安十三年條, 31쪽, “公至赤壁, 與備戰, 不利. 於是大疫, 吏士多死者, 乃引軍還.”
- 51 『三國志』卷32「蜀書」2「先主傳」, 878쪽, “先主遣諸葛亮自結於孫權, 權遣周瑜·程普等水軍數萬, 與先主并力, 與曹公戰於赤壁, 大破之, 焚其舟船. 先主與吳軍水陸並進, 追到南郡, 時又疾疫, 北軍多死, 曹公引歸.”

	建安 13년 十月 이후	두 차례 전투, 黃蓋의 공격으로 曹操軍 대패(『資治通鑑』) <sup>52</sup>
劉備과 周瑜 등은 다시 추격하여 南郡에 이르렀고 曹操는 북쪽으로 돌아가며 曹仁과 徐晃에게 江陵, 樂進에게 襄陽을 각각 지키게 함	建安 13년	十二月, 劉備가 荊州의 江南 諸郡 점령(『魏書』), <sup>53</sup> 孫權의 南郡 공격 기사 없음
	날짜 표시 없음	劉琦를 荊州刺史로 추대하고 4郡 점령(『蜀書』) <sup>54</sup>
		『資治通鑑』에 동일 기사 있음 <sup>55</sup>
孫權의 合肥 공격, 曹操가 張喜를 合肥로 보내니 孫權 패퇴함	建安 13년	十二月, 孫權이 合肥 공격, 曹操는 江陵에서 巴丘로 진격, 張喜를 보내 合肥를 구하도록 함(적벽대전 이후)(『魏書』) <sup>56</sup>
	建安 13년	十二月, 孫權의 合肥 공격, 張昭의 當塗 공격 실패(『資治通鑑』) <sup>57</sup>

- 52 『資治通鑑』卷65「漢紀」57 獻帝建安十三年條, 2092~2093쪽, “進, 與操遇於赤壁, 時操軍眾已有疾疫, 初一交戰, 操軍不利, 引次江北, 瑜等在南岸, 瑜部將黃蓋曰: ‘今寇眾我寡, 難與持久, 操軍方連船艦, 首尾相接, 可燒而走也,’ 乃取蒙衝門艦十艘, 載燥荻·枯柴·灌油其中, 裹以帷幕, 上建旌旗, 預備走舸, 繫於其尾, 先以書遺操, 詐云欲降, 時東南風急, 蓋以十艦最著前, 中江舉帆, 餘船以次俱進, 操軍吏士皆出營立觀, 指言蓋降, 去北軍二里餘, 同時發火, 火烈風猛, 船往如箭, 燒盡北船, 延及岸上營落, 頃之, 煙炎張天, 人馬燒溺死者甚眾, 瑜等率輕銳繼其後, 雷鼓大進, 北軍大壞, 操引軍從華容道步走, 遇泥濘, 道不通, 天又大風, 悉使羸兵負草填之, 騎乃得過, 羸兵爲人馬所蹈藉, 陷泥中, 死者甚眾.”
- 53 『三國志』卷1「魏書」1「武帝紀」建安十三年條, 30~31쪽, “[劉]備遂有荊州·江南諸郡.”
- 54 『三國志』卷32「蜀書」2「先主傳」, 879쪽, “先主表琦爲荊州刺史, 又南征四郡, 武陵太守金旋·長沙太守韓玄·桂陽太守趙範·零陵太守劉度皆降.”
- 55 『資治通鑑』卷65「漢紀」57 獻帝建安十三年條, 2093쪽, “劉備·周瑜水陸竝進, 追操至南郡, 時操軍兼以饑疫, 死者太半, 操乃留征南將軍曹仁·橫野將軍徐晃守江陵, 折衝將軍樂進守襄陽, 引軍北還.”
- 56 『三國志』卷1「魏書」1「武帝紀」建安十三年條, 30~31쪽, “十二月, 孫權爲備攻合肥, 公自江陵征備, 至巴丘, 遣張憲救合肥, 權聞憲至, 乃走.”
- 57 『資治通鑑』卷65「漢紀」57 獻帝建安十三年條, 2094쪽, “十二月, 孫權自將圍合肥, 使張昭攻九江之當塗, 不克.”

		建安 14년	三月, 孫權 合肥 포위 실패 후 회군(『資治通鑑』 <sup>58</sup> )
建安 14년	曹仁, 南郡에서 도망, 孫權은 周瑜를 南郡太守로 임명함	建安 14년	十二月, 『資治通鑑』에 동일 기사 있음 <sup>59</sup>
	劉備는 表를 올려 孫權을 行車騎將軍 徐州牧에 추천, 劉備는 荊州牧이 되어 公安에 주둔함	날짜 표시 없음	劉琦 病死 후 신하들에게 荊州牧으로 추대되어 公安에 주둔(『蜀書』 <sup>60</sup> )
		建安 14년	十二月, 劉備와 孫權이 서로 상대방을 徐州牧과 荊州牧으로 추대함(『資治通鑑』 <sup>61</sup> )
建安 15년	豫章郡을 나누어 鄱陽郡을, 長沙郡을 나누어 漢昌郡을 세움	建安 15년	十二月, 劉備에 荊州를 빌려주며 豫章郡과 長沙郡을 나눠 鄱陽郡과 漢昌郡 설치함(『資治通鑑』 <sup>62</sup> )
建安 16년	秣陵으로 옮김	建安 17년	『資治通鑑』에서 石頭城 쌓고 秣陵으로 옮겼으며, 建業으로 고쳤다고 서술(『資治通鑑』 <sup>63</sup> )

- 58 『資治通鑑』卷66「漢紀」58 獻帝建安十四年三月條, 2097~2098쪽, “孫權圍合肥, 久不下, 權率輕騎欲身往突敵, 長史張紘諫曰: ‘夫兵者兇器, 戰者危事也, 今麾下恃盛壯之氣, 忽強暴之虜, 三軍之眾, 莫不寒心, 雖斬將奪旗, 威震敵場, 此乃偏將之任, 非主將之宜也, 願抑賁·育之勇, 懷霸王之計.’ 權乃止, 曹操遣將軍張喜將兵解圍, 久而未至, 揚州別駕楚國蔣濟密白刺史, 偽得喜書, 雲步騎四萬已到雩婁, 遣主簿迎喜, 三部使齋書語城中守將, 一部得入城, 二部爲權兵所得, 權信之, 遽燒圍走.”
- 59 『資治通鑑』卷66「漢紀」58 獻帝建安十四年十二月條, 2098쪽, “周瑜攻曹仁歲餘, 所殺傷甚眾, 仁委城走, 權以瑜領南郡太守, 屯據江陵; 程普領江夏太守, 治沙羨; 呂範領彭澤太守; 呂蒙領尋陽令.”
- 60 『三國志』卷32「蜀書」2「先主傳」, 879쪽, “琦病死, 羣下推先主爲荊州牧, 治公安.”
- 61 『資治通鑑』卷66「漢紀」58 獻帝建安十四年十二月條, 2099쪽, “劉備表權行車騎將軍, 領徐州牧, 會劉琦卒, 權以備領荊州牧, 周瑜分南岸地以給備, 備立營於油口, 改名公安.”
- 62 『資治通鑑』卷66「漢紀」58 獻帝建安十五年十二月條, 2103~2104쪽, “魯肅勸權以荊州借劉備, 與共拒曹操, 權從之, 乃分豫章爲番陽郡, 分長沙爲漢昌郡; 復以程普領江夏太守, 魯肅爲漢昌太守, 屯陸口.”
- 63 『資治通鑑』卷66「漢紀」58 獻帝建安十七年條, 2113~2114쪽, “初, 張紘以秣

建安 17년	石頭城 축조, 秣陵을 建業으로 고침		
	曹操의 공격 소식 듣고 濡水塢 건설	建安 17년	劉璋을 돕기 위해 巴蜀에 있던 劉備가 曹操의 공격을 받은 孫權의 도움 요청받고 도우려 함(『蜀書』) <sup>64</sup>
建安 18년	正月, 曹操가 濡須를 공격하자 孫權이 출정하여 한 달여 대치, 曹操는 후퇴함	建安 18년	曹操, 正月, 濡水口 공격, 손권의 江西營 격파하고 公孫陽 생포 후 귀환함(『魏書』) <sup>65</sup>
		建安 18년	正月,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66</sup>

陵山川形勝, 勸孫權以爲治所; 及劉備東過秣陵, 亦勸權居之. 權於是作石頭城, 徙治秣陵, 改秣陵爲建業(秣陵, 屬丹陽郡, 本金陵也, 秦始皇改; 孫權改曰建業; 後避晉愍帝諱, 改曰建康. 石頭城; 在今建康城西二里. 金陵志: 石頭城去臺城九里, 南合秦淮水. 張舜民曰: 石頭城者, 天生城壁, 有如城然, 在清涼寺北覆舟山, 江行自北來者, 循石頭城, 轉入秦淮. 陸游曰: 龍灣望頭山, 不甚高, 然峭立江中, 繚繞如垣牆. 清涼寺距石頭里餘, 西望宣化渡及歷陽諸山. 宋白曰: 晉平吳, 分爲二邑, 自淮水南爲秣陵, 北爲建業. 江表傳: 紘謂權曰: ‘秣陵, 楚武王所置, 名爲金陵; 地劫岡阜連石頭. 昔秦始皇東巡, 經此縣, 望氣者云, 金陵地形, 有王者都邑之氣, 故掘斷連岡, 改名秣陵. 今處所具存, 宜爲都邑.’ 獻帝春秋又載權曰: ‘秣陵有小江百餘里, 可以安大船, 吾方理水軍, 當移據之.’ 又據晉書郗隆傳, 隆爲揚州刺史, 鎮秣陵. 齊王瓘檄令赴討趙王倫, 隆停檄不下. 時王邃鎮石頭, 隆軍西赴邃者甚眾, 隆遣從事於牛渚禁之, 不得止. 將士奉邃攻殺隆, 則石頭在牛渚西. 詳考是事, 秣陵軍將赴邃, 欲自牛渚而西勦王也; 石頭自在牛渚東.)”

- 64 『三國志』卷32「蜀書」2「先主傳」, 881쪽, “明年, 曹公征孫權, 權呼先主自救. 先主遣使告璋曰: ‘曹公征吳, 吳憂危急, 孫氏與孤本爲唇齒, 又樂進在青泥與關羽相拒, 今不往救羽, 進必大克, 轉侵州界, 其憂有甚於魯. 魯自守之賊, 不足慮也.’ 乃從璋求萬兵及資(寶)[實], 欲以東行.”
- 65 『三國志』卷1「魏書」1「武帝紀」建安十八年條, 37쪽, “十八年春正月, 進軍濡須口, 攻破權江西營, 獲權都督公孫陽, 乃引軍還.”
- 66 『資治通鑑』卷66「漢紀」58 獻帝建安十八年條, 2118쪽, “春, 正月, 曹操進軍濡須口, 號步騎四十萬, 攻破孫權江西營, 獲其都督公孫陽. 權率眾七萬禦之, 相守月餘. 操見其舟船器仗軍伍整肅, 歎曰: ‘生子當如孫仲謀; 如劉景升兒子, 豚犬耳!’ 權爲箋與操, 說: ‘春水方生, 公宜速去.’ 別紙言: ‘足下不死, 孤不得安.’ 操語諸將曰: ‘孫權不欺孤.’ 乃撤軍還.”

	曹操의 徙民에 반대하여 廬江·九江·蕪春·廣陵 10여만 호가 渡江	建安 18년	四月,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67</sup>
建安 19년	五月, 皖城 공격, 閏月 점령	建安 19년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68</sup>
	劉備의 巴蜀 점령	建安 19년	劉備, 巴蜀 점령(『蜀書』) <sup>69</sup> 閏月,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70</sup>
	孫權, 劉備의 長沙·零陵·桂陽 3郡 점령, 關羽와 대치함	建安 20년	孫權, 呂蒙을 보내 長沙·零陵·桂陽 3郡 점령, 劉備는 5만을 이끌고 公安에 주둔, 關羽에게 益陽에 주둔하게 함(『蜀書』) <sup>71</sup>

- 67 『資治通鑑』卷66「漢紀」58 獻帝建安十八年條, 2118~2119쪽, “初, 曹操在譙, 恐濱江郡縣爲孫權所略, 欲徙令近內, 以問揚州別駕蔣濟, 曰: ‘昔孤與袁本初對軍官渡, 徙燕·白馬民, 民不得走, 賊亦不敢鈔, 今欲徙淮南民, 何如?’ 對曰: ‘是時兵弱賊強, 不徙必失之, 自破袁紹以來, 明公威震天下, 民無他志, 人情懷土, 實不樂徙, 懼必不安.’ 操不從. 旣而民轉相驚, 自廬江·九江·蕪春·廣陵, 戶十餘萬皆東流江, 江西遂虛, 合淝以南, 惟有皖城.”
- 68 『資治通鑑』卷67「漢紀」59 獻帝建安十九年條, 2126쪽, “初, 魏公操遣廬江太守朱光屯皖, 大開稻田, 呂蒙言於孫權曰: ‘皖田肥美, 若一收孰, 彼眾必增; 宜早除之.’ 閏月, 權親攻皖城, 諸將欲作土山, 添攻具, 呂蒙曰: ‘治攻具及土山, 必歷日乃成; 城備旣脩, 外救必至, 不可圖也. 且吾乘雨水以入, 若留經日, 水必向盡, 還道艱難, 蒙竊危之. 今觀此城, 不能甚固, 以三軍銳氣, 四面竝攻, 不移時可拔; 及水以歸, 全勝之道也.’ 權從之, 蒙薦甘寧爲升城督, 寧手持練, 身綠城, 爲士卒先; 蒙以精銳繼之, 手執枹鼓, 士卒皆騰踊, 侵晨進攻, 食時破之, 獲朱光及男女數萬口, 旣而張遼至夾石, 聞城已拔, 乃退. 權拜呂蒙爲廬江太守, 還屯尋陽.”
- 69 『三國志』卷32「蜀書」2「先主傳」, 881쪽, “十九年夏, 雒城破, 進圍成都數十日, 璋出降.”
- 70 『資治通鑑』卷67「漢紀」59 獻帝建安十九年閏月條, 2128쪽, “備圍城數十日, 使從事中郎涿郡簡雍入說劉璋, 時城中尙有精兵三萬人, 穀帛支一年, 吏民咸欲死戰, 璋言: ‘父子在州二十餘年, 無恩德以加百姓, 百姓攻戰三年, 肌膏草野者, 以璋故也, 何心能安!’ 遂開城, 與簡雍同輿出降, 群下莫不流涕, 備遷璋於公安, 盡歸其財物, 佩振威將軍印綬.”
- 71 『三國志』卷32「蜀書」2「先主傳」, 883쪽, “二十年, 孫權以先主已得益州, 使使報欲得荊州, 先主言: ‘須得涼州, 當以荊州相與.’ 權忿之, 乃遣呂蒙襲奪長沙·零陵·桂陽三郡, 先主引兵五萬下公安, 令關羽入益陽.”

	建安 20년	五月,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72</sup>
	建安 20년	呂岱가 孫茂 등 10將을 거느리고 長沙 3郡 점령함(『吳書』) <sup>73</sup>
曹操, 漢中 공격	建安 20년	曹操, 漢中 평정, 張魯, 巴西로 도망감(『蜀書』) <sup>74</sup>
	建安 20년	七月, 曹操, 漢中 평정, 張魯, 巴西로 도망감(『資治通鑑』) <sup>75</sup>
荊州 兩分(長沙·江夏·桂陽 以東은 孫權에, 南郡·零陵·武陵 以西는 劉備에 속함)	建安 20년	荊州 兩分(『蜀書』) <sup>76</sup>
	建安 20년	五月,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77</sup>
曹操 귀환	建安 20년	十二月, 曹操, 漢中(南鄭)에서 귀환(『魏書』) <sup>78</sup>
孫權이 陸口에서 돌아와合肥 공격, 퇴각	建安 20년	八月,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79</sup>

- 72 『資治通鑑』卷67「漢紀」59 獻帝建安二十年三月條, 2136~2137쪽.
- 73 『三國志』卷60「吳書」呂岱傳, 1384쪽, “建安二十年, 督孫茂等十將從取長沙三郡, 又安成·攸·永新·茶陵四縣吏共入陰山城, 合眾拒岱, 岱攻圍, 卽降, 三郡克定. 權留岱鎮長沙, 安成長吳瑒及中郎將袁龍等首尾關羽, 復爲反亂, 瑒據攸縣, 龍在醴陵, 權遣橫江將軍魯肅攻攸, 瑒得突走, 岱攻醴陵, 遂禽斬龍, 遷廬陵太守.”
- 74 『三國志』卷32「蜀書」2「先主傳」, 883쪽, “是歲, 曹公定漢中, 張魯遁走巴西.”
- 75 『資治通鑑』卷67「漢紀」59 獻帝建安二十年七月條, 2138~2140쪽.
- 76 『三國志』卷32「蜀書」2「先主傳」, 883쪽, “是歲, 曹公定漢中, 張魯遁走巴西, 先主聞之, 與權連和, 分荊州, 江夏·長沙·桂陽東屬, 南郡·零陵·武陵西屬, 引軍還江州.”
- 77 『資治通鑑』卷67「漢紀」59 獻帝建安二十年七月條, 2138쪽, “會聞魏公操將攻漢中, 劉備懼失益州, 使使求和於權, 權令諸葛瑾報命, 更尋盟好, 遂分荊州, 以湘水爲界; 長沙·江夏·桂陽以東屬權, 南郡·零陵·武陵以西屬備.”
- 78 『三國志』卷1「魏書」1「武帝紀」建安二十年十二月條, 46쪽, “十二月, 公自南鄭還, 留夏侯淵屯漢中.”
- 79 『資治通鑑』卷67「漢紀」59 獻帝建安二十年八月條, 2141쪽, “八月, 孫權率眾十萬圍合肥, 時張遼·李典·樂進將七千餘人屯合肥, 魏公操之征張魯也, 爲教

建安 20년		建安 20년	八月, 孫權이合肥 포위, 張遼·李典이 격파함(『魏書』 <sup>80</sup> 『吳書』에 없음.
		建安 20년	九月, 張魯 항복(『資治通鑑』 <sup>81</sup> )
建安 21년	冬, 曹操가 居巢에 주둔하며 濡須를 공격함	建安 21년	十月, 治兵, 孫權 정벌. 十一月 譙郡에 도착(『魏書』 <sup>82</sup> )
		建安 21년	『魏書』의 기록과 같음(『資治通鑑』 <sup>83</sup> )
		建安 22년	二月, 曹操, 濡須口에서 孫權 격파. 三月 귀환(『魏書』 <sup>84</sup> )
		建安 22년	二月, 曹操, 濡須口에서 孫權 공격. 三月 귀환(『資治通鑑』 <sup>85</sup> )

與合肥護軍薛悌, 署兩邊曰: ‘賊至, 乃發.’ 及權至, 發教, 教曰: ‘若孫權至者, 張·李將軍出戰, 樂將軍守, 護軍勿得與戰.’ 諸將以眾寡不敵, 疑之. 張遼曰: ‘公遠征在外, 比救至, 彼破我必矣. 是以教指及其未合逆擊之, 折其盛勢, 以安眾心, 然後可守也.’ 進等莫對. 遼怒曰: ‘成敗之機, 在此一戰, 諸君若疑, 遼將獨決之.’ 李典素與遼不睦, 慨然曰: ‘此國家大事, 顧君計何如耳, 吾可以私憾而忘公義乎! 請從君而出.’ 於是遼夜募敢從之士, 得八百人, 椎牛犒饗. 明旦, 遼被甲持戟, 先登陷陣, 殺數十人, 斬二大將, 大呼自名, 衝壘入至權麾下. 權大驚, 不知所爲, 走登高塚, 以長戟自守. 遼叱權下戰, 權不敢動, 望見遼所將眾少, 乃聚圍遼數重, 遼急擊圍開, 將麾下數十人得出. 餘眾號呼曰: ‘將軍棄我乎?’ 遼復還突圍, 拔出餘眾, 權人馬皆披靡, 無敢當者. 自旦戰至日中, 吳人奪氣, 乃還脩守備, 眾心遂安.”

- 80 『三國志』卷1「魏書」1「武帝紀」建安二十年條, 45쪽, “八月, 孫權圍合肥, 張遼·李典擊破之.”
- 81 『資治通鑑』卷67「漢紀」59 獻帝建安二十年十一月條, 2142쪽, “十一月, 張魯將家屬出降, 魏公操逆拜魯鎮南將軍, 待以客禮, 封閬中侯, 邑萬戶, 封魯五子及閬圍等皆爲列侯.”
- 82 『三國志』卷1「魏書」1「武帝紀」建安二十一年條, 49쪽, “冬十月, 治兵, 遂征孫權, 十一月至譙.”
- 83 『資治通鑑』卷67「漢紀」59 獻帝建安二十一年條, 2147쪽, “冬, 十月, 魏王操治兵擊孫權; 十一月, 至譙.”
- 84 『三國志』卷1「魏書」1「武帝紀」建安二十二年條, 49쪽, “二十二年春正月, 王軍居巢, 二月, 進軍屯江西郝谿, 權在濡須口築城拒守, 遂逼攻之, 權退走, 三月, 王引軍還, 留夏侯惇·曹仁·張遼等屯居巢.”

建安 22년	春, 曹操에 사신을 보내 항복 청함, 조조가 사신 보냄	建安 22년	三月, 孫權, 사신을 보내 曹操에게 請降(『資治通鑑』) <sup>86</sup>
建安 23년	十月, 孫權은 吳郡 陵亭에서 호랑이 사냥함		
建安 24년	關羽가 襄陽에서 曹仁 포위, 曹操가 우금을 보냈으나 關羽에 패배함	建安 24년	七月, 孫權, 合肥 공격(『資治通鑑』) <sup>87</sup>
		建安 24년	七月, 曹操, 于禁을 보내 關羽 공격, 八月 關羽에 생포, 關羽, 曹仁 포위, 徐晃 보내 구원함(『魏書』) <sup>88</sup>
		建安 24년	七月, 關羽, 曹仁이 보낸 于禁·龐德 격파함(『資治通鑑』) <sup>89</sup>
		建安 24년	關羽, 曹仁을 공격하고 于禁을 樊에서 생포, 孫權이 關羽를 습격하여 죽이고 荊州 점령함(『蜀書』) <sup>90</sup>

- 85 『資治通鑑』卷68「漢紀」60 獻帝建安二十二年條, 2148쪽, “春, 正月, 魏王操軍居巢, 孫權保濡須, 二月, 操進攻之.”
- 86 『資治通鑑』卷68「漢紀」60 獻帝建安二十二年三月條, 2149쪽, “權令都尉徐詳詣操請降, 操報使修好, 誓重結婚.”
- 87 『資治通鑑』卷68「漢紀」60 獻帝建安二十二年七月條, 2160쪽, “孫權攻合肥.”
- 88 『三國志』卷1「魏書」1「武帝紀」建安二十四年條, 52쪽, “秋七月, 以夫人卞氏爲王后. 遣于禁助曹仁擊關羽. 八月, 漢水溢, 灌禁軍, 軍沒, 羽獲禁, 遂圍仁. 使徐晃救之.”
- 89 『資治通鑑』卷68「漢紀」60 獻帝建安二十二年七月條, 2160~2161쪽, “已而關羽果使南郡太守糜芳守江陵, 將軍傅士仁守公安, 羽自率眾攻曹仁於樊. 仁使左將軍于禁·立義將軍龐德等屯樊北. 八月, 大霖雨, 漢水溢, 平地數丈, 于禁等七軍皆沒. 禁與諸將登高避水, 羽乘大船就攻之, 禁等窮迫, 遂降. 龐德在堤上, 被甲持弓, 箭不虛發, 自平旦力戰, 至日過中, 羽攻益急; 矢盡, 短兵接, 德戰忿怒, 氣愈壯, 而水浸盛, 吏士盡降. 德乘小船欲還仁營, 水盛船覆, 失弓矢, 獨抱船覆水中, 爲羽所得, 立而不跪. 羽謂曰: ‘卿兄在漢中, 我欲以卿爲將, 不早降何爲!’ 德罵羽曰: ‘豎子, 何謂降也! 魏王帶甲百萬, 威振天下, 汝劉備庸才耳, 豈能敵邪! 我寧爲國家鬼, 不爲賊將也!’ 羽殺之.”
- 90 『三國志』卷32「蜀書」2「先主傳」, 887쪽, “時關羽攻曹公將曹仁, 禽于禁於樊. 俄而孫權襲殺羽, 取荊州.”

孫權, 曹操에게 편지를 보내 關羽 공격 요청, 曹操가 승락함	建安 24년	十月, 曹操, 洛陽으로 돌아옴(劉備 공격), 孫權이 關羽를 토벌한다고 한 편지 보냄(『魏書』 <sup>91</sup> )
	建安 24년	十月, 孫權이 曹操에게 關羽 토벌 요청 편지를 보내자 曹操가 徐晃에게 樊城의 수비군과 關羽에게 孫權의 편지를 보내게 함(『資治通鑑』 <sup>92</sup> )
呂蒙, 南郡 점령	建安 24년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資治通鑑』 <sup>93</sup> )
關羽 피살	建安 24년	十月, 曹操가 洛陽에서 關羽 공격하려고 출정했으나 도착 전에 徐晃이 關羽 격파, 曹仁의 포위 풀림(『魏書』 <sup>94</sup> )
	建安 24년	十一月, 關羽, 章鄉에서 생포되어 피살됨(『資治通鑑』 <sup>95</sup> )

- 91 『三國志』卷1「魏書」1「武帝紀」建安二十四年條, 52쪽, “冬十月, 軍還洛陽, 孫權遣使上書, 以討關羽自效.”
- 92 『資治通鑑』卷68「漢紀」60 獻帝建安二十二年十月條, 2166~2167쪽, “孫權爲箋與魏王操, 請以討羽自效, 及乞不漏, 令羽有備. 操問群臣, 群臣咸言宜密之. 董昭曰: ‘軍事尙權, 期於合宜. 宜應權以密, 而內露之. 羽聞權上, 若還自護, 圍則速解, 便獲其利. 可使兩賊相對銜持, 坐待其敝. 秘而不露, 使權得志, 非計之上. 又, 圍中將吏不知有救, 計糧怖懼, 儻有他意, 爲難不小. 露之爲便, 且羽爲人彊梁, 自恃二城守固, 必不速退.’ 操曰: ‘善!’ 卽敕徐晃以權書射著圍裏及羽屯中, 圍裏聞之, 志氣百倍; 羽果猶豫不能去.”
- 93 『資治通鑑』卷68「漢紀」60 獻帝建安二十二年十月條, 2168쪽, “呂蒙至尋陽, 盡伏其精兵於葦葦鹿中, 使白衣搖櫓, 作商賈人服, 晝夜兼行. 羽所置江邊屯候, 盡收縛之, 是故羽不聞知. 糜芳·傅士仁素皆嫌羽輕己, 羽之出軍, 芳·仁供給軍資不悉相及, 羽言: ‘還, 當治之!’ 芳·仁咸懼. 於是蒙令故騎都尉虞翻爲書說仁, 爲陳成敗, 仁得書卽降. 翻謂蒙曰: ‘此譎兵也, 當將仁行, 留兵備城.’ 遂將仁至南郡. 糜芳城守, 蒙以仁示之, 芳遂開門出降. 蒙入江陵, 釋于禁之囚, 得關羽及將士家屬, 皆撫慰之, 約令軍中: ‘不得干歷人家, 有所求取.’ 蒙麾下士, 與蒙同郡人, 取民家一笠以覆官鎧; 官鎧雖公, 蒙猶以爲犯軍令, 不可以鄉里故而廢法, 遂垂涕斬之. 於是軍中震慄, 道不拾遺. 蒙旦暮使親近存恤耆老, 問所不足, 疾病者給醫藥, 饑寒者賜衣糧. 羽府藏財寶, 皆封閉以待權至.”
- 94 『三國志』卷1「魏書」1「武帝紀」建安二十四年條, 52쪽, “王自洛陽南征羽, 未至, 晃攻羽, 破之, 羽走, 仁圍解.”

	曹操, 孫權을 驃騎將軍 領荊州牧 南昌侯로 추천함	建安 24년	十一月,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96</sup>
	孫權, 漢에 공물을 바침		十一月, 孫權, 사신 보내 入貢함 (『資治通鑑』) <sup>97</sup>
建安 25년 (220)	正月, 曹操 사망, 曹丕 魏王 계승	建安 25년	正月 庚子, 曹操 사망(『魏書』) <sup>98</sup>
		黃初 元年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99</sup>
延康 元年 (220)	秋, 南陽郡의 陰·鄧·筑陽·山都·中廬 5縣 民 1천 가가 來附함		
		延康 元年	七月, 孫權, 사신을 보내 奉獻함 (『魏書』) <sup>100</sup>
	黃初 元年	『資治通鑑』에 「魏書」와 비슷한 기사 있음 <sup>101</sup>	
	魏文帝 즉위	延康 元年	十月 庚午, 曹丕 即位(『魏書』) <sup>102</sup>
黃初 元年		十月 辛未, 『資治通鑑』에 「魏書」와 비슷한 기사 있음 <sup>103</sup>	

- 95 『資治通鑑』卷68 「漢紀」60 獻帝建安二十二年十一月條, 2170쪽, “關羽自知孤窮, 乃西保麥城, 孫權使誘之, 羽僞降, 立幡旗爲象人於城上, 因遁走, 兵皆解散, 纔十餘騎. 權先使朱然·潘璋斷其徑路. 十二月, 璋司馬馬忠獲羽及其子平於章鄉, 斬之, 遂定荊州.”
- 96 『資治通鑑』卷68 「漢紀」60 獻帝建安二十二年十一月條, 2172쪽, “魏王操表孫權爲票騎將軍, 假節, 領荊州牧, 封南昌侯.”
- 97 『資治通鑑』卷68 「漢紀」60 獻帝建安二十二年十一月條, 2172~2173쪽, “權遣校尉梁寓入貢, 又遣朱光等歸, 上書稱臣於操, 稱說天命.”
- 98 『三國志』卷1 「魏書」1 「武帝紀」建安二十五年正月庚子條, 53쪽, “庚子, 王崩于洛陽, 年六十六.”
- 99 『資治通鑑』卷69 「魏紀」1 文帝黃初元年條, 2175~2177쪽.
- 100 『三國志』卷2 「魏書」2 「文帝紀」延康元年七月條, 60쪽, “孫權遣使奉獻.”
- 101 『資治通鑑』卷69 「魏紀」1 文帝黃初元年條, 2180쪽, “秋, 七月, 孫權遣使奉獻.”
- 102 『三國志』卷2 「魏書」2 「文帝紀」延康元年十月條, 62쪽, “庚午, 王升壇卽阼, 百官陪位, 事訖, 降壇, 視燎成禮而反, 改延康爲黃初, 大赦.”
- 103 『資治通鑑』卷69 「魏紀」1 文帝黃初元年條, 2182쪽, “冬, 十月, 乙卯, 漢帝告祠高廟, 使行御史大夫張音持節奉璽綬詔冊, 禪位于魏, 王三上書辭讓, 乃爲壇

黃初 2년 (221)	四月, 劉備, 稱帝	建安 26년 (221)	劉備, 皇帝로 즉위(『蜀書』) <sup>104</sup>
		黃初 2년 (221)	三月, 劉備, 皇帝로 즉위(『資治通鑑』) <sup>105</sup>
	鄂으로 천도, 武昌으로 改名	黃初 2년 (221)	三月,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106</sup>
	四月과 十一月 사이, 孫權이 稱蕃, 于禁 등을 돌려보냄	黃初 2년 (221)	八月,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107</sup>
	十一月 曹丕가 孫權을 大將軍 使持節 督交州 領荊州牧事に 임명하고 吳王에 봉함	黃初 2년	八月, 孫權이 사신을 보냄. 丁巳, 孫權에게 大將軍 吳王 계수함(『魏書』) <sup>108</sup>
		黃初 2년	八月 丁巳, 孫權을 吳王에 봉함(『資治通鑑』) <sup>109</sup>
劉備가 군대를 이끌고 孫權을 공격, 孫權은 陸遜을 督으로 임명하여 朱然·潘璋 등을 지휘하여 맞서게 하고 都尉 趙雲을 魏에 보냄	章武 元年 (221)	七月, 劉備, 吳 정벌, 孫權은 陸議·李異·劉阿에게 巫·秭歸에 주둔하게 함. 馮習, 李異 격파, 秭歸에 도착함(『蜀書』) <sup>110</sup>	

於繁陽, 辛未, 升壇受璽綬, 卽皇帝位, 燎祭天地·岳瀆, 改元, 大赦.”

104 『三國志』 卷32 「蜀書」 2 「先主傳」, 887~889쪽.

105 『資治通鑑』 卷69 「魏紀」 1 文帝黃初二年條, 2185쪽, “蜀中傳言漢帝已遇害, 於是漢中王發喪制服, 諡曰孝愍皇帝. 群下競言符瑞, 勸漢中王稱尊號. 前部司馬費詩上疏曰: ‘殿下以曹操父子偪主篡位, 故乃羈旅萬里, 糾合士眾, 將以討賊. 今大敵未克而先自立, 恐人心疑惑, 昔高祖與楚約, 先破秦者王之. 及屠咸陽, 獲子嬰, 猶懷推讓. 況今殿下未出門庭, 便欲自立邪! 愚臣誠不爲殿下取也.’ 王不悅, 左遷詩爲部永昌從事. 夏, 四月, 丙午, 漢中王卽皇帝位於武擔之南, 大赦, 改元章武. 以諸葛亮爲丞相, 許靖爲司徒.”

106 『資治通鑑』 卷69 「魏紀」 1 文帝黃初二年條, 2188쪽, “孫權自公安徙都鄂, 更名鄂曰武昌.”

107 『資治通鑑』 卷69 「魏紀」 1 文帝黃初二年條, 2192쪽, “八月, 孫權遣使稱臣, 卑辭奉章, 并送于禁等還.”

108 『三國志』 卷2 「魏書」 2 「文帝紀」 黃初二年條, 78쪽, “秋八月, 孫權遣使奉章, 并遣于禁等還. 丁巳, 使太常邢貞持節拜權爲大將軍, 封吳王, 加九錫.”

109 『資治通鑑』 卷69 「魏紀」 1 文帝黃初二年八月丁巳條, 2193쪽, “丁巳, 遣太常邢貞奉策卽拜孫權爲吳王, 加九錫.”

110 『三國志』 卷32 「蜀書」 2 「先主傳」 章武元年條, 890쪽, “秋七月, 遂帥諸軍伐

		黃初 2년 (221)	七月, 『資治通鑑』에 「蜀書」와 같은 기록 있음 <sup>111</sup>
	孫登을 王太子로 임명		十一月,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112</sup>
黃武元年 (222)	三月, 陸遜, 蜀軍 대파(夷陵의 전투)	黃初 3년 (222)	閏月, 孫權이 夷陵에서 劉備 격파함(『魏書』) <sup>113</sup>
		章武 2년 (222)	六月, 劉備, 猇亭에서 陸議(陸遜)에게 패함(『蜀書』) <sup>114</sup>
	黃初 3년 (222)	閏月, 陸遜의 漢軍 격파(『資治通鑑』) <sup>115</sup>	
	魏가 侍中 辛毗와 尙書 桓階를 보내 동맹하며 任子를 요청. 孫權이 사양하고 받지 않음	黃初 3년 (222)	九月, 『資治通鑑』에 비슷한 기사 있음 <sup>116</sup>

吳·孫權遣書請和, 先主盛怒不許, 吳將陸議·李異·劉阿等屯巫·秭歸; 將軍吳班·馮習自巫攻破異等, 軍次秭歸, 武陵五谿蠻夷遣使請兵.”

- 111 『資治通鑑』卷69 「魏紀」1 文帝黃初二年七月條, 2191쪽, “漢主遣將軍吳班·馮習攻破權將李異·劉阿等於巫, 進軍秭歸, 兵四萬餘人, 武陵蠻夷皆遣使往請兵. 權以鎮西將軍陸遜爲大都督·假節, 督將軍硃然·潘璋·宋謙·韓當·徐盛·鮮于丹·孫桓等五萬人拒之.”
- 112 『資治通鑑』卷69 「魏紀」1 文帝黃初二年七月條, 2198쪽, “吳王以其子登爲太子, 妙選師友, 以南郡太守諸葛瑾之子恪·綏遠將軍張昭之子休·大理吳郡顧雍之子譚·偏將軍廬江陳武之子表皆爲中庶子, 入講詩書, 出從騎射, 謂之四友.”
- 113 『三國志』卷2 「魏書」2 「文帝紀」黃初三年閏月條, 78쪽, “閏月, 孫權破劉備于夷陵.”
- 114 『三國志』卷32 「蜀書」2 「先主傳」章武二年條, 890쪽, “二年春正月, 先主軍還秭歸, 將軍吳班·陳式水軍屯夷陵, 夾江東西岸. 二月, 先主自秭歸率諸將進軍, 緣山截嶺, 於夷道猇亭駐營, 自佷山通武陵, 遣侍中馬良安慰五谿蠻夷, 咸相率響應. 鎮北將軍黃權督江北諸軍, 與吳軍相拒於夷陵道. 夏六月, 黃氣見自秭歸十餘里中, 廣數十丈. 後十餘日, 陸議大破先主軍於猇亭, 將軍馮習·張南等皆沒.”
- 115 『資治通鑑』卷69 「魏紀」1 文帝黃初二年閏月條, 2203~2205쪽.
- 116 『資治通鑑』卷69 「魏紀」1 文帝黃初三年九月條, 2207쪽, “帝慾遣侍中辛毗·尙書桓階往與盟誓, 并責任子, 吳王辭讓不受.”

魏軍, 荊州와 濡須 공격	黃初 3년 (222)	十月, 孫權 다시 반란. 魏文帝親征, 諸軍 병진, 孫權 방어(『魏書』) <sup>117</sup>
	黃初 3년 (222)	九月, 孫權이 인질 보내기를 거부하자 공격함(『資治通鑑』) <sup>118</sup>
十二月, 사신을 白帝城의 劉備에게 보내 다시 통교	章武 2년 (222)	十月, 孫權이 사신을 보내 請和, 劉備는 허락하고 宗璋을 사신으로 파견함(『蜀書』) <sup>119</sup>
	黃初 3년 (222)	十一月, 吳王이 漢에 사신을 보내 다시 통교함(『資治通鑑』) <sup>120</sup>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지·오서』 「오주전」에 연도가 표기되었으나 월일은 표기되지 않은 기사가 많았다. 예컨대 건안 13년(208) 유표(劉表)의 부하인 강하태수(江夏太守) 황조(黃祖)를 토벌하였는데, ‘춘(春)’이라고만 기록했을 뿐<sup>121</sup>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다. 황조는 손권의 아버지 손견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sup>122</sup> 황조를 죽인 건안 13년의 전쟁은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날짜를

117 『三國志』 卷2 「魏書」 2 「文帝紀」 黃初三年十月條, 82쪽, “是月, 孫權復叛, 復郢州爲荊州, 帝自許昌南征, 諸軍兵竝進, 權臨江拒守.”

118 『資治通鑑』 卷69 「魏紀」 1 文帝黃初三年九月條, 2207~2208쪽, “帝愆遣侍中辛毘·尙書桓階往與盟誓, 并責任子, 吳王辭讓不受, 帝怒, 欲伐之, 劉曄曰: ‘彼新得志, 上下齊心, 而阻帶江湖, 不可倉卒制也.’ 帝不從. 九月, 命征東大將軍曹休·前將軍張遼·鎮東將軍臧霸出洞口, 大將軍曹仁出濡須, 上軍大將軍曹眞·征南大將軍夏侯尙·左將軍張郃·右將軍徐晃圍南郡. 吳建威將軍呂範督五軍, 以舟軍拒休等, 左將軍諸葛瑾·平北將軍潘璋·將軍楊榮救南郡, 裨將軍硃桓以濡須督拒曹仁.”

119 『三國志』 卷32 「蜀書」 2 「先主傳」 章武二年條, 890쪽, “冬十月, 詔丞相亮營南北郊於成都, 孫權聞先主住白帝, 甚懼, 遣使請和, 先主許之, 遣太中大夫宗璋報命.”

120 『資治通鑑』 卷69 「魏紀」 1 文帝黃初三年九月條, 2209쪽, “吳王使太中大夫鄭泉聘于漢, 漢太中大夫宗璋報之, 吳·漢復通.”

121 編年體 史書에서 ‘春’은 음력 正月부터 三月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며, 반드시 봄이라는 계절을 지칭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았다. 반면 『자치통감』에서는 정월<sup>123</sup> 이후의 일로 기록하였다.<sup>124</sup>

또한 같은 해 벌어진 적벽대전에서 승리했음에도 전쟁이 벌어진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다. 같은 승자인 유비(劉備)의 기록을 다룬 『삼국지·촉서』에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다.<sup>125</sup> 반면 『삼국지·위서』에서는 십이월이라고 기록하였고,<sup>126</sup> 『자치통감』에서는 시월 이후의 사건으로 서술하였다.<sup>127</sup> 또 적벽대전에서 패한 틈을 타서 손권이 합비(合肥)를 공격했으나 패하였다. 이 또한 『삼국지·오서』 「오주전」에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삼국지·위서』와

122 손견은 원술의 명령으로 荊州의 劉表를 공격하러 갔다가 劉表의 부하 黃祖와 싸우다가 峴山에서 黃祖의 군사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三國志』 卷47 「吳書」 2 「孫堅傳」, 1100쪽, “初平三年, 術使堅征荊州, 擊劉表. 表遣黃祖逆於樊·鄧之間. 堅擊破之, 追渡漢水, 遂圍襄陽, 單馬行峴山, 爲祖軍士所射殺.”).

123 본문에 표기된 날짜는 음력이므로 한글로 표기한다.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바꿀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월일을 표기한다.

124 『資治通鑑』 卷65 「漢紀」 57 獻帝建安十二年條, 2078쪽, “權遣西擊黃祖. 祖橫兩蒙衝, 挾守沔口, 以拼閭大纆繫石爲碇, 上有千人, 以弩交射, 飛矢雨下, 軍不得前. 偏將軍董襲與別部司馬凌統俱爲前部, 各將敢死百人, 人被兩鐵, 乘大舸, 突入蒙衝里, 襲身以刀斷兩纆, 蒙衝乃橫流, 大兵遂進. 祖令都督陳就以水軍逆戰. 平北都尉呂蒙勒前鋒, 親梟就首, 于是將士乘勝, 水陸竝進, 傅其城, 盡銳攻之, 遂屠其城. 祖挺身走, 追斬之, 虜其男女數萬口.”

125 『三國志』 卷32 「蜀書」 2 「先主傳」, 878쪽, “先主遣諸葛亮自結於孫權, 權遣周瑜·程普等水軍數萬, 與先主并力, 與曹公戰於赤壁, 大破之, 焚其舟船, 先主與吳軍水陸竝進, 追到南郡, 時又疾疫, 北軍多死, 曹公引歸.”

126 『三國志』 卷1 「魏書」 1 「武帝紀」 建安十三年條, 31쪽, “公至赤壁, 與備戰, 不利. 於是大疫, 吏士多死者, 乃引軍還.”

127 『資治通鑑』 卷65 「漢紀」 57 獻帝建安十三年條, 2092~2093쪽, “進, 與操遇於赤壁. 時操軍眾已有疾疫, 初一交戰, 操軍不利, 引次江北. 瑜等在南岸, 瑜部將黃蓋曰: ‘今寇眾我寡, 難與持久. 操軍方連船艦, 首尾相接, 可燒而走也.’ 乃取蒙衝門艦十艘, 載燥荻·枯柴·灌油其中, 裹以帷幕, 上建旌旗, 預備走舸, 繫於其尾. 先以書遺操, 詐云欲降. 時東南風急, 蓋以十艦最著前, 中江舉帆, 餘船以次俱進. 操軍吏士皆出營立觀, 指言蓋降. 去北軍二里餘, 同時發火, 火烈風猛, 船往如箭, 燒盡北船, 延及岸上營落. 頃之, 煙炎張天, 人馬燒溺死者甚眾. 瑜等率輕銳繼其後, 雷鼓大進, 北軍大壞. 操引軍從華容道步走, 遇泥濘, 道不通, 天又大風, 悉使羸兵負草填之, 騎乃得過. 羸兵爲人馬所蹈藉, 陷泥中, 死者甚眾.”

『자치통감』은 십이월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기록하였다.<sup>128</sup>

이 적벽대전처럼 건안 24년 형주(荊州) 점령과 관우(關羽) 살해 기사 역시 구체적인 월일을 기록하지 않았다. 반면 『자치통감』과 『삼국지』 「위서」 및 「촉서」는 최소한 관우의 우금 생포, 손권의 형주 공격 요청 편지, 관우의 패배와 피살 등이 발생한 달(月)을 표기하였다. 이릉(夷陵)의 전투 역시 육손(陸遜)이 이끄는 오군이 촉군을 대파한 기사를 제외하면, 이릉의 난 전후 기사나 전투가 발생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다. 『삼국지』 「오서」와 「촉서」, 『자치통감』도 이릉의 전투 직전 촉군의 승리와 진격, 이릉의 전투 이후 위군의 형주 공격 등은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나마 유일하게 날짜를 기록한 이릉의 전투는 오와 위·촉의 사서가 다르다. 즉 『삼국지』 「오서」에서 육손이 촉군을 대파한 시기를 삼월이라고 기록한 반면, 『삼국지』 「위서」와 『자치통감』은 윤월(閏月), 『삼국지』 「촉서」에서는 유월이라고 표기하였다. 윤월은 오월 다음에 위치하였다. 이처럼 이릉의 전투가 발생한 시기를 위에서 윤오월, 촉에서 유월로 기록하여 한 달의 차이가 나는데, 승자인 오는 삼월이라고 기록하여 두 달 혹은 세 달의 차이가 있다. 사신을 파견하는 경우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날짜가 다르고 서로 다른 역법을 사용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쟁이 벌어진 날짜가 두세 달 차이가 나는 것은 『삼국지』 「오서」의 사료를 신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 『삼국지·오서』 「오주전」에 따르면, 손권은 건안 16년 말릉(秣陵)으로 수도를 옮기고, 다음해 석두성(石頭城)을 쌓고 수도를 건업(建業)으로 옮겼다. 그런데 『자치통감』에서는 건안 17년 석두성을 쌓고 치소(수도)를 말릉으로 옮겼으며, 건업으로 고쳤다고 서술하였다.<sup>129</sup> 『삼국지·오서』 「오주전」에서 두 해에

128 『三國志』 卷1 「魏書」 1 「武帝紀」 建安十三年條, 30~31쪽, “十二月, 孫權爲備攻合肥, 公自江陵征備, 至巴丘, 遣張憲救合肥, 權聞憲至, 乃走.”; 『資治通鑑』 卷65 「漢紀」 57 獻帝建安十三年條, 2094쪽, “十二月, 孫權自將圍合肥, 使張昭攻九江之當塗, 不克.”

129 『資治通鑑』 卷66 「漢紀」 58 獻帝建安十七年條, 2113~2114쪽, “權於是作石頭城, 徙治秣陵, 改秣陵爲建業.”

나뉜 쓴 기사를 건안 17년 한 해에 발생한 기사로 보았다.

또 <표 2>에서 손권과 조조의 전쟁 기사도 고의로 누락하거나 날짜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자치통감』은 건안 14년 삼월 손권이 합비성을 함락하지 못하자 회군했다고 기록하였다.<sup>130</sup> 그런데 호삼성(胡三省)은 『자치통감고이』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고이』에서 말하기를, 『위지(魏志)』 「무제기(武帝紀)」에서 ‘십이월에 손권이 합비를 포위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유복전(劉馥傳)』에서 ‘(합비성을) 공격하여 포위한 지 백여 일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말하면, 손권의 후퇴는 반드시 금년(건안 14년)임이 명확하다.”<sup>131</sup>

따라서 건안 13년 손권의 합비 포위 공격에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손권의 합비 공격 실패와 패주를 가리기 위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건안 21년 조조가 유수를 공격한 기사는 『삼국지·위서』와 『자치통감』에 따르면 건안 22년 삼월까지 지속되었다.<sup>132</sup> 그런데 『삼국지』 「오서」에서 전쟁이 끝난 날

130 『資治通鑑』 卷66 「漢紀」 58 獻帝建安十四年三月條, 2097~2098쪽, “孫權圍合肥, 久不下。權率輕騎欲身往突敵, 長史張紘諫曰: ‘夫兵者兇器, 戰者危事也。今麾下恃盛壯之氣, 忽強暴之虜, 三軍之眾, 莫不寒心。雖斬將奪旗, 威震敵場, 此乃偏將之任, 非主將之宜也。願抑貴·育之勇, 懷霸王之計。’ 權乃止。曹操遣將軍張喜將兵解圍, 久而未至。揚州別駕楚國蔣濟密白刺史, 偽得喜書, 雲步騎四萬已到雩婁, 遣主簿迎喜, 三部使齎書語城中守將, 一部得入城, 二部爲權兵所得。權信之, 遽燒圍走。”

131 『資治通鑑』 卷66 「漢紀」 58 獻帝建安十四年三月條胡註, 2098쪽, “考異曰: 魏志武紀: ‘十二月, 權圍合肥。’ 劉馥傳云‘攻圍百餘日’, 由此言之, 權退必在今年, 明矣。”

132 『三國志』 卷1 「魏書」 1 「武帝紀」 建安二十二年條, 49쪽, “二十二年春正月, 王軍居巢, 二月, 進軍屯江西郝谿。權在濡須口築城拒守, 遂逼攻之, 權退走。三月, 王引軍還, 留夏侯惇·曹仁·張遼等屯居巢。”; 『資治通鑑』 卷68 「漢紀」 60 獻帝建安二十二年條, 2148~2149쪽, “春, 正月, 魏王操軍居巢, 孫權保濡須, 二月, 操進攻之。…… 三月, 操引軍還, 留伏波將軍夏侯惇都督曹仁·張遼等

짜를 기록하지 않고 건안 22년 봄에 조조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을 청한 기사만 기록하였다.<sup>133</sup> 이는 전투 상황이 손권에게 불리했기 때문이다.

외교 사신을 파견한 기사에서도 날짜 표기가 다른 예가 발견된다. 『삼국지·오서』 「오주전」에 따르면, 221년 조비(위문제)는 사신을 파견하여 십일월에 손권을 대장군(大將軍) 사지절(使持節) 독교주(督交州) 영형주목사(領荊州牧事)에 임명하고 오왕(吳王)에 봉하였다.<sup>134</sup> 『삼국지·위서』에서는 황초(黃初) 2년 팔월 손권이 사신을 보내자 팔월 정사일(222. 9. 25.)에 손권에게 대장군 오왕이라는 관작을 제수했다고 기록하였다.<sup>135</sup> 『자치통감』의 기사도 날짜가 동일하다.<sup>136</sup> 사신 파견의 경우 파견하는 쪽과 사신을 맞이하는 쪽의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 기록에 보이는 3개월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다. 즉 위문제가 손권에게 관직을 준 시점이 팔월이고, 위의 사자가 오에 도착한 시점이 십일월이라고 이해하면 양자의 불일치는 이해된다. 그러나 황무(黃武) 원년(222) 이릉의 전투 이후 오와 촉의 외교 관계 복원 기사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이해할 수 없다. 『삼국지·오서』 「오주전」에 따르면, 손권은 십이월에 백제성(白帝城)에 머무르던 유비에게 사신을 보내 다시 외교 관계를 맺었다.<sup>137</sup> 반면 『삼국지·촉서』에는 장무(章武) 2년(222) 시월 손권이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자 유비가 허락하고 종위(宗璋)를 사신으로 파견하였고 기록하였다.<sup>138</sup> 두 기록에는 2개월의 차이가

二十六軍屯居巢.”

- 133 『三國志』 卷47 「吳書」 2 「吳主傳」 建安二十二年春條, 1120쪽, “二十二年春, 權令都尉徐詳詣曹公請降, 公報使脩好, 誓重結婚.”
- 134 『三國志』 卷47 「吳書」 2 「吳主傳」 黃初二年十一月條, 1121~1122쪽.
- 135 『三國志』 卷2 「魏書」 2 「文帝紀」 黃初二年條, 78쪽, “秋八月, 孫權遣使奉章, 并遣于禁等還. 丁巳, 使太常邢貞持節拜權爲大將軍, 封吳王, 加九錫.”
- 136 『資治通鑑』 卷69 「魏紀」 1 文帝黃初二年八月丁巳條, 2193쪽, “丁巳, 遣太常邢貞奉策即拜孫權爲吳王, 加九錫.”
- 137 『三國志』 卷47 「吳書」 2 「吳主傳」 黃武元年十二月條, 1126쪽, “十二月, 權使太中大夫鄭泉聘劉備于白帝, 始復通也.”
- 138 『三國志』 卷32 「蜀書」 2 「先主傳」 章武二年條, 890쪽, “冬十月, 詔丞相亮營南北郊於成都, 孫權聞先主住白帝, 甚懼, 遣使請和, 先主許之, 遣太中大夫宗

있다. 그런데 손권이 사신을 보낸 쪽이고 유비가 사신을 받아들인 쪽이므로, 후자의 날짜가 전자보다 나중이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비가 손권에게 준 관작 기사에서도 이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후자가 전자보다 두 달 빠른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 제삼자의 입장에 있는 『자치통감』에서는 황초 3년(222) 십일월 오왕(吳王)이 한(漢)에 사신을 보내 다시 통교했다고 기록하였다.<sup>139</sup> 세 기록이 다른 이상, 오와 촉이 다시 외교 관계를 복원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

〈표 2〉에 단순히 월일을 기록하지 않은 기사뿐만 아니라 아예 연도가 틀린 기사도 있다. 『삼국지·오서』 「오주전」에 따르면, 건안 19년 유비가 파촉을 점령한 후 약속대로 형주를 반환하지 않자 군대를 보내 유비의 영토인 장사(長沙)·영릉(零陵)·계양(桂陽) 3군을 점령하고 관우와 대치하였다.<sup>140</sup> 이후 조조가 한중(漢中)의 장로(張魯)를 평정한 후 파촉(巴蜀)을 공격할 것을 우려한 유비는 타협하여 형주를 동서로 양분하여 장사·영릉·계양 3군을 손권에게 할양하였다. 형주를 양분한 후 유비는 공안에서 성도로 돌아갔고 조조도 돌아갔다. 손권은 육구에서 군사를 돌려 합비를 공격하였다.<sup>141</sup> 그런데 『삼국지·촉서』에서

瑋報命.”

139 『資治通鑑』卷69「魏紀」1文帝黃初三年九月條, 2209쪽, “吳王使太中大夫鄭泉聘于漢, 漢太中大夫宗瑋報之, 吳·漢復通.”

140 『三國志』卷47「吳書」2「吳主傳」建安十九年條, 1119쪽, “是歲劉備定蜀. 權以備已得益州, 令諸葛瑾從求荊州諸郡, 備不許, 曰: ‘吾方圖涼州, 涼州定, 乃盡以荊州與吳耳.’ 權曰: ‘此假而不反, 而欲以虛辭引歲.’ 遂遣南三郡長吏, 關羽盡逐之. 權大怒, 乃遣呂蒙督鮮于丹·徐忠·孫規等兵二萬取長沙·零陵·桂陽三郡, 使魯肅以萬人屯巴丘以禦關羽. 權住陸口, 爲諸軍節度. 蒙到, 二郡皆服. 惟零陵太守郝普未下. 會備到公安, 使關羽將三萬兵至益陽, 權乃召蒙等使還助肅. 蒙使人誘普, 普降, 盡得三郡將守, 因引軍還, 與孫皎·潘璋并魯肅兵竝進, 拒羽於益陽.”

141 『三國志』卷47「吳書」2「吳主傳」建安十九年條, 1119~1120쪽, “未戰, 會曹公入漢中, 備懼失益州, 使使求和. 權令諸葛瑾報, 更尋盟好, 遂分荊州長沙·江夏·桂陽以東屬權, 南郡·零陵·武陵以西屬備. 備歸, 而曹公已還. 權反自陸口, 遂征合肥. 合肥未下, 徹軍還. 兵皆就路. 權與凌統·甘寧等在津北爲魏將張遼所襲, 統等以死扞權, 權乘駿馬越津橋得去.”

건안 20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기록하였다.<sup>142</sup>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점은 『삼국지·오서』 「오주전」의 서술 형식과 비슷하다. 『자치통감』도 이 사건이 건안 20년 삼월에 발생했다고 기록하였다.<sup>143</sup> 「오서」와 「촉서」에서 동일 사건이 발생한 연도가 다른데, 이때는 제삼자인 『자치통감』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자치통감』은 후자인 『삼국지·촉서』의 기록에 따라 건안 20년으로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삼월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삼국지·촉서』는 조조가 한중을 점령하고 장로가 파서(巴西)로 도망간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지만,<sup>144</sup> 『자치통감』에서는 조조가 삼월에 장로를 공격하기 위해 출정하였고 사월에 하지(河池)에 이르러 오월에 하지를 점령하였고<sup>145</sup> 칠월에 한중군을 점령했다고 기록하였다.<sup>146</sup> 이후 조조는 십이월 한중(남정)에서 귀환하였다.<sup>147</sup> 『삼국지·오서』 「오주전」에서 조조가 한중에 진입하여 위협을 느낀 유비가 형주를 할양했다고 하였지만, 『자치통감』에 따르면 조조는 아직 한중군에 진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조조가 한중을 점령하고 장로가 도망간 시기가 칠월이므로, 조조가 한중군에 진입한 시기는 오월과 칠월 사이이다. 따라서 『삼국지·오서』 「오주전」의 기사 역시 조조의 한중 진입 시기를 잘못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 「오서」와 「촉서」에서 조조의 한중 진입과 점령 시기를 기록하지 않거나 잘못 기록한 이유는, 조조의 한중 침입을 손권과 유비가 형

142 『三國志』 卷32 「蜀書」 2 「先主傳」 建安二十年條, 883쪽, “二十年, 孫權以先主已得益州, 使使報欲得荊州. 先主言: ‘須得涼州, 當以荊州相與.’ 權忿之, 乃遣呂蒙襲奪長沙·零陵·桂陽三郡. 先主引兵五萬下公安, 令關羽入益陽.”

143 『資治通鑑』 卷67 「漢紀」 59 獻帝建安二十年三月條, 2136~2138쪽.

144 『三國志』 卷32 「蜀書」 2 「先主傳」 建安二十年條, 883쪽, “是歲, 曹公定漢中, 張魯遁走巴西.”

145 『資治通鑑』 卷67 「漢紀」 59 獻帝建安二十年三月條, 2135쪽, “三月, 魏公操自將擊張魯, 將自武都入氐, 氐人塞道, 遣張郃·硃靈等攻破之. 夏, 四月, 操自陳倉出散關至河池, 氐王賈茂眾萬餘人恃險不服, 五月, 攻屠之.”

146 『資治通鑑』 卷67 「漢紀」 59 獻帝建安二十年七月條, 2138~2140쪽.

147 『三國志』 卷1 「魏書」 1 「武帝紀」 建安二十年十二月條, 46쪽, “十二月, 公自南鄭還, 留夏侯淵屯漢中.”

주를 분할한 명분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역사 왜곡’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삼국지·촉서』 「선주전(先主傳)」은 조조의 한중 침입과 점령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고, 『삼국지·오서』 「오주전」은 손권 측의 장사·영릉·계양 3군 점령과 형주 양분 사이에 배치하여 양자의 형주 분할을 정당화하는 복선을 깔았다.

『삼국지·오서』 「오주전」 건안 19년조 기사는 손권과 유비의 형주 분할뿐만 아니라 손권의 합비 공격 기사도 연도를 잘못 기록하였다. 『삼국지·오서』 「오주전」에 따르면, 손권은 건안 19년에 유비와 형주를 양분한 후 육구에서 합비로 이동하여 합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손권은 합비를 침략하지 못하고 후퇴했는데, 이때 장요(張遼)의 공격을 받아 죽을 뻔했으나 능통(凌統)이 목숨을 걸고 막아주어 탈출할 수 있었다.<sup>148</sup> 결국 손권의 패배였다. 그런데 『자치통감』에서는 손권의 합비 포위 기사가 건안 20년 팔월의 기록으로 기록하였다.<sup>149</sup> 『삼국지·위서』에서도 건안 20년 팔월에 발생했으며, 손권이 합비를 포위했으나 장요와 이천(李典)이 격파했다고 기록하였다.<sup>150</sup> 양자의 기록을 비교하면 손권의 합비

148 『三國志』卷47「吳書」2「吳主傳」建安十九年條, 1119~1120쪽, “權令諸葛瑾報, 更尋盟好, 遂分荊州長沙·江夏·桂陽以東屬權, 南郡·零陵·武陵以西屬備. 備歸, 而曹公已還. 權反自陸口, 遂征合肥. 合肥未下, 徹軍還. 兵皆就路, 權與凌統·甘寧等在津北爲魏將張遼所襲, 統等以死扞權, 權乘駿馬越津橋得去.”

149 『資治通鑑』卷67「漢紀」59 獻帝建安二十年八月條, 2141쪽, “八月, 孫權率眾十萬圍合肥. 時張遼·李典·樂進將七千餘人屯合肥. 魏公操之征張魯也, 爲教與合肥護軍薛悌, 署函邊曰: ‘賊至, 乃發.’ 及權至, 發教, 教曰: ‘若孫權至者, 張·李將軍出戰, 樂將軍守, 護軍勿得與戰.’ 諸將以眾寡不敵, 疑之. 張遼曰: ‘公遠征在外, 比救至, 彼破我必矣. 是以教指及其未合逆擊之, 折其盛勢, 以安眾心, 然後可守也.’ 進等莫對. 遼怒曰: ‘成敗之機, 在此一戰. 諸君若疑, 遼將獨決之.’ 李典素與遼不睦, 慨然曰: ‘此國家大事, 顧君計何如耳, 吾可以私憾而忘公義乎! 請從君而出.’ 於是遼夜募敢從之士, 得八百人, 椎牛犒饗. 明旦, 遼被甲持戟, 先登陷陣, 殺數十人, 斬二大將, 大呼自名, 衝壘入至權麾下. 權大驚, 不知所爲, 走登高塚, 以長戟自守. 遼叱權下戰, 權不敢動, 望見遼所將眾少, 乃聚圍遼數重. 遼急擊圍開, 將麾下數十人得出. 餘眾號呼曰: ‘將軍棄我乎?’ 遼復還突圍, 拔出餘眾, 權人馬皆披靡, 無敢當者. 自旦戰至日中, 吳人奪氣. 乃還脩守備, 眾心遂安.”

포위전은 실패했음은 동일하다. 그런데 『삼국지·오서』 「오주전」은 이 전쟁을 건안 19년으로 기록하였으나, 『삼국지·위서』와 『자치통감』은 다음해인 건안 20년에 발생한 전쟁으로 기록하였다. 요컨대 『삼국지·오서』 「오주전」과 『삼국지·촉서』 「신주전」, 『삼국지·위서』 「무제기」, 『자치통감』을 비교하면, 『삼국지·오서』 「오주전」의 건안 19년 기사는 손권의 환성(皖城) 점령 기사를 제외하고<sup>151</sup> 손권과 유비의 형주 분할 및 손권의 합비 포위전 실패 기사는 연도 자체를 잘못 기록하였다. 문서를 기록하고 해독할 때 ‘十九年’과 ‘二十年’은 한자의 모양이 달라 잘못 기록하거나 읽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연도의 오류가 원사료의 오독이나 베껴쓰기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삼국지·오서』 「오주전」에서 건안 20년의 두 기사가 건안 19년의 기사로 잘못 기록되었고, 건안 20년에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1년의 기록이 누락되었다.

이 밖에 『자치통감』에 따르면 손권은 건안 24년 칠월에 합비를 공격하였다.<sup>152</sup> 그런데 『삼국지·오서』 「오주전」과 『삼국지·위서』 「무제기」에 이 기사가 없다. 이해에 관우가 양양(襄陽)을 공격하여 우금을 생포하고 변성을 포위하

150 『三國志』 卷1 「魏書」 1 「武帝紀」 建安二十年條, 45쪽, “八月, 孫權圍合肥, 張遼·李典擊破之.”

151 『삼국지·오서』 「오주전」과 『자치통감』의 기록을 비교하면 이 기사는 建安 19년의 기사로 표기 年月日은 동일하다(『三國志』 卷47 「吳書」 2 「吳主傳」 建安十九年五月條, 1119쪽, “十九年五月, 權征皖城. 閏月, 克之, 獲廬江太守朱光及參軍董和, 男女數萬口.”; 『資治通鑑』 卷67 「漢紀」 59 獻帝建安十九年條, 2126쪽, “初, 魏公操遣廬江太守朱光屯皖, 大開稻田. 呂蒙言於孫權曰: ‘皖田肥美, 若一收孰, 彼眾必增; 宜早除之.’ 閏月, 權親攻皖城, 諸將欲作土山, 添攻具, 呂蒙曰: ‘治攻具及土山, 必歷日乃成; 城備既脩, 外救必至, 不可圖也. 且吾乘兩水以入, 若留經日, 水必向盡, 還道艱難, 蒙竊危之. 今觀此城, 不能甚固, 以三軍銳氣, 四面竝攻, 不移時可拔; 及水以歸, 全勝之道也.’ 權從之. 蒙薦甘寧爲升城督, 寧手持練, 身綠城, 爲士卒先; 蒙以精銳繼之, 手執枹鼓, 士卒皆騰踊, 侵晨進攻, 食時破之, 獲朱光及男女數萬口. 既而張遼至夾石, 聞城已拔, 乃退. 權拜呂蒙爲廬江太守, 還屯尋陽.”).

152 『資治通鑑』 卷68 「漢紀」 60 獻帝建安二十二年七月條, 2160쪽, “孫權攻合肥.”

고, 이전까지 적이었던 손권과 조조가 연합하여 관우를 함께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쟁의 흐름을 보면 손권의 합비 공격은 부자연스럽지만, 『자치통감』은 『삼국지』에 누락된 기록을 바탕으로 이해에 손권의 합비 공격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요컨대 『삼국지·오서』 「오주전」의 기록을 검토하면, 손권이 황제를 자칭하기 이전의 기록들에는 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연도만을 표기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월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삼국지·위서』나 『삼국지·촉서』, 혹은 『자치통감』과 비교하면 틀린 부분이 10여 건에 달한다. 또 손권의 합비 공격과 적벽대전처럼 사건의 시간적 순서가 뒤바뀐 예도 많았다. 이처럼 사건의 날짜를 기록하지 않거나 잘못 기록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권이 조조군과 합비에서 싸운 기사의 경우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손권의 패배를 감추기 위한 시도로 이해된다. 서진의 신하인 진수가 손권의 패배를 가려줄 이유가 없으므로, 진수는 고증 없이 손오(孫吳)의 사서를 그대로 베꼈을 것이다. 그러나 손권 치세의 업적인 적벽대전, 형주의 점령과 관우의 생포 및 살해, 이릉 전투의 승전 등 주요 전쟁의 승리와 업적 기사도 구체적인 연도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진수가 손권의 업적을 가리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월일)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손권의 패배 기사에도 날짜가 없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게다가 오와 대치한 위·촉의 기록인 『삼국지』 「위서」 및 「촉서」와 대조하면 유독 『삼국지·오서』 「오주전」의 기사에 날짜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적어도 진수는 오의 상대국 기록과 대조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거나 사건의 시간적 도치를 바로잡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 Ⅲ. 주요 사건사 장소의 오류

#### 1. 적벽대전: 적벽(赤壁)과 오림(烏林)

건안 13년에 발생한 적벽대전은 삼국 정립의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된다. 『삼국지·위서』 「무제기」 건안십삼년조에 따르면 조조는 칠월에 형주의 유표를 정벌하였다. 유표가 팔월에 죽고 아들 유종(劉琮)이 뒤를 잇고 양양에 주둔하였으며 유비는 번(樊)에 주둔하였다. 조조가 구월에 신야현(新野縣)에 이르자 유종은 항복하고 유비는 하구(夏口)로 달아났다. 조조는 십이월에 적벽에 이르러 유비와 싸웠으나 불리하였고, 이때 전염병이 크게 돌아서 이사(吏士) 대부분이 죽자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sup>153</sup> 이 기록에 따르면 조조는 적벽에서 유비와 싸워 ‘불리(不利)’했다고 기록했지만 졌다고 기록하지는 않았다. 반면 『삼국지·오서』 「오주전」 건안십삼년조의 기록은 이와 다르다.

“이때 조공(조조)이 새로 유표의 무리를 얻고 형세가 매우 성하여 논의하던 자들은 모두 조조군의 기세를 보고 두려워하여 대부분 손권에게 항복을 권유하였다. 오직 주유(周瑜)와 노숙(魯肅)만이 항거할 것을 주장하며 손권의 뜻과 같았다. 손권은 주유와 정보(程普)를 좌우독(左右督)에 임명하고 각각 1만 인을 거느리고 유비와 함께 진격하여 적벽(赤壁)에서 만나 조공(조조)의 군대를 대파하였다. 공(조조)은 남은 배를 불사르고 후퇴하였는데, 사졸은 굶주리고 전염병에 걸려 죽은 자가 대반(大半), 즉 3분의 2였다.”<sup>154</sup> (밑줄은 필자, 이하 같음)

153 『三國志』 卷1 「魏書」 1 「武帝紀」 建安十三年條, 30~31쪽, “秋七月, 公南征劉表, 八月, 表卒, 其子琮代, 屯襄陽, 劉備屯樊, 九月, 公到新野, 琮遂降, 備走夏口, 公進軍江陵, 下令荊州吏民, 與之更始, 乃論荊州服從之功, 侯者十五人, 以劉表大將文聘爲江夏太守, 使統本兵, 引用荊州名士韓嵩·鄧義等, 益州牧劉璋始受徵役, 遣兵給軍, 十二月, 孫權爲備攻合肥, 公自江陵征備, 至巴丘, 遣張熹救合肥, 權聞熹至, 乃走, 公至赤壁, 與備戰, 不利, 於是大疫, 吏士多死者, 乃引軍還.”

위의 인용문에서는 『삼국지·위서』 「무제기」 건안십삼년조의 기사와 달리 적벽에서 손권과 유비의 군대가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삼국지·오서』 「주유전」에서 부장(部將) 황개(黃蓋)에게 몽충(蒙衝)과 투함(鬪艦) 수십 척에 나무와 풀을 싣고 가서 조조의 진영에 투항하는 척하면서 배에 불을 질러 조조의 군영을 불바다로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다.<sup>155</sup> 「황개전」에서도 황개가 주유를 따라 적벽에서 조공(조조)의 군대를 화공으로 격파했다고 기록하였다.<sup>156</sup> 이 밖에 『삼국지·오서』 「주태전(周泰傳)」<sup>157</sup>과 「여범전(呂範傳)」<sup>158</sup>에서도 싸운 장소를 적벽이라고 기록하였다. 『삼국지·촉서』 「선주전」에서도 유비가 손권이 보낸 주유·정보 등 수군 수만과 함께 적벽에서 조조를 격파하고 남군까지 추격했다고 기록하였다.<sup>159</sup> 『삼국지·촉서』 「제갈량전」에서도 조조가 적

154 『三國志』卷47「吳書」2「吳主傳」建安十三年條, 1117~1118쪽, “是時曹公新得表眾, 形勢甚盛, 諸議者皆望風畏懼, 多勸權迎之, 惟瑜·肅執拒之議, 意與權同, 瑜·普爲左右督, 各領萬人, 與備俱進, 遇於赤壁, 大破曹公軍, 公燒其餘船引退, 士卒飢疫, 死者大半.”

155 『三國志』卷54「吳書」9「周瑜傳」, 1262~1263쪽, “時劉備爲曹公所破, 欲引南渡江, 與魯肅遇於當陽, 遂共圖計, 因進住夏口, 遣諸葛亮詣權, 權遂遣瑜及程普等與備并力逆曹公, 遇於赤壁. 時曹公軍眾已有疾病, 初一交戰, 公軍敗退, 引次江北, 瑜等在南岸. 瑜部將黃蓋曰: ‘今寇眾我寡, 難與持久. 然觀操軍船艦首尾相接, 可燒而走也.’ 乃取蒙衝鬪艦數十艘, 實以薪草, 膏油灌其中, 裹以帷幕, 上建牙旗, 先書報曹公, 欺以欲降. 又豫備走舸, 各繫大船後, 因引次俱前. 曹公軍吏士皆延頸觀望, 指言蓋降. 蓋放諸船, 同時發火. 時風盛猛, 悉延燒岸上營落. 頃之, 煙炎張天, 人馬燒溺死者甚眾, 軍遂敗退, 還保南郡. 備與瑜等復共追, 曹公留曹仁等守江陵城, 徑自北歸.”

156 『三國志』卷55「吳書」10「黃蓋傳」, 1285쪽, “建安中, 隨周瑜拒曹公於赤壁, 建策火攻, 語在瑜傳. 拜武鋒中郎將.”

157 『三國志』卷55「吳書」10「周泰傳」, 1288쪽, “從討黃祖有功. 後與周瑜·程普拒曹公於赤壁, 攻曹仁於南郡.”

158 『三國志』卷56「吳書」11「呂範傳」, 1310쪽, “曹公至赤壁, 與周瑜等俱拒破之, 拜裨將軍, 領彭澤太守, 以彭澤·柴桑·歷陽爲奉邑.”

159 『三國志』卷32「蜀書」2「先主傳」, 878쪽, “先主遣諸葛亮自結於孫權, 權遣周瑜·程普等水軍數萬, 與先主并力, 與曹公戰於赤壁, 大破之, 焚其舟船, 先主與吳軍水陸並進, 追到南郡, 時又疾疫, 北軍多死, 曹公引歸.”

벽에서 패해 군대를 이끌고 업(鄴)으로 돌아갔으며, 유비는 장강 이남을 점령하였다고 기록하였다.<sup>160</sup> 「유장전(劉璋傳)」에서도 조조의 군대가 적벽에서 불리했으며 역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이때 장송이 이를 목격하고 유비와 손을 잡을 것을 권하였다.<sup>161</sup> 이상 8건의 기사에서 조조와 손권·유비 연합군이 싸운 장소를 적벽이라고 기록하였다. 다만 이 전투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서술은 다르다.

그런데 『삼국지』의 다른 기록에는 두 군대가 싸운 장소를 달리 기록하였다.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유의 아들 주윤(周胤)이 유배 가자 적오(赤烏) 2년에 제갈근(諸葛瑾)·보졸(步騭) 등 중신들이 손권에게 올린 상소에서 “따라서 주유가 능히 조조를 오림(烏林)에서 꺾었으며, 조인(曹仁)을 영도(鄢都)에서 패주시켰다”라고 기록하였다.<sup>162</sup> 이 기록에 따르면, 손권이 조조와 싸운 장소는 적벽이 아니라 오림이었다.<sup>163</sup> 육손이 손권에게 올린 상소에서 조조를 오림에서 격파했음을 기록하였다.<sup>164</sup> 『삼국지·오서』의 다른 열전에도 오림으로 표기한 기록이 보인다.

---

160 『三國志』 卷35 「蜀書」 5 「諸葛亮傳」, 915~916쪽, “曹公敗於赤壁, 引軍歸鄴. 先主遂收江南, 以亮爲軍師中郎將, 使督零陵·桂陽·長沙三郡, 調其賦稅, 以充軍實.”

161 『三國志』 卷31 「蜀書」 1 「劉二牧·劉璋傳」, 868쪽, “璋復遣別駕張松詣曹公, 曹公時已定荊州, 走先主, 不復存錄松, 松以此怨, 會曹公軍不利於赤壁, 兼以疫死, 松還, 疵毀曹公, 勸璋自絕, 因說璋曰: ‘劉豫州, 使君之肺腑, 可與交通.’ 璋皆然之, 遣法正連好先主, 尋又令正及孟達送兵數千助先主守禦, 正遂還.”

162 『三國志』 卷54 「吳書」 9 「周瑜傳附胤傳」, 1266쪽, “赤烏二年, 諸葛瑾·步騭連名上疏曰: ‘……故能摧曹操於烏林, 走曹仁於鄢都, ……’

163 본문 인용문의 ‘鄢都’는 春秋戰國時代 長江 중류를 지배한 楚의 수도인 ‘鄢’을 가리키며, 당시 南郡의 治所였던 江陵縣에 있었다. 赤壁大戰에서 승리한 周瑜가 南郡을 공격했으므로 인용문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164 『三國志』 卷58 「吳書」 13 「陸遜傳」, 1350쪽, “遜上疏曰: ‘……陛下以神武之姿, 誕膺期運, 破操烏林, 敗備西陵, 禽羽荊州, 斯三虜者當世雄傑, 皆摧其鋒, …….’

(가) “이해 또 주유·정보 등과 함께 서쪽에서 조공을 오림에서 격파하고, 조인을 남군(南郡)에서 포위하였다.”<sup>165</sup>

(나) “낙안(樂安)이 평정된 후 태사자(太史慈)를 대신하여 해흔(海昏)에서 대비 하였으며, 주유와 함께 좌우독에 임명되어 조공을 오림에서 격파하였다. 또 남군으로 진공하여 조인을 패주시켰다.”<sup>166</sup>

(다) “후에 주유를 따라 오림에서 조공에 항거하고 격파하였다. 남군에서 조인을 격파했는데, 아직 점령하기 전에 감녕은 먼저 이릉을 취하는 계책을 내어놓고 실행에 옮겨 이릉성을 점령한 후 지켰다.”<sup>167</sup>

(라) “손권은 능통을 승렬도위(承烈都尉)에 임명하였고, 주유 등과 함께 조공을 오림에서 막고 격파하였으며, 마침내 조인을 공격하고 교위(校尉)로 승진하였다.”<sup>168</sup>

(가)은 여몽, (나)은 정보, (다)은 감녕, (라)은 능통의 활동인데, 네 사람은 오림에서 조공, 즉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정보는 주유와 함께 좌우독에 임명되어 손권의 군대를 둘로 나누어 지휘하였기 때문에 싸운 장소를 ‘오림’으로 기록한 사실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또 『삼국지』 원문은 아니지만 배송지가 인용한 『영릉선현전(零陵先賢傳)』에서도 조조가 오림에서

165 『三國志』卷54「吳書」9「呂蒙傳」, 1274쪽, “是歲, 又與周瑜·程平等西破曹公於烏林, 圍曹仁於南郡.”

166 『三國志』卷55「吳書」10「程普傳」, 1283쪽, “樂安平定, 代太史慈備海昏, 與周瑜爲左右督, 破曹公於烏林, 又進攻南郡, 走曹仁.”

167 『三國志』卷55「吳書」10「甘寧傳」, 1293쪽, “後隨周瑜拒破曹公於烏林, 攻曹仁於南郡, 未拔, 寧建計先徑進取夷陵, 往卽得其城, 因入守之.”

168 『三國志』卷55「吳書」10「凌統傳」, 1296쪽, “權以統爲承烈都尉, 與周瑜等拒破曹公於烏林, 遂攻曹仁, 遷爲校尉.”

패했다고 기록하였다.<sup>169</sup>

『삼국지』에는 8건의 기사가 적벽에서, 6건의 기사가 오림에서 싸웠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승자인 손권 측 기록을 보면, 『삼국지·오서』에서 전투 장소를 적벽으로 기록한 기사는 5건, 오림으로 기록한 기사는 6건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삼국지·오서』만 보면 손권의 군대가 조조의 군대와 싸운 장소로 적벽보다 오림이 1건 더 많다. 다음으로 『삼국지·오서』에서 전투 장소를 하나로 통일하여 기술한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누어 기술한 점이 독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한편 『후한서』 「효헌제기(孝獻帝紀)」에서는 “조조는 주사(舟師)를 거느리고 손권을 정벌했는데, 손권의 장수 주유는 조조를 오림·적벽에서 격파하였다”<sup>170</sup> 라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조조와 손권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오림과 적벽 두 군대가 된다. 또 『후한서』 「유표전」에서는 조조가 적벽에서 패한 후 유비가 유표의 아들 유기(劉琦)를 형주자사에 임명했다고 기록하며<sup>171</sup> 전투 지역이 적벽이라고 보았다. 또 『후한기』<sup>172</sup>와 『자치통감』<sup>173</sup>에서도 전투 장

169 『三國志』卷39「蜀書」9「劉巴傳」注引「零陵先賢傳」, 980쪽, “零陵先賢傳曰: 曹公敗於烏林, 還北時, 欲遣桓階, 階辭不如巴.”

170 『後漢書』卷9「孝獻帝紀」建安十三年條, 385쪽, “曹操以舟師伐孫權, 權將周瑜敗之於烏林·赤壁.”

171 『後漢書』卷74下「劉表傳」, 2424쪽, “操後敗於赤壁, 劉備表琦爲荊州刺史, 明年卒.”

172 『後漢紀』(袁宏撰, 張烈點校, 北京: 中華書局, 2002)卷30「孝獻皇帝紀」建安十三年十二月條, 580쪽, “是月, 曹操與周瑜戰於赤壁, 操師大敗.”

173 『資治通鑑』卷65「漢紀」57 獻帝建安十三年條, 2092~2093쪽, “進, 與操遇於赤壁, 時操軍眾已有疾疫, 初一交戰, 操軍不利, 引次江北, 瑜等在南岸, 瑜部將黃蓋曰: ‘今寇眾我寡, 難與持久, 操軍方連船艦, 首尾相接, 可燒而走也.’ 乃取蒙衝鬥艦十艘, 載燥荻·枯柴·灌油其中, 裹以帷幕, 上建旌旗, 預備走舸, 繫於其尾. 先以書遺操, 詐云欲降. 時東南風急, 蓋以十艦最著前, 中江舉帆, 餘船以次俱進, 操軍吏士皆出營立觀, 指言蓋降. 去北軍二里餘, 同時發火, 火烈風猛, 船往如箭, 燒盡北船, 延及岸上營落. 頃之, 煙炎張天, 人馬燒溺死者甚眾. 瑜等率輕銳繼其後, 雷鼓大進, 北軍大壞, 操引軍從華容道步走, 遇泥濘, 道不通, 天又大風, 悉使羸兵負草填之, 騎乃得過. 羸兵爲人馬所蹈藉, 陷泥中,

소를 적벽이라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건안 13년에 조조와 유비·손권 연합군이 싸운 전투 장소를 여러 사서에서 적벽, 오림, 적벽과 오림 등으로 달리 표기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지리서인 『수경주(水經注)』 ‘우동지장사하준현북(又東至長沙下雋縣北)’ 조와 ‘상수중남래주지(湘水從南來注之)’ 조에서 오림과 적벽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 “강수(江水)는 왼쪽으로 상오림(上烏林) 남쪽을 지나가는데, 촌거(村居)의 지명이다. 또 동쪽으로 오려구(烏黎口)를 지나가는데, 강포(江浦)이며, 곧 중오림(中烏林)이다. 또 동쪽으로 하오림(下烏林) 남쪽을 지나가는데 황개가 위무(조조)를 오림에서 격파했다는 장소이다.”<sup>174</sup>

(㉡) “오른쪽으로 적벽산(赤壁山) 북쪽을 지나가는데, 옛날에 주유와 황개가 위무(조조)의 대군을 속이고 군대를 일으킨 곳이다.”<sup>175</sup>

인용문 (㉠)에 따르면, 강수(장강)이 하준현(下雋縣)을 지나는 곳에 상·중·하 세 오림이 있으며, 하오림 남쪽에서 황개가 위무(조조)를 격파한 곳이었다. 또 (㉡)에서는 포기(蒲圻)와 주릉(州陵)을 지난 지역에 적벽산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과 (㉡)의 기록을 비교하면 『수경주』를 편찬한 역도원(酈道元)은 조조와 손권이 전투한 주요 장소는 적벽이 아니라 오림이었다고 확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 해석에 따라 적벽산 일대도 전쟁 장소로 볼 수 있다.

---

死者甚眾，劉備·周瑜水陸竝進，追操至南郡。時操軍兼以饑疫，死者太半。操乃留征南將軍曹仁·橫野將軍徐晃守江陵，折衝將軍樂進守襄陽，引軍北還。”

174 『水經注』(段熙仲 點校, 陳橋驛 復校, 『水經注疏』,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89) 卷35 “又東至長沙下雋縣北”條, 2883쪽, “江水左徑上烏林南, 村居地名也。又東徑烏黎口, 江浦也, 卽中烏林矣。又東徑下烏林南, 黃蓋敗魏武於烏林, 卽是處也。”

175 『水經注』 卷35 “湘水從南來注之”條, 2889쪽, “右徑赤壁山北, 昔周瑜與黃蓋詐魏武大軍所起也。”

당 중기 재상 이길보(李吉甫)가 편찬한 『원화군현도지(元和郡縣圖志)』에서는 적벽과 오림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사) “적벽산은 포기현(蒲圻縣) 서쪽 120리에 있었다. 북쪽으로 대강(大江)에 임하였고, 그 북안이 오림이며, 적벽과 서로 마주 보았으니, 즉 주유가 황개의 계책을 이용하여 조공(조조)의 배를 불사르고 도망가게 한 곳이다. 따라서 제갈량이 조공(조조)이 오림에서 위태로웠다고 비유했으니, 바로 이것이다.”<sup>176</sup>

위의 기록은 앞의 인용문 (ㄱ)·(나)과 달리 적벽과 오림이 장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 강가에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주요 전쟁터가 적벽산이 아닌 오림이라고 기록한 점은 『수경주』의 기록과 일치한다. 『자치통감』 권65 「한기(漢紀)」 57 헌제 건안십삼년조의 호주(胡註)에서도 적벽과 오림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ㅇ) “수경주(水經注)에는 강수(江水)가 사선(沙羨)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면 오른쪽으로 적벽산 북쪽을 지난다고 하였다. 군현지(郡縣志)에 따르면, 적벽산은 포기(현) 서쪽 130리에 있으며 북안(北岸)인 오림은 적벽과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 주유가 황개의 계책을 이용하여 조공의 배를 불사른 곳이다. 두우(杜佑)는 ‘적벽은 악주(鄂州) 포기현이다’라고 하였다. 『무창지(武昌志)』에 따르면, 조조가 강릉(江陵)에서 유비를 추격하여 파구(巴丘)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적벽에 이르러 주유의 군사를 만나 대파하여 화용도(華容道)를 취하여 돌아갔다. 적벽산은 지금의 가어현(嘉魚縣)이며, 강북의 오림을 마주보고 있다. 파구는 현재의 파릉(巴陵)이고 화용(華容)은 현재의 석수(石首)이다. 황주(黃州)

176 『元和郡縣圖志』(李吉甫 撰, 賀次君 點校, 中華書局, 2005) 卷27 「江南道」 3 鄂岳觀察使·鄂州·蒲圻縣·赤壁山條, 646쪽, “赤壁山, 在縣西一百二十里, 北臨大江, 其北岸卽烏林, 與赤壁相對, 卽周瑜用黃蓋策, 焚曹公舟船敗走處, 故諸葛亮諭曹公「危於烏林」, 是也.”

의 적벽은 옳지 않다. 현재의 화용현은 진(晉)의 안남현(安南縣)이다.”<sup>177</sup>

(○)의 앞에서 인용한 군현지 부분은 (스) 『원화군현도지』의 기록과 일치한다. 그러나 『무창지』에 기록된 적벽산은 포기현의 동북쪽인 가어현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위치는 다르지만 적벽산의 맞은편에 오름이 있었다고 본 것은 『원화군현도지』의 기록과 같다. 그런데 (○)의 후반부에서 적벽산이 가어현에 있다는 호삼성의 지적은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에 이어졌다. 『독사방여기요』 권76 무창부·강하현·적벽산조에서는, 강하성의 동남 90리에 적벽산이 있었고 주유가 조조를 격파한 곳이라고 하였지만 잘못이며 가어현의 적벽산이 옳다고 하였다.<sup>178</sup> 같은 책 무창부·가어현·적벽산조에서는 『원화군현도지』와 『무창지』를 인용한 후 『도경(圖經)』을 인용하며 적벽이 가어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청대 강한(江漢) 지역에 적벽은 한양(漢陽)·한천(漢川)·황주(黃州)·가어(嘉魚)·강하(江夏) 다섯 군데에 있는데, 가어의 적벽이 옳다고 하였다.<sup>179</sup> 이 책에서도 호삼성의 주처럼 적벽산이 가어현에 있다고 보았다.

177 『資治通鑑』卷65「漢紀」57 獻帝建安十三年條胡註, 2092~2093쪽, “水經注: 江水自沙羨而東, 右逕赤壁山北. 郡縣志: 赤壁山, 在蒲圻西百三十里, 北岸烏林, 與赤壁相對, 卽周瑜用黃蓋策焚曹公船處. 杜佑曰: 赤壁, 在鄂州蒲圻縣. 武昌志曰: 曹操自江陵追劉備至巴丘, 遂至赤壁, 遇周瑜兵, 大敗, 取華容道歸. 赤壁山, 在今嘉魚縣, 對江北之烏林. 巴丘, 今巴陵; 華容, 今石首也. 黃州赤壁非是. 今之華容縣, 則晉之安南縣也.”

178 『讀史方輿紀要』(顧祖禹撰, 賀次君·施和金點校, 中華書局, 2005) 卷76「湖廣」2 武昌府·武昌縣·赤壁山條細注, 3523쪽, “赤壁山城東南九十里. 一作赤圻, 亦曰赤磯. 俗以爲周瑜破曹操處, 誤也. 詳見嘉魚縣.”

179 『讀史方輿紀要』卷76「湖廣」2 武昌府·嘉魚縣·赤壁山條細注, 3532쪽, “赤壁山縣西七十里. 《元和志》: 山在蒲圻縣西一百二十里. 時未置嘉魚也. 其北岸相對者爲烏林, 卽周瑜焚曹操船處. 《武昌志》: 操自江陵追備, 至巴丘, 遂至赤壁, 遇周瑜兵, 大敗, 取華容道歸. 《圖經》云: 赤壁, 在嘉魚縣. 蘇軾指黃州赤壁山爲赤壁, 誤矣. 時劉備據樊口, 進兵逆操, 遇於赤壁, 則赤壁當在樊口之上. 又赤壁初戰, 操軍不利, 引次江北, 則赤壁當在江南也. 操詩曰: 西望夏口, 東望武昌. 此地是矣. 今江漢間言赤壁者有五, 漢陽, 漢川, 黃州, 嘉魚, 江夏也. 當以嘉魚之赤壁爲據.”

역대 지리서를 검토하면, 『수경주』에서는 적벽과 오림이 같은 곳에 있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 반면 『수경주』보다 후세의 기록인 『원화군현도지』는 포기현, 『자치통감』의 호삼성주와 『독사방여기요』에서는 가어현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투 장소는 적벽이 아닌 오림이라고 인정하였다. 『후한서』에서 전투 장소를 적벽과 오림이라고 기록한 것은, 남조 송 당시 범엽(范曄)이 장강 연안의 정확한 지리 정보를 얻은 후 『원화군현도지』의 기록처럼 두 지역이 강수(장강)의 양쪽 강가로서 마주보는 지세였고, 남쪽 강가인 적벽 일대에 주유와 유비의 군대가, 북쪽 강가인 오림 일대에 조조의 군대가 포진하고 있다고 보아 전투가 두 지역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는 『중국역사지도집』에 무한시의 무창현에 적벽이, 포기현의 맞은편에 오림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sup>180</sup> 적벽고전장(赤壁古戰場)은 적벽시(赤壁市)에 있으나 적벽시는 예전의 포기현이었다. 요컨대 현재까지 적벽의 위치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벽시에서 일방적으로 적벽고전장이라는 삼국지 테마공원을 만들었다. 이에 그곳이 실제로 적벽대전이 벌어진 장소로 공인되었다. 한편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역대 지리에서 손권과 유비의 군대가 있었던 적벽보다 조조의 군대가 포진한 오림 일대였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 2. 5차 북벌 주둔지와 제갈량의 사망 장소

촉의 승상 제갈량이 마지막 북벌 당시 주둔한 곳이 ‘오장원(五丈原)’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삼국지』의 기록은 다르다. 아래는 제갈량이 출병한 장소를 다룬 『삼국지』의 기록이다.

(㉑) “[건흥] 12년 춘이월, [제갈]량은 사곡(斜谷)에서 출정했는데, 처음으로 유마

180 譚其驥 主編, 1990(2次印刷), 『中國歷史地圖集』 第三冊 三國·西晉時期, 上海: 中國地圖出版社, 28~29쪽.

(流馬)로 운반하였다.”<sup>181</sup>

② “[건흥] 12년 춘, [제갈]량은 대군을 거느리고 사곡에서 나갔으며, 유마로 운반하였으며, 무공현(武功縣)의 오장원을 점거한 후 사마선왕(司馬宣王, 사마의)과 위남(渭南)에서 대치하였다.”<sup>182</sup>

③ “건흥(建興) 12년, [제갈]량은 무공으로 진격할 때, 형 [제갈]근에게 편지를 보내 ……”<sup>183</sup>

④ “[제갈]량은 무공으로 진격할 때, [장]익(張翼)을 전군도독(前軍都督)으로 임명하고 부풍태수(扶風太守)를 겸하게 하였다.”<sup>184</sup>

⑤ “[가화 3년] 하오월, 손권은 육손·제갈근 등을 보내 강하(江夏)·면구(沔口)에 주둔하게 하였고, 손소(孫韶)·장승(張承) 등은 광릉(廣陵)·회양(淮陽)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손권은 대군을 이끌고 합비신성(合肥新城)을 포위하였다. 이때 촉상(蜀相) 제갈량은 무공으로 나아갔는데 손권은 위 명제(魏明帝)가 멀리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帝)는 군대를 보내 사마선왕이 제갈량을 막는 것을 돕도록 하였고 스스로 수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정벌하러 나갔다. 수춘(壽春)에 도착하기 전에 손권이 물러나 돌아갔고 손소도 역시 군대를 파하였다.”<sup>185</sup>

181 『三國志』卷33「蜀書」3「後主傳」建興十二年八月條, 897쪽, “十二年春二月, 亮由斜谷出, 始以流馬運.”

182 『三國志』卷35「蜀書」5「諸葛亮傳」, 931쪽, “十二年春, 亮悉大眾由斜谷出, 以流馬運, 據武功五丈原, 與司馬宣王對於渭南.”

183 『三國志』卷35「蜀書」5「諸葛亮傳」, 932쪽, “建興十二年, 亮出武功, 與兄瑾書曰: ……”

184 『三國志』卷45「蜀書」15「張翼傳」, 1073쪽, “亮出武功, 以翼爲前軍都督, 領扶風太守.”

⑥ “이달에 제갈량이 사곡에서 나와 위남에 주둔하니 사마선왕은 제군(諸軍)을 거느리고 촉군을 막았다.”<sup>186</sup>

⑦ “청룡 2년, 제갈량은 사곡에서 나아갔으며, 아울러 난갱(蘭坑)에서 농사지었다. 이때 사마선왕은 위남에 주둔했는데, [곽]회(郭淮)는 [제갈]량이 반드시 북원(北原)을 차지하려고 다투려 한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먼저 북원을 점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다.”<sup>187</sup>

인용문 ①은 『삼국지』 권33 「촉서」 3 「후주전(後主傳)」 건흥십이년팔월조의 기록인데, 제갈량이 출발한 사곡은 언급했지만 주둔한 장소는 기록하지 않았다. ②에서는 제갈량이 무공 오장원을 점거한 후 위남에서 대치했다고 기록하였다. ③(제갈량전)과 ④(장익전)는 모두 촉군(蜀軍)이 무공으로 진격했다고 기록하였다. ⑤는 『삼국지』 권47 「오서」 2 「오주전」 가화삼년오월조의 기사인데, 역시 제갈량의 출정지를 무공이라고 기록하였다. ③~⑤를 종합하면, 제갈량이 지휘하는 촉군의 주둔지는 무공이다. ‘무공’은 당시 부풍군에 속한 현 이름이다. ②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무공의 오장원을 점령한 후 위남, 즉 위수 남쪽에 주둔했다고 기록하였다. ②의 ‘무공’이 무공현이라면, 제갈량이 주둔한 위수 남쪽은 무공현의 동쪽이어야 한다. 반면 『삼국지·위서』의 기록은 다르다. ⑥은 『삼국지』 권3 「위서」 3 「명제기(明帝紀)」 청룡이년사월조의 기사인데, 제갈량이 사곡에서 나와 위남, 즉 위수 남쪽에 주둔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⑦에서는

185 『三國志』 卷47 「吳書」 2 「吳主傳」 嘉禾三年五月條, 1140쪽, “夏五月, 權遣陸遜·諸葛瑾等屯江夏·沔口, 孫韶·張承等向廣陵·淮陽, 權率大眾圍合肥新城, 是時蜀相諸葛亮出武功, 權謂魏明帝不能遠出, 而帝遣兵助司馬宣王拒亮, 自率水軍東征, 未至壽春, 權退還, 孫韶亦罷.”

186 『三國志』 卷3 「魏書」 3 「明帝紀」 青龍二年四月條, 103쪽, “是月, 諸葛亮出斜谷, 屯渭南, 司馬宣王率諸軍拒之.”

187 『三國志』 卷26 「魏書」 26 「郭淮傳」, 734~735쪽, “青龍二年, 諸葛亮出斜谷, 竝田于蘭坑, 是時司馬宣王屯渭南; 淮策亮必爭北原, 宜先據之, 議者多謂不然.”

촉군이 난쟁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기록하였다. 즉 『삼국지·위서』에서는 촉군의 주둔 지역이 위수 남쪽 혹은 난쟁이라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수 남쪽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한 위치로서, 구체적인 지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현재 난쟁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다.

제갈량이 죽은 곳도 모호하게 기록되었다. 『삼국지·촉서』 「후주전」 건흥 십이년팔월조에서는 제갈량이 이해 팔월에 위빈(渭濱)에서 죽었다고 기록하였다.<sup>188</sup> 『삼국지·촉서』 「제갈량전」에서는 인용문 ② 뒤에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제갈]량은 매번 군량이 수송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병사들을 나누어 둔전을 실시하여 오랫동안 주둔하는 기틀로 삼았다. 둔전에 종사한 군사들은 위빈 거민(居民)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백성들은 안심하였고 군사들은 사심이 없었다. 서로 백여 일 동안 대치하였다. 그해 팔월 [제갈]량은 병이 들어 군영[軍]에서 죽었으니, 그때 나이 54세였다.”<sup>189</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제갈량이 죽은 지역을 단순히 “軍(군)”이라고만 기록하였다. 즉 촉의 군영에서 죽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촉군이 ‘위빈’, 즉 위수 가에서 위의 백성들 사이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구절에서 촉군의 주둔 지역이 위수를 따라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위서』 「명제기」 청룡이년팔월조에 따르면, 오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친정(親征)에 나섰던 명제(明帝)가 허창궁(許昌宮)으로 되돌아왔을 때, 사마의(사마선왕)는 제갈량의 촉군과 대치하였고 촉군의 공격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제갈량이 죽고 촉군이 후퇴하였다.<sup>190</sup> 이 기

188 『三國志』 卷33 「蜀書」 3 「後主傳」 建興十二年八月條, 897쪽, “秋八月, 亮卒于渭濱.”

189 『三國志』 卷35 「蜀書」 5 「諸葛亮傳」, 925쪽, “亮每患糧不繼, 使己志不申, 是以分兵屯田, 爲久駐之基. 耕者雜於渭濱居民之間, 而百姓安堵, 軍無私焉. 相持百餘日. 其年八月, 亮疾病, 卒于軍, 時年五十四.”

사에서도 제갈량이 죽은 위치를 명시하지 않았다. 『삼국지·촉서』 「제갈량전」에 수록된 배송지의 평을 보면, 제갈량이 위빈에서 위군과 대치하다가 승패를 가늠하지 못하자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기록하였다.<sup>191</sup> 여기서도 제갈량이 죽은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다. 다만 배송지가 인용한 『한진춘추(漢晉春秋)』에서는 괘씨오(郭氏塢)에서 죽었다고 기록하였다.<sup>192</sup> 『삼국지』보다 후세에 편찬된 『한진춘추』에 제갈량의 죽은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진수가 『삼국지』를 편찬할 때도 구체적인 지명을 기록한 관련 기록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진수는 구체적인 지명을 기록하지 않았다.<sup>193</sup>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촉군이 주둔하며 위군과 대치한 곳은 위수 남쪽이었으며, 제갈량이 죽은 곳도 촉군의 진영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촉군이 주둔했고 제갈량이 죽은 지역은 오장원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삼국지』에서 오장원이 언급되지 않았다. 인용문 ②에서 무공의 오장원을 점거한 후 위수 남쪽에서 위군과 대치했다고 기록하였다. 문맥상 오장원은 촉군의 후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갈량이 주둔한 지역이 오장원으로 특정된 것은 『진서』에서 보인다.

“[청룡] 2년, [제갈]량은 무리 10여만을 이끌고 사곡을 나가 미현(郿縣)의 위수 남원(南原)에 영루를 설치하였다. 천자는 이를 근심하여 정촉호군(征蜀護軍) 진랑(秦朗)에게 보병과 기병 2만을 보내고 제(사마의)의 절도(節度)를 받도록 하였다.

190 『三國志』 卷3 「魏書」 3 「明帝紀」 青龍二年八月條, 103쪽, “八月己未, 大曜兵, 饗六軍, 遣使者持節犒勞合肥·壽春諸軍. 辛巳, 行還許昌宮. 司馬宣王與亮相持, 連圍積日, 亮數挑戰, 宣王堅壘不應. 會亮卒, 其軍退還.”

191 『三國志』 卷35 「蜀書」 5 「諸葛亮傳」 裴松之評, 925쪽, “臣松之以爲亮在涪濱, 魏人躡跡, 勝負之形, 未可測量, 而云歐血, 蓋因亮自亡而自誇大也.”

192 『三國志』 卷35 「蜀書」 5 「諸葛亮傳」 注引漢晉春秋, 925쪽, “漢晉春秋曰: 亮卒于郭氏塢.”

193 현재 裴松之가 인용한 『漢晉春秋』를 제외하면 郭氏塢를 언급한 문헌이 없어서, 郭氏塢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제장(諸將)은 위수 북쪽에 거주하여 기다리기를 원했으나 제는 ‘백성의 적취(積聚)는 모두 위수 남쪽에 있으니 이는 반드시 다투어야 할 땅이다’라고 말하고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 위수를 등지고 군영을 두었다. 제장에게 말하기를 ‘[제갈]량이 용기가 있다면 마땅히 무공으로 나와 산을 따라 동쪽으로 진격할 것이다. 만약 서쪽으로 오장원에 간다면 제군(諸軍)은 무사할 것이다.’ [제갈]량은 과연 오장원에 올라 장차 북쪽으로 위수를 건너려고 하니 제는 장군 주당(周當)에게 양수(陽遂)에 주둔하여 촉군을 유인하도록 하였다. 며칠 후 [제갈]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제는 ‘[제갈]량은 반드시 원(原)을 다투고도 양수로 향하지 않고 있으니, 이 뜻을 가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장군 호준(胡遵)과 응주자사(雍州刺史) 곽회(郭淮)를 보내 양수를 지키게 하니, [제갈]량과 적석(積石)에서 만났다. 원에 임하여 싸우니 제갈량은 진격할 수 없어서 오장원으로 돌아왔다. 이때 장성(長星)이 [제갈]량의 영채에 떨어지자 제는 그가 반드시 패할 것임을 알고 기병(奇兵)을 보내 제갈량의 뒤를 공격하도록 하여, 500여 급을 참하고 생구(生口) 1천여 인을 생포하였고 항복한 자가 600여 인이었다.”<sup>194</sup>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제갈량은 동쪽의 무공으로 진공하지 않고 서쪽의 오장원으로 후퇴하였다. 이어서 적석으로 진격했으나 위군에 밀려 오장원으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별똥별이 촉군의 진영에 떨어지자 군사를 보내 촉군의 일부를 죽이고 생포하였으며 항복을 받았다.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에서 촉군과 위군이 싸운 전투는 『삼국지·위서』 「곽회전(郭淮傳)」에서도 보인다.<sup>195</sup> 그러나 이 기

194 『晉書』 卷1 「宣帝紀」 青龍二年條, 7~8쪽, “二年, 亮又率眾十餘萬出斜谷, 壘于郿之渭水南原, 天子憂之, 遣征蜀護軍秦朗督步騎二萬, 受帝節度, 諸將欲往渭北以待之, 帝曰: ‘百姓積聚皆在渭南, 此必爭之地也.’ 遂引軍而濟, 背水爲壘. 因謂諸將曰: ‘亮若勇者, 當出武功, 依山而東, 若西上五丈原, 則諸軍無事矣.’ 亮果上原, 將北渡渭, 帝遣將軍周當屯陽遂以餌之. 數日, 亮不動. 帝曰: ‘亮欲爭原而不向陽遂, 此意可知也.’ 遣將軍胡遵·雍州刺史郭淮共備陽遂, 與亮會于積石, 臨原而戰, 亮不得進, 還於五丈原. 會有長星墜亮之壘, 帝知其必敗, 遣奇兵擣亮之後, 斬五百餘級, 獲生口千餘, 降者六百餘人.”

사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삼국지·위서』 「명제기」의 기사 때문이다. 위 명제는 제갈량이 사곡을 나와 위수 남쪽에 주둔하자 사마의에게 촉군에 대항하도록 한 후 수비에 전념하도록 당부하였다.<sup>196</sup> 따라서 사마의가 위 명제의 명령을 어기고 촉군과 싸웠다는 위 인용문의 기록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또 『삼국지·위서』 「명제기」에서는 사마의와 제갈량이 서로 대치하였고 제갈량이 여러 차례 싸우려고 하였으나 사마의는 영루를 지키고 응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sup>197</sup> 즉 위의 인용문은 『삼국지·위서』 「명제기」의 기사에 배치된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은 사마의가 제갈량과 싸워 우세했음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허구이거나 과장이었을 것이다.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삼국지』에서는 촉군이 주둔한 지역이 위수 남쪽의 불특정한 지역이었으나 위의 인용문에서는 오장원으로 특정되었고, 따라서 제갈량도 오장원에 있는 군영에서 죽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삼국연의』에 영향을 주어 103회에서 제갈량이 오장원에 주둔했고,<sup>198</sup> 104회에서 오장원에서 죽었다고 기록하였다.<sup>199</sup>

195 『三國志』卷26「魏書」26「郭淮傳」, 734~735쪽, “靑龍二年, 諸葛亮出斜谷, 竝田于蘭坑, 是時司馬宣王屯渭南; 淮策亮必爭北原, 宜先據之, 議者多謂不然, 淮曰: ‘若亮跨渭登原, 連兵北山, 隔絕隴道, 搖蕩民·夷, 此非國之利也.’ 宣王善之, 淮遂屯北原, 塹壘未成, 蜀兵大至, 淮逆擊之, 後數日, 亮盛兵西行, 諸將皆謂欲攻西圍, 淮獨以爲此見形於西, 欲使官兵重應之, 必攻陽遂耳, 其夜果攻陽遂, 有備不得上.”

196 『三國志』卷3「魏書」3「明帝紀」靑龍二年四月條, 103쪽, “是月, 諸葛亮出斜谷, 屯渭南, 司馬宣王率諸軍拒之, 詔宣王: ‘但堅壁拒守以挫其鋒, 彼進不得志, 退無與戰, 久停則糧盡, 虜略無所獲, 則必走矣. 走而追之, 以逸待勞, 全勝之道也.’”

197 『三國志』卷3「魏書」3「明帝紀」靑龍二年八月條, 104쪽, “司馬宣王與亮相持, 連圍積日, 亮數挑戰, 宣王堅壘不應, 會亮卒, 其軍退還.”

198 『三國演義』卷103「上方谷司馬受困 五丈原諸葛禳星」, 657쪽, “卻說司馬懿在渭北寨內傳令曰: ‘渭南寨柵, 今已失了, 諸將如再言出戰者斬.’ 眾將聽令, 據守不出, 郭淮入告曰: ‘近日孔明引兵巡哨, 必將擇地安營.’ 懿曰: ‘孔明若出武功山, 依山而東, 我等皆危矣; 若出渭南, 西止 五丈原, 方無事也.’ 令人探之, 回報果屯五丈原, 司馬懿以手加額曰: ‘大魏皇帝之洪福也!’ 遂令諸將堅守忽出, 彼久必自變.”

그런데 『수경주』 권17 「위수」 상 “우동과진창현서(又東過陳倉縣西)” 조에서는 『위씨춘추(魏氏春秋)』를 인용하여 제갈량이 미현을 침입하자 사마의가 제갈량의 촉군을 막은 곳이라고 하였다.<sup>200</sup> 『수경주』 권18 「위수」 중 “우동과무공현북(又東過武功縣北)” 조에서는 무공현 서쪽에서 사곡을 거쳐 오장원 동쪽을 거친다고 하였다. 여기서 제갈량이 오의 대신 보졸에게 보낸 편지에 촉의 전군(前軍)이 오장원에 있으며 원래 무공 서쪽 10리에 있다고 하였다.<sup>201</sup> 또 촉군이 점령하려고 엿보았던 마총(馬冢)은 무공의 동쪽 10여 리에 있다고 하였다.<sup>202</sup> 이 다음 구절이 무공현의 고성(故城)이었다.<sup>203</sup> 『수경주』의 기록을 종합하면 제갈량의 촉군은 미현을 거쳐 미현의 동쪽인 무공현의 서쪽에 있는 오장원까지 진출하였다. 인용문 ②에서는 오장원에서 동쪽으로 진격했다고 하였는데, 인용문 ③~⑤에서 진격 장소를 ‘무공’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촉군이 무공현까지 진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촉군이 오장원에 주둔했다는 『진서』 「선제기(宣帝紀)」의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촉군이 오장원에 주둔했다는 『진서』 「선제기」의 지적은 『원화군현도지』에서도 사실로 간주되었으며 오장원이 당대 봉상부(鳳翔府) 미현의 서남쪽 35리에 있다고 기록하였다.<sup>204</sup> 『독사방여기요』에

199 『三國演義』 卷104 「隕大星漢丞相歸天 見木像魏都督喪膽」, 662쪽.

200 『水經注』 卷17 「渭水」上 “又東過陳倉縣西”條, 1517~1518쪽, “渭水又東逕郿縣故城南, 《地理志》曰: 右輔都尉治, 《魏氏春秋》: 諸葛亮寇郿, 司馬懿據郿拒亮, 卽此縣也.”

201 『水經注』 卷18 「渭水」中 “又東過武功縣北”條, 1523~1524쪽, “渭水于縣, 斜水自南來注之. 水出縣西南衙嶺山, 北歷斜谷, 逕五丈原東, 諸葛亮《與步騭書》曰: 僕前軍在五丈原, 原在武功西十里. 餘水出武功縣, 故亦謂之武功水也. 是以諸葛亮《表》云: 臣遣虎步監孟琰, 據武功水東, 司馬懿因水長攻琰營, 臣作竹橋, 越水射之, 橋成馳去, 其水北流注于渭.”

202 『水經注』 卷18 「渭水」中 “又東過武功縣北”條, 1524쪽, “渭水又東逕馬冢北, 諸葛亮《與步騭書》曰: 馬冢在武功東十餘里, 有高勢, 攻之不便, 是以留耳.”

203 『水經注』 卷18 「渭水」中 “又東過武功縣北”條, 1524~1525쪽, “渭水又逕武功縣故城北, 王莽之新光也. 《地理志》曰: 縣有太一山, 《古文》以爲終南, 杜預以爲中南也, 亦曰太白山, 在武功縣南, 去長安二百里.”

204 『元和郡縣圖志』 卷2 「關內道」 2 鳳翔節度使·鳳翔府·郿縣·五丈原條, 44쪽,

서 무공고성(武功故城)이 미현 동쪽 40리에 있고 제갈량이 보졸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장원이 무공 서쪽 10리에 있다고 하였다. 거리의 기준이 되는 ‘무공’이 무공고성이라고 지적하였다.<sup>205</sup> 또 오장원은 서쪽으로 기산(岐山)의 경계에 접하고 동쪽으로 무공의 경계에 이어진다고 하였다.<sup>206</sup> 그리고 『삼국지·위서』 「곽회전」과 『진서』에서 촉군과 위군이 싸운 적석원(積石原)은 미현의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sup>207</sup> 『수경주』와 『원화군현도지』, 『독사방여기요』를 비교하면, 오장원 등이 서쪽으로 이동한 느낌이다. 그리고 현재의 『중국역사지도집』에서도 『원화군현도지』와 『독사방여기요』의 기록을 바탕으로 오장원을 사곡의 서쪽에 있는 곳으로 비정하였다.<sup>208</sup>

“五丈原，在縣西南三十五里。初，諸葛亮與司馬宣王相持，亮據渭水南原，宣王謂諸將曰：‘亮若出武功，依山東轉，是其勇也。若西上五丈原，諸君無事矣。’亮果屯此原，耕者雜於渭濱，居人安堵，軍無私焉。”

- 205 『讀史方輿紀要』卷55 「陝西」4 鳳翔府·郿縣·五丈原條, 2648쪽, “武功故城在縣東四十里。《水經注》：渭水東經武功故城北，南對太白山。是也。漢縣治此，武侯與吳步騭書云：五丈原在武功西十里。又云：馬塚，在武功東十餘里。指此武功也。”
- 206 『讀史方輿紀要』卷55 「陝西」4 鳳翔府·郿縣·五丈原條, 2648쪽, “五丈原在縣西三十里渭水南，原西接岐山界，東連武功界。諸葛武侯與步騭書：原在武功西十里。是也。蜀漢建興十二年，武侯伐魏，由斜谷至郿，軍於渭水南。司馬懿曰：亮若出武功，依山而東，誠爲可憂；若西上五丈原，諸將無事矣。亮果屯於五丈原。晉永和七年，司馬勛自南鄭引兵出五丈原，苻健拒卻之。呂氏曰：原高平曠遠，實行軍者必爭之地也。”
- 207 『讀史方輿紀要』卷55 「陝西」4 鳳翔府·郿縣·積石原條, 2649쪽, “積石原在縣西渭水北，亦曰北原，南距五丈原二十五里，武侯伐魏，至郿，屯於五丈原，魏將郭淮曰：亮必爭北原，宜先據之。議者不以爲然。淮曰：亮若跨渭登原，連兵北山，隔絕隴道，搖蕩民夷，非國之利也。司馬懿遂使淮屯北原，武侯爭之，不得上。《一統志》：積石原在縣西南五里。又縣有東原。《唐志》：郿縣東原，先有興平軍，至德二載，因置爲節鎮。或云卽武功之東原。”
- 208 譚其驥 主編, 1990, 앞의 책, 15~16쪽.

## IV. 맺음말

『삼국지·오서』 「손토역전」에서 손책 시기의 활동을 서술할 때 연도와 구체적인 날짜를 적지 않은 이유는 손책이 원술로부터 독립한 시기와 강동 전체를 정복한 연도를 속이기 위함이다. 손책이 원술과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한 시기를 『자치통감』에서 건안 원년(196)으로 보았으나, 이를 원술이 황제를 참칭한 건안 2년(197)으로 늦춘 의도는 손책의 독립, 바꿔 말하면 원술의 시각에서 배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4세대에 삼공 5인을 배출한 명문가 출신인 원술이 황제를 참칭한 역적이 되었고 얼마 후 비참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원술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이를 항의하고 ‘역적’ 원술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후한 헌제와 조정에 충성하는 행위로 미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삼국지·오서』에서 원술의 명령을 받고 강동을 공격했을 때부터 손책이 이미 독립된 군웅이었고 원술이 황제를 자칭하던 197년 무렵 점령하지도 않은 오·회계·예장 3군을 점령한 것처럼 분장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국지·오서』에서는 손책이 단양·오·회계 3군을 점령한 날짜를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삼국지』보다 나중에 쓰인 『후한서』와 『후한기』, 『자치통감』에서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손책이 원술로부터 독립한 해나 3군을 점령한 날짜까지 고증해놓았다. 서진의 신하였던 진수는 손책의 강동 점령과 독립을 정당화하는 시각에서 『삼국지·오서』 「손토역전」을 서술하였다. 진수가 오의 역사책이나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발췌해서 『삼국지·오서』 「손토역전」을 만든 것인지,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손책의 행위를 미화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건의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사건의 전후를 바꿔서 기록함으로써 사서의 신빙성을 상실했음은 분명하다.

『삼국지·오서』 「오주전」의 기록을 검토하면 손권이 황제를 자칭하기 이전의 기록들에는 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연도만을 표기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월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삼국지·위서』나 『삼국지·촉서』, 혹은 『자치통감』과 비교하면 틀린 부분이 10여 건에 달한다. 또 손권의 합비 공

격과 적벽대전처럼 사건의 시간적 순서가 뒤바뀐 예도 많았다. 이처럼 사건의 날짜를 기록하지 않거나 잘못 기록한 이유는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권이 조조군과 합비에서 싸운 기사의 경우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손권의 패배를 감추기 위한 시도로 이해된다. 서진의 신하인 진수가 손권의 패배를 가려줄 이유가 없으므로 진수는 손오의 사서를 그대로 베꼈을 것이다. 그러나 손권 치세의 업적인 적벽대전, 형주의 점령과 관우의 생포 및 살해, 이릉 전투의 승전 등 주요 전쟁의 승리와 업적 기사도 구체적인 연도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진수가 손권의 업적을 가리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월일)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손권의 패배 기사에도 날짜가 없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게다가 오와 대치한 위·촉의 기록인 『삼국지』 「위서」와 「촉서」와 대조하면 구체적인 월이나 일까지 알 수 있는 기사가 많은데도 유독 『삼국지·오서』 「오주전」의 기록에는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적어도 진수는 오의 상대국 기록과 대조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거나 사건의 시간적 도치를 바로 잡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삼국 정립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소위 ‘적벽대전’은 『삼국지·오서』에 전투 장소가 오림과 적벽으로 기록되었다. 반면 『후한서』 「효헌제기」에서는 전투 장소를 오림·적벽이라고 기록하였다. 『수경주』 등 후세의 역사지리 관련 기록들을 검토하면 장강의 북쪽 하안을 오림, 남쪽 하안을 적벽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전투 장소를 ‘오림·적벽’으로 기록한 『후한서』 「효헌제기」의 기록이 적합한 듯 하며, 조조의 군영이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전투 장소를 적벽이 아닌 오림으로 표기하는 편이 당시 상황에 부합할 것이다.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 때 주둔한 장소는 『삼국지』의 「위서」·「촉서」·「오서」의 기록이 모두 다른데, 주둔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무공현, 위수 남쪽, 난쟁 등 다양한 장소로 표기하였다. 또 제갈량이 죽은 장소도 전혀 기록하지 않거나, 단순히 군영이라고 표기하거나 위수 강가(위빈), 광씨오 등으로 기록하였다. 중국의 권위 있는 역사지도집인 『중국역사지도집』은 『삼국지·위서』 「곽회전」과 『진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오장원을 사곡의 서쪽에 있는 곳으로 비정하였는데,

이는 『수경주』와 『원화군현도지』·『독사방여기요』 등의 기록과도 다르다.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이 위력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오장원과 촉군의 군영을 원래 위치보다 서쪽이었다고 기록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사료

- 『後漢書』(范曄 撰, 李賢 等注, 1965, 北京: 中華書局)  
『三國志』(陳壽 撰, 裴松之 注, 1959, 北京: 中華書局)  
『晉書』(房玄齡 等 撰, 1974, 北京: 中華書局)  
『資治通鑑』(司馬光 編著, 胡三省 音注, 1956, 北京: 中華書局)  
『後漢紀』(袁宏 撰, 張烈 點校, 2002, 『兩漢紀』 下冊 後漢紀, 北京: 中華書局)  
『水經注』(段熙仲 點校, 陳橋驛 復校, 『水經注疏』, 1989,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元和郡縣圖志』(李吉甫 撰, 賀次君 點校, 2005, 北京: 中華書局)  
『讀史方輿紀要』(顧祖禹 撰, 賀次君·施和金 點校, 2005, 北京: 中華書局)

### 단행본

- 譚其驤 主編, 1990(2次印刷), 『中國歷史地圖集』 第三冊 三國·西晉時期, 上海: 中國地圖出版社.  
尹韻公, 2001, 『尹韻公縱論三國』,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李純蛟, 2002, 『三國志研究』, 成都: 巴蜀書社.  
張大可, 1994(1988), 『三國史研究』,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張越 編, 2009,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논문

- 陶懋炳, 「陳壽曲筆說辯誣」, 張越 編, 2009,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逢耀東, 「裴松之與《三國志注》」, 張越 編, 2009,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柳治徵, 「《三國志》裴注義例」, 張越 編, 2009,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馬植傑, 1997, 「劉備托孤與諸葛亮的治蜀和北伐」, 『三國史』, 北京: 人民出版社.

- 馬艷輝, 2017, 「南朝宋裴松之《三國志注》史論統計表」, 『魏晉南北朝史論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 繆鉞, 「陳壽與《三國志》」, 張越 編, 2009,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方詩銘, 2002, 「周瑜與赤壁之戰」, 『三國人物散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白壽彝, 「讀《三國志》札記」, 張越 編, 2009,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徐大英, 「陳壽修史“多所回護”說辨析」, 張越 編, 2009,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楊耀坤·伍野春, 1998, 「陳壽的修史態度及《三國志》的特點」, 『陳壽裴松之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 \_\_\_\_\_, 1998, 「《三國志》的價值及後世對它的研究」, 『陳壽裴松之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 \_\_\_\_\_, 1998, 「《三國志注》的史料價值」, 『陳壽裴松之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 楊翼驥, 2002, 「裴松之與《三國志注》」, 『學刃堂文集』(南開史學家論叢 楊翼驥卷), 北京: 中華書局.
- \_\_\_\_\_, 2002, 「裴松之和范曄」, 『學刃堂文集』(南開史學家論叢 楊翼驥卷), 北京: 中華書局.
- \_\_\_\_\_, 2009, 「裴松之與《三國志注》」,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葉建華, 2009, 「從《三國志注》看裴松之的史學批評」,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吳金華, 2009, 「《三國志》考釋」,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伍野春, 2009, 「裴松之的歷史考證法」,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王鍾翰, 2009, 「《三國志》裴注考證」,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劉成炳, 2009, 「《三國志》知意: 總論」,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尹韻公, 2001, 「赤壁之戰辨」, 『尹韻公縱論三國』,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 \_\_\_\_\_, 2001, 「赤壁之戰再辨」, 『尹韻公縱論三國』,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 \_\_\_\_\_, 2001, 「論諸葛亮首次北伐」, 『尹韻公縱論三國』,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 李純蛟, 2002, 「“直書”的嬗變-《三國志》研究中的一個重要理論問題-」, 『三國志研究』, 成都: 巴蜀書社.
- \_\_\_\_\_, 2002, 「《三國志》: 三國歷史的實錄(上)-對趙翼批評《三國志》的辨正-」, 『三國志研究』, 成都: 巴蜀書社.
- \_\_\_\_\_, 2002, 「《三國志》: 三國歷史的實錄(下)-對趙翼批評《三國志》的辨正-」, 『三國志研究』, 成都: 巴蜀書社.
- \_\_\_\_\_, 2002, 「陳壽生平考述」, 『三國志研究』, 成都: 巴蜀書社.
- \_\_\_\_\_, 2002, 「陳壽生平事迹年表」, 『三國志研究』, 成都: 巴蜀書社.
- \_\_\_\_\_, 2002, 「陳壽新傳」, 『三國志研究』, 成都: 巴蜀書社.
- \_\_\_\_\_, 2009, 「《三國志》的歷史地位」,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李則芬, 1998, 「陳壽三國志」, 『中國歷史論文集(上)』(從先秦到南北朝), 黎明出版.
- 張大可, 1994(1988), 「赤壁之戰考辨」, 『三國史研究』,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 \_\_\_\_\_, 1994(1988), 「赤壁之戰與三國鼎立」, 『三國史研究』,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 \_\_\_\_\_, 1994(1988), 「論諸葛亮出師」, 『三國史研究』,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 周國林, 2009, 「文質辨治: 陳壽的執著追求」,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周一良, 2009, 「《三國志》解題」,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陳登原, 2009, 「《三國志》義例辨錄」,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陳長琦, 1997, 「赤壁之戰新論」, 『戰國秦漢六朝史研究』,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 崔凡芝, 2009, 「裴注的史學意義」,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崔曙庭, 2009, 「《三國志》本文確實多於裴注」,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胡寶國, 2009, 「《三國志》裴注研究」,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研究』,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黃惠賢, 2010, 「隋鈔本《三國志·蜀志》蠡測-《北堂書鈔》研究資料之一-」, 『魏晉南北朝隋唐史研究與資料』,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 \_\_\_\_\_, 2010, 「隋鈔本《三國志·吳志》蠡測-《北堂書鈔》研究資料之二-」, 『魏晉南北朝隋唐史研究與資料』,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 \_\_\_\_\_, 2010, 「隋鈔本《三國志·魏志》蠡測-《北堂書鈔》研究資料之三-」, 『魏晉南北朝隋唐史研究與資料』,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 『삼국지』 연대·지명의 오류

— 손책·손권전의 시간 오류, 적벽과 오장원 논란 등을 중심으로 —

최진열

진수의 『삼국지』는 삼국시대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사서이다. 필자는 『삼국지』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삼국지·오서』 「손토역전」과 「오주전」에 연도나 월일이 기록되지 않은 사료가 많고 심지어 연도가 잘못 기재된 기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삼국지』는 『후한서』 및 『진서(晉書)』와 시기 혹은 내용상 일부 중복되므로, 후한 말 혹은 서진시대 인물이 활동했던 삼국시대의 사건은 각각 『후한서』, 『후한기』, 『진서』와 비교를 통해 내용의 이동(異同) 등을 검증할 수 있다. 필자는 『삼국지』에서 역사자료의 기본 사항인 시간과 장소 표기 오류를 여러 사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삼국지·오서』 「손토역전」에서 손책 시기의 활동을 서술할 때 연도와 구체적인 날짜를 적지 않은 이유는, 손책이 원술로부터 독립한 시기와 강동 전체를 정복한 연도를 속이기 위한 의도 때문이었다. 『삼국지·오서』 「오주전」의 기록을 검토하면, 손권이 황제를 자칭하기 이전의 기록들에는 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연도만을 표기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월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삼국지·위서』나 『삼국지·촉서』 혹은 『자치통감』과 비교하면 틀린 부

분이 10여 건에 달한다. 손권이 조조군과 합비에서 싸운 기사와 경우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손권의 패배를 감추기 위한 시도로 이해된다. 진수는 오의 상대국 기록과 대조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거나 사건의 시간적 도치를 바로잡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삼국 정립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이른바 ‘적벽대전’은 『삼국지·오서』에 오림과 적벽으로 기록되었다. 반면 『후한서』 「효헌제기」에서는 전투 장소를 오림·적벽이라고 기록하였다. 『수경주』 등 후세의 역사지리 관련 기록들을 검토하면 장강의 북쪽 하안을 오림, 남쪽 하안을 적벽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전투 장소를 ‘오림·적벽’으로 기록한 『후한서』 「효헌제기」의 기록이 적합한 듯하며, 조조의 군영이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전투 장소를 적벽이 아닌 오림으로 표기하는 편이 당시 상황에 부합할 것이다.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 때 주둔한 장소는 『삼국지』의 「위서」·「촉서」·「오서」의 기록이 모두 다른데, 주둔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무공현, 위수 남쪽, 난갱 등 다양한 장소로 표기하였다. 또 제갈량이 죽은 장소도 전혀 기록하지 않거나, 단순히 군영이라고 표기하거나, 위수 강가(위번), 광씨오 등으로 기록하였다. 같은 사서에 장소가 달리 표기된 것은 진수의 고증 능력 부족과 제갈량의 북벌을 폄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정사 『삼국지』의 사료를 검증하는 최초의 작업으로 『삼국지』의 연도, 날짜, 지명 등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삼국지, 삼국지의 표기 오류, 손토역전(손책전), 오주전(손권전), 적벽·오림 표기의 오류, 제갈량의 북벌 장소, 제갈량의 사망 장소

## ABSTRACT

The error of the year, month, day and place in *Journal of the Three Kingdoms(Sanguozhi)*: inspection of the records of Sun Ce and Sun Quan brothers's regime, Chibi war, and Zhuge Liang's stationing and dead place

Choi Jinyeoul

*Journal of the Three Kingdoms (Sanguozhi)*, written by Chen Shou who was a scholar-official from the late Shu State in the West Jin period, is a basic historic book to study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This paper identifies that there were many errors in the year, month, day and places in *Suntaonichuan*, the biography of Sun Ce who was the conqueror of Jiangdong and the virtual founder of Wu State and *Wuzhuchuan*, the biography of Sun Quan who was the ostensible founder and the first emperor of Wu in the *Journal of the Three Kingdoms*. This paper compares *Journal of the Three Kingdoms* with *History of the Later Han (Hou Han Shu)* and *History of the Jin (Jin Shu)*, which coincide with each other in some periods and contents to discover errors in the historical books with ease. Specific date, month

and year of historical events are not recorded in *Suntaonichuan* of *Journal of the Three Kingdoms* to conceal and misrepresent the points in time of Sun Ce's independence from Yuan Shu and the conquest of Jiangdong, which was essential to make up his betrayal to Yuan Shu and his disloyal robbery of commanderies and prefectures (junxian) of the Later Han Dynasty. There were at least ten errors or no record of points in time in *Wuzhuchuan* of *Journal of the Three Kingdoms* to conceal Sun Quan's defeat against Cao Cao's army in Hefei. Chen Shou, the author of *Journal of the Three Kingdoms*, did not correct the errors of the day, month and year, nor write the points in time correctly.

He also mixed up the battle place where Zhou Yu, the commander of Sun Quan's army and Cao Cao's army fought, and wrote Wulin or Chibi, different locations, in many biographies in *Journal of the Three Kingdoms*. *History of the Later Han* recorded the battle place as Wulin and Chibi, the south and north riversides of the Changjiang River, which seems correct. The author did not know the exact location of Zhuge Liang's death, thus he described the army post of Shu commanded by Zhuge Liang as Wugong Xian, the south riverside of the Weishui River, Wuzhangyuan, Lankeng and others, which is confusing, and the death place of Zhuge Liang, the chancellor and commander-in-chief of Shu as the riverside of the Weishui River and Guoshiwu, although both areas had no record of being the army post of Shu and the death place of Zhuge Liang. This happened because he lacked knowledge of the correct place or probably because he attempted to derogate Zhuge Liang's subjugation of Wei.

This paper argues that *Journal of the Three Kingdoms* have errors

and that the historical records in the book should be reevaluated through a comparison with *History of the Later Han*, *History of the Jin*, *Annals of the Later Han (Hou Han Ji)* and *Comprehensive Mirror to Aid in Government (Zizhi tongjian)*.

**Keywords:** Journal of the Three Kingdoms(Sanguo Zhi), The error of Journal of the Three Kingdoms, Biography of Sun Ce, Biography of Sun Quan, Ambiguous writing of battle place of Chibi or Wulin, Ambiguous place name of Shu Army's post, Ambiguous place name of fatal position of Zhuge Liang

# 종번(宗藩)과 중화(中華)로 청제국을 볼 수 있는가

– 왕위안총 ‘조선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손성욱 | 산동대학 역사문화학원 부교수

- I. 머리말
- II. 청제국과 청(淸)·조(朝) 관계에 대한 재접근
- III. 외번(外藩) 관계의 기초
- IV. ‘중화제국(中華帝國)’의 확장과 지속
- V. 맺음말



## I. 머리말

청사 연구에 있어 중국 학계와 중국 밖 학계가 논쟁을 벌이며 점점을 찾지 못하는 몇몇 쟁점이 있다. 바로 신청사(新淸史)와 19세기 후반 청의 ‘제국주의화’ 논쟁이다. 20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 청이 펼친 조선 정책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비중국 학계의 학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시 청의 정책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sup>1</sup> 반면 중국 학자들은 청의 간섭을 부인하진 않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한 정당성을 지닌 대응으로서 전통적 중주권 강화로 인식한다.<sup>2</sup> 역사성을 지닌 중주권이라는 정통성을 통

---

\* 투고: 2019년 10월 13일, 1차 심사 완료: 2019년 11월 14일, 재심사 완료: 2019년 11월 15일, 게재 확정: 2019년 11월 19일

- 1 Kim, Key-Hiuk, 1980,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宋炳基, 1985, 『近代韓中關係史研究: 19世紀의 聯美論과 朝淸交涉』, 檀國大學出版部; 權錫奉, 1986, 『淸末對朝鮮政策史研究』, 一潮閣; 金正起, 1994, 「1876-1894年 淸의 朝鮮政策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茂木敏夫, 1994, 「中華世界の‘近代’的再編」,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具仙姬, 1999, 『韓國 近代 對淸政策史 研究』, 혜안; Kirk K. Larsen, 2008,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Qing Imperialism and Choson Korea, 1850-191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등.
- 2 林明德, 1970, 『袁世凱與朝鮮』,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張存武, 1985, 「淸季中韓關係之變通」,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14; 宋慧娟, 2007, 『淸代中朝宗藩關係嬗變研究』,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151~260쪽; 曹雯, 2008, 「晚淸政府對外政策的調整與朝鮮」, 『淸史研究』 2008-2; 張衛明, 2011, 「在宗藩體制與國際公法之間: 晚淸中朝秩序的重新建構」, 『學術研究』 2011-3; 孫豔姝, 2011, 「晚淸中朝朝貢關係詳考」, 『史學月刊』 2011-1 등.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이 시기 청의 조선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는 논문도 나오고 있으나 ‘중주권’ 강화의 명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馬勇, 2014, 「甲午前淸政府“朝鮮方略”再檢討」, 『社會科學輯刊』 2014-6; 侯中軍, 2017, 「甲午戰前中朝宗藩關係的學理性反思」, 『晉陽學刊』 2017-6 등.

해 ‘제국주의적’이라는 해석을 거부하는 것이다. 근대 제국주의 침탈로 ‘반식민 주의(半植民主義)’ 역사 경험이 있는 중국은 자신들이 주변국에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쳤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학계에서 미국의 신청사에 대한 강한 반발도 이와 비슷한 맥락 속에 있다.<sup>3</sup> 신청사는 ‘한화론(漢化論)’을 비판하고 청의 내륙아시아적 성격, 비한문 사료의 적극적 활용, 지구사적 시각을 강조한다.<sup>4</sup> 이러한 시각은 중국사의 한 왕조로서 청사(淸史)를

- 3 중국 학계가 신청사에 본격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전후이다. 2010년 청의 정치와 국가 정체성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고, 신청사와 관련된 논쟁에 대한 주요 논문을 중국어로 번역 소개한 『淸朝의 國家 認同: “新淸史” 研究 與 爭 鳴』(劉鳳雲·劉文棚 編, 2010,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이 출판되었다. 2012년에는 2010년 학술회의 논문을 엮은 『清代政治與國家認同』上·下(劉鳳運·董建中·劉文鵬 編,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이 출간되었다. 중국 학계 내 신청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고, 2014년부터 신청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2012년 타이완에서 개최된 청제국 성격에 관한 워크숍 발표 논문을 엮은 『淸帝國性質的再商榷: 回應新淸史』(汪榮祖 主編, 桃園: 中央大學出版中心)이 출간되었다. 이 책에 실린 글 대다수는 신청사 연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4년부터는 신청사를 비판하는 글이 중국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신청사가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했음에도, 이즈음에서야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국의 신청사 비판에 대한 대표적인 논저로는 鍾煥, 2014, 「北美“新淸史” 研究的基石何在?—是多語種史料考辨互證的實證學術, 還是意識形態化的應時之學?(上)」, 『中國邊疆民族研究』 7; 李昭勇, 2014, 「強調“滿洲之道”的“新淸史”芻議」, 『滿族研究』 2014-2; 李治亭, 2015, 「“新淸史”: “新帝國主義” 史學標本」, 『中國社會科學報』 728, 2015年 4月 20日; 程秀金, 2015, 「“新淸史” 淸朝統治模式之述評—以淸朝平定和管轄新疆爲中心」, 『學術月刊』 2015-6; 楊念群, 2015, 「詮釋“正統性”才是理解淸朝歷史的關鍵」, 『讀書』 2015-12; 劉文鵬, 2016, 「內陸亞洲視野下的“新淸史” 研究」, 『歷史研究』 2016-4; 張志強, 2016, 「超越民族主義: “多元一體”的淸代中國—對“新淸史”的回應究」, 『文化縱橫』 2016-2; 李靜, 2017, 「“中國崛起”的歷史敘事與當代想象—以“新淸史”的“帝國轉向”爲中心」, 『文藝理論與批評』 2017-5; 汪榮祖, 2018, 「“中國” 概念何以成爲問題—就“新淸史”及相關問題與歐立德教授商榷」, 『探索與爭鳴』 2018-6; 方維規, 2018, 「“中國” 意識何以生成—勘測“新淸史”的學術地層及其周邊構造」, 『探索與爭鳴』 2018-6; 鍾煥, 2018, 『淸朝史的基本特征再探究: 以對北美“新淸史”觀點的反思爲中心』,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등이 있다.
- 4 신청사 연구 전반의 주요 관점에 대해서는 Ruth W. Dunnell and James A.

기술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청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적지 않은 중국 학자가 신청사는 청을 내륙아시아 제국으로 규정하여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sup>5</sup> 이로 인해 진일보한 학문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청의 ‘제국주의화’나 신청사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외부의 인식 차이는 현대 중국의 이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sup>6</sup> 학문적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작업은 난망해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8년 델라웨어대학 사학과와 왕위안충[Yuanchong Wang, 王元崇]이 청대 한중 관계를 다룬 『중화제국 다시 만들기: 만한(滿韓) 관계, 1616-1911(Remaking the Chinese Empire: Manchu-Korean Relations, 1616-1911)』을 출간하였다.<sup>7</sup> 표제와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저자는 만한(滿韓) 관계를 통해 청을 ‘중화제국’으로 정의한다. 조선은 명(明)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공국이었다. 청은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지만 복속시키지 않

---

Millward, “Introduction”, James A. Millward et al. eds., *New Qing Imperial History*, New York: Routledge, 2004, pp. 1~14; Joanna Waley-Cohen, 2004, “The New Qing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 88, pp. 193~206; 파멜라 크로슬리, 2010, 「‘신’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김신민, 2011, 「만주제국인가 청 제국인가-최근 미국의 청대사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사총』 74; 黨爲, 2012, 『美國新清史三十年: 拒絕漢中心的中國史觀的興起與發展』,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윤옥, 2015, 「新清史와 앞으로의 과제」, 『역사와 세계』 47 등 참조.

- 5 沈衛榮, 2019, 『大元史與新清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3~211쪽; 鍾焯, 『清朝史的基本特征再探究: 以對北美“新清史”觀點的反思爲中心』, 196~215쪽.
- 6 청은 영토뿐만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로의 ‘중국’ 정체성, ‘중화민족’의 형성, 대일 통 사상 등 현재 중국에 있어 역사적 연속성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陸勇, 2015, 『清代“中國”觀念研究』, 西安: 陝西人民教育出版社; 黃興濤, 2017, 『重塑中華: 近代中國“中華民族”觀念研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9~50쪽 참조.
- 7 Yuanchong Wang, 2018, *Remaking the Chinese Empire Manchu-Korean Relations, 1616-1911*,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고, 명제(明制)를 계승하여 종번 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조선은 ‘중국적 세계’와 ‘비중국적 세계’가 중첩되는 특수성을 지니게 되었다. 저자는 그러한 조선을 매개로 청이 중화제국을 ‘다시’ 만들어 갔다고 설명하면서 ‘중화(中華)’의 의미를 확장한다. 소모적인 ‘중국/비중국’의 이분법적 논쟁을 탈피하여 진진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하며,<sup>8</sup> 중국이 근대 국민국가로 이행하는 데 있어 청제국이 갖는 의미를 되짚는다. 본고는 그의 시도가 갖는 학술사적 의미를 소개하고, 비판적 검토를 통해 중화제국이 청제국과 청대 한중 관계사 연구에 있어 유의미한 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청제국과 청(淸)·조(朝) 관계에 대한 재접근

왕위안충은 서론을 4개의 절로 구성하고 각 절의 내용을 종번개념의 재활성화(revitalizing), 근대 국민국가 이행에 대한 재해석(reinterpreting), 청 통치하의 중화제국 재탐색(revisiting), 청 제국주의 재검토(renegoating)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청제국과 청(淸)·조(朝) 관계를 보는 시각에 새로운 해석을 내놓겠다는 야심 찬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저자는 중국적 세계질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 ‘조공체제’나 ‘호시체제’ 등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 대신 ‘종번’이라는 말을 재활성화시켰다. 종번 관계는 서주시기부터 시작됐으며, 본래 ‘종(宗)’은 천자를 뜻하고 ‘번(藩)’은 혈연 관계의 황실 구성원으로 번봉(藩封)을 받은 이들을 뜻하였다. 이를 아우르는 세계가 ‘천하(天下)’다. 이것은 이후 점차 발전하여

8 이는 현재 중국 학계가 ‘漢化論’을 중심으로 한 소모적인 논쟁을 탈피하고, ‘漢化’와 ‘胡化’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중국’으로서의 청을 밝히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楊念群, 2011, 「超越“漢化論”與“滿洲特性論”: 清史研究能否走出第三條道路?」, 『中國人民大學學報』 2011-2; 徐凱, 2015, 『滿洲認同“法典”與部族雙重構建 16世紀以來滿洲民族的歷史嬗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96~345쪽; 陳寶良, 2019, 「跳出“漢化”與“胡化”之爭」, 『北京日報』, 2019年 6月 3日, 15面 등 참조.

황제와 주변국의 배신(陪臣) 관계로 확대되었고, 조공과 책봉의 수단과 사대(事大)와 자소(字小)의 언설로 구축되었다. 조선은 기차 조선 전설로 알 수 있듯이 중국과 독특한 문화적 동질성을 형성하였으며 역사적으로 그 관계를 공유하였다. 명대에는 임진왜란을 겪으며 군신 관계가 부자 관계로 더욱 강화되었다. 전 근대 종변 관계는 한중 관계를 이루는 근간이었으며 청대에도 이 관계가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저자는 중국과 조공국의 관계를 종변 관계로 설명하며 청에 진공(進貢)을 하고 책봉을 받는 주변국을 ‘외번(外藩)’으로 부른다. 청대 ‘외번’은 그 대상이 번부(藩部), 속국(屬國), 조공국(朝貢國) 등을 포괄하며 다양한 맥락으로 사용되었다. 몽골, 신장에서 조공국인 조선, 안남, 청 중심의 질서 밖에 있는 러시아, 영국, 네덜란드 등을 포함하기도 하였다.<sup>9</sup> 그럼에도 조공-책봉 관계의 조공국을 외번으로 명하면서 전통적 천하질서에서 ‘번’의 역사성과 청대의 확장성이 결합될 수 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이 조선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자가 청은 명과 조선의 관계를 답습한 것이 아니라, 청제국이 주동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청은 ‘중화제국’으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을 정복하였으며 입관(入關) 전 조선과의 관계를 통해 청 중심의 ‘종번체제’를 만들어 갔다. 입관 이후에는 ‘조선 모델’을 통해 예부 관할의 ‘외번’과 관계에 적용하며 ‘종번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조선은 이러한 의미에서 청제국에 매우 중요하다. 청대 ‘번(藩)’은 다양하게 사용되었지만, 청은 조선을 다른 ‘중속 독립체(subordinate entities)’처럼 청제국 중심의 가족 구성원으로 이해하였다.<sup>10</sup> 저자는 이처럼 입관 이전 청·조 관계를 설명하면서 청이 어떻게 스스로 중화제국을 건설하고, 근대 이후 어떻게 현대 중국국가의 탄생이 이루어졌는가를 추적한다.

청이 입관 이전 자신을 중화제국으로 규정했으며 여기에 조선을 적극적으로

9 張雙智, 2010, 「清朝外藩體制內的朝覲年班與朝貢制度」, 『清史研究』 2010-3.

10 Yuanchong Wang, 2018, 앞의 책, p. 6.

이용했다는 저자의 설명은 이민족이 ‘한화(漢化, sinicization)’되어갔다는 주장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 책에서 ‘sinicization’은 기존의 ‘정복왕조 한화론’과는 의미가 다르다. 만주족이 적극적으로 ‘중화’를 수용하고 재적용하며 활용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sup>11</sup> ‘중화’는 한족(漢族)만의 문명이 아닌 공유 가능한 보편문명이다. 중국은 문명화된 중원왕조이며 ‘sinicization’은 한화가 아닌 ‘중국화’이다.<sup>12</sup> 스스로 ‘중국화’를 선택한 청제국은 만주족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제국이 아닌 ‘중화제국’이다. 1637년 홍타이지가 황제에 등극하면서 칭을 ‘중화제국’으로 정의했고, 조선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해 이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주장은 내륙아시아적 성격을 강조하는 신청사와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번원(理藩院)에 속한 이질적 세계는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 신청사 연구가 강하게 비판하는 기존의 ‘한화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한화론’은 이질적 세계를 한족 중심으로 일치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자는 ‘empire(제국)’를 호출한다. 많은 중국 학자가 칭을 ‘제국’으로 부르는 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sup>13</sup> 그동안 청제국이라는 표현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제국은 근대 이래

11 Evelyn Sakakida Rawski, 2015, *Early Modern China and Northeast Asia: Cross-Border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ianshen Song, 2018, *Making Borders in Modern East Asia: The Tumen River Demarcation, 1881-19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도 비슷한 시각에서 ‘중국화’ 문제에 접근한다.

12 ‘중국화’는 중국적인 것이 한족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何炳棣의 주장처럼 이민족이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다거나 이를 수정해 적응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페이 황과는 차이가 있다. Pingti Ho, 1998, “In Defense of Sinicization: A Rebuttal of Evelyn Rawski’s Reenvisioning the Qing”, *Journal of Asian Studies*, 57:1, pp. 123~155; Pei Huang, 2011, *Reorienting the Manchus: A Study of Sinicization, 1583-1795*, Ithaca: Cornell University East Asia Program, pp. 4~5. 왕위안충은 만주족이 주체적으로 문명화된 중원왕조로 스스로 추동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Yuanchong Wang, 2018, 앞의 책, p. 30.

13 定宜莊, 2017, 「「國家」與「帝國」:「華南研究」與「新清史」對話的基礎何在」, 『歷

등장한 개념으로 역사상 중국은 ‘제국’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천하질서를 드러내는 천조(天朝), 천하(天下) 등의 표현을 썼다. 제국이 중국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서양과의 접촉에서 시작되었다. 근대 이래 제국은 중국을 침탈하는 존재로 부정적 의미가 강화되어 왔다. 그것은 영토적 확장 혹은 세력 확장이라는 폭력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예(禮)에 기초한 천하질서는 호혜적인 비폭력적 질서로 인식된다. 그렇기에 일부 중국 학자는 제국성을 강조하는 신청사를 20세기 제국주의와 다를 바 없다며 ‘신제국주의사학(新帝國主義史學)’이라고 비판한다.<sup>14</sup> 근대 반식민주의 경험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반면에 저자는 청을 제국으로 칭한다.<sup>15</sup> 그러면서 청 후기 이전 제국의 팽창은 서양과 접촉하기 이전으로서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제인 버뱅크와 프레더릭 쿠퍼가

---

史人類學學刊』15-2, 229쪽; 劉文明, 2018, 「“帝國”概念在西方和中國: 歷史淵源和當代爭鳴」, 『全球史評論』2018-2.

14 李治亭, 2015, 앞의 글.

15 최근 중국에서 글로벌 히스토리에 열기와 맞물려 제국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청제국’이라는 표현에도 점차 유연해지고 있다. 2015년 首都師範大學 全球史研究中心의 주최로 비교제국사 학술대회가 열렸고(第四屆全球史學術論壇-“比較帝國史學術研討會”), 2017년에는 제인 버뱅크·프레더릭 쿠퍼의 『세계제국사(Empires in world history)』가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유라시아/내륙아시아의 시각에서 몽골제국과 청제국을 연구하는 岡田英弘과 杉山正明의 일부 저작이 중국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岡田英弘, 2016, 『世界史的誕生: 蒙古帝國的文明意義』, 北京: 北京出版社; 岡田英弘·神田信夫·松村潤, 2017, 『紫禁城的榮光: 明清全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杉山正明, 2013, 『遊牧民的世界史』, 北京: 中華工商聯合出版社; 杉山正明, 2014, 『疾馳的草原征服者: 遼西夏金元』,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杉山正明, 2016, 『蒙古顛覆世界史』,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등.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청사 연구 학술지이자 비교적 엄격하게 ‘청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清史研究』도 전면적은 아니지만, 최근 2~3년 동안 ‘청제국’이라는 용어를 비교적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게재된 저널 중 본문에서 다층적, 통합적인 성격의 청을 묘사할 때 제한적으로 ‘청제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張永江, 2019, 「禮儀與政治: 清朝禮部與理藩院對非漢族群的文化治理」, 『清史研究』2019-1; 惠男, 2019, 「俄羅斯逃人與18世紀後期的清朝邊疆」, 『清史研究』2019-3 등 참조.

『세계제국사』에서 주장하듯이, 제국을 논함에 있어 “민족과 근대성, 유럽에 대한 특수한 주장”들을 배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sup>16</sup>

여기서 ‘제국’은 유럽식 제국이 아닌 ‘중화제국’이다. 유가 사상에 기반을 둔 중화질서는 제국의 팽창과 모순되어 보인다. 저자는 청제국을 ‘empire’와 ‘Chinese empire’로 구분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전자는 황제가 통제하는 국가로 영토적 의미를 지닌다면, 후자는 천하를 통치하는 천자가 주인이 되는 정치-문화적 의미의 중화제국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을 표현할 때도 엄밀하지는 않지만 ‘China’와 ‘the Middle of Kingdom’으로 구분한다. ‘중국(China)’은 역사적 용어이면서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칭하기도 한다. 한족 중심의 국가로 한정되어 이해되기도 하고, 근대 국민국가의 관념이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확장과 수축을 거듭해오며 다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sup>17</sup> 이 책에서 구분해 사용하는 이유를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16 제인 버뱅크·프레더릭 쿠퍼, 이재만 옮김, 2016, 『세계제국사』, 책과함께, 24쪽.

17 이성규는 ‘중국’에 담긴 다양한 함의를 크게 5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는데, 바로 1. 정치적 중심으로서의 중국, 2. 춘추전국 시기 주 왕실과 제후국 및 동맹 세력으로 이 민족 나라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중국, 3. ‘사해지내(四海之內)’로의 중국, 4. 영토 개념으로서의 중국, 5. 문명세계로의 중국이다. 이성규, 1995,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33~38쪽; ‘왜 아직도 ‘중국’인가?’, 김광익·양일모 편, 2014, 『중국 문명의 다원성과 보편성』, 아가넷, 435~491쪽. 이러한 다층적 의미는 현대 국가로서의 중국으로 단일하게 이해되곤 한다. 중국 학계가 신청사에 강한 반감을 표출하는 것은 다양한 ‘중국’의 함의가 ‘상상의 공동체’로 단일화시키고 역사적 실체를 부정한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거자오광은 이 문제를 역사상 ‘중국’에 유한한 ‘국가’와 경계 없는 ‘제국’이 공존했다는 주장으로 풀어낸다. 그는 전통적 ‘천하제국’의 의식 속에 유한한 ‘국가’ 관념이 있었고, 유한한 ‘국가’ 인식 속에 ‘천하제국’의 상상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중국’은 서양과는 다른 내적 맥락을 가지고 변화해왔다. ‘중국’은 ‘국가’와 ‘제국’의 공존 속에 언제든 재정의될 수 있으며, 그는 이에 대해 이동과 변화를 잘 보여주는 중심/주변, 內/外, 疆/域에 집중해 설명한다. 거자오광, 이원석 옮김, 2012, 『이 중국에 거(居)하라: 중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탐구』, 글항아리; 葛兆光, 2014, 『何爲中國: 疆域民族文化與歷史』,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葛兆光, 2017, 『歷史中國的內與外: 有關「中國」與「週邊」概念的再澄清』,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참조.

역사상의 중국과 현대 중국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종(宗)과 번(藩)은 전통적 종번 관념과 천하질서를 공유한다. 불평등한 위계질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들이 공유하는 천하는 같으며 보편이념으로 힘을 갖는다. 종번 관계는 현대 외교에서 이해되듯이 군사력이나 지정학적 중요성 혹은 중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유가 사상에 기초한 ‘상호합의(bilateral arrangement)’를 통해 결정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883년 청불전쟁,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영토 제국국으로서의 청이 아니라 정치-문화 제국국으로서의 청이었으며, 1895년 이후 정치-문화 제국은 쇠퇴하고 근대 국민국가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sup>18</sup>

저자는 이러한 논리로 중국 밖 세계의 ‘청 제국주의’ 주장을 반박한다. 우선 그는 청 전기에 이루어진 청의 영토 확장을 제국주의적 행위로 보는 청 전기 제국주의론(High Qing imperialism)을 비판하면서 청의 확장에 대하여 유럽과의 접촉 이전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와 같은 비판에서 ‘신청사’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석에서 제임스 밀워드, 피터 퍼듀, 김광민 등을 제시하고 있어 ‘신청사’에 대한 비판임을 알 수 있다.<sup>19</sup> 청을 중화제국으로 보는 그의 시각이 신청사와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19세기 후반 청의 조선 정책을 실질적 지배의 강화로 파악하고 이를 서구 제국주의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는 후기 제국주의(Late Qing imperialism)의 논의<sup>20</sup>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국주의가 아닌 ‘종번주의(Zongfanism)’에 의한

18 Yuanchong Wang, 2018, 앞의 책, p. 15.

19 Yuanchong Wang, 2018, 위의 책, pp. 16·244.

20 Yur-Bok, Lee, 1970,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866-1887*, New York: Humanities, pp. 136~42; Martina Deuchler, 1977, *Confucian Gentlemen and Barbarian Envoys: The Opening of Korea, 1875-188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 220; Key-hiuk, Kim, 1980,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 p. 348; Kirk K. Larsen, 2008,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Qing Imperialism and Chason*

것이라 주장하며 청초에 형성된 청·조 관계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 책의 중요한 개념인 ‘중번주의’란 배타적인 문화 중심인 정치체와 덜 문명화되었거나 야만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변이 정치·외교 교섭 및 교류를 하는 중국적 시스템으로 중은 번에 대해 절대적인 가부장적 권위를 지니며 그 관계는 양자가 공유하는 정치-문화적 규범에 의해 정당성을 갖게 된다.<sup>21</sup>

저자가 청제국을 중화제국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는 바로 중번주의가 관찰되는 관계, 즉 중번 관계이다. 청초 중번 관계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조선이었다. 청은 입관 이전에 이미 자신을 중화제국으로 정의하고, 이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무력으로 조선과 관계를 맺었다. 조선과 중번 관계를 맺은 이후에는 명의 제도를 계승하여 의례에 기초한 외번 관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번 관계의 전형인 ‘조선 모델’이 형성되었으며 청은 입관 이후 청의 판도로 편입되는 명의 조공국에 이를 적용해 중화제국의 주변부를 만들어 갔다. 조선은 청이 중화제국이 될 수 있는 정통성과 기제를 제공해주었다. 따라서 조선의 상실은 정치-문화 제국의 와해를 의미했기 때문에, 19세기 말 청은 조선과의 중번 관계를 지키기 위해 경주하였다.

청은 조선을 굴복시켜(1616~1643, 1장) ‘오랑캐’로 만들고(1644~1761, 2장) 조선을 통해 자신의 문명화를 증명하였으며(1762~1861, 3장), 2차 아편전쟁 이후 서양과의 관계에서 청 질서 내 조선의 지위를 규정하고(1862~1876, 4장) 조선과 서양의 관계를 지도했지만(1877~1884, 5장), 결국 조선을 상실하게 된다(1885~1911, 6장). 이 과정에서 청제국은 1630년대, 1760년대, 1860년대 조선을 통해 각각 중화제국으로 지위를 세우고 중화문명의 담론 주도권을 확고히 하였으며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서 전통적 청·조 관계의 재확인을 통해 중번 관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 담론을 강화해갔다. 이 과정은 청을 중화제국으로 이해하

*Korea, 1850-1910*, pp. 11~19.

21 Yuanchong Wang, 2018, 앞의 책, pp. 17~18.

는 데 매우 중요하다.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청과 조선의 종번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고 정치-문화 제국은 와해됐지만, 종번 관계는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청은 여전히 매해의 황력(皇曆)에서 조선을 내성(內省)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상실한 영토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청이 멸망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렇기에 저자는 중국이 근대 국민국가가 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남북으로 나뉘어 완전히 독립된 주권국가로 성립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민국 시기 정치-문화 제국의 의식이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그것의 핵심이었던 한국이 중국과 완전히 단절된 주권국가로 되면서 정치-문화 제국의 유산이 완전히 청산된 후에야 중국이 근대 국민국가 될 수 있었고 영토의 문제도 명확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조선/한국은 청을 중화 제국으로 만들어 줌과 동시에 중국이 근대 국민국가가 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제였다.

### III. 외번(外藩) 관계의 기초

#### 1. ‘종번(宗藩)’의 부활

왕위안충은 ‘조공-책봉’이 아닌 ‘종번’이라는 틀로 청제국을 설명한다. 서주 시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종번 관계에서 종(宗)은 천자, 즉 천명을 받은 자를 말하며 번(藩)은 혈연 관계로 제국의 번두리를 이룬다. 이후 책봉으로 맺어진 종번 관계는 유가 사상에 기초해 중국의 대외 관계로 확대되며 발전하였다. 중국과 주변국은 천자의 ‘정통’과 ‘명분’을 공유하며 발전하였다. 명대에 이르러 조선은 명과 통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였다. 청은 무력으로 조선과 종번 관계를 맺어 중화제국으로서 ‘정통’을 확보하고 종번체제를 체계화해갔다. 저자가 조공체제 대신 종번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구미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조공체제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많은 학자가 비판

했듯이 조공체제는 페어뱅크에 의해 ‘중국적 세계질서’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조약체제’와의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중국적 세계질서’의 다면성을 매몰시켰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는 청·조 관계를 비롯한 청제국의 대외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저자와 마찬가지로 영미 학계에서 활동하면서 종번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학자가 있다. 바로 송넨선[宋念申, Nianshen Song]이다. 그는 ‘조공(tributary)’이 로마제국에서 부의 교환을 의미하는 말에서 기원한 용어라는 이유를 들어 조공체제 개념의 역사성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종번은 중국에서 사회적, 철학적, 우주론적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는 용어라고 주장하였다.<sup>22</sup>

하지만 ‘종번’이라는 틀로 청의 대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sup>23</sup> 중국 학자 리다룡[李大龍]의 연구에 따르면, 종번은 서한 시대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나, 사서(史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송대 이후로서 송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종번은 황실 구성원이나 번왕(藩王)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즉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용한 적은 없다.<sup>24</sup> 리다룡이 분석 대상으로 삼

22 宋念申은 ‘Zongfan hierarchy’라고 쓴다. Nianshen Song, 2012, “‘Tributary’ from a Multilateral and Multilayered Perspectiv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5, pp. 156~157; Nianshen Song, 2018, *Making Borders in Modern East Asia: The Tumen River Demarcation, 1881-19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 이와 같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자가 宗, 藩, 宗藩에 대한 개념과 역사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책 전체의 내용이 종번 관계/종번체제를 드러내는 작업이겠지만, 그 틀의 이론적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는 宋念申도 마찬가지다. 宋念申은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조공’을 봐야 한다며 ‘조공체제’ 대신 종번이라는 틀을 제시했지만, 비판에 치중한 데 비해 종번에 설명은 간략하다. 중국 학계에서 ‘중국적 세계질서’를 어떤 용어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李大龍, 2015, 『從“天下”到“中國”：多民族國家疆域理論解構』, 北京：人民出版社, 191~199쪽; 馬大正, 2016, 『當代中國邊疆研究：1949-2014』,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참조.

24 李大龍, 2015, 위의 책, 191~195쪽. 李大龍은 ‘종번’ 대신 ‘藩屬’이라는 용어를 주장한다.

지 않았지만, 『대명회전』에서도 ‘중번’이 등장하는 경우는 변왕과 관련된 규정에서이다. 조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물론 조선을 중번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자가 중요한 예로 들고 있듯이 왕세손 이산(李禎)은 청으로부터 왕위후계자로 책봉을 받았다. 당시 왕세손이 세자의 자리를 계승해 책봉을 받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건륭제는 왕세손의 책봉에 대한 근거를 찾아 논의토록 지시하였고 예부는 유교 경전과 사서에 나온 내용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책봉을 승인하였다. 왕세손을 책봉한 경우는 송대와 명대에 두 차례 있었는데, 결정적인 명분이 된 것은 명대의 사례다. 명 홍치 4년에 숙공왕(肅恭王) 주공종(朱貢鏞)의 장자 진어(眞淤)를 세자로 책봉했는데, 그가 죽자 진어의 차자(次子) 필광(弼椐)을 왕세손으로 책봉한 사례가 있다. 당시 예부는 이 예를 들어 “外藩之與宗藩, 事屬相同(외번과 중번은 일이 서로 같다)”이라는 말로 책봉의 명분을 찾았다. 이를 두고 저자는 청이 중번과 외번을 동일시했으며 책봉을 통해 청과 조선의 가족성을 결정지었다고 해석한다.<sup>25</sup> 저자에게 가족성은 가부장적 중번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명이 원으로부터 계승한 중번체제에 주나라에서 기원한 봉건제를 회복해 형성된 것으로 청 역시 이를 계승하였다. 저자에 의하면, 이는 19세기 말 청이 조선 문제에 개입하면서도 조선을 ‘지방화’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로 작동한다.<sup>26</sup>

청이 조선 책봉 문제를 특별히 다룬 것은 분명하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책봉 문제는 1697년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 이윤(李昀)의 세자 책봉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선은 책봉 주청사를 파견했으나, 책봉을 거부

25 Yuanchong Wang, 2018, 앞의 책, pp. 42~43. 이 책의 6, 42쪽에서 왕세손 책봉 문제를 1768년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건륭 28년(영조 39년)으로 1763년이다.

26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서 출판 후 출간한 논문인 Yuanchong Wang, 2019, “Provincializing Korea: The Construction of the Chinese Empire in the Borderland and the Rise of the Modern Chinese State”, *T'oung Pao*, 105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당하였다. 청대의 유일한 책봉 거부 사건이다. 청은 『대명회전』에 나온 “왕과 왕비가 오십이 될 때까지 적자가 없어야 비로소 서장자를 왕세자로 세울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 책봉을 불허하였다. 조선은 내번과 외국이 다르다고 강변했지만, 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책봉의 결정권은 상국인 청에 있고, 청은 조선 세자 책봉에 있어 내번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였다.<sup>27</sup> 하지만 이것은 외번과 중번을 동일시했다기보다 조선만이 갖는 특수성이 아니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류큐와 안남 등 다른 외번 관계에서도 “外藩之與宗藩，事屬相同”과 유사한 언설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그것이 청·조 관계의 특수성인지 청대 외번관계의 일반적 성격인지에 대해 진일보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중번’이 중국과 주변국 관계를 설명하는 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이다. 사오순정[邵循正]은 1933년 제출한 청화대학(淸華大學) 석사학위논문인 「중국, 프랑스, 베트남 관계의 시말[中法越南關係始末]」에서 중불전쟁을 논의하면서 청과 베트남의 관계를 중번 관계로 규정하였다.<sup>28</sup> 장팅푸[蔣廷黻]는 1934년에 출간한 『근대 중국 외교사 자료 집요(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에서 청일전쟁의 한 원인(遠因)으로 중국의 전통적 중번 관념과 근대 국제법의 중번 관념 간의 충돌로 보았다.<sup>29</sup> 이와 같은 서술이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국이 서양 국제법의 번역과 수용과정에서 전통적 ‘종주권’ 관념의 변용이 일어났기 때문이며<sup>30</sup> 중번이 문제가 된 것은 서로 다른 국제질서의 충돌

27 손성욱, 2019, 「王世子 冊封으로 본 淸·朝 관계(康熙 35년~乾隆 2년)」, 『동양사학연구』 146, 196~206쪽.

28 邵循正, 2000, 『中法越南關係始末』,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9 蔣廷黻 編, 1934, 『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 中卷, 上海: 商務出版社, 364쪽.

30 번역 문제에 중점을 둔 중서 간 ‘종주권’ 관념의 충돌과 변용에 대한 연구로는 岡本隆司, 2014, 「宗主權と國際法と翻譯-‘東方問題’から‘朝鮮問題’へ」, 岡本隆司 編, 『宗主權の世界史: 東アジアの近代と翻譯概念』, 名古屋大學出版會, 90~118쪽; 유바다, 2016, 「1882년 조약장정의 체결과 屬國·半主之國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역사와 현실』 99; 이동욱, 2019, 「청말 종주권 관념의 변화와 조선 정책

에서 기인한다. 1930년대 현실 세계에서 종변의 문제는 없었다. 종주권이 아닌 주권이 문제가 되던 시기다. 이때 종변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외부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청에 대한 비판이자, 서구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비판이었다. 요컨대 ‘종변’은 역사적 용어라기보다는 20세기 1930년대의 현실의식이 상당히 투영된 개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근대 시기 중국의 대외 관계에 ‘종변’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 2. ‘조선 모델’

왕위안충은 청을 중화제국으로 설명하며 청이 중화제국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644년 입관 이후가 아닌 1637년 조선과 관계를 맺으면서부터라고 강조한다.<sup>31</sup> 입관 이전 조선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새로운 정치 프레임을 만들었으며, 조선은 이후 새롭게 편입된 예부 관할의 외변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청은 조선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고, 의례에 기초한 조선 모델을 외변에 적용하여 정통성을 확대해갔다. 이를 통해 청에게 외변은 제국의 ‘울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조선은 ‘중화제국’의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존재였다.<sup>32</sup>

확실히 조선은 청에 있어 다른 예부 관할의 외변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존재였다. 청대 조공-책봉 관계의 전형(典型)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구범진, 김창수, 이재경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청제국에서 조선이 류큐, 안남 등 다른 조공국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밝혀졌다.<sup>33</sup> 하지만 왕위안충은 조선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선이 청제국의 ‘종변

---

의 전환」, 『사충』 96 참조.

31 Yuanchong Wang, 2018, 앞의 책, p. 7.

32 Yuanchong Wang, 2018, 위의 책, pp. 8·55.

33 구범진, 2008, 「清的 朝鮮使行人選과 ‘大清帝國體制」, 『人文論叢』 59; 김창수, 2013, 「청의 詔書 반포 사신을 통해 본 조선의 지위」, 『역사와 현실』 89; 이재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모델'로 작동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청·조 관계는 중번체제의 특정 사례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청이 '중번체제'를 형성하고 만주 정권이 중화제국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천하의 중심임을 선포하고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한 모델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4</sup>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청이 중화제국을 천명하고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을 침략했는가이다. 홍타이지는 병자호란 당시 조선 정벌의 명분으로 조선의 명에 대한 의리 고수, 천자 등극 진하 거부, 천명을 거스르는 행위, 전쟁 도모 등을 들었다.<sup>35</sup> 천자, 천하 등의 말은 분명 '중화'의 언설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자신을 문명화된 세계의 중심으로 추동한 것으로 '중화'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조선 정복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중화제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복의 우선순위에서 조선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천총 7년(1633) 대릉하 전투 이후 6월 18일 홍타이지는 바일러, 구사어전 등과 명, 조선, 차하르 중 어디를 먼저 공략할지 토론한 적이 있다.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조선의 경우 이미 화의를 맺었으니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구사어전 양구리[楊古利]는 명을 공략하여 금(金)이 '내지(內地)'에 자리잡게 되면 조선도 저절로 복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6</sup> 이것은 조선이 아니라 명을 통해 그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조선을 통한 정통성 확보가 필요했을까. 오히려 중화제국의 정통성보다 '칭제(稱帝)'한 홍타이지의 권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경, 2019, 「大清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83.

34 Yuanhong Wang, 2018, 앞의 책, pp. 59~60.

35 張存武·葉泉宏 編, 2000, 『清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一六一九-一六四三』, 臺北: 國史館, 193~198쪽.

36 박민수, 2017, 「淸의 入關과 旗人의 北京 移住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27쪽.

않을까.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청(금)과의 관계가 형제 관계에서 군신 관계로 전환되었다. 모든 ‘형제’들의 인정 속에서 이뤄졌어야 할 흥타이지의 황제 등극이 조선 사신의 의례 거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흥타이지의 권위가 손상을 입은 것이다. 병자호란은 중화제국을 위한 정통성보다는 구범진이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에서 밝혔듯이 미완의 즉위식을 조선에서 친히 완성해 ‘칭제(稱帝)’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sup>37</sup>

병자호란 이후 청이 입관 전 조선과 어느 정도 수준의 예(禮)에 기초한 모델을 만들었는지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청이 육부(六部) 체제를 만들고 사신 관련 의례를 예부에서 처리한 것은 맞다. 조선은 명에 그랬던 것처럼 춘신사와 추신사가 아닌 ‘사대(事大)’의 사절을 정기적으로 청에 파견하고 공물을 바쳤다. 청과의 관계에서 사용할 금인(金印)을 하사받았으며, 국서도 격식에 맞춰 바꾸었다. 기본적인 의례 형식이 갖춰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선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예부가 아닌 호부였다. 공물이나 국서를 문제 삼는 것도 호부의 잉골다이나 마푸타 등이었다. 청의 조선 정복을 기념하는 삼전도비의 비문이나 규모 등 건립에 관한 문제도 호부에서 주관하였다. 의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하(朝賀) 전 의례를 배우는 습의(習儀)도 없었으며, 실제 조하(朝賀)가 이루어진 경우도 많지 않았다. 청이 명과 전시체제에 있었으므로 정제된 의례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웠겠지만, 조선 사신의 의례를 보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sup>38</sup>고 볼 수 있다. 청이 의례에 기초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컸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조선과 명확한 위계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례를 활용한 면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조선이 예부를 중심으로 한 의례 관계에 들어간 것은 청 입관 이후 명의 ‘조공국’이 처음으로 청의 체제에 편입되면서부터다. 류큐는 순치 10년(1653) 2월

37 구범진, 2019,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64~71쪽.

38 손성욱, 2018, 「清朝貢國使臣儀禮의形成과變化」, 『東洋史學研究』 143, 277~279쪽.

에 명이 하사한 인칙을 반납하기 위해 마종의(馬宗毅)을 파견하였다. 마종의 일행은 5월에 푸젠[福建]에 도착하였고, 다음해 초 베이징에 도착하여 만문(滿文)과 한문(漢文)으로 ‘유구국왕지인(琉球國王之印)’이 각인된 새로운 인장을 하사받았다. 이때 류큐의 금인 문제가 부각되었다. 류큐에 인장을 발급하기 이전 순치 10년 6월에 만문만 각인된 조선 국왕의 인장을 대체할 만문/한문이 각인된 인장을 조선에 하사했었다. 이는 ‘조선 모델’이 적용된 것이라기보다, 조선 이외의 새로운 조공국이 편입되면서 조선이 새롭게 재편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9</sup> 이와 같은 조치는 인장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같은 해 청은 조선과 비공식 접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명수를 파면하였다. 그리고 순치 원년에 선포한 조선과의 교섭 통로를 북경 예부로 단일화한다는 조치도 순치 10년에서야 완전히 확립되었다.<sup>40</sup>

저자의 ‘조선 모델(Choson model)’은 ‘조선사례(朝鮮事例)’, ‘조선지례(朝鮮之例)’ 등 사료에 나온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조선사례’가 후금/청 사료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천충 2년(1629)이다. 고흥중(高鴻中)이 홍타이지에게 올린 명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만약 그들이 강화하러 오면 그 진위가 어떤지 살피고, 만약 강화가 진심이라면 우리는 성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조선사례에 견주어 왕위의 책봉을 청하고 정삭(正朔)을 따르면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sup>41</sup> 이는 명과 조선 관계의 기초가 책봉과 정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사례’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1660년대 청이 타이완에 기반을 잡고 반청을 외치는 정성공(鄭成功)과 교섭하는 과정에서였다. 정성공은 항복하라는 청의 설득에, ‘조선사례’를 따르겠다고 제안하였다. 책봉과 조공 관계를 맺지만, 청의 복식을 따르지 않는 등 조선과 같은 ‘독립’된 지위를 누리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희제

39 손성욱, 2018, 위의 글, 282~283쪽.

40 김창수, 2018, 「조선·청 외교문서의 교섭경로와 성격의 역할」, 『역사와 현실』 107, 158쪽.

41 Yuanchong Wang, 2018, 앞의 책, p. 28에는 16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충 3년(숭정 2년) 즉 1629년이다.

는 조선은 “從來所有之外國”이라며 거부하였다.<sup>42</sup> 타이완이 청의 영토 판도 내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내번(內藩)’과 ‘외국(外國)’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청의 외번 모델이 ‘조선 모델’이라고 말하기에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책봉과 정삭은 조공-책봉 관계의 기본이 되는 제도이며 명대 조선은 조공국 중 가장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했기에 고흥중과 정성공에게 익숙한 사례였을 것이다. 그들이 대표적인 조공-책봉 관계의 사례로 조선을 예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조선사례’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저자가 주장하는 ‘조선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와 만주족의 언설 속에서 ‘조선 모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선지례’는 청이 외번에 대한 의례 활동에 있어 조선의 예(例)를 따른다고 할 때 종종 등장한다.<sup>43</sup> 의례 행위에서 조선의 예에 따르라는 것도 조선이 최초의 ‘외번’이자 가장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한 ‘외번’으로서 여러 의례 활동의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조선지례’를 전례(典例)로 보기보다는 전례(前例)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조선지례’에 대한 또 하나의 의문은 이 말이 건륭 후기의 의례 확대와 더불어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점이다.<sup>44</sup> ‘조선지례’를 저자가 말하는 ‘조선 모델’로 설명한다면, 그 모델은 건륭 후기에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혹은 청 전기와 건륭 후기의 ‘조선 모델’이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황즈렌(黃枝連)은 연회를 중심으로 한 건륭 후기의 의례 확대에 대하여 황제의 유희를 위한 것으로서 중국의 전통적인 ‘천조예치주의(天朝禮治主義)’를 왜곡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sup>45</sup> 이러한 비판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이는 건륭 후기 이전 시기의 사신 의례가 명대와 유사하였으나 건륭 후기에 들어서

42 Yuanchong Wang, 2018, 앞의 책, p. 56.

43 Yuanchong Wang, 2018, 위의 책, p. 72.

44 손성욱, 2018, 앞의 글, 280~294쪽; 구범진, 2018, 「清 乾隆 연간 外藩宴禮의 변화와 乾隆의 ‘盛世’」, 『역사문화연구』 68, 170~182쪽.

45 黃枝連, 1994, 『天朝禮治體系研究』 下(朝鮮의 儒化 情境 構造 朝鮮 王朝 與 滿清 王朝의 關係 形態 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471~488쪽.

사신이 황제가 주관하는 연회에 참석하는 큰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서, 즉 건륭제의 제국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조선지례’를 청초부터 일관된 ‘조선 모델’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IV. ‘중화제국(中華帝國)’의 확장과 지속

### 1. ‘중화제국’의 개념적 확장

만주족의 시각을 강조하는 ‘신청사’의 연구나 내륙아시아적 성격을 강조하는 일본의 청사 연구 등, 청을 중화제국으로 보는 시각과 대척점에서 있는 연구가 적지 않다.<sup>46</sup> 파멜라 크로스리는 청제국의 다면성을 강조하면서, 청의 황제는 ‘중국(the Middle of Kingdom)’의 천자이자 몽골세계의 대칸이자 티베트 불교의 ‘전륜성왕’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으며, 청제국은 단순한 중국왕조가 아닌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정치체를 포함하는 ‘보편제국’이었다고 주장한다.<sup>47</sup>

이와 반대로, 왕위안충은 제국의 다면성을 중화제국으로 수렴시킨다. 그것은 중화제국이 민족을 넘어 ‘정통성’에 기초한 중화사상으로 이루어진 제국이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종(宗)과 번(藩)이 정통성을 상호 인정하고 공유함으로써 중화제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천명을 받은 천자의 천하에 번이 모두 포괄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화제국은 한족 중심의 제국이 아니다. 제국을 지탱하는 중화사상 혹은 중화성은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이념이다. 청은 그 보편이념에 기초한 보편제국으로서의 중화제국이라는 것이다. 그는

46 김선민, 2016, 「청 제국의 지배이념과 지배체제」, 『사총』 88 참조.

47 Pamela Kyle Crossley, 1992, “The Rulerships of China”, *American Historical Review*, 97:5, pp. 1468~1483; Pamela Kyle Crossley, 1999,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23~246.

중화제국을 배타적 제국으로 보지 않으며, 청이 입관 전 홍타이지가 황제에 등극하며 스스로 중화제국으로 규정했고 조선과의 관계를 통해 그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본다. 심지어 청이 명을 공략하지 못해 산해관을 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화제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sup>48</sup> 이는 중화사상에서 민족(漢族)과 지역(中原)을 제거하여 이민족이 스스로 ‘중화’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청 황제를 비롯한 만주족 통치층이 얼마나 ‘중화’적 정체성을 가졌는가는 신청사와 중국 학계의 쟁점이 되는 문제지만, 저자는 기존의 논쟁과는 영역을 달리 청·조 관계 속에서 중화제국으로서의 청제국을 추적한다. 이 책은 청제국 내에서 비중국적인 영역 혹은 내륙아시아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기에 논의 밖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사실 조선을 비롯하여 예부가 사무를 관할한 외번들과의 관계는 대체로 명제(明制)를 계승한 것이기에 ‘중화’적 면모가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저자의 설명에는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저자는 ‘중번체제’에서 외번이 정치-문화에 기초한 ‘상호 합의’를 통해 편입되었다고 설명한다. 청 중심의 ‘중번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활용된 ‘조선 모델’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조선을 강압적으로 편입시켰지만, 그 모델이 갖는 함의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다. 조선에 이어 청의 체제에 편입된 명의 조공국은 류큐였다. 1647년 순치제는 저장과 푸젠 등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중원 평정을 알리는 조서를 반포하였다. 중원을 지배한 진정한 천자로서 류큐, 안남 등에 명이 하사한 인칙을 반납하고 자신의 책봉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류큐는 남명(南明) 세력의 추이를 지켜보며 시간을 끌다가 1653년이 되어야 인칙을 반납하고 청의 책봉을 받았다.<sup>49</sup> 청이 칙사를 파견해 국왕을 직

48 Yuanhong Wang, 2018, 앞의 책, p. 32.

49 李俊甲, 2013, 「明清交替期の清과 琉球-清朝의 第一次 琉球 使行 派遣과 正使 張學禮의 使行活動을 中心으로-」, 『명청사연구』 39; 吳元豊, 2017, 「清初 琉球國王 舅馬宗毅使華及其意義」, 『清史研究』 2017-2. 류큐에 이어 청의 외번이 되는 안남에 대해서는 孫宏年, 2006, 『清代中越宗藩關係研究』,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1~15쪽.

접 책봉하는 주요 외변인 조선, 류큐, 안남은 사실상 정치-문화적 논리에 의하  
기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 청 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입되었다. 이들은 유가 사  
상을 공유하고 있었고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어 명이 쇠망하자 청의 요  
구에 따라 예(禮)에 기초한 비대칭적 위계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자발적 ‘상호합의’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다.  
청은 중화제국의 프레임을 구축할 수 있는 정통성을 확보했지만, 그 기반은 취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도통(道統)과 정통(正統)의 문제다.<sup>50</sup> 청은 종변 관계를 통해 현실에  
서의 정통을 확보했지만, 주변부가 청이 중화의 도통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청은 이 책의 제목처럼 ‘중화제국’을 ‘다시 만들어(remaking)’ 갔다  
고 할 만큼 ‘중화성’을 강화해나갔다. 옹정제가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을 반  
포했으며, 청의 판도를 최대로 넓힌 건륭제는 ‘대일통(大一統)’의 언설을 부단히  
강화하였다. 건륭제는 ‘대일통’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황청직공도(皇淸職貢  
圖)」, 「만국래조도(萬國來朝圖)」 등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저자도 이러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주목하였다. 1762~1861년을 청이 스  
스로 문명화를 규정하고 강화하는 시기로 보고(3장), ‘중화’ 담론의 우열 측면에  
서 청이 조선보다 우세했다고 강조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북학파의 등장과  
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홍대용과 박지원의 사례를 비중 있게 다룬다. 박지원의  
경우 『열하일기』에서 1780년 8월 30일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청의 연호를 써  
서 날짜를 기록하였다. 저자는 이를 두고 박지원이 청을 세계의 중심으로 파악  
하고 종변 관념에 자신을 통합시킨 것으로서 스스로가 오랑캐의 나라에 있다는

50 도통과 정통에 관해 전인갑의 설명을 빌려 간단히 정리하면, 도통은 “전 사회가 공  
유하는 가치, 즉 도덕과 보편이념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것을 영속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정통은 “도통을 현실에서 구현하여 덕치국가/도덕국가를 건설  
하는 경세 행위”이다(전인갑, 2012a, 「帝國에서 帝國性 國民國家로(Ⅰ)-제국의  
구조와 이념-」, 『중국학보』 65, 176쪽). 청은 도통을 구현할 기반으로 정통을 확보  
했지만 도통의 주도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을 완전히 간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저자에 의하면, 조선은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청을 종번체제에 기초한 중화제국으로 인정했으며 ‘중화’ 담론의 역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거칠다. 수많은 문인이 명의 연호를 사용했고, 대보단에서 제사가 여전히 유지되었다. 당시 조선 문인이 청을 보는 시각은 청도 ‘중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옹정제나 건륭제는 중화를 계승한다는 의식을 드러냈고, 조선 사신도 베이징에서 이를 목도하였다. 게다가 명이 멸망한 후 소중화 의식을 발전시키며 이(夷)도 화(華)가 될 수 있다는 이론적 기초도 만들어졌다.<sup>51</sup> 이와 같은 논리라면 오랑캐인 청도 지속해서 교화(教化)해간다면 화(華)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청의 교화 정도는 조선보다 뒤떨어져 있었다. 조선은 기자 시기부터 오랫동안 교화가 진행되었고, 매우 중시하는 의관에 있어 중화를 계승하고 있었다. 반면에 청은 변발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었으며, 교화 기간도 짧았다. 청의 시각에서 조선을 압도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조선의 시각에서는 아니었다. 조선이 심복할 수 있는 ‘중화제국’이 되는 길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 2. ‘급변(急變)’ 시대의 ‘불변(不變)’

19세기 중반 서세동점이 거세지면서 주권(sovereignty), 변경(borders), 신민/국민(subjects)의 문제가 불거졌다. 왕위안충은, ‘외변’이 중국의 종주권(suzerainty)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양자의 정통성은 ‘중화사상’에 기초한 ‘상호합의’에 의해 구축된다고 설명한다.<sup>52</sup> 그 관계 속에서 주권, 변경, 신민/국민의 문제

51 조선중화주의에 있어 종족성/국적성에 관한 문제는 계승범, 2012, 「조선후기 조선 중화주의와 그 해석문제」, 『한국사연구』 159; 우경섭, 2012,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학술사적 검토」, 『한국사연구』 159; 김영민, 2013, 「조선중화주의의 재검토」, 『한국사연구』 162 참조.

52 Yuanchong Wang, 2018, 앞의 책, p. 12.

는 중화제국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서양은 종빈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청과 다른 언설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서구적 질서의 압박 속에서 정치-문화 제국이 와해될 때 중국이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청제국은 중화제국이어서야 하며, 19세기 후반 청이 왜 조선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애썼는지에 대해서도 청초의 청·조 관계로부터 설명이 가능해진다.

제2차 아편전쟁으로 많은 것이 변화하였다. 서양은 청과 근대적 조약 관계를 맺고 베이징에 공사관을 세웠으며 이후 관심을 조선으로 확대하였다. 청의 조공국으로 알려진 ‘은자의 나라’ 조선이 서양 중심의 국제질서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sup>53</sup>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가 발생하였다. 조선은 강한 저항으로 프랑스와 미국의 조선 진출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지위 문제와 청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프랑스와 미국은 조선의 종주국인 청에 조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청은 조선이 속국이지만 그들의 ‘자주’를 간섭할 수 없음을 밝혔다. 왕위안충은 이러한 마찰을 서로 다른 질서 간 개념의 오해와 충돌로 설명한다. 청 관료들은 중국의 문맥에서 조선 문제를 서양에 설명했으며 서양은 제국주의의 확장이라는 논리 속에서 이를 인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의 인식 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으며 충돌의 과정에서 서양 각국은 조선을 청의 조공국에서 중국이 책임지지 않는 독

53 F. C. Jones,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rvard, 1935; 權赫秀, 2003, 「병인양요와 중국 청정부의 대응 연구」, 『백산학보』 63; 金源模, 1979, 『近代韓美交涉史』, 弘盛社; 朴日根, 1981, 『美國의 開國政策과 韓美外交關係』, 一潮閣; 權赫秀, 2007, 「1871년의 辛未洋擾와 中國 淸政府의 應對 研究」, 『近代 韓中關係史의 再照明』, 혜안, 51~77쪽; Kirk K. Larsen,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Qing imperialism and Chosŏn Korea, 1850-1910*, pp. 43~61; 姜博, 2016, 「洋擾中的天朝: 西方侵擾朝鮮與淸政府的應對」,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손성욱, 2018, 「'外交'의 균열과 모색: 1860~70년대 淸·朝관계」, 『역사학보』 240 등 참조.

립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sup>54</sup> 반면 청제국에 있어 조선은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였다. 단순히 변경의 안전 때문이 아니라 조선이 중화제국 유지의 핵심적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1870년대 후반 조선에 대한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청은 1882년에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맺어 변통을 모색하였다. 제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종번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근대적 조약 관계에 준하는 통상 관계를 맺은 것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서양과 청의 속국에 대한 인식 차를 조선 정책에 있어 이중체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삼는다.

저자의 지적대로 서양과 청은 ‘속국(屬國)’을 두고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sup>55</sup> 그러나 서양이 중국의 속국 관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종번체제’ 내부의 일원이 아니기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더라도 청과 조선 간에 일정한 수준의 관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서양은 제국주의 확장의 과정에서 서양과 다른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와 ‘종속’ 관계를 접해왔으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무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였다. 점진적으로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로 재편해나갔는데, 상당한 국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왔기에 청과 조선의 관계를 이해하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서양 제국주의의 확장에 있어 조선 문제의 핵심은 청·조 관계를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조선과 마찰이 발생했을 때 청이 책임을 질 것인가의 여부에 있었다. 하지만 청은 자신의 전통적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적어도 서양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식되었다. 이제 청과 조선 관계는 실질적인 관계가 아닌 형식적 관계이자 서양이 청을 신경 쓰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관계로 인식되었다.

54 Yuanchong Wang, 2018, 앞의 책, p. 131.

55 전통적 속국 관념의 충돌과 변호에 관해서는 유바다, 2017, 「19세기 주권국가 질서 하 半主·屬國 조선의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62-2; 김봉진, 2019, 「조선=속국(屬國), 속방(屬邦)의 개념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8-1; 이동욱, 2018, 「청말 국제법 번역과 ‘藩屬’ 관련 개념의 의미 확장」, 『중국근현대사연구』 80 등 참고.

청이 무력으로 조선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듯이 서양 열강도 조선을 무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만약 병인양요나 신미양요로 청과 조선의 관계가 단절되고 조선과 서양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당시 청이 조선에 군사 개입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제2차 아편전쟁을 겪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도움으로 태평천국을 진압한 청으로서는 18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양과 무력 충돌을 벌일 여력이 없었다. 병인박해 직전 예부상서 만청려(萬靑藜)가 베이징에 머물던 조선 사신 유후조(柳厚祚)에게 “만약 강화(講和)를 할 수 없더라도 절대 중국에 원병을 청해서는 안 된다. 거리가 멀어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발할 만한 군사도 없다. 말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게 되니 필히 일을 그르칠 것이다. 단지 중국에 그들을 이치로 설득하여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기를 바란다”<sup>56</sup>라고 한 것이 이 상황을 잘 보여준다.

1880년대 청은 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왕위안충은 이와 같은 청의 움직임에 대하여 서구식 제국주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청제국의 종번체제에 있어 조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종번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1882년 임오군란이 발발할 당시 청이 조선에 파병한 것은, 북양대신 장수성(張樹聲)의 말을 빌리면 자소(字小)의 원칙에 따라 ‘가장(家長)’인 중국이 자제가(子弟家, 조선)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저자는 이것이 종번 관계에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보여주며, 국제법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청의 군사 개입은 1637년 이래 청이 ‘하부 국가(subordinate country)’에 발휘한 가부장적 권력을 공개적으로 발현한 것이며 청이 대원군을 청에 억류한 것도 원이 고려의 충혜왕을 폐위하고 청이 안남 여조(黎朝)의 마지막 왕을 물러나게 한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한다. 즉 종번 관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이야기다. 이홍장은 대원군을 보정에 유폐시키면서 원이 고려의 충선왕과 충

56 「上副使在北京時筆談」, 韓應弼 編, 『禦洋隨錄』, 50面(奎章閣 所藏).

혜왕을 중국의 변방에 유폐시킨 것을 근거로 삼아 광서제의 윤허를 받았다. 하지만 대원군이 조선을 떠나는 시점에서 마건충(馬建忠), 오장경(吳長慶), 정여창(丁汝昌), 위륜선(魏綸先)이 공표한 효유문(曉諭文)에서 이는 오히려 대원군이 조사를 위해 청에 가는 것으로서 원이 고려의 충선왕과 충혜왕을 잡아간 전례(前例)와 같이 생각한다면 황제의 높고 깊은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동요하지 말라고 하였다.<sup>57</sup> 이홍장의 논리와 효유문의 언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종변에 근거한 정당성의 문제를 떠나 청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조치였으며 충선왕과 충혜왕의 예는 조선 내부의 반발과 동요를 일으키기 충분하였다. 청과 조선은 종변 관계라는 위계질서 안에 있지만, 그 원칙을 두고 이해 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 외에도 1882년의 조선과 1780년대 여조의 상황은 모순처럼 보인다. 종변 관계의 가부장적 가치를 내세워 조선에 출병한 것처럼 청은 1780년대에 청에 의해 안남 국왕으로 책봉된 여조의 여유기(黎維祁)를 보호하기 위해 출병하였다. 하지만 청군이 대패하면서 여유기는 청으로 망명하였다. 이때 ‘반란’ 세력인 완문혜(阮文惠)가 책봉을 청하자 청은 그를 안남 국왕으로 책봉하였다.<sup>58</sup> 이러한 태도 변화는 현실적인 상황 판단이므로 혈연적 혹은 가부장적 성격의 종변 관계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 학계 외의 대다수 학자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청의 조선 정책을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제국주의적 성격으로 보지만 저자는 ‘장정’을 통한 이중체제 속에서 종변 관계의 특성을 강조한다. 1880년대에 청은 전통적인 종변 규칙을 따랐으며 철저히 경제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조선인의 월경과 변경 문제를 제시한다. 청은 조선인 월경민을 관대하게 처리했으며 변경 문제는 종변의 언설로 다루어졌다. 현실적이면서도 민감한 사안인데도 청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

57 『고종실록』 권19, 고종 19년 7월 13일 丁酉 條.

58 阮文惠가 책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29~242쪽; 孫宏年, 2006, 앞의 책, 22~35쪽 참조.

이지 않은 면이 있다. 저자가 다루고 있진 않지만, 청의 경제적 침탈 수단으로 언급되는 해관, 차관, 전신 등에 대해서도 전통적 청·조 관계의 연장선에서 보면 새롭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종주권 강화를 위해 경제적 수단이 이용되고 조선의 정책을 제약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에 의하면, 청·조의 ‘종번 관계’ 성격은 1883년 체결된 「길림·봉천상민수시무역장정」에서도 드러난다. 「길림·봉천상민수시무역장정」은 기존의 전통적 변경 무역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체결되었다. 저자는 1630년대, 1760년대, 1860년대 청의 조선 담론처럼 이들 세 ‘장정’이 청을 중심으로 위계질서를 제도화하고 중화세계 당사자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방법으로 작동했다고 주장한다.<sup>59</sup> 그리고 한중 간 상호 교류와 교섭에서 ‘국제법’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한다. 치외법권이나 조계지 설치도 마찬가지다. 거주지 설치는 상호 간 협약 상황이며, 치외법권은 전통적인 사법처리 방식이었다.

그러나 청과 조선의 교섭에 있어 ‘국제법’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전통적 ‘종번’ 관념이 상당히 유지되었다고 해서 청·조 관계의 성격이 이전과 같았다고 할 수 있을까. 청 중심의 세계질서가 청과 서양의 근대적 조약을 통해 상대화되었을 정도로 당시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대외 정세의 변화는 청·조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은 청의 개도(開導)에 따라 서양과 조약을 맺고 교섭을 하였으며, 청·조 간 이종관계 역시 청이 서구 열강을 의식해서 만든 것이었다. 일원적 천하질서가 상대화되는 시기에 전통적 종번 관념이나 제도의 기존 형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근대적 경험과 착종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로 저자가 종번 관계의 지속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1890년 조대비의 죽음에 대한 청의 애도 문제를 들 수 있다. 조선이 경비 부담을 이유로 청의 칙사 파견을 꺼렸음에도 원세개는 적극적으로 칙사 파견을 추진하였다. 황제가 칙사를 보내 애도하는 것은 전통적 ‘조공-책봉 관계’에서 이

59 Yuanchong Wang, 2018, 앞의 책, pp. 167~168.

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이것이 전통적 ‘중번 관계’에 의한 것이었으며, 원세개의 과도한 간섭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설명하듯이 원세개는 직위 문제로 인해 의례에 참석하지도 못하였다. 칙사와 특별히 접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조선에 의례 활동에 관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원세개는 구례(舊例)에 따라 국왕이 칙사를 출영(出迎)하도록 압박했고 결국 이를 관철하였다. 그것은 분명 청과 조선의 중번 관계를 서양 외교관에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원세개가 조대비 애도를 위해 파견된 칙사 관련 기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sup>60</sup>는 사실도 원세개가 전통적 ‘중번 관계’의 행위 외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sup>61</sup>

더 중요한 문제는 원세개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는가이다. 왕위안층은 1882년 이후 조청 간 이중체제를 ‘조 대 조(朝對朝, court-court)’와 ‘국 대 국(國對國, state-state)’의 관계로 구분하였다. 원세개는 후자에 속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국(國, state)’의 사무를 ‘조(朝, court)’의 영역으로 가져가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예부에서 주도하고 논의해야 할 일에 간여했던 것이다. 물론 청초에 조선 사무를 호부가 주도한 적이 있다. 전례가 있는 일로서 전통적 ‘조공-책봉 관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은 입관 이후 늦어도 순치 10년 이후에는 조선과의 관계를 예부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전시에 형성된 관계가 의례에 기초한 관계로 ‘정상화’된 것이다. 그것은 청이 중화제국의 정통성을 강화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원세개의 간섭은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이 청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중번의례가 허례(虛禮)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전반부터 조선 사신이 베이징에서 따라야 할

60 A Private Secretary of the Imperial Commissioners, 1892, *Translation: Notes on the imperial Chinese mission to Corea 1890*, Shanghai.

61 당시 원세개의 의도에 관해서는 Joshua Van Lieu, 2009, “The Politics of Condolence: Contested Representations of Tribute in Late Nineteenth-Century Chosŏn-Qing Relations”, *Journal of Korean Studies*, 14:1 참조.

의례가 상당히 느슨해졌지만,<sup>62</sup> 1882년 이후 청·조 관계가 근대적 사무 영역으로 기울어지면서 전통적 영역의 중요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 책에서 청의 조선 정책은 서양의 식민주의와 구별되는 ‘중번주의(Zongfanism)’로 귀결된다. 저자는, 조선을 ‘지방화’하지는 청 내부의 일부 주장에도 청 황실이 이를 공론화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청초 형성된 청·조 관계에 기초한 중번 인식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1880년 황준헌(黃遵憲)과 하여장(何如璋), 1882년 장수성(張樹聲)과 장패륜(張佩綸), 1884년 성욱(盛昱), 1890년 강유위(康有爲)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청이 조선에 관료를 파견하여 직접 보호하거나 청의 지방으로 편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원나라와 명나라가 한국의 지방화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지만, 청 조정이 이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이들의 의견은 청 황실의 조선 인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청 황실은 조선을 합병할 수 있는 이론적 권한이 있다고 믿었지만, 조선 관계에서 중번 원칙을 고수하였다. 서태후와 광서제는 조선을 군현으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에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청 황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1884년 청이 신장을 지방화한 것과는 분명 다른 것이며, 영토 제국과 정치-문화 제국 간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청의 조선 정책이 식민주의와 달랐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이 서태후와 광서제로 대표되는 청 황실의 조선 인식상 문제인지 현실 국제정치의 문제인지 그 원인이 모호하다. 19세기 후반 청 황실의 조선 인식에 관해서는 직접적 사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방증에 의한 추론으로서 설득력이 약하다. 게다가 조선이 서양 열강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에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상황에서 청이 조선을 ‘지방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은 청에게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다. 당시 청과 일본 양측 황제의 선전포고 조서(詔書)를 보면, 청은 기존의 언설과 일관되게 전통적 화법을 구사한다. 반면 일본은 조선, 청과 맺은 조약, 만국공법을 언급하며 당시

---

62 손성욱, 2018, 앞의 글, 294~306쪽.

국제 정치의 화술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화법의 차이에 대해 왕위안충은 청은 전통적 종번체제의 맥락에서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확보해 몽골, 신장, 티베트, 타이완 등을 보호할 근거로 삼고자 했으며, 이는 종번 관계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었다고 설명한다. 청일전쟁은 중국이자 천조로서 청제국 자신의 존엄과 정당성을 위한 전쟁이었다. 조선의 상실은 종번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만주, 외몽골, 신장, 티베트, 타이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지만, 조선과 영토 제국 간의 관계성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과 관계가 있는지 모호하다.

## V. 맺음말

청이 입관 후 중화제국인 명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입관 전 적극적으로 조선을 공략하여 ‘종번체제’에 기초한 중화제국으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한 점, 만주족 중심의 시각을 새롭게 환기시킨 점, 중화사상을 한족의 사상이 아닌 정통성의 문제로 정의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정치체를 포괄하는 제국으로 중화제국을 설정한 점, ‘조선 모델’로 청의 외번 관계를 설명한 점, 청초 청·조 관계의 연장선 상에서 19세기 후반 청·조 관계를 설명한 점 등에서 이 책은 기존의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사실 영토 제국과 정치-문화 제국의 구분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sup>63</sup> 이 책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전인갑이 이미 청을 이념형 제국과 현실형 제국으로 구분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념형 제국의 근간이 중화사상이라 불리는 화이론적 천하관념이며, 천하의 모든 지역이 실제 통치영역에 들어갈 수 없기에

63 거자오광이 중국의 중심과 주변, 內와 外를 설명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본고의 각주 17 참조.

제국이 이념형과 현실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제국의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의 다양성을 압도하여 통합할 수 있었던 소프트파워가 바로 중국적 문화주의였다고 주장한다. 즉 ‘비중국의 중국’ 지역은 토착 세력과 결합한 간접지배 방식을 구사하여 차별화된 통치전략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이원적 구조의 현실형 제국 구조를 완성하였으며,<sup>64</sup> 또한 “청제국 중심의 대일통 세계질서를 보편적 국제질서로 이념화”<sup>65</sup>하는 데 성공하여 이념형 제국 구조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이념형 제국이 완전히 붕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왕위안충이 청일전쟁에서 패한 것은 영토 제국이 아닌 정치-문화 제국이라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전인갑은 청제국을 ‘중화제국’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는 이질적인 두 세계가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된 것을 “중화제국으로 정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중국’(한족) 중심적 관점일 것”<sup>66</sup>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왕위안충과 달리 중국과 중화를 한족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원화된 제국 구조에서 청조가 ‘비중국의 중국’에 ‘중국적’ 문화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설명이다. 이 점에서 전인갑의 주장은 청을 ‘보편제국’으로 설명하는 파멜라 크로슬리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파멜라 크로슬리에게 중화의 면모는 청제국의 일부로 제국통치를 위해 활용된 것이다. 청제국은 중화왕조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청제국을 중화제국으로 부를 수 있을까. 왕위안충은 중화의 문제는 정통성의 문제이지 ‘종족(ethnic)’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주족 통치자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번원을 통해 관리

64 전인갑, 2012a, 앞의 글; 전인갑, 2012b, 「帝國에서 帝國性 國民國家로(Ⅱ)-제국의 지배전략과 근대적 재구성-」, 『중국학보』 66.

65 전인갑, 2012b, 위의 글, 254쪽.

66 전인갑, 2012a, 앞의 글, 165쪽.

되던 이질적 영역에 대한 설명은 어렵다. 다시 말해, 몽골, 티베트, 신장 역시 ‘중화(中華)’에 대한 정체성을 일정 부분 공유했는가. 물론 이는 영토 제국의 문제로 정치-문화 제국과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선은 어떤가. 청을 중화로 보았는가. 무력을 통해 중변 관계가 맺어져 현실적으로 ‘중화제국’으로 인정하였으며,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청(淸)도 ‘중화’를 계승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청과 조선 간 중화의 우월성이 역전된 적은 없다. 조선은 주자학을 국치로 삼는 왕조였다. 만주족이 증원을 지배하고 ‘소중화’ 의식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조선이 청의 ‘중화’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유했는지에 대한 진일보한 논의가 필요하다.

저자가 사용하는 ‘중화제국’이라는 용어에는 중국사에서 청제국의 역사적 계보를 만들고 전근대에서 현대 중국에 이르는 연속성을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 청제국의 중화성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비중화왕조로 이해하기에는 ‘중화’ 영역이 너무 크다. 중국사의 관점에서 청제국을 관찰할 경우 생기는 편견이나 오해가 만주족 혹은 내륙아시아적 관점에서 볼 때 역시 생길 수 있다. 청초 만주족이 ‘중화’를 일정 수준 공유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전통적 중화제국과는 다른 ‘독자적 중화제국’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서양인들도 청제국을 ‘중화제국’으로 칭했다는 점<sup>67</sup>에서, ‘중국’의 역사적 연속성이 외부에 인식되었음을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의 작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청사의 대외 관계와 변경 연구가 ‘서북 초승달’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구미 학계에서 이 책이 갖는 학술사적 의의는 더욱 크다.

그러나 저자가 청제국을 중화제국으로 설명하기 위해 청·조 관계를 과도하게 강조하였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 조선은 특별했다. 전쟁으로

67 陳波, 2017b, 「現代早期歐洲認定“中華帝國”的進程: 以內外路徑的交互影響為重點」, 『社會科學研究』, 2017-5; 陳波, 2017a, 「西方“中華帝國”概念的起源(1516~1688)」,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5.

청의 ‘중번체제’에 편입되어 이변원과 예부 영역의 접점에 있었다. 청 입관 이후 그 접점의 중심축이 예부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면, 1870년대 후반 청의 조선 문제 개입은 청초로 회귀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청의 조선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청초에 전쟁으로 획득한 조선에 대한 ‘중주권’에서 찾는다면 ‘제국주의화’라는 평가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중화제국’의 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저자에 따르면, 그 정책은 청이 청초부터 만들어낸 ‘중화제국’의 중번 관계에 근거한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중화제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청·조 관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는 청제국을 이해하기 위한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거자오광, 이원석 옮김, 2012, 『이 중국에 거(居)하라: 중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탐구』, 글항아리.
- 구범진, 2019,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 具仙姬, 1999, 『韓國 近代 對淸政策史 研究』, 혜안.
- 權錫奉, 1986, 『淸末對朝鮮政策史研究』, 一潮閣.
- 金源模, 1979, 『近代韓美交涉史』, 弘盛社; 朴日根, 1981, 『美國의 開國政策과 韓美 外交關係』, 一潮閣.
- 宋炳基, 1985, 『近代韓中關係史研究: 19世紀의 聯美論과 朝淸交涉』, 檀國大學出版部.
-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 제인 버뱅크·프레더릭 쿠퍼, 이재만 옮김, 2016, 『세계제국사』, 책과함께.
- 葛兆光, 2014, 『何爲中國: 疆域民族文化與歷史』,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 \_\_\_\_\_, 2017, 『歷史中國的內與外: 有關「中國」與「週邊」概念的再澄清』,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거자오광, 김효민·송정화·정유선 옮김, 2019, 『전통시기 중국의 안과 밖』, 소명출판).
- 岡田英弘, 陳心慧 譯, 2016, 『世界史的誕生: 蒙古帝國的文明意義』, 北京: 北京出版社.
- 岡田英弘·神田信夫·松村潤, 王帥 譯, 2017, 『紫禁城的榮光: 明清全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黨爲, 2012, 『美國新淸史三十年: 拒絕漢中心的中國史觀的興起與發展』,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柳岳武, 2016, 『淸代藩屬體系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 馬大正, 2016, 『當代中國邊疆研究: 1949-2014』,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杉山正明, 黃美蓉 譯, 2013, 『遊牧民的世界史』, 北京: 中華工商聯合出版社.

- \_\_\_\_\_, 烏蘭·烏日娜 譯, 2014, 『疾馳的草原征服者: 遼西夏金元』,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_\_\_\_\_, 周俊宇 譯, 2016, 『蒙古顛覆世界史』,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 徐凱, 2015, 『滿洲認同“法典”與部族雙重構建 16世紀以來滿洲民族的歷史嬗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邵循正, 2000, 『中法越南關係始末』,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 孫宏年, 2006, 『清代中越宗藩關係研究』,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 宋慧娟, 2007, 『清代中朝宗藩關係嬗變研究』,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 劉鳳運·董建中·劉文鵬 編, 2012, 『清代政治與國家認同』上·下,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劉鳳雲·劉文棚 編, 2010, 『清朝的國家認同: “新清史”研究與爭鳴』,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陸勇, 2015, 『清代“中國”觀念研究』, 西安: 陝西人民教育出版社.
- 李大龍, 2015, 『從“天下”到“中國”: 多民族國家疆域理論解構』, 北京: 人民出版社.
- 林明德, 1970, 『袁世凱與朝鮮』,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蔣廷黻 編, 1934, 『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中卷, 上海: 商務出版社.
- 張存武·葉泉宏 編, 2000, 『清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一六一九-一六四三』, 臺北: 國史館.
- 鍾焱, 2018, 『清朝史的基本特征再探究: 以對北美“新清史”觀點的反思爲中心』,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沈衛榮, 2019, 『大元史與新清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黃枝連, 1994, 『天朝禮治體系研究』下(朝鮮的儒化情境構造朝鮮王朝與滿清王朝的關係形態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黃興濤, 2017, 『重塑中華: 近代中國“中華民族”觀念研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 Crossley, Pamela Kyle, 1999,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uchler, Martina, 1977, *Confucian Gentlemen and Barbarian Envoys: The Opening of Korea, 1875-188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Huang, Pei, 2011, *Reorienting the Manchus: A Study of Sinicization, 1583-1795*,

- Ithaca: Cornell University East Asia Program.
- Kim, Key-Hiuk, 1980,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rsen, Kirk K., 2008,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Qing Imperialism and Choson Korea, 1850-191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e, Yur-Bok, 1970,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866-1887*, New York: Humanities.
- Rawski, Evelyn Sakakida, 2015, *Early Modern China and Northeast Asia: Cross-Border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ng, Nianshen, 2018, *Making Borders in Modern East Asia: The Tumen River Demarcation, 1881-19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ng, Yuanchong, 2018, *Remaking the Chinese Empire Manchu-Korean Relations, 1616-1911*,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논문

- 계승범, 2012, 「조선후기 조선중화주의와 그 해석문제」, 『한국사연구』 159.
- 구범진, 2008, 「淸의 朝鮮使行人選과 ‘大清帝國體制」」, 『人文論叢』 59.
- \_\_\_\_\_, 2018, 「淸 乾隆 연간 外藩宴禮의 변화와 乾隆의 ‘盛世」」, 『역사문화연구』 68.
- 權赫秀, 2003, 「병인양요와 중국 청정부의 대응 연구」, 『백산학보』 63.
- \_\_\_\_\_, 2007, 「1871 年の 辛未洋擾와 中國 淸政府의 應對 研究」, 『近代 韓中關係 史의 再照明』, 혜안.
- 김봉진, 2019, 「‘조선=속국(屬國), 속방(屬邦)’의 개념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8-1.
- 김선민, 2011, 「만주제국인가 청 제국인가 - 최근 미국의 청대사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사충』 74.
- \_\_\_\_\_, 2016, 「청 제국의 지배이념과 지배체제」, 『사충』 88.
- 김영민, 2013, 「조선중화주의의 재검토」, 『한국사연구』 162.
- 金正起, 1994, 「1876-1894年 淸의 朝鮮政策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수, 2018, 「조선·청 외교문서의 교섭경로와 성격의 역할」, 『역사와 현실』 107.

- \_\_\_\_\_, 2013, 「청의 詔書 반포 사신을 통해 본 조선의 지위」, 『역사와 현실』 89.
- 박민수, 2017, 「淸의 入關과 旗人의 北京 移住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성욱, 2018, 「淸 朝貢國 使臣 儀禮의 形成과 變化」, 『東洋史學研究』 143.
- \_\_\_\_\_, 2018, 「'外交'의 균열과 모색: 1860~70년대 淸·朝 관계」, 『역사학보』 240.
- \_\_\_\_\_, 2019, 「王世子 冊封으로 본 淸·朝 關係(康熙 35년~乾隆 2년)」, 『동양사학연구』 146.
- 우경섭, 2012,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학설사적 검토」, 『한국사연구』 159.
- 유바다, 2016, 「1882년 조약장정의 체결과 屬國·半主之國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역사와 현실』 99.
- \_\_\_\_\_, 2017, 「19세기 주권국가 질서 하 半主·屬國 조선의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62-2.
- 윤욱, 2015, 「新淸史와 앞으로의 과제」, 『역사와 세계』 47.
- 이동욱, 2018, 「청말 국제법 번역과 '藩屬' 관련 개념의 의미 확장」, 『중국근현대사연구』 80
- \_\_\_\_\_, 2019, 「청말 중주권 관념의 변화와 조선 정책의 전환」, 『사총』 96.
- 이성규, 1995,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_\_\_\_\_, 2014, 「왜 아직도 '중국'인가?」, 김광익·양일모 편, 『중국 문명의 다원성과 보편성』, 아카넷.
- 이재경, 2019, 「大清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83.
- 李俊甲, 2013, 「明清交替期の 淸과 琉球-淸朝의 第一次 琉球 使行 派遣과 正使 張學禮의 使行活動을 中心으로-」, 『명청사연구』 39.
- 李治亨, 2015, 「"新淸史": "新帝國主義"史學標本」, 『中國社會科學報』 728, 2015년 4월 20일.
- 전인갑, 2012a, 「帝國에서 帝國性 國民國家로(I)-제국의 구조와 이념-」, 『중국학보』 65.
- \_\_\_\_\_, 2012b, 「帝國에서 帝國性 國民國家로(II)-제국의 지배전략과 근대적 재구성-」, 『중국학보』 66.
- 최희재, 2010, 「越南, 朝鮮과 1860-80년대 淸朝 朝貢國政策의 再調整」, 『歷史學

- 報』206.
- 파멜라 크로슬리, 2010, 「신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姜博, 2016, 「洋擾中の天朝：西方侵擾朝鮮與清政府的應對」,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 馬勇, 2014, 「甲午前清政府“朝鮮方略”再檢討」, 『社會科學輯刊』2014-6.
- 方維規, 2018, 「“中國”意識何以生成－勘測“新清史”的學術地層及其周邊構造」, 『探索與爭鳴』2018-6.
- 孫豔姝, 2011, 「晚清中朝朝貢關係詳考」, 『史學月刊』2011-1.
- 楊念群, 2011, 「超越“漢化論”與“滿洲特性論”：清史研究能否走出第三條道路?」, 『中國人民大學學報』2011-2.
- 楊念群, 2015, 「詮釋“正統性”才是理解清朝歷史的關鍵」, 『讀書』2015-12.
- 吳元豐, 2017, 「清初琉球國王舅馬宗毅使華及其意義」, 『清史研究』2017-2.
- 汪榮祖, 2018, 「“中國”概念何以成爲問題－就“新清史”及相關問題與歐立德教授商榷」, 『探索與爭鳴』2018-6.
- 劉文明, 2018, 「“帝國”概念在西方和中國：歷史淵源和當代爭鳴」, 『全球史評論』2018-2.
- 劉文鵬, 2016, 「內陸亞洲視野下的“新清史”研究」, 『歷史研究』2016-4.
- 李昭勇, 2014, 「強調“滿洲之道”的“新清史”芻議」, 『滿族研究』2014-2.
- 李靜, 2017, 「“中國崛起”的歷史敘事與當代想象－以“新清史”的“帝國轉向”爲中心」, 『文藝理論與批評』2017-5.
- 張永江, 2019, 「禮儀與政治：清朝禮部與理藩院對非漢族群的文化治理」, 『清史研究』2019-1.
- 張衛明, 2011, 「在宗藩體制與國際公法之間：晚清中朝秩序的重新建構」, 『學術研究』2011-3.
- 張存武, 1985, 「清季中韓關係之變通」,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14.
- 張志强, 2016, 「超越民族主義：“多元一體”的清代中國－對“新清史”的回應究」, 『文化縱橫』2016-2.
- 程秀金, 2015, 「“新清史”清朝統治模式之述評－以清朝平定和管轄新疆爲中心」,

『學術月刊』2015-6.

定宜莊, 2017, 「『國家』與『帝國』: 『華南研究』與『新清史』對話的基礎何在」, 『歷史人類學學刊』15-2, 2017.

曹雯, 2008, 「晚清政府對外政策的調整與朝鮮」, 『清史研究』2008-2.

鐘焄, 2014, 「北美“新清史”研究的基石何在?—是多語種史料考辨互證的實證學術, 還是意識形態化的應時之學?(上)」, 『中國邊疆民族研究』7.

陳寶良, 2019, 「跳出“漢化”與“胡化”之爭」, 『北京日報』, 2019年6月3日, 15面.

陳波, 2017a, 「西方“中華帝國”概念的起源(1516~1688)」,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7-5.

\_\_\_\_\_, 2017b, 「現代早期歐洲認定“中華帝國”的進程: 以內外路徑的交互影響為重點」, 『社會科學研究』2017-5.

惠男, 2019, 「俄羅斯逃人與18世紀後期的清朝邊疆」, 『清史研究』2019-3.

侯中軍, 2017, 「甲午戰前中朝宗藩關係的學理性反思」, 『晉陽學刊』2017-6.

岡本隆司, 2014, 「宗主權と國際法と翻譯—‘東方問題’から‘朝鮮問題’へ」, 岡本隆司編, 『宗主權の世界史: 東アジアの近代と翻譯概念』, 名古屋大學出版會.

茂木敏夫, 1994, 「中華世界の近代的再編」,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眞榮平房昭, 1994, 「十九世紀の東アジア國際關係と琉球問題」, 『アジアから考える: 周縁からの歴史』, 東京大學出版會.

Crossley, Pamela Kyle, 1992, “The Rulerships of China”, *American Historical Review*, 97:5.

Dunnell, Ruth W., and Millward, James A., 2004, “Introduction”, James A. Millward et al. eds., *New Qing Imperial History*, New York: Routledge.

Ho, Pingti, 1998, “In Defense of Sinicization: A Rebuttal of Evelyn Rawski’s Reenvisioning the Qing”, *Journal of Asian Studies*, 57:1.

Song, Nianshen, 2012, “‘Tributary’ from a Multilateral and Multilayered Perspectiv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5.

Van Lieu, Joshua, 2009, “The Politics of Condolence: Contested Representations of Tribute in Late Nineteenth-Century Chosŏn-Qing Relations”, *Journal of Korean Studies*, 14:1.

Waley-Cohen, Joanna, 2004, “The New Qing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 88.

Wang, Yuanchong, 2019, "Provincializing Korea: The Construction of the Chinese Empire in the Borderland and the Rise of the Modern Chinese State", *T'oung Pao*, 105.

## 종번(宗藩)과 중화(中華)로 청제국을 볼 수 있는가

— 왕위안충 ‘조선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

손성욱

본고는 왕위안충의 『중화제국 다시 만들기: 만한(滿韓) 관계, 1616-1911 (Remaking the Chinese Empire: Manchu-Korean Relations, 1616-1911)』을 소개하고, 청(淸)·조(朝) 관계를 중심으로 청제국을 중화제국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왕위안충은 청·조 관계를 종번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추적하여 청이 중화제국임을 보여준다. 청은 입관 이전 스스로 중화제국임을 규정하였고, 조선을 통해 중화제국의 정통성을 획득하였다. 이후 중화문명의 담론 주도권을 확고히 하며,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서 전통적 청·조 관계의 재확인을 통해 종번 관계를 강화해갔다.

그에 의하면, 조선은 청을 중화제국으로 만드는 데 핵심 요소이다. 여기서 중화제국은 정치-문화 제국으로서 영토 제국과는 구별되며, 저자는 이 구별을 통해 제국으로서의 청을 설명하고, 청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극복한다.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 조선을 구하고 중화제국을 지키고자 했으나, 패배함으로써 정치-문화 제국은 쇠퇴하고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중국이 흥기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결과에도 정치-문화 제국의 유산은 지속되었고, 그것이 완

전히 칭산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남북으로 나뉘어 완전히 독립된 주권 국가로 성립된 시점이다. 저자의 이와 같은 논리 속에서, 조선은 ‘중화제국/중국’으로서의 청제국을 설명하고 현대 중국의 이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내세운 종번주의에 대해서는 그 역사성과 성격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과도하게 강조된 청·조 관계가 내번과 다른 외번 사이에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다층적 설명이 있어야만 중화제국으로서의 청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왕위안총, ‘조선 모델’, 중화제국, 종번 관계, 조청 관계

## ABSTRACT

# Qing-Chosŏn Relationship Seen through *Zongfan* and Chineseness: With a Focus on Yuanchong Wang's 'Chosŏn Model'

Son Sungwook

This paper reviews Yuanchong Wang's *Remaking the Chinese Empire: Manchu-Korean Relations, 1616-1911* and how the book contributes to the study on the history of the Qing Dynasty and Korea-China relations beyond Han and non-Han dichotomy in understanding the Qing dynasty. It also explores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the Qing Dynasty as one of the Chinese empires. Wang characterizes that the Qing Dynasty and Chosŏn had a suzerain-vassal relationship and thereby defines Qing as a Chinese empire. The author argues that Qing declared itself as a Chinese empire through the ascension of Hong Taiji even before the entry into the Central Plain (Zhongyuan), gained legitimacy as a Chinese empire through Chosŏn, secured its hegemony in the discourse of the Chinese civilization, and bolstered feudal *Zongfan* (China's suzerainty over other small polities) relationship

through reassurance of the traditional Qing-Chosŏn relationship in the midst of the crisis due to rising Western powers.

According to his accounts, Chosŏn was a critical factor in making the Qing Dynasty a Chinese empire. The author establishes that the Chinese empires throughout history were politico-cultural empires, which differentiate them from territorial empires, and defines Qing as an empire based on such distinction, overcoming the criticism on the Qing imperialism. Despite efforts to save Chosŏn through the 1894 Sino-Japanese War and to protect the Chinese empire, the defeat led to the declination of the political and cultural empire and gave rise to new China as a modern nation-state. In spite of the consequences of the Sino-Japanese War, however, the legacy of the political and cultural empire persisted, and it was completely cleared after the Korean War when Korea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and established itself as a completely independent, sovereign state. According to the author's line of reasoning, Chosŏn has been at the heart of characterizing the Qing Dynasty as a Chinese empire and at the transition into modern China. However, more advanced discussion on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attributes of the Zongfan framework used for the aforementioned explanation seem necessary, and only when there is a multi-layered explanation on whether the overly emphasized concept of Qing-Chosŏn relationship played any specific role in internal and external Zongfan relations, it would become truly possible to understand the Qing Dynasty as a Chinese empire.

**Keywords:** Yuanchong Wang, 'Chosŏn Model', Chinese empire, Zongfan relationship, Qing-Chosŏn relationship

# 난징[南京] 점령지의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피해

김정현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난징 점령지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제도
- III. 난징의 일본군 점령정책과 ‘위안부’ 피해 실태
- IV. 맺음말



## I. 머리말

난징[南京]은 중화민국의 수도이자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 화중파견군(華中派遣軍)<sup>1</sup> 사령부 소재지이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가장 장기적으로 실시되고 위안소와 ‘위안부’가 많았고, 중국인·조선인·일본인 및 기타 국가의 ‘위안부’ 피해가 모두 발생한 지역이다. 상하이[上海]와 더불어 전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체계화되는 기점이자 전시 위안소 운영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난징지역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기원, 위안소 분포, 생존 피해자 조사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sup>2</sup>

\* 투고: 2019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19년 11월 14일, 게재 확정: 2019년 11월 15일

\*\* 이 논문은 2019년도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수행 결과물임(NAHF-2019-기획연구-11).

- 1 일본군의 고유 명칭은 중지나파견군(中支那派遣軍)이나 중국 명칭은 화중파견군이다. 중국 명칭에 따라 일본군 중지나방면군(中支那方面軍)도 화중방면군(華中方面軍)으로 호칭한다. 일본군 대본영은 1937년 9월에 상하이파견군, 10월에 화중방면군을 구성하여 난징을 공략하였고, 난징대학살 이후인 1938년 2월에 상하이 파견군과 화중방면군을 편입하여 화중파견군을 구성하였다.
- 2 高興祖, 1993, 「日軍南京強姦事件與慰安所的出現」, 『民國春秋』 3; 經盛鴻, 1999, 「南京的慰安婦與慰安所」, 『抗日戰爭研究』 6; 段月萍, 2000, 「侵華日軍南京慰安所調查」, 『二戰時期的日軍‘慰安婦’制度』, 學林出版社; 張連紅, 2000, 「南京下關區侵華日軍慰安所的調查報告」, 『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11; 經盛鴻, 2000, 「侵華日軍南京“慰安婦”制度述論」, 『江海學刊』 12; 經盛鴻, 2004, 「侵華日軍南京慰安所調查與研究」, 『南京社會科學』 12; 王炳毅, 2005, 「南京慰安婦悲恨往事實錄」, 『檔案與建設』 7; 經盛鴻, 2005, 「對南京侵華日軍慰安所的最新調查」, 『江蘇地方志』 8; 經盛鴻·王冠保, 2005, 「南京的‘慰安所’與‘慰安婦」, 『鐘山風雨』 2; 經盛鴻, 2007, 「對南京原日軍慰安所的最新調查報告」, 『社會科學戰線』 3; 經盛鴻, 2007, 「南京慰安婦的血泪-對南京侵華日軍慰安所的最新調查報告」, 『百年潮』 5; 經盛鴻·胡卓然, 2013, 「南京日軍慰安所與慰安婦概論」, 『日本侵華史研究』 3; 袁志秀, 2016, 「南京利濟巷慰安所舊址陳列館與“慰安婦”歷史的固化」, 『檔案與建設』 2; 劉廣建, 2017, 「是普通妓院還是日軍慰安所-關於南京“人民慰安所”的考證」, 『檔案與建設』

중국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는 일본과 한국에 비해 다소 늦은 1990년대 항일전쟁사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sup>3</sup> 중일전쟁 발발 70주년인 2007년 7월 2일에 처음으로 발표된 ‘위안부 피해사실 조사보고’는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가 ‘일본 군부의 명령 체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고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위안부의 강제동원은 없었으며 군의 조직적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이 사실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sup>4</sup> 조사보고에 의하면, 중국 내 ‘위안부’ 징집은 일본군 직접 약탈, 친일 조직이나 친일 중국인을 이용한 강제동원, 취업사기, 유괴 등의 유형이 있다.

난징에는 친일 조직에 의한 ‘위안부’ 징집도 다수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일본군의 난징 점령정책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난징을 점령하면 국민정부가 항전을 단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고, 대군을 파견하여 1937년 12월 13일 난징을 점령하였지만, 국민정부가 충칭[重慶]으로 옮겨가 계속 항전하자 전쟁은 장기전으로 빠져들었다. 일본군은 난징 함락 과정에서 대규모 학살·약탈·강간으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중국인들과 합작하는 점령지 선무공작을 취하였다.<sup>5</sup> 난징의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군과 친일 합작자들의 협력

- 
- 7;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南京日軍慰安所實錄』, 南京: 南京出版社; 蘇智良, 2018, 「侵華日軍南京慰安所研究」, 『日本侵華南京大屠殺研究』; 劉廣建, 2018, 「民國出版物中的日軍“慰安婦”制度」, 『日本侵華南京大屠殺研究』 9; 川田文子, 2011, 「남경 강간과 남경의 위안소,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 엮음, 강혜정 옮김, 『일본의 군‘위안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등 참조.
- 3 1999년 3월 ‘중국 위안부문제 연구센터’가 상하이사범대학교에 설립되고, 2000년 3월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2005년 항일전쟁 승리 60주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 4 중화전국변호사협회[中華全國律師協會]와 중국법률원조기금회[中國法律援助基金會]가 공동 설립한 ‘위안부피해사실조사위원회’[中國原“慰安婦”受害事實調查委員會]가 전면적으로 조사한 결과였다. <http://news.sina.com.cn/c/2007-07-09/170113408258.shtml>
- 5 화중파견군은 점령지 선무공작에 필요한 기구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일을 남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의 상하이 사무소와 파견군 특무부에 할당하였다. 티모시 브룩 저, 박영철 역, 2008, 『근대중국의 친일합작』, 한울, 36·65~67쪽.

하에서 설치·운영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난징 점령지의 일본군 직영, 일본인 개설, 친일 조직이 설립한 위안소는 일본 투항 때까지 계속 존속하였다. 종전 후 1947년 난징 전범군사법정에서 일본군 전범들은 “위안소를 설립한 것은 현지 장관(친일정권)과 상의했고, ‘위안부’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변명하곤 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위안부’ 징집에 강제성이 없었고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난징 친일조직이 남긴 문서와 여러 피해자의 증언은 ‘위안부’ 제도에 일본군이 직접 간여하였음을 증명한다.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의 난징 위안소 생활과 피해 사실 증언도 일본인이 경영한 난징 위안소 내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와 일본군의 범죄 행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6</sup>

본고는 아직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난징의 친일조직이 남긴 일본군 위안소 관련 문서<sup>7</sup>와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sup>8</sup>을 바탕으로, 난징 점령지 위안소 제도의 실상과 ‘위안부’ 피해를 서술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일본군이 점령지 난징에서 ‘위안부’를 징집하고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취하였는지, 난징에 개설된 일본군 직영 위안소와 일본인이 개설한 위안소는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일본군과 협력한 친일 중국인 조직은 어떻게 ‘위안부’를 징집하고 위안소를 설치·운영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난징 위안소는 설치와 운영 주체가 다양하였기에 본고는 근거자료와 선행연구에 따라 일본군 임시 위안소, 일본군 직영과 지정 위안소,

6 박영심의 난징 방문과 증언은 난징 일본군 위안소 조사와 ‘위안부’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일본 우익 세력의 ‘위안부’ 죄행을 감추는 시도에 대한 반격이자 고발이었다. 經盛鴻, 2015, 「曾經淪爲日軍“慰安婦”的朝鮮老人朴永心」, 『百年潮』 4, 21쪽.

7 난징시당안관이 보관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이며, 이 문서 자료의 목록집(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 편, 2018, 『일본군 ‘위안부’ 자료 목록집 IV』,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발간되었다.

8 段瑞秋, 2015, 『女殤』,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3~1999,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 1-3』, 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5』, 풀빛; 한국정신대연구소, 1995·2003,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2, 한울 등 참조.

친일 기관 위안소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난징에서 중국과 한인 ‘위안부’가 받은 피해 실태와 그것을 야기한 일본군 점령정책의 문제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현재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과 가해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인해,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피해국과 피해자에게 있게 된 상황이다. 본고가 난징 점령지에서 실시된 일본군 위안소의 실체와 ‘위안부’ 제도에 의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II. 난징 점령지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제도

### 1.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징집

#### 1) 일본군이 직접 수행한 ‘위안부’ 징집과 위안소 설치

1937년 7월 7일 베이징의 노구교(蘆溝橋)에서 시작된 중일전쟁은 8월 상하이로 비화되었다. 일본군 사령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sup>9</sup>를 지휘관으로 하는 상하이파견군과 추가 부대로 화중방면군을 편제하였다. 상하이에는 일본 화중방면군 9개 사단 등 30만 명이 주둔하였고, 일본군은 난징공략에 이르는 여러 지역에서 중국여성을 대량 강간하였다. 이에 일본군 제3, 9, 11, 13, 18, 113사단과 여러 지대에 성병이 급속히 번지게 되었다. 마쓰이 이와네 사령관은 침략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병 확산을 방지하고 일본군의 전투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화중방면군 참모장 쓰카다 오사무[塚田政]에게 명하여 군위안소를 설치

---

9 마쓰이 이와네(1878~1948)는 상하이파견군 겸 화중방면군 사령관, 하얼빈 특무기 관장을 지낸 일본 제국 육군대장이다. 포츠담회담 수락 후, 난징대학살의 책임을 지고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판결을 받아 처형되었다. 현재는 다른 전범들과 같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다.

하도록 하였다.<sup>10</sup> 12월 11일 일본 화중방면군은 일본인 ‘위안부’를 중국으로 조속히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자금을 마련하여 중국 거주 일본인 업자에게 민간 위안소 개설을 요청하였다. 동시에 각 관할 부대에게 밀령을 내려 스스로 각종 형식의 임시 위안소를 만들도록 하였다. 상하이파견군 참모장 이이누마 마모루[飯沼守]는 1937년 12월 11일 일기에 “위안시설의 건, 화중방면군으로부터 문서를 받고 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다”라고 썼다.<sup>11</sup> 난징 함락 이전인 1937년 12월 상순에 이미 화중방면군과 상하이파견군이 점령지에 위안소 설치 방침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 일본군의 임시 위안소 설치

1937년 12월 13일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난징에서 무장해제된 군인 포함 민간인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동시에 2만 명에서 8만 명에 이르는 여성을 강간하여 각 부대에 성병이 빠르게 퍼졌다.<sup>12</sup> 일본 군부는 점령지에서 강간 방지를 위해 단기간의 지점과 ‘위안부’ 인원이 고정되지 않는 임시 위안소를 만들었다. 난징학살 기간 동안 이러한 위안소가 난징성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였고, 기차와 군용차량을 임시 위안소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일본군 임시 위안소는 난징 점령 초기에 비교적 많았지만 비교적 단기간 존속하였다. 임시 위안소 지점은 은폐되거나 공개되지 않아, 외부인은 이러한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sup>13</sup>

난징은 다른 점령 도시들과 달리, 당시 난징의 미국 선교사와 국제 적십자회 출신 외국인 20여 명이 중립지역인 안전구(安全區, 난민 피난구역) 국제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안전구는 일본군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0 蘇智良, 2016, 「南京大屠殺與‘慰安婦’制度」, 『中國‘慰安婦’真相』, 南京出版社, 7~8쪽.

11 南京戰史編集委員會, 1989, 『南京戰史資料集』, 偕行社, 211쪽; 요시미 요시아키, 2006, 『일본군 군대위안부』, 도서출판 소화, 34쪽.

12 經盛鴻·王冠保, 2005, 앞의 글, 20쪽.

13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南京日軍慰安所實錄』, 南京: 南京出版社, 22쪽.

1937년 12월 8일부터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sup>14</sup> 이들은 일본군이 진격해 왔을 때 대략 도시의 8분의 1을 중립지역으로 지정하여 쌍방 전투원들의 접근을 금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들은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 일본군이 난징을 장악한 초기에 안전구 국제위원회가 일본군과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본군은 이 안전구의 존재를 묵인하였다. 일본군은 난징 점령 직후부터 위안소의 설치, 특히 중국인 ‘위안부’ 징집에 관하여 ‘난징시자치위원회’ 설치 전까지 이 안전구 국제위원회와 교섭하였다. 이들은 점령군이 난징에서 저지른 일들을 기록하였다.<sup>15</sup> 일본군은 안전구 내 각 난민수용소에도 사람을 보내 공공연하게 중국 여성을 징발하여 위안부로 삼았다. 금릉여자문리학원(金陵女子文理學院) 미국인 여교수 미니 보트린(Minnie Vautrin)은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sup>16</sup>

“1937년 12월 24일 오전 일본군 관계자가 찾아와 난민 1만 명 중 100명을 골라 일본군 ‘위안부’로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일본군에게 합법적인 장소를 마련해주면 일반 여성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결국 이날 21명의 여학생이 끌려갔다. 일본군 제16사단 제30여단 제33연대 제2대대 소속 사병 이노우에 마사오[井上益男]는 당시 금릉여자대학의 난민 수용소를 경비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여러 차례 일본군 관병이 와서 중국 여성을 강제로 데려가는 장면을 목도하였다고 한다.

14 안전구는 군사력이 진입할 수 없는 구역으로서 여기에 거주한 중국인은 25만 명이었고, 그중 약 7만 명은 안전구 내 설치된 난민수용소에 수용되었다.

15 티모시 브룩 저, 박영철 역, 앞의 책, 179쪽.

16 미니 보트린은 1938년 4월 30일 일기에 일본군이 난징 근교의 한 학교에 위안소를 설치한 것을 목도하였다고 적었다. Minnie Vautrin(明妮·魏特琳), 南京師範大學南京大屠殺研究中心 譯, 2000, 『魏特琳日記』, 江蘇人民出版社;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연구(1)』, 146쪽에서 재인용. 보트린 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이 위안부로 끌려가는 것을 막지 못한 자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전구 국제위원회 위원장 존 라베(John Rabe)는 12월 17일 일기에 안전구 내의 대규모 강간을 목도한 한 미국인의 말을 인용하여, “안전구가 일본 기원으로 변하였다”라고 썼다. 12월 25일 일기에는 “많은 건장한 평민들이 강제 노역을 위해 잡혀갔고, 또 많은 처녀들이 잡혀갔는데 대규모의 병사 기원(妓院, 일본군 위안소)을 건립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썼으며, 12월 26일 일기에는 “일본인이 불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군대 기원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sup>17</sup> 난징안전구 국제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불쾌한 생각이라고 여기면서도 일본군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일본군에게 안전구의 존재에 대한 인증을 얻고 위안소 설치를 통해 일반 여성의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였다.

일본군은 중국 여성을 대량으로 징발하고 점령지역 내 공간을 임의로 정하여 상호가 없는 각종 임시 위안소를 만들었다. 이러한 임시 위안소가 순식간에 난징성 내외의 각지에 만들어졌다. 일본 『도쿄시보(東京時報)』에 보도된 일본군 특무 출신의 나가토미 히로미치[永富博道]의 증언에 의하면, 난징에서 중국 여성을 유괴하는 일을 맡았으며 일본군이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침공하는 도중 피난하는 중국인 여성을 유괴하여 그가 설립한 6곳의 위안소로 보냈다고 한다.<sup>18</sup> 일본군은 ‘난민등기(難民登記)’를 통해서도 위안부를 충당하였다. 난민 등기과정에서 젊은 여성을 뽑아서 거짓말로 일본군을 위하여 세탁을 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한다고 현혹하여, 각 부대의 위안소로 보내 강제로 ‘위안부’가 되게 하였다. 난징 주재 오스트레일리아 기사는 1937년 12월 30일에 일기에 “일본군이 6명의 중국 여성을 대간은항(大鑛銀巷)에서 잡아가 난징성 서쪽의 한 일본군 병원으로 보냈다. 일본군은 빨래하는 일을 한다고 속였지만, 밤이 되자 그녀들은 강제로 위안소로 보내져서 일본군 관병에게 윤간을 당하였다”

17 約翰·拉貝, 1997, 『拉貝日記』,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79쪽.

18 손염홍, 2017, 「일본군의 중국인 ‘위안부’ 징집에 대한 일고찰」, 김경일 외 지음, 『동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74~176쪽.

라고 기록하였다.<sup>19</sup> 일본군이 난징학살 기간 동안 난징대학 등 대학 캠퍼스 내 외국인 수용소와 안전지대에 침입하여 학생 기숙사를 임시 위안소로 설치하였다. 점차 난징 정세가 안정되어가면서 이러한 위안소는 점차 사라지고, 일본인과 친일 정권이 경영하는 위안소가 난징 일본군 위안소의 주요 형식이 되었다.

## (2) 일본군 직영 위안소

난징 점령 후 전쟁지역이 확대되자, 일본군은 7개 사단을 새로 편성하여 상설사단 17개 중 10개, 신설 사단 7개 중 6개, 모두 16개 사단을 중국 전선으로 신속하게 파견하였다. 난징 근처에 주둔하던 제15사단 보병 중대 등 일본군 각 부대는 지령에 따라 스스로 그 부대 소속의 각종 위안소를 설립하였다.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초기 단계에서 일본 군부는 일본과 조선에서 ‘위안부’를 즉각 대량으로 난징으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각 부대의 일본군에게 밀령을 내려 먼저 각자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각종 임시 성격의 위안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화중방면군과 중국파견군의 사단, 여단에서 연대, 대대, 심지어 경비대와 소대에 이르기까지 위안소를 군대 안에 직접 설치하고, 각 부대가 관리하였다. 군대 주둔지가 곧 위안소 소재지였고, 군대가 이전하면 ‘위안부’도 함께 이전하였다.<sup>20</sup> 난징의 일본군 임시 위안소 난립과 대량 강간으로 인해 일본군 각 부대에서 성병이 빠르게 퍼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병사 중 30퍼센트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하면 그 부대는 사실상 전투 집단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지만, 성병이 만연하면 그 부대는 아예 전투 집단이 될 수 없다. 중국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개설을 서두르게 된 이유는 결국 성병 발생 유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일본군은 1937년 12월 25일 난징 주둔 일본 상하이파견군 참모부 제2과에

19 經盛鴻·王冠保, 2005, 앞의 글, 194쪽.

20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앞의 책, 19쪽.

21 호사카 마사야스 지음, 정선태 옮김, 2016, 『쇼와 육군: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일본 제국주의의 몸통』, 글항아리, 1090쪽.

서 「난징 위안소 설립 방안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제출하였다. 상하이파견군 참모부장 우에무라 도시미치[上村利道]가 각 부대의 장교를 불러 모아 ‘난징 위안소의 개설에 대하여 제2과의 안을 심의한다’라는 안건으로 회의를 열고 12월 28일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시켰다.<sup>22</sup> 상하이파견군 군의부가 즉각 난징 ‘위안부’의 신체검사 업무를 인수하였다. 군의부 와타나베[渡邊] 대위는 이날 검사 의사인 사에키[佐伯] 중위·히라오[平尾] 소위와 매독 검사에 대해 논의하였고, 오구치[小口] 대위와 함께 사달리[四達里] 등 위안소 시찰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곳이 난징 최초의 위안소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1938년 초, 제6사단의 중군 군의관이 해당 사단에서 성병이 만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군대 질서의 파괴와 전투력의 약화를 우려한 마쓰이는 난징 주재 일본 육군, 해군 및 일본 영사관과 연석회의를 열어 난징 위안소 관리를 협의하였다.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군대에 위안소를 설치할 때 ‘위안부’의 본적·주소·성명·연령·출생과 사망 등 상황을 영사관에 즉시 통보한다. 군대가 민간 위안소를 군대 위안소로 편입시킬 수 있다. 위안소를 출입한 군인과 군속은 헌병대에서 관리한다.”

이로부터 난징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규범화되었다.<sup>24</sup> 난징에서 추진된 위안소 제도를 모델로 화북방면군도 군대에서 위안소 제도를 실시하였다. 일본 군수대신은 “위안부는 군수용품이기는 하나 번호를 매겨서는 안 되고 기록을 남겨서도 안 된다. 장기적으로 운송비용 및 지출비용을 고려하여 앞으로 신속히 통치구역과 점령구역에서 비밀리에 위안부를 징집하기를 건의한다”라는 지령

22 劉廣建, 2018, 「民國出版物中的日軍“慰安婦”制度」, 『日本侵華南京大屠殺研究』3, 59쪽.

23 쑤즈량·천리페이 저·이선이 역, 2017, 『일본군 중국 침략 도감 제19권-일본군 위안부』와 성폭력』, 늘봄플러스, 81쪽.

24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앞의 책, 24쪽.

을 내렸다. 비밀리에 중국인 여성을 모집하라는 지시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현지 여성을 모집하는 일은 당시 이미 공공연하게 진행되었다. 일본군은 난징에 위안소를 빨리 설치하기 위해 난징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하였다.<sup>25</sup>

1938년 2월 화중과건군 헌병대 사령관 오오키 시게루[大木繁]가 관동군사령부에 보고한 문서에는 난징 주둔 일본군 대략 2만 5천 명에 ‘위안부’가 141명이고, 사관[下關] 주둔 일본군 1,200명에 ‘위안부’가 17명이라고 하였다. 또 ‘병참지부(兵站支部)의 알선으로 위안소 업주가 40명(중국인 11명, 조선인 29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군을 따라 이동한 조선인·중국인 업자와 ‘위안부’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sup>26</sup> 일본군이 직접 만든 위안소는 중국인과 조선인이 대부분이며, 부대가 이동할 때 30명 정도의 위안부도 함께 움직였다. 1939년 난징의 위안소 조사기록에 의하면, 일본 군부가 운영한 위안소 4~5개에 중국 여성이 70%, 동양 여성이 30%이고, 중국 여성은 대부분 난민수용소에서 왔다고 한다.<sup>27</sup>

지금까지 확인된 일본군 직영 위안소는 다음과 같다. 제16사단 제33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 위안소는 주둔지에서 걸어갈 정도로 가까운 변화한 거리에 있었고, 군표(軍票)를 사용하였으나 표는 민간 상인이 팔았다. 같은 사단 제38연대 제1대대 제9중대에는 아마노[天野] 중위가 중대 주둔지에 설치한 아마노중대 위안소, 금릉여자대학교 교수 비트린이 1938년 4월 30일 ‘고아원을 설치할 장소를 조사’하기 위해 난징 동교의 유족학교에 갔을 때 발견한 유족학교(遺族學校) 위안소, 광화문(光華門) 부근 위안소, 여랑옥(女郎屋) 위안소, 포구고대방

2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4, 앞의 책, 151쪽.

26 조선인 6인은 각기 1인을, 중국인 11인은 평균 6~7인을, 조선인 15명은 평균 14~15인, 조선인 8명은 평균 7~8인을 거느렸다고 한다. 日軍華中派遣憲兵隊, 「關於南京憲兵隊轄區治安恢復狀況的調查報告(通牒)」, 莊嚴 編, 2014, 『鐵證如山』, 吉林出版集團, 116~127쪽; 윤은자, 2017, 「중일전쟁 시기 南京한인의 群像 - 통계와 표 분석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제181집, 170쪽.

27 任重, 「南京慰安所里」, 『浙江婦女』 1939-4; 劉廣建, 2018, 앞의 글, 63쪽에서 재인용.

(浦口高大房) 위안소, 포구왕이방(浦口王二房) 위안소, 천복구락부(天福俱樂部), 안락주점(安樂酒店) 위안소, 오대산 좌소향(五臺山左所巷) 위안소, 진촌(陳村) 위안소 등이 있다.<sup>28</sup> 일본군은 민간인 재산을 징발하여 위안소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난징시당안관에 보관되어 있다.<sup>29</sup>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징집된 ‘위안부’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주진샹(朱金香)은 난징성 남쪽의 방직공장 여공이었는데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의 난징 함락으로 청량산(靑涼山) 아래 농가로 피난 갔다가 대학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몇십 명의 여성들과 함께 일본군에 붙잡혀서 오대산 아래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일본 관병이 여성 1명당 군용담요를 하나씩 주었지만 반달도 안되어 10여 명이 동상으로 사망하였다. 일본군에 반항하다가 심하게 구타당하고 칼에 맞아 죽게 된 주진샹은 오대산에 내버려졌는데, 중국인 노부부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마홍메이[馬紅妹]는 난징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1937년 말에 강제로 일본군 간이 위안소로 잡혀갔다가 반년 만에 탈출해 농촌으로 돌아갔다.<sup>30</sup>

## 2) 일본 민간인이 개설한 위안소

일본군이 난징에 진입할 때 일본 민간인들과 일본인 ‘위안부’도 동행하였다. 일본 국내에서 징집한 ‘위안부’로 구성된 위안소나 일본군이 직접 설치한 위안소의 ‘위안부’의 수는 당시 중국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였다.

28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앞의 책, 45~60쪽.

29 난징시 건강로(建康路) 화풍(和豐)모직복식회사 직원 쉬량[徐良]이 거주하던 사조항(四條巷) 129호가 1938년 일본군에 징발되어 위안소로 사용되었으므로, 전후 난징시 접수위원회가 이를 일본계 재산으로 차압하였다. 쉬량은 차압당한 위안소 건물 속에 회사 소유 모직물 3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난징시정부가 1945년 10월 29일 난징시접수위원회에 제출한 「쉬량의 모직물반환탄원서」(爲請求發還大衣呢一案, 南京市檔案館 檔案 1003-21-178-9).

30 經盛鴻, 2007, 「對南京原日軍慰安所의 最新調查報告」, 『社會科學戰線』 3, 151~152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은 일본 민간인으로 하여금 민영위안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고향루(故鄉樓) 위안소와 낭속루(浪速樓) 위안소는 일본인이 설립한 위안소이다. 고향루 위안소는 난징 이계항(利濟巷) 18호에 위치하며 바로 옆의 2호 건물과 함께 일본군이 1937년 12월 빼앗아 위안소로 삼았다. 난징 사람으로 상하이라디오방송국의 방송인·가수였던 야오만리[姚曼莉]는 1939년 일본 군인에 의해 강제로 난징의 고향루 위안소로 보내져서 위안부가 되었다.<sup>31</sup> 일본인 센다[千田]가 고향루와 2호 동운(東雲) 위안소를 함께 운영하였고 동운 위안소에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기에, 당시 난징 주민은 이 위안소를 ‘일본 요자(窩子)’ 또는 ‘고려 요자’라고 불렀다.<sup>32</sup>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 위안소 명칭과 경영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일본 출판물 『지나재류방인인명록(支那在留邦人人名錄)』에는 일본인 가와지리[川尻金藏]가 난징 샤관 대마로(大馬路) 덕안리(德安里) 14호에 개설한 동행승루(東幸升樓) 위안소가 기록되어 있다.<sup>33</sup> 일본인이 운영한 송하부귀루(松下富貴樓)에는 중국, 타이완과 조선인 ‘위안부’가 약 40명이 있었다.<sup>34</sup> 이 외에도 난징에 일본인이 운영한 위안소가 많았으며, ‘위안부’ 대다수는 일본, 조선, 타이완 등에서 왔다. 일본인이 개설한 위안소는 일본군의 지지와 비호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 특권을 누렸다. 경영이 흥성하고 규모가 날로 커졌으며 그 수도 날로 증가하여 점차 난징의 가장 주요한 위안소가 되었다.

일본인이 운영한 위안소로 보내진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양쯔후이[楊澤慧]는 1941년 난징 치사[栖霞]에서 일본 상점 사장이 스후이진[施惠珍] 등 다른 여성 4명과 함께 종업원으로 고용한다고 속이고 태평남로(太平南

31 段瑞秋, 2015, 『女殤』,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65~166쪽.

32 고향루 위안소에는 대부분 일본 여성들이 일본 옷을 입고 있었고, 동운 위안소에는 조선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다. 經盛鴻, 2015, 「曾經淪爲日軍“慰安婦”的朝鮮老人朴永心」, 『百年潮』 4, 20~21쪽.

33 劉广建, 2018, 앞의 글, 61쪽.

34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앞의 책, 20·23쪽.

路)의 청남루(靑南樓) 위안소로 보냈다. 반년 후에 가족들이 왕징웨이[汪精衛] 정부 유력자에게 부탁하여 위안소에서 빼왔다. 스후이진은 1941년 일본 상점 사장의 사기로 청남루 위안소로 보내진 후 병에 걸리자 일본군이 시골에 버렸는데 그 지역 사람이 살려주었다.<sup>35</sup> 레이구이잉[雷桂英]은 1928년생으로 1940년경 일본군에게 5차례 강간당하였고, 탕산(湯山)의 일본인 야마모토[山本] 부부에게 속아서 그들이 운영하는 고대파(高臺坡) 위안소에서 10여 명과 함께 위안부가 되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이어서 보모 일자리를 찾아간 것이었는데, 1년 반이 지나니 굶어 죽어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밤에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도망쳤다.<sup>36</sup>

일본인이 경영한 위안소의 관리자는 일본인 외에 조선인과 타이완인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군대와 협력하여 위안소 경영권과 관리권을 취득해 이득을 얻었다. 전후 난징 시민 황후이핑[黃輝鳳]은 자신이 소유한 샤관 상부가(商埠街) 3층 양옥을 일본군의 난징 점령 시에 일본인 노부요시 히데요시[延吉秀吉]가 강제로 점유하여 일화회관(日華會館)과 위안소를 운영하였다고 탄원하였다.<sup>37</sup> 이 문서에 의하면 일본인 노부요시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강제 점유하면서 위안소를 확장하였다. 일본인이 난징에서 민간인의 재산을 강제점용하거나 비현실적으로 싼 임대료를 지불하며 일본군 위안소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35 經盛鴻, 2007, 앞의 글, 151쪽.

36 段瑞秋, 2015, 앞의 책, 169~177쪽.

37 난징시정부가 1945년 11월 샤관헌병대(下關憲兵隊)에 보낸 「황후이핑이 제출한 가옥 및 임대료 관련 분규 해결 협조안[關於黃輝鳳呈請協助解決房產及租賃糾紛呈文]」(南京市檔案館 檔案 1003-21-186-13). 노부요시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점용하다가, 1945년 8월 일본 패망 직전에 7년 임대료 명목으로 당시 시세로 한 달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폐(僞幣) 500만 위안[국민정부 법폐(法幣) 2만 5천 위안]을 주고 떠났다.

## 2. 난징의 친일 조직을 통한 ‘위안부’ 강제징집과 위안소 운영

일본군은 난징시의 기능 회복과 치안 유지를 위해 1937년 12월 임시행정관리 기구인 난징시자치위원회[南京市自治委員會]를 조직하였고, 1938년 3월 28일 중화민국 유신정부(中華民國維新政府)를 수립하고, 난징을 감독·관리하는 기관인 독판난징시정공서[督辦南京市政公署]와 난징특별시정부[南京特別市政府]를 조직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중국 국민정부의 내부 붕괴를 꾀하였다. 이에 동조한 왕징웨이(汪精衛)가 충칭에서 탈출해 일본과 협력하여 1940년 난징에 친일 정부를 세웠다.<sup>38</sup> 이후 난징은 일본군 점령지의 수도이자 일본군 작전 수행의 중심 도시로 변모하였다.

일본군은 난징의 친일 세력과 정권을 조직하고 중국인 ‘위안부’를 징집하고 위안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8년간 난징 시내와 교외 지구에 다양한 유형의 위안소가 운영되었으며, 지금까지 40~60여 개소가 조사되었다.<sup>39</sup>

### 1) 난징시자치위원회[南京市自治委員會] 문서와 일본군 위안소 개설

일본군은 함락으로 인해 인구가 줄고 시가지가 파괴된 난징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오락·유흥업소를 개설하였다. 난징의 정치적 ‘선무’활동을 맡은 일본군 특무기관이 1937년 12월 21일 난징시 불교계열 단체 홍만자회(紅卍字會) 회장 타오시산(陶錫三)과 안전구 국제위원회 구제조 책임자인 왕청덴(王承典) 등 각 구제단체 대표를 소집하여 ‘난징시자치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일본군

38 일본 고노에[近衛] 내각이 1938년 11월 ‘동아시아 신질서 건설’ 성명과 12월 ‘선린우호, 공동방공, 경제계휴’의 3원칙을 내건 성명을 발표하자, 국민정부 내에서 장제스와 대립하여 세력을 상실한 왕징웨이가 화평을 주장하면서 이에 호응하였다.

39 난징 위안소를 조사한 經盛鴻의 논문에서는 40여 개소, 蘇智良의 논문에서는 60여 개소라고 하였다.

난징특무기관장 오니시[大西]는 왕청텐에게 여성 100명을 징집해 기원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왕청텐은 난징에서 극장을 운영하던 차오홍넨[喬鴻年]을 특무기관에 추천하여 위안소와 중국 여성을 모집하는 일을 맡도록 하였다. 차오홍넨은 일본 헌병을 대동하고 전 국민당 중앙정부 관료의 주택에서 가구를 약탈하고 국민당 중앙위원회 공관 자리에 부후강(傅厚崗) 위안소를 설립하였다.<sup>40</sup> 12월 22일에 정식 개장한 부후강 위안소는 일본군이 친일 인사를 지휘해 건립한 첫 번째 위안소이며, 특무부대 오니시가 주임, 차오홍넨이 부주임으로 임명되었다.

일본군 특무기관이 12월 말 난징시자치위원회를 설립하자, 안전구 국제위원회는 구제기관으로만 남고, 일본군 위안소 설치와 중국인 여성 징집에 관한 업무는 난징시자치위원회가 일본군 특무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였다.<sup>41</sup> 금릉대학의 미국인 교수 스미스(Lewis S. C. Smythe)는 일본 군대를 위해 3곳의 위안소를 설립하는 것이 난징시자치위원회의 첫 업무였다고 회고하였다. 차오홍넨은 일본군 특무기관을 대동하고 여러 차례 난민수용소인 안전구로 가서 ‘위안부’를 징집하는 활동을 펼쳤다. 징집에 응하는 사람이 없자 그는 강제로 여성 300명을 잡아가서 그중 100여 명을 골라 오니시에게 보냈다. 차오홍넨은 오니시에게 보낸 100여 명 중 30여 명을 골라 장교들만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부후강 위안소로 보냈다.

일본군은 친일 조직과 결탁하여 사회풍속을 손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창기 및 작부 단속운동을 일으키고, 단속한 창기들을 모아 신체검사를 한 후 ‘위안부’로 강제징집하였다. 일반 여성도 징집 대상이었다. 정조를 중시하는 중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위안부’를 모집하는 일은 쉽지 않았으므로, 일본군은 12월 하순 친일 조직에 지시하여 양민 등기를 실행하고, ‘양민증’을 발급하는 기회를 이용하

40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앞의 책, 21쪽.

41 일본 특무기관은 1938년 3월 陶覺三·王承典 등 난징 지하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섯 명을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임명하였다. 티모시 브룩 저, 박영철 역, 2008, 앞의 책, 36·189~194쪽.

여 젊은 여성을 강제징집해 위안소로 보내게 하였다.<sup>42</sup> 일본군은 난징 점령 후 질서가 회복되기 전까지 난징시의 통행을 막고, 난징시자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만 통행증을 내주었는데, 1938년 2월 19일 난징시자치위원회가 작성한 ‘팅팅타오[滕聽濤] 등의 급여 수령차 상하이행 통행증 발급 신청을 허가한 안’<sup>43</sup>에는 일본군이 위안소로 징발하여 사용한 철관항(鐵管巷) 서복리(瑞福里) 건물의 이름이 있다.

1938년 1월 13일부터 1938년 9월 20일까지 ‘난징시자치위원회 총무과에서 처리한 41건의 문서’<sup>44</sup>는 난징시자치위원회 성립 이후 폐지 때까지 총무과에서 일본 측의 지시를 이행한 사정을 보여준다. 일본의 특무기관장 오니시가 난징시자치위원회의 왕청면 등에게 위안소를 만들도록 명령한 문건만이 아니라, 일본군 부대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난징특무반, 병참사령부, 사토[佐藤]부대, 특무기관, 부후강 위안소 등의 서류가 들어 있다. 난징시자치위원회가 1938년 1월과 3월에 작성한 ‘부후강 군인위안소 군악대 차오홍넨에게 배우 사례금을 수령하라는 통지’<sup>45</sup>는 일본군 병참사령부가 위안소 운영에 직접 개입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차오홍넨은 일본군을 위해 ‘위안부’를 징집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군 특무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소를 여러 곳에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1938년 4월 12일 차오홍넨이 난징 군위안소 주임 신분으로 난징시자치위원회에 보낸

42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앞의 책, 53쪽.

43 「關於滕聽濤等爲赴上海領取薪金呈請發給通行證的批考」(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9-37-2). 신금기강호영조창(新金記康號營造廠) 직원인 텅팅타오 등 4인은 대표가 난징을 떠난 뒤 회사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아 급여에 충당하고 있었으나, 건물 일부가 화재로 없어지고 철관항 서복리 건물을 ‘일본군이 징발하여 위안소로 사용’하게 되자 급여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하이의 회사 간부를 찾아가 해결하겠다고며 통행증을 신청하였다.

44 「關於總務問題之來往文書」(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9-40).

45 「函傳厚崗軍人慰安所軍樂隊喬鴻年先生來會領取演員酬金」(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9-40-8).

공문에는 ‘난징특무기관의 위탁으로 부자묘(夫子廟) 시장을 번영시키고 해당 지역의 상업을 진정시켜 전시 인민의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인민위안소(人民慰安所) 설치를 신청한다고 하였다.<sup>46</sup> 난징시자치위원회는 4월 13일 난징시경찰청에 인민위안소 개설 장소를 현장 조사 후 허가하도록 지시하였다.<sup>47</sup> 남만주철도 주식회사 난징특무반이 폐허가 된 난징시의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군인위안소 제도를 본뜬 인민위안소를 분설하기로 하고 난징시자치위원회 훈령을 통해 개설을 허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인민위안소는 정식으로 상호를 걸고 즉각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민위안소 안의 ‘위안부’는 모두 중국 여성이었고, 20여 명의 위안부가 일반인과 동시에 일본군 관병을 상대하였다.

인민위안소는 일본군 지정 위안소였다. 차오홍넨의 뒤를 이어 중국의 친일 인사들이 일본 군부의 지시와 지지하에 ‘일화친선관(日華親善館)’, ‘황군위안소’, ‘대화루(大華樓) 위안소’, ‘만월(滿月) 위안소’, ‘고루반점 중부(鼓樓飯店中部) 위안소’ 등 일본군이 이용할 수 있는 일본군 지정 민영위안소를 개설하였다.<sup>48</sup> 난징의 일본군 지정 민영위안소의 명칭은 제4 일중친선관(日支親善館) 등 다양하였다. 식당, 초대소 등의 명의로 개설한 곳도 있는데, 그 안에 ‘위안부’가 있었으며 모두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였다.<sup>49</sup>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국인 교수 베이츠(Miner Searles Bates)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1938년 위안소 홍보 광고가 수록되어 있다.

46 상군 위안소(上軍慰安所) 차오홍넨이 난징시자치위원회에 「인민위안소 분설 허가 신청안[呈爲分設人民慰安所仰祈鑑核准予備案事竊所項奉]」(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9-56-1)을 올려, 부자묘 공원가(貢院街) 해동춘(海洞春) 여관 및 시부로(市府路) 영안리(永安里)에 인민위안소 분설을 신청하였다.

47 「인민위안소 분설 신청 건에 대해 경찰청이 현장 조사하고 허가할 것을 지시한 건 [呈爲分設人民慰安所仰祈鑑核准予備案仰祈飭屬派員前往調查具報核辦由]」(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9-56-1-1).

48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앞의 책, 52쪽.

49 劉廣建, 2017, 「是普通妓院還是日軍慰安所-關於南京“人民慰安所”的考證」, 『檔案與建設』 7, 47쪽.

“중국 미인, 병참 지정 위안소, 제4 일중친선관, 진회화(秦淮河) 부근 소재, 강을 따라 600미터.”

이 광고에 ‘중국 미인’이라고 쓰여 있듯이 당시 일본군이 점령지 현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sup>50</sup> 이 광고가 게시된 지점의 맞은 편에는 여자중학교가 있었다. 일본군 지정 위안소는 평시에 민간 기원 형식으로 존재하지만, 특정 기간 일본군이 이용하였기에 일본군의 감독을 받았다. 즉 ‘위안부’는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일단 성병 환자가 나오면 일본군을 받을 수 없었다.<sup>51</sup> 일본군 지정 위안소 ‘위안부’ 피해자 정명사(鄭明霞)는 난징 부자묘 이춘원(怡春院)의 기녀였는데,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후 강제로 공원동가(貢院東街) 2호의 ‘인민위안소’로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sup>52</sup>

## 2) 중화민국 유신정부 문서와 위안소 관리

화중과건군은 1938년 3월 28일 친일 중화민국 유신정부를 수립하고 난징을 수도로 하였다. 이때쯤 주변 여러 마을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난징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유신정부는 공개적으로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를 설치하고 아편을 판매하는 등 일본군의 점령정책을 수행하였다.<sup>53</sup> 난징시자치위원회는 1938년 4월 24일에 폐지되고 독판난징시정공서가 1939년 3월 1일까지 난징시의 행정을 맡았다.<sup>54</sup> 독판난징시정공서는 윤락업소 관련 문서를 정리하였고,<sup>55</sup> 진루각

50 손염홍, 2017, 「일본군의 중국인 ‘위안부’ 징집에 대한 일고찰」, 167쪽.

51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앞의 책, 22쪽.

52 經盛鴻, 2007, 앞의 글, 151쪽.

53 張憲文 主編, 2015, 『日本侵華圖志 23-扶植偽政權』, 山東畫報出版社, 53쪽.

54 독판난징시정공서는 1939년 3월 2일 난징특별시정부로 바뀌었다.

55 「부자묘 지역 인민안위소 개설, 오락업소의 ‘무대개설’ 허가, ‘중앙낙원(中央樂園)’ 허가, ‘민락희원(民樂戲院)’ 현장 조사 등[前自委會關於娛樂場所人民安慰所更新舞臺中央樂園圖文]」(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9-56), 난징시자치위원회가 작성한 ‘인민위안소’를 ‘인민안위소’로 표기하였다.

(秦樓閣) 기원, 소요각(逍遙閣) 기원 등 기원(위안소)을 개설할 수 있는 허가증 발급과 사후 관리를 하였다.<sup>56</sup>

독판난징시정공서가 1938년 7월 31일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일본군 점령 하에서 윤락업을 합법화하여 도화궁(桃花宮) 기원 등 윤락업소 영업 재개 신청을 받았고, 난징시경찰청에서 윤락업 가능 지역을 획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57</sup> 독판난징시정공서는 민간인의 윤락업소도 일본군 위안소 제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였다. 1938년 8월 20일 평자오룽[馮兆蓉]이 신청한 「소요각기원 조직대강(大綱)」은 일본군 군위안소 관리 규정을 본뜬 「상민위안소 조직법」과 유사하다.<sup>58</sup> 독판난징시정공서는 도화궁 기원과 인민위안소, 자하궁 기원 등에 소속된 기녀의 등기대장과 명단을 받았고, 기녀 신체검사를 지시하였다.<sup>59</sup> 독판난징시정공서는 인민안위소 주임도 임명하였다.<sup>60</sup>

- 
- 56 「기원 개설 허가증 발급과 사후 관리 당안 25건[開設妓院請發許可證并請給示保護]」(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0-14-目錄).
  - 57 독판난징시정공서가 난징시경찰청에 제출한 「시민 판용차이[樊永財] 등이 신청한 도화궁 기원의 개설에 관한 건[呈爲據市民樊永財等呈請開設桃花宮妓院一案祈鑑核由]」(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0-14-09).
  - 58 「소요각 기원 개설 허가 신청안[爲擬組織逍遙閣妓院仰祈鑑核事]」(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0-14-18).
  - 59 1938년 9월 난징시경찰청이 독판난징시정공서에 제출한 「도화궁기원 기녀 등기대장 확인안, 도화궁 기원 기녀명단[爲呈送情請登記之桃花宮妓院妓女清冊祈鑑核備查由]」(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0-15-01). 판용차이가 도화궁 기원의 기녀 12명의 명단을 올리지, 제4진료소가 신체검사 후 결과를 등록하고 명단을 보존하라고 지시하였다. 1938년 9월 11일 난징시경찰청이 독판난징시정공서에 보낸 「인민안위소 기녀 추가 등기대장[人民安慰所續請登記妓女清冊]」(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0-15-01)은 인민위안소와 자하궁(紫霞宮) 기원에 추가된 기녀 7명의 사진을 첨부하여 명단을 올리고 제4진료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등기하고 확인 후 명단을 보존하라고 하였다.
  - 60 1938년 10월 3일 독판난징시정공서가 작성한 「인민안위소 주임이 사직하고 후임을 요청한 것을 허락하는 통지[爲據呈辭去人民安慰所主任懇請備案等情批示准予備查由]」(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0-14-20). 차오홍넨이 후임 주임에 후빙난[胡炳南], 부주임에 후융쉬안[胡永煊]을 천거한 것을 허락하였다.

난징시경찰청은 1938년 위안소가 계속 늘어나자 기녀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규칙을 마련하였다.<sup>61</sup> 난징시경찰청이 독판난징시정공서에 보낸 문서에는, 난징시가 윤락업을 허용하여 1938년 12월에 53명의 매춘부가 등록하고 신체검사에 응한 상황 및 사관 지역 윤락업의 부실한 사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sup>62</sup>

친일 유신정부의 행정선전국 신문훈련소가 1939년 1월 출판한 『난징지남 [南京指南]』은 난징 오락장 중 9개소의 위안소 명칭과 주소를 소개하였다.<sup>63</sup> 난징의 일본군 위안소에는 처음에 일본인과 조선인 ‘위안부’가 많았지만, 점차 중국인 여성이 많아졌다.<sup>64</sup> 1938년 가을 난징에서 양민증이 없는 부녀자들과 함께 친일 정권 경찰에 붙잡힌 사오메이잉[邵美英]은 일본인에게 넘겨져 강제로 청남루 위안소로 보내졌다.<sup>65</sup>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친일 조직이 설립한 위안소의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중국 여성이었다. 1939년 8월 창간된 유신정부의 관

61 「난징시경찰청 기원 기녀 관리 임시규칙[南京市警察廳管理妓院妓女暫行規則]」(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0-120-01)에 「인민안위소 기녀 상용식별증 양식 [人民安慰所妓女慣用識別證式樣]」이 들어 있다.

62 1938년 12월 10일 난징시경찰청이 독판난징시정공서에 제출한 「기녀의 신체검사증 수령 여부 상황보고, 사관 지역 기녀 등기 제한에 대한 허락 요청안, 신체검사 미수령 명단[爲據第五局呈報登記妓女已領未領及呈繳受檢證情形并下關妓女登記可否酌加限制據情轉呈所核示飭遵由]」(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0-14-24)은 경찰청 제5국에 등록된 기녀 총 53명의 신체검사증 수령 여부 상황 및 관리하기 어려운 기녀 등기를 제한하는 보고이다.

63 『南京指南』에 실린 일본군 위안소 명칭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명칭	주소	명칭	주소
人民慰安所	貢院東街 2號	浪花樓慰安所	中山東路
大華樓慰安所	白下路 213號	共樂館慰安所	桃源村 3號
東雲慰安所	利濟巷普愛新村	菊水館慰安所	湖北路樓子巷 25號
靑南樓慰安所	太平路 白菜園	滿月慰安所	相府營
		鼓樓飯店中部慰安所	鼓樓飯店

行政院宣傳局新聞訓練所 編, 『南京指南』, 南京新報社, 1939년 1월판, 91~92쪽; 劉廣建, 2018, 앞의 글, 60쪽에서 재인용.

64 손염홍, 2017, 「중국의 중국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 성과 검토」, 345쪽.

65 段瑞秋, 2015, 앞의 책, 166쪽.

방지 『난징신보[南京新報]』에 실린 인민위안소 광고에 나열된 위안부 이름도 모두 중국인 여성이었다.<sup>66</sup>

### 3) 왕징웨이 정권의 '위안부' 징집과 피해자 증언

일본 육군은 1939년 9월 23일 화중파견군 사령부를 폐지하고, 화북파견군·제21군·화중의 제11군과 제13군을 지휘하는 중국파견군 총사령부(총사령관 니시오 도시조[西尾壽三] 대장)를 설치하였다. 화북과 화중에서 각각의 군이 제멋대로 친일 괴뢰정권을 만들었기에 이를 통일하기 위해 하나의 총사령부로 통합한 것이다.<sup>67</sup> 중국파견군 설치의 왕징웨이를 중심으로 기존 친일 정권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중국파견군은 1940년 3월 30일 난징 점령지에 왕징웨이를 수반으로 하는 '국민정부'를 설립하였다.<sup>68</sup> 왕징웨이 정권은 전문 인원을 파견하여 일본군 '위안부' 공작을 수행하였다. 왕 정권이 개설한 위안소 중 태평북로(太平北路) 부근의 위안소, 용담(龍潭) 위안소, 강포탕천진(江浦湯泉鎭) 위안소 등이 조사되었다.<sup>69</sup> 왕징웨이 정부하에서 '위안부'로 징집된 피해자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후원잉[胡文英]은 1940년 양제원(養濟院)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왕징웨이 정부 사회 복리국 직원에게 속아서 난징성 서쪽 낭속루 위안소로 보내졌다가 1941년에 도망 나왔다. 함께 동원된 동생 후원취[胡文秀]는 1943년 위안소에서

66 劉廣建, 2018, 앞의 글, 63쪽.

67 화북방면군, 화중파견군, 화남의 제21군은 각각 대본영에 직속되어 있었고, 화북방면군은 전쟁 개시 후 1937년 12월 베이징에 중화민국 임시정부(臨時政府)를, 화중파견군은 1938년 3월 난징에 중화민국 유신정부를 수립하였다. 후지와라 아키라 저, 서영식 역, 2013, 『일본군사사』, 제이앤씨, 294~296쪽.

68 「國民政府還都宣言」(1940. 4. 1.), 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 『僞國民政府公報』第1號, 江蘇古籍出版社; 정부기관의 임원들이 구성되었고 중국인들이 복귀하여 동년 말 난징 인구는 61만 6천 명으로 회복되었다. 윤은자, 2017, 앞의 글, 156쪽.

69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앞의 책, 89~91쪽.

사망하였다.<sup>70</sup> 상관홍원[上官紅雲]은 1940년 소풍 나갔다가 왕징웨이 정부 특수요원에게 납치되어 고루반점 중부 위안소로 보내졌다. 후에 친구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다. 항일 전쟁 승리 이후, 잡지에 가명으로 글을 써서 일본군 위안소에서 행해진 죄상을 밝혔다.<sup>71</sup>

양릉진[楊隆珍]은 1942년 여름 중화문(中華門) 밖 서가(西街)에서 품팔이를 하던 중 일본 군대에서 빨래하는 일자리를 준다는 왕징웨이 정권 보장(保長)에 속아서 동운(東雲) 위안소로 끌려갔다. 병들어 군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구타당하였고, 많은 동료 ‘위안부’들이 죽은 후 난징성 외곽 청량산에 버려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1년 3개월 후 친척이 구해주었다.<sup>72</sup>

우방잉[吳邦英]은 난징 철로이촌(鐵路二村)에서 철도 인부인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1942년 남편을 따라 강을 건너 친척집을 방문하던 중 왕징웨이 정부 밀정이 허위로 덮어씌운 죄명에 따라 잡혀갔다. 남편은 구타로 죽고 우방잉은 난징 일본 해군 부대에 예속된 학견(鶴見) 위안소로 보내졌다. 1년 후에 구출되었다.

취명상[徐明香]은 난징 교외에서 농사를 짓다가 1942년 난징으로 일하러 갔는데, 왕징웨이 정부의 특수요원에 의해 중국 공산당 신사군(新四軍) 유격대와 내통한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청에 보내졌다. 그 뒤 강제로 대화루(大華樓) 위안소에 있다가 1942년 말에 구출되었다.<sup>73</sup> 중국인 ‘위안부’ 중에는 포로도 많았다. 일본군과 전투 중에 잡힌 팔로군(八路軍) 여성 간부와 여군이 강제로 위안부가 되어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였다.<sup>74</sup> 장중친[張中琴]은 1944년 오빠가 항일 작전에 참여하여 희생되었는데, 그 지역 친일 중국인(漢奸)에 의해 강제로 일본 헌병대에 보내졌다. 헌병대에서 윤간을 당한 후 학견 위안소로 보내졌다가 반년

70 經盛鴻, 2007, 앞의 글, 151쪽.

71 段瑞秋, 2015, 앞의 책, 166쪽.

72 經盛鴻, 2007, 앞의 글, 151쪽.

73 段瑞秋, 2015, 앞의 책, 165쪽.

74 華強, 1995, 「抗戰初期的日軍慰安所」, 『檔案與史學』 4, 56쪽.

후 도망쳐 나왔다.<sup>75</sup>

### Ⅲ. 난징의 일본군 점령정책과 ‘위안부’ 피해 실태

#### 1. 난징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점령 이전 난징의 한인 여성 비율은 전체 한인 중 9.1%에 불과했지만, 점령 후 50%에 근접하거나 일시 초과할 정도로 대폭 증가하였다. 일본군은 점령지역 확대와 병사 충원으로 더 많은 ‘위안부’가 필요하였고, ‘위안부’ 징집의 범위를 식민지인 조선의 여성에까지 확대하였다. 수많은 조선인 여성들이 강제로 징집되어 중국 전쟁터로 보내졌고 난징에서도 조선인 위안부가 많이 발견된다. 1938년부터 1940년까지 난징의 한인 여성 인구수의 변동이 큰데, 이는 일본군과 함께 이동한 ‘위안부’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육군군의 아소 데쓰오[麻生徹男]는 1939년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중국에 ‘위안부’로 보낼 조선 여성 80명과 일본 여성 20명을 신체검사한 결과 조선 여성이 일본 여성보다 성병 감염율이 낮고 나이도 어려서 위안부로 좋다.”<sup>76</sup>

성병에 걸리지 않은 젊은 조선 여성이 좋다는 내용의 보고가 조선의 젊은 여성이 대거 ‘위안부’로 동원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난징에는 일본군의 허가를 받은 조선인 위안소가 존재하였고, 1940년 말 난징 조선인의 직업별 호구 통계에 의하면, 직종별 최다 호구 수는 84호인 ‘창기’

75 經盛鴻, 2007, 앞의 글, 151쪽.

76 麻生徹男, 1993, 「花柳病の積極的予防法」, 『上海より上海へ-兵站病院の産婦人科醫』, 石風社, 215~216쪽.

였다. 이들은 1인 1호를 구성한 일본군 '위안부'로 판단된다.<sup>77</sup> 난징 주재 일본군 부대 제15사단의 전후 정보에 의하면, 난징에 일본군 '위안부'가 1,240명이 있었는데 그중 78.9%가 현지에서 징집되었고 나머지는 조선과 일본이었다.<sup>78</sup> 조선인 '위안부'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난징의 일본군 조선인 '위안부' 수는 대체로 100명 전후한 규모로 추측되는데, 군의 이동에 따라 그 수의 변화가 컸다. 난징을 거쳐간 한인 '위안부'는 오오목·김의경(金義慶)·신경란·신순임·배족간(裴足間)·박영심(朴永心)·역영란(易英蘭)·김은례 등이 확인되며 이들의 여정은 아래와 같다.

오오목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37년 겨울 방직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나섰다가 만주에서 일본 사람에게 넘겨졌다고 한다. 4명의 여성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시작하였고, 부대 이동으로 난징에 가서 '위안부'로 있다가 해방 후 9년 만에 귀국하였다.<sup>79</sup> 김의경은 서울에서 태어나 1938년 봄 일본군에 속아 난징으로 가서, 강제로 위안부가 되어 이름을 '아카리'라고 하였다. 난징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일본군 부대를 따라 이창[宜昌]에서 2년, 창사[長沙]에서 4년 정도 거의 7년간을 일본군 성노예로 지냈다.<sup>80</sup> 신경란은 1938년 17세 때 전남 보성에서 간호부 모집에 응하여 서울로 갔는데 21명과 함께 기차로 신의주를 거쳐 다롄[大連]으로 이동하였고, 배로 상하이에 도착한 후 항저우[杭州]로 끌려갔다. 항저우 일본군 장교구락부에서 '위안부' 생활을 시작하여 일본군을 따라 난징을 거쳐 1938년 말 일본군이 점령한 한커우[漢口]로 이동하였다가 1939년에 일본군 장교의 도움으로 압록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왔다.<sup>81</sup>

77 윤은자, 2017, 앞의 글, 163·166쪽.

78 손영홍, 2017, 「일본군의 중국인 '위안부' 징집에 대한 일고찰」, 166~167쪽.

7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 I』, 한울, 87~90쪽.

80 經盛鴻, 2007, 앞의 글, 153쪽.

8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200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풀빛, 21~52쪽.

신순임은 경성에 거주하던 1938년 봄에 서만규의 중개로 난징 점령지로 가서 하루에 일본군 70명을 상대해야 하는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병에 걸려 간신히 전차금(前借金)을 반환하고 1939년 8월 경성으로 돌아왔다.<sup>82</sup> 배족간은 전북 장수군 출신으로, 1938년 광복공장에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사람을 따라 나섰다. 기차로 다롄을 거쳐 배로 상하이로 갔고, 항저우 위안소에서 1~2년 위안부로 지내다가 난징 교외 작은 마을의 일본군 주둔지인 진촌(陳村) 위안소로 이동하였다. 군영과 걸어서 10분 거리의 이 위안소에서 배족간은 3년을 지냈고, 이름 대신 5호 또는 일본 이름 하루코[春子]로 불렸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에서 밤 12시였다. 5시까지의 사병을 상대하였는데, 규정상 병사는 10~20분간 머물렀으며 30~40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하였다.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주로 군관을 상대하는 시간이었는데, 군관은 위안소에서 밤을 지낼 수 있었다. 이곳 위안부는 모두 매달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하였다.<sup>83</sup>

박영심은 평남 남포에서 태어나 열일곱 살이던 1939년에 일본군 후방에서 일할 잡부를 모집한다는 일본 경찰의 말에 속아 열차로 또 트럭에 실려 난징으로 갔다. 이제항 동운 위안소 19호 방에서 3년간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박영심은 일본 이름 우타마루[歌丸]로 강제로 개명되었고 일본 여성의 복장을 입었다. 박영심은 위안소에서 온갖 괴롭힘을 당하여 많은 상흔이 몸에 남아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 위안소에서 ‘아편’을 피우는 법을 배웠다.<sup>84</sup> 1942년 5월에 박영심은 일본군의 ‘군수품’이 되어 동남아 전장으로 보내졌다. 미얀마와 윈난성

82 신순임은 조선으로 돌아와 소개업자 서만규에게 위안소의 참상과 피해 사실을 말했으나, 도리어 ‘조언비어(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받았다. 이는 1939년 9월 13일 경기도 경찰부장이 경무국장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앞으로 보낸 경고비(京高秘, 비밀 보고서) 제2303호에 담긴 내용이다(“하루 70명 상대...” 증언한 위안부 처벌한 일제, 『오마이뉴스』 2019. 10. 31.).

83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앞의 책, 60쪽;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7,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168~180쪽.

84 쑤즈량·천리페이 저, 이선이 역, 2017, 『일본군 중국 침략 도감 제19권-일본군 위안부’와 성폭력』, 늘봄플러스, 83쪽.

[雲南省] 덩충[騰衝]·송산[松山]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1944년 중국 군에 의해 발견되었다.<sup>85</sup>

역영란은 전남 승주 세평리 출신으로, 식당에서 일하다가 1939년 일본 사람이 중국으로 데리고 왔다고 한다. 기차로 베이징을 거쳐 상하이까지 왔고 일본 군인과 함께 지내다가 배를 타고 난징에 도착하여, ‘위안부’ 생활을 시작하였다. 난징에서 부대를 순환하다가, 그중 한 부대를 따라 한커우에서 이틀 정도 가야 하는 농촌에서 방이 20개 정도 있는 일본군 위안소에 정착하였다. 일본 패망 후 중국 농부와 결혼해 살았다.<sup>86</sup> 김은례는 평양 출신으로 1942년 5월 집에 찾아온 일본인과 조선인 순사가 일본 방직공장에 보내야 한다는 통고와 협박을 받았다. 평양에서 60명 정도와 함께 출발하여 수일간 배를 타고 10명 정도가 난징에 도착하여 산골 가건물에서 ‘위안부’ 생활을 시작하였다. 조선 여자가 관리하였는데 6개월 후 이동하여 타지에서 1년을 지냈고, 후에 다시 난징 민가에서 13명의 한인 여성과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sup>87</sup>

조선인 ‘위안부’가 수용되었던 곳은 안락주점(安樂酒店), 청남루 위안소, 일지관(日支館) 요리점 겸 위안소, 일이삼정(一三亭) 위안소, 금수루(金水樓) 위안소, 화월루(花月樓) 위안소, 조일루(朝日樓) 위안소, 철로교(鐵路橋) 위안소 등이 있으며, 이 중 3곳은 거리명과 건물명이 확인되었다. 난징 조선인 위안소 위치는 난징시 중심 변화가와 북부 외곽에 집중되어 있는 전체 위안소의 분포 상황과 대체로 일치한다.<sup>88</sup> 조선인 ‘위안부’의 경우는 중국인 ‘위안부’와 달리 위

85 박영심은 1942년 봄과 여름 사이, 일본군에 의해 상하이와 싱가포르를 거쳐, 버마(현재의 미얀마)로 보내졌고 후에 원난 송산에 신설된 위안소로 보내졌다. 經盛鴻, 2015, 앞의 글, 17쪽.

86 한국정신대연구소, 1995,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 135~144쪽.

87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9,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120~136쪽.

88 난징의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군 병영과 군사기관이 있고 가장 변화한 상업구역이자 일본인이 집중 거주하던 난징성 남부 부자묘와 태평로 일대, 기차역과 항구가 있던

안소에서 구출해줄 친척이나 친구도 없었고, ‘군수품’처럼 난징을 거쳐 중국의 다른 지역이나 심지어 동남아 등지로 끌려 다녀야 하였다.

## 2. 난징 점령지 ‘위안부’의 성병·아편·학대·사망 피해

일본군의 가혹한 점령정책과 규율 문란 등으로 인해, 난징의 ‘위안부’들은 성병과 아편, 살해와 자살 등 육체적·물질적·정신적으로 복합적인 피해를 입었다.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에 의한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의 성욕 배설의 도구 혹은 성노예가 되었다. 위안소에서 ‘위안부’는 일본군과 위안소 업주에 의해 일본 이름으로 불리거나 이름 대신 1호, 2호, 3호 등으로 죄인처럼 번호로 불렸다. 위안소에 오는 관병들이 고향에 온 것처럼 느끼도록 모두 일본 옷을 입도록 강요받았고, 양말을 신지 못하게 하였다. 난징의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외에도, 간호·세탁·주방·잡일 등 다양한 일을 하였으며 위안소에서 각종 비인간적인 학대와 고통을 당하였다.<sup>89</sup> ‘위안부’들은 병에 걸려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복종하지 않거나 반항하면 벌을 받았다. 이제항 위안소는 반항하는 ‘위안부’를 2층 다락방에 감금하고 밥도 주지 않았다. 만약 각종 질병에 걸리거나 정신 상태가 이상하면 바로 버려지기도 하였다. 김의정은 머리에 일본 군인의 총 개머리판에 맞은 상처가 남아 있고, 일본군의 폭행에 저항하다 왼손을 크게 다쳐 기형이 되었고, 매독으로 평생 고생하였다.<sup>90</sup>

난징의 ‘위안부’들은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받아야 했고 성병이 검출되면

---

북부 사관 지역에 많았다. 난징시 외곽의 포구, 강포, 탕산 지역의 위안소도 조사되었다. 經盛鴻·管爾東, 2004, 『侵華日軍南京慰安所調查與研究』, 『南京社會科學』 12,

89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앞의 책, 37~39쪽.

90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320~322쪽.

위안소에서 나와 치료를 받아야 하였다.<sup>91</sup> 성병 검진을 통해 일본군은 성병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일본 육군 군의 아소 데쓰오는 1939년 일본군의 성병을 막기 위해 군전용 위안소를 이용해야 하며 조선 여성이 성병 감염율이 낮고 나이도 어려서 위안부로 좋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그의 관찰과 달리 1940년 조사에 의하면 조선인 ‘위안부’가 중국·일본 여성에 비해 성병 환자가 많았다. 그 이유는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은 성병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조선인 ‘위안부’의 진출이 활발한 만큼 병균 보유자도 많게 되었다. 심지어 이들은 성병 치료가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하였다.<sup>92</sup>

고통스런 상황에 처한 난징의 ‘위안부’는 많은 경우 아편에 의지하였다. 일본 군인과 ‘위안부’들 사이에서 아편 거래와 주사·흡식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1937년 8월 13일 상하이 개전 후 일본 상하이파견군과 화중방면군 및 일본 해군 등은 거의 동시에 특무, 정보 인원을 다롄과 텐진 등에 보내 비밀리에 다량의 아편, 헤로인 등 독극물을 상하이로 가져와 팔아서 부족한 군비와 특무비용에 조달하였다.<sup>93</sup> 난징 점령지의 아편정책은 일본의 국책이었으며, 일본 당국이 아편 판매를 지휘하였다. 난징은 아편 판매망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금릉대학 교수 마이너 베이츠(Miner Searle Bates, 1897~1978)에 따르면, 난징 점령 후 난징 인구의 3분의 1이 아편을 흡식하였으며 도심 빈민구역 길거리에서는 마약이 판매되었다. 베이츠 교수가 1938년 11월 22일 상하이의 한 매체에 제출한 난징 아편무역 조사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91 「소요각기원조직대강[逍遙閣妓院組織大綱]」(南京市檔案館 檔案 1002-10-14-18)

92 소현숙, 2019, 「'위생'이라는 이름의 폭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식민과냉전연구회 국제학술대회, 『한일 역사갈등의 원점, 식민지배 책임에 대한 고찰』, 53~55쪽.

93 아편은 모두 일본 배가 만주에서 운반해왔다. 小林英夫·林道生, 2005, 『日中戰爭史論-汪精衛政權と占領地』, 東京: 御茶の水書房, 281쪽.

“지난 며칠간 일본과 조선의 ‘위안부’ 조직이 80상자의 아편을 사들였다. 중요 판매자에 의하면 2주 전에 일본 대리인이 200여 상자의 이란 아편을 들여왔는데, 이 화물은 아마 아편 관리국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하다.”<sup>94</sup>

박영심은 난징의 위안소에서 생활하던 당시 아편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김은례도 “중국에는 아편쟁이들이 많아서, 노동자나 가정집 여자가 아편 안 찌른 사람이 없었고, 중국인·조선인 장사들이 몰래 와서 파는데, 함께 있던 ‘위안부’들도 몰래 아편을 했고 군인들이 와서 찢러줬다”라고 하였다.<sup>95</sup> 이러한 광범위한 마약 거래와 중독 현상은 일본군의 점령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당시 병들고 암울했던 난징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sup>96</sup> 친일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일본군은 아편을 이용하였다. 친일 중국인을 보상하는 데에도 아편을 활용하였다. 마을 유지 등 중국인을 회유하여 인맥을 넓히고 일본군에 필요한 정보를 모을 때 지폐나 금보다 아편이 더 가치가 있었다.<sup>97</sup>

위안소에서는 위안소 경영자가 돈을 관리하였다. 위안소에 입장하는 군인들에게 표를 받았지만 그 표는 위안소 관리자가 가져갔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 그리고 생활용품을 살 수 없었다. 위안부들은 군인들에게 군표를 받았고 이것을 저축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군표는 가치가 없었다. 일본군 위안소는 규칙에 따라 군표로 지불하도록 했으나, 왕징웨이 정부가 수립되고 1941년 저비권(儲備券)을 발행한 후 일본 군인은 군표 대신 대부분 저비권을 지불하였다. ‘위안부’들에게 저비권은 군표보다도 더 가치가 없었다. 난징은 친일 정부 통화체계의 혼란과 지폐 남발로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기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은례는 일본 군인에게 받은 중국 돈을 3년 동안

94 經盛鴻, 2015, 『南京淪陷八年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909쪽.

95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9, 앞의 책, 133~134쪽.

96 윤은자, 2017, 앞의 글, 160~161쪽.

97 호사카 마사야스 지음, 정선태 옮김, 2016, 앞의 책, 219~223쪽.

모았으나, 해방 후 쓸모가 없게 되어 불로 태우고 왔다고 한다.<sup>98</sup>

일본군은 ‘위안부’를 ‘특수 영양을 지닌 전략물자’로 간주하고 ‘군수품’으로 취급하였다. ‘위안부’들은 중국과 해외의 기타 전장으로 보내져서 그곳의 일본군 부대에게 유린당하였다. 난징에서 일본군에게 잡혀간 여성들은 난징뿐 아니라 외지로도 많이 보내졌다. 일본인이 설립한 고향루와 낭숙루 위안소의 ‘위안부’들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전장이 동남아로 확대된 후 1942년 5월에 다시 일본 남방파견군 사령부에 의해 동남아로 파견되어 갔다.<sup>99</sup> 난징 ‘위안부’ 중 320명은 비밀리에 동북지역으로 보내져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sup>100</sup>

일본군이 저지른 학대와 학살로 인해 상당히 많은 ‘위안부’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살해당하였다. 피해자들은 질병이나 일본군의 학대로 사망하였고, 또 도망 등의 이유로 생긴 빈자리는 바로바로 채워졌다. 새로 충원한 ‘위안부’들도 적지 않게 실종되었다. 피해자 수를 정확하게 통계할 수 없지만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다.<sup>101</sup> ‘위안부’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서는 매독도 적지 않다. 오오목은 난징의 위안소에 있을 때, 같이 간 5명 중 4명이 죽었고 매독이 심해 죽은 여자도 있었다고 하였다.<sup>102</sup> 김은례는 같이 있던 황해도 출신 여성이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고, 또 하나는 자고 있는 군인한테서 몰래 총을 훔쳐 자기가 총을 쏘서 죽었으며, 또 아편해서 죽거나 폭격으로 죽

98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9, 앞의 책, 135쪽.

99 1941년 12월 말 일본군이 버마를 공격하고 1942년 여름에는 중국 윈난성 서부로 진격하였다. 1942년 5월, 일본 남방파견군 사령부의 명령, 난징 ‘고향루 위안소’와 ‘낭숙루 위안소’의 위안부를 남양(南洋)으로 보내어 주버마 일본군 부대로 분배하였다. 經盛鴻, 2015, 앞의 글, 17쪽.

100 『日軍侵華暴行實錄(一)』, 1995, 北京出版社, 518~523쪽; 손염홍, 2017, 「일본군의 중국인 ‘위안부’ 징집에 대한 일고찰」, 182쪽에서 재인용.

101 1945년 일본군 항복 당시 난징의 일본군은 13만 8,000명, ‘위안부’와 병사의 비례를 1 : 29로 추산해보면 ‘위안부’가 4,758명이고, 질병, 도망 및 사망 등 원인으로 생긴 교체 인원과 난징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보내진 ‘위안부’를 합치면 난징 위안소에서 피해를 입은 ‘위안부’ 총수는 2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10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3, 앞의 책, 89~90쪽.

은 여성도 있었다고 하였다.<sup>103</sup>

전쟁 종결과 더불어 일본군은 위안부에 대한 처리에서도 책임 방기, 반인륜적인 작태를 보였다. 그들은 ‘위안부’들을 현지에 버려두고 일본인들만 동반하여 귀국하였다. 이로 인해 한인 위안부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귀환할 방법을 찾아야 하였다. 난징 위안소에서 해방을 맞이한 오오목은 동료와 함께 그곳에서 장사하던 한인 남자를 따라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까지 갈 수 있었고, 도중에 기차 사고를 당했지만 다치지 않고 신의주에서 배를 타고 인천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왔다.<sup>104</sup>

### 3. 일본 군대의 국제법 위반, 규율 문란 행위

중국에 선전 포고를 하지 않은 침략전쟁에서 일본군은, 1937년 8월 5일 육군차관 통첩(通牒)으로 “교전법규에 관한 각종 조약을 모두 적용하여 행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일본군이 전시 포로에 대한 국제 조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난징대학살이나 ‘위안부’ 강제동원과 학대의 원인이 되었다. 일본군과 정부는 각 현에서 모집할 ‘위안부’ 배당 인원부터 이송에까지 직접 관여했지만, 이런 지시는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안부’ 모집에 ‘군의 지시’ ‘군의 관여’라는 말을 극도로 꺼렸다. 또 전쟁을 수행하는 군이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위안부’ 동원을 위한 취업사기와 인신매매 등 불법적·폭력적인 상황이 묵인되었다. 특히 미성년자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했음에도 내무성은 이를 묵인하였다. ‘위안부’로 모집된 여성 중에는 21세 미만의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친일 조직의 위안소 관리 문서, 군의관들의 성병 검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군부는 비록 위안소를 관리하는 규칙을 명문(明文)으로 규정하여, 술에

103 한국정신대연구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9, 앞의 책, 133쪽.

10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3, 앞의 책, 90쪽.

취한 일본군은 위안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총칼을 휴대하는 것도 금지했지만 사실상 이는 전혀 준수되지 않았다. 전쟁 개시 후 겨우 4년 동안 사단 수 3배, 병력 수 10배의 대확장을 이루고, 현역병 징집률은 점차 증가하여 1941년에 51%에 달하였다.<sup>105</sup> 부대 안의 보충병 비율, 즉 군대교육 미경험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병사의 질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전쟁 개시 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었다.<sup>106</sup> 1943년 말 중국 내 일본군은 25개 사단, 11개 독립여단, 전차 1개 사단으로, 총 병력이 100만 명에 달하면서 군기 문란이 악화되었다. 특히 일본 군대 안의 범죄자는 1937년 1,138명에서 1940년 2,820명, 1941년 3,148명으로 증가하였다. 장기간의 전쟁과 귀국에 대한 희망이 없는 절망감에서 음주나 도박에 빠지는 자가 늘어나고, 부패한 간부에 대한 불만이 병사들 사이에 퍼져갔다. 군기 확립이 중국 파견군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검열과 엄격한 처벌이 행해졌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sup>107</sup>

위안소 설치의 일본군의 점령지 여성에 대한 강간과 성병 만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병사들이 위안소에 간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스트레스는 힘없는 위안부들에게 향하였다. 위안소 내에서나 밖에서나 병사들의 비위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중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어 정예부대가 남방으로 파송되자 중국에 남은 병사들의 질은 현저히 저

105 1937~1941년 사단 수 증강일람표

	1937	1938	1939	1940	1941
본토 및 조선	3	2	7	11	11
만주	5	8	9	12	13
중국	16	24	25	27	27
합계	24	34	41	50	51

후지와라 아키라 저, 서영식 역, 2013, 『일본군사사』, 제이앤씨, 300쪽.

106 야마다 아키라·윤현명 옮김, 2014, 『일본 군비확장의 역사-일본군의 팽창과 붕괴』, 어문학사, 185~188쪽.

107 후지와라 아키라 저, 서영식 역, 2013, 앞의 책, 333쪽.

하되었다. 만행에 익숙해졌고 고참병 중 ‘살인의 프로’, ‘도둑질의 프로’, ‘방화의 프로’를 자칭하는 자가 나타났지만 그것을 제지하는 군의 규율은 이미 기능을 상실하였다.<sup>108</sup>

난징의 위안소는 일본 당국의 조직과 지지 아래 1937년부터 8년 동안이나 장기 지속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에도 일본군의 위안소는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다가 9월 중국과건군총사령부(支那派遣軍總司令部, 만주국 제외)가 난징에서 정식으로 항복한 후에 해산되었다. 이로써 난징에서 8년 동안 존속한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제도는 종언을 고하였다.

#### IV. 맺음말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은 일본군이 점령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규모만으로도 다른 지역과 차별되며, 일본군의 점령지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징집 과정에서 안전구(난민 피난구역) 국제위원회의 서양인들도 개입되어 기록을 남겼으며, 중국인 친일 조직과의 협작을 통해 위안소가 운영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일본군이 난징의 위안소 설립과 운영, ‘위안부’ 징발에 직접 개입하였음이 화중방면군 등 일본군 고위층의 명령과 일본군 문건에 드러나 있다.

난징시당안관 자료에 의하면, 일본군 병참사령부가 위안소 운영에 직접 개입하였고, 일본군이 현지 친일 중국인으로 구성된 난징시자치위원회가 일본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난징특무기관과 일본군 병참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일본군 ‘위안부’ 징집과 위안소 설치에 협력하였으며, 일본군이 민간인의 재산을 징발·강

---

108 이 전쟁에서 일본의 패배는 일본 군대 본래의 성격과 모순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체의 권력이 천황에게 집중된 형식 아래서 정치가도 군부 지도자도 모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대한 무책임의 체계’(丸山眞男, 『軍國主義者の精神構造』)가 그것이다. 호사카 마사야스 지음, 정선태 옮김, 2016, 앞의 책, 219~223·230쪽.

제 적용하여 일본군 위안소로 사용했음이 확인된다. 일본군과 친일 기관은 전쟁으로 경기가 침체된 난징시의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군위안소를 설치하였고, ‘윤락업’(매춘업)을 합법화해 영업 신청을 받았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 규정을 본뜬 민간인 이용 매춘업소를 위안소 명의로 개설하고자 신청한 서류도 있는데, 이는 일본군 위안소를 모방한 민간인들의 매춘업소가 난징 점령지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후 시민들의 피해 사례를 기술한 문서자료를 통해 일본군이 중국인 기업 사무실이나 주택 등 민간인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빼앗아 일본군 위안소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이 전쟁 패망 때 ‘위안부’에 관한 문서를 소각했고, 일본 정부가 오늘날에도 ‘위안부’ 관련 역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의 숫자를 정확하게 통계하기는 어렵지만, 위안소 유적 ‘위안부’ 피해자 증언 조사는 계속 이어져왔다. 2003년 중국 ‘위안부’ 문제연구센터는 평양의 박영심 피해자를 난징으로 초청해 함께 위안소를 방문하였다. 2014년 난징시정부가 이곳에 ‘난징 리제항 위안소 유적 진열관’을 설치하였다. 진열관은 난징대학살희생동포 기념관의 분관으로 지정되었다. 일본군이 당시 ‘위안부’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앴고, 여전히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며, 증인들도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는 위안소를 찾거나 관련 사료를 발굴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위안소를 보존하여 ‘위안부’ 기념관을 설립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전쟁범죄인 군위안소 유적을 보존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발생과 전개역사, 특징과 죄증을 드러내고 수많은 피해자의 고난을 역사에 기록할 수 있다.

중국에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소를 더 조사하고 더 많은 기록자료를 찾아 자료집을 편찬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기관 및 연구자들과 국경을 넘나드는 연구 교류와 자료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편, 2018, 『일본군'위안부'자료 목록집』, 동북아역사재단.
- 신문 아카하타 편집국 저, 홍상현 역, 2019, 『전쟁의 진실-증언으로 본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정한책방.
- 꾸즈랑·천리페이 저, 이선이 역, 2017, 『일본군 중국 침략 도감 제19권-일본군'위안부'와 성폭력』, 늘봄플러스.
- 야마다 아키라, 윤현명 옮김, 2014, 『일본 군비확장의 역사-일본군의 팽창과 붕괴』, 어문학사.
- 요시미 요시아키, 2006, 『일본군 군대위안부』, 도서출판 소하.
- 티모시 브룩 저, 박영철 역, 2008, 『근대 중국의 친일합작』, 한울(Timothy Brook, 2005, *Collaboration: Japanese Agents and Local Elites in Wartime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회, 1993~1999,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3』, 한울.
- 한국정신대연구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5』, 풀빛.
- 한국정신대연구소, 1995/2003,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2, 한울.
- 호사카 마사야스 지음, 정선태 옮김, 2016, 『쇼와 육군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일본 제국주의의 몸통』, 글항아리.
- 후지와라 아키라 저, 서영식 역, 2013, 『일본군사사 상 전전편』, 제이앤씨.
- 經盛鴻, 2005, 『南京淪陷八年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段瑞秋, 2015, 『女殤』,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 蘇智良, 2015, 『日軍慰安婦研究』, 北京: 團結出版社.
- 蘇智良·張建軍 主編, 2017, 『南京日軍慰安所實錄』, 南京: 南京出版社.

約翰·拉貝, 1997, 『拉貝日記』,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張憲文 主編, 2015, 『日本侵華圖志 23-扶植偽政權』, 山東畫報出版社.  
 麻生徹男, 1993, 『上海より上海へ-兵站病院の産婦人科醫』, 石風社.  
 小林英夫·林道生, 2005, 『日中戰爭史論-汪精衛政權と占領地』, 東京: 御茶の水  
 書房.

## 논문

강영심, 2007, 「중전후 중국지역 일본군 위안부 행적과 미귀환」, 『한국근현대사학회』  
 40.  
 吉見義明, 2007, 「일본의 군'위안부'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일본군'위안부'문제 국  
 제학술대회, 『일제 식민지배의 폭력성과 일본군'위안부』, 한국근현대사학회·동북  
 아역사재단.  
 소현숙, 2019, 「'위생'이라는 이름의 폭력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식민과냉전연구회 국  
 제학술대회, 『한일 역사갈등의 원점, 식민지배 책임에 대한 고찰』.  
 손염홍, 2017, 「일본군의 중국인 '위안부' 징집에 대한 일고찰」·「중국의 중국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 성과검토」, 김경일 외 지음, 『동아시아 일본군'위안부' 연구』, 한  
 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윤은자, 2017, 「중일전쟁 시기 南京한인의 群像-통계와 표본석을 중심으로」, 『東方學  
 志』 181.  
 川田文字, 2011, 「남경 강간과 남경의 위안소」,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엮음, 강혜정  
 옮김, 『일본의 군'위안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후루하시 아야(高橋綾), 2015, 「일본 군인의 회고록으로 보는 '위안소'에 대한 인식」,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와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經盛鴻, 1999, 「南京的慰安婦與慰安所」, 『抗日戰爭研究』 6.  
 \_\_\_\_\_, 2000, 「侵華日軍南京“慰安婦”制度述論」, 『江海學刊』 12.  
 \_\_\_\_\_, 2000, 「侵華日軍在南京的又一暴行-南京“慰安所”揭秘」, 『檔案與建設』 8.  
 \_\_\_\_\_, 2015, 「曾經淪爲日軍“慰安婦”的朝鮮老人朴永心」, 『百年潮』 4.  
 經盛鴻·管爾東, 2004, 「侵華日軍南京慰安所調查與研究」, 『南京社會科學』 12.  
 經盛鴻·王冠保, 2005, 「南京的慰安所與'慰安婦」, 『鐘山風雨』 2.

- 經盛鴻·王麗娜·曹燕, 2007, 「南京的慰安婦的血泪-對南京侵華日軍南京慰安所的最新調查報告」, 『百年潮』 5.
- 經盛鴻·錢春霞, 2005, 「對南京侵華日軍慰安所的最新調查」, 『江蘇地方志』 4.
- 劉广建, 2017, 「是普通妓院還是日軍慰安所-關於南京“人民慰安所”的考證」, 『檔案與建設』 7.
- , 2018, 「民國出版物中的日軍“慰安婦”制度」, 『日本侵華南京大屠殺研究』 9.
- 蘇智良, 2016, 「南京大屠殺與“慰安婦”制度」, 『中國“慰安婦”真相』, 南京出版社.
- , 2018, 「侵華日軍南京慰安所研究」, 『日本侵華南京大屠殺研究』, 2018-2.
- 王炳毅, 2005, 「南京慰安婦悲恨往事實錄」, 『檔案與建設』 7.
- 袁志秀, 2016, 「南京利濟巷慰安所舊址陳列館與“慰安婦”歷史的固化」, 『檔案與建設』 2.
- 張連紅, 2000, 「南京下關區侵華日軍慰安所的調查報告」, 『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11.
- 華強, 1995, 「抗戰初期的日軍慰安所」, 『檔案與史學』 4.

## 난징[南京] 점령지의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피해

김정현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은 난징대학살을 저지른 일본군 사령부 소재지로서 군인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가장 장기적으로 완전하게 실시되고 위안소와 ‘위안부’가 많았던 지역이며, 중국인·조선인·일본인 및 기타 국가 ‘위안부’ 피해가 모두 발생하였다. 난징은 일본군 고위층의 계획 아래 점령 직후 즉각 위안소가 세워졌다. 일본군 직영, 일본인 개설, 친일정권 설립 위안소가 난징 점령지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일본이 패전하여 떠날 때까지 계속 존속하였다.

일본군은 위안소를 신속히 설립하기 위해 난징의 부녀자를 대대적으로 강제 징발하였다. 난징에서는 친일 세력에 의한 ‘위안부’ 징집이 다수를 이루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군의 난징 점령정책과 관련이 있다. 일본군은 난징의 친일 세력과 정권을 조직하고 중국인 ‘위안부’를 징집하고 위안소를 운영토록 하였다.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8년 가까운 기간에 난징 시내와 교외 지구에 세운 위안소는 40~60여 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일본군 위안소의 유형도 다양하였다. 보고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난징의 친일 조직이 남긴 문서와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난징 점령지의 위안소 제도의 실상과 성병·아편·자살·살해·사망, 일본 군대의 규율 문란, 국제법 위배 행위 등 ‘위안부’ 피해의 다양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현재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피해국과 피해자에게 있게 된 상황에서, 본고를 통해 전시 난징 점령지에서 실시된 일본군 위안소의 유형과 ‘위안부’ 제도에 의한 피해가 더욱 분명히 밝혀지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난징 점령정책, 일본군 위안소, 일본군‘위안부’ 제도, 친일 조직, ‘위안부’ 피해

## ABSTRACT

# Japanese military brothel an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damage in Nanjing Occupied Area

Kim Jeonghyun

Nanjing was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lace where the Japanese military headquarters—that committed the Nanjing massacre—was located. Ergo, as there was a large number of Japanese military brothels in the area,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was fully implemented for the longest period here. Having the largest number of military brothels and “comfort women,” Nanjing saw the greatest number of “comfort women” victims including Chinese, Korean and Japanese.

Japanese military brothels were established immediately after the occupation under the plan of high-ranking Japanese military officials. The military brothels were established by the Japanese military directly, by Japanese citizens, and by the pro-Japanese governments in various locations in the city and continued to exist until Japan’s surrender.

To quickly establish the military brothels, Japanese military officers forcibly requisitioned women in Nanjing. The majority of these women were forcibly recruited a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by pro-Japanese Chinese, and the reason behind such situation wa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s policy of Nanjing occupation. The Japanese military formed a pro-Japanese regime in Nanjing and let the regime to conscript “comfort women,” and to operate the stations. The types of the Japanese military brothels were diverse, ranging from direct operations by the Japanese military, operations by ethnic Koreans in Japan, privatization of the designation of Japanese soldiers to operations by pro-Japanese organizations.

During the eight years of Nanjing occupation by the Japanese military, various types of comfort stations were operated in the cities and suburbs of Nanjing; approximately 40 to 60 locations have been investigated so far.

Based on the documents of yet-to-be-released pro-Japanese organization of Nanjing and the testimonie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this paper analyses the reality of the comfort stations during the Nanjing occupation, including the following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opium, suicide, murder, death, disruption of discipline by the Japanese military,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various consequence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the current responsibility lies on the victims and the victim countries to prove the establishments of Japanese military’s comfort stations and the sufferings of the “comfort women,” this paper aims to help heal the wounds of the victims and to further reveal the truths of the types of Japanese military brothels and the “comfort women”

system in the occupied Nanjing area.

**Keywords:** Nanjing Occupation Policy, Japanese military brothel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pro-Japanese organizati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damage



# 연합군 자료를 통해 본 버마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

공준환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 I. 머리말
- II. 버마로의 '위안부' 동원
- III. 버마의 일본군 위안소
- IV. 조선인 '위안부'의 귀환
- V. 맺음말



## I. 머리말

일본군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중 ‘위안부’ 제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시성폭력을 자행하였다. 전쟁에서 병사들에게 여성의 성을 제공하거나 혹은 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근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sup>1</sup>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군과 국가의 계획에 따른 장기간 체계적인 여성 동원, 일본 제국의 확대를 위한 식민지 여성의 희생 등 다른 전시성폭력과 구분되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sup>2</sup> 일본군의 체계 속에 편입된 위안소는 일본군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설치되었고, 군대의 필요에 따라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을 위안소로 끌고 갔다. 이 제도가 영향을 미친 모든 곳에서 수많은 전시성폭력 피해자가 생겨났다.<sup>3</sup>

---

\* 투고: 2019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19년 11월 14일, 게재 확정: 2019년 11월 15일

\*\* 이 논문은 2019년도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수행 결과물임(NAHF-2019-기획연구-11).

- 1 이것은 국군의 위안소, 나치 독일의 위안소, 전시 연합군의 여성에 대한 접근 등에서 나타난다. 다음의 논문이 참조된다. 박정미, 2011,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7권 2호; 정현백, 2004, 「나치의 강제매춘정책과 인종주의」, 『역사비평』 2004년 봄호(통권 66호); Tessa Morris-Suzuki, 2015, “You Don’t Want to Know About the Girls? The ‘Comfort Women’, the Japanese Military and Allied Forces in the Asia-Pacific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 13, Issue. 31, No. 2, August 03.
- 2 정진성, 2003, 「전시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윤명숙은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을 (1) 군위안소에서의 성폭력, (2) 납치 감금된 상태에서의 정기·부정기적 성폭력, (3) 전투 중이나 소탕 작전 중에 발생한 성폭력으로 나누고, 이 중 첫 번째 형태만을 군위안소 제도라고 정의한다. 윤명숙, 최민순 옮김, 2015,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실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sup>4</sup>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동원 과정에서 일본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밝혀려는 시도가 있었고, 일본군과 식민지 정부가 어떻게 ‘위안부’를 동원하고 관리하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피해 실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많이 진척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일본 공문서 자료와 피해자의 증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관한 연구는 변곡점에 놓여 있다. 앞으로 ‘위안부’ 제도 연구의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와 시각,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sup>5</sup>

자료의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활발하게 발굴·공개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전쟁 당시 연합군이 생산한 소위 ‘연합군 자료’이다. 군사편찬위원회가 다수의 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연구자들을 통해 새로운 조선인 ‘위안부’의 동영상이나 사진, 문서 자료들이 발굴되었다. 연합군 자료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방선주,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등에 의해 중요 문서 일부가 연구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위안부’ 제도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군 자료는 일본의 공문서와 달리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입장에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합군이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라는 생소한 제도를 마주하고 관찰하면서 작성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다. 연

---

소제도』, 이학사, 26~27쪽. 박정애는 제도화되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로 보기 힘들지만 일본 제국 내에서 관리된 성매매 시설의 피해자들은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로 볼 것을 제안한다. 박정애, 2015,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사학연구』 120호, 194~197쪽.

4 대표적인 제도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2006,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하; 윤명숙, 2015, 앞의 책.

5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일본과 식민지의 공창제, 일본군의 체계에서 위안소의 위치, 전쟁에 있어서 여성의 문제라는 젠더적 시각,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의 문제, 일본의 전쟁범죄, 전시성폭력, 국제인권법적 관점 등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어왔다.

합군의 관심이 되었던 위안소의 운영 체계나 ‘위안부’의 국적과 구성, 일본군과 현지 여성의 문제 등 몇몇 주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남아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합군 자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연구는 그다지 없었다. 연합군 자료만으로 연구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에 특정한 주요 자료들만이 인용되어왔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롭게 발굴된 연합군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일본의 공문서나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등을 함께 교차하는 것으로 자료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연합군 자료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일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전쟁 당시 버마(현재의 미얀마) 지역에서 작성된 문서들이다. 버마는 아시아에서 미·영·중의 연합군이 공동으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전개한 유일한 지역으로서 전략적 요충지였다. 3년간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연합군은 일본군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일본군과 전투하며 문서를 노획하고 일본군 포로들을 심문하거나 현지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획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마주하였다. 나아가 몇몇 지역에서는 ‘위안부’ 여성들을 포로로 잡으면서 이 제도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버마는 일본군에게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곳은 1942년 이후 일본이 새롭게 점령한 지역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거의 없던 지역인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연합군과의 접경지대였기 때문에 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파견되었고, 곧이어 다수의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신설된 위안소에는 식민지 조선이나 점령지였던 중국 등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부터 동원된 여성들이 있었다. 이전에 점령했던 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위안부’ 제도 운영이 요구되었다. 또 치열한 전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위안부’들이 전투 과정에서 사망하기도 하였다.

버마의 ‘위안부’에 관한 기존 연구들도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해 왔다. 아사노 도요미[淺野 豊美]는 연합군이 촬영한 ‘위안부’ 사진을 중심으로 전장이었던 윈난성 라모[拉孟]와 버마 미치나로의 ‘위안부’ 동원과 포획 상황을 분석하였고,

니시노 루미코[西野瑠美子] 또한 버마의 ‘위안부’ 동원과 함께 라모 지역에 동원된 박영심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모리카와 마치코[森川万智子] 또한 문옥주의 구술을 바탕으로 버마의 전반적인 상황을 소개하였다.<sup>6</sup> 국내에서 버마를 단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버마로의 ‘위안부’ 동원에 주목하여 관련 자료들을 다루거나 소개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sup>7</sup> 또 2013년 안병직이 번역·해제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는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버마로의 ‘위안부’ 동원 상황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새롭게 발굴된 연합군 자료들과 선행 연구에서 다른 버마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제도적 특징을 밝히고 정리하고자 한다. 버마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자료들을 비교·검토하여 버마에서 ‘위안부’ 제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일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 연합군 자료와 피해자 증언을 바탕으로 이전까지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던 버마 지역 ‘위안부’ 피해자의 귀환 상황 또한 검토할 것이다.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연합군의 ‘위안부’ 관계 자료 중 버마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서를 다루고 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정진성 연구팀이 2015~2017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2관과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NA)에서 수집한 것으로, 이 자료의 일부는 정진성 편, 『일본군 ‘위안부’ 관

6 淺野豊美, 1999, 「雲南・ビルマ最前線における慰安婦達-死者は語る」,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慰安婦」關係資料委員會 編, 『慰安婦問題調査報告』; 西野瑠美子, 2003, 『戦場の「慰安婦」-拉孟全滅戦を生き延びた朴永心の軌跡』, 明石書店; 모리카와 마치코·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2005,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김정성 옮김, 아름다운사람들.

7 버마에 관한 연구나 소개로는 강정숙, 1997, 「일본군 위안소의 지역적 분포와 그 특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방선주, 1992, 「미국 자료에 나타난 한인 ‘중군위안부’의 고찰」, 『國史館論叢』 제 79집, 국사편찬위원회; 하종문, 2001,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체계」, 『성곡논총』 제 32집 상권; 여성가족부, 201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등이 있다.

계 미국 자료 I, II, III』으로 간행되었다. 연구에서 간행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원자료의 소장 기관이 부여한 자료의 고유 번호를 표시하였다.

## II. 버마로의 ‘위안부’ 동원

### 1. 일본군의 버마 침공과 ‘위안부’ 동원

일본은 1941년 말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고 서구의 아시아 식민지들을 침략하였다. 아시아를 일본의 세력권으로 편입하고 석유 같은 중요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목적하에 일본군은 필리핀과 싱가포르, 네덜란드령 동인도로 향하였다. 일본군의 주요 공격 목표 중 하나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버마였다. 버마는 일본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곳에는 많은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연합군의 주요 보급로가 있었다. 일본은 1937년에 시작된 중일전쟁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고, 아시아에서 연합군을 몰아내는 것 이상으로 중일전쟁을 빨리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중국에서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군이 일본군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연합국이 장제스에게 제공하는 각종 물자의 존재였다. 일본군은 이 물자의 보급로를 하나하나 차단해왔는데, 마지막 남은 보급로가 바로 버마의 랑군(현재의 양곤)에서 시작하여 중국 윈난성 쿤밍(昆明)으로 이어지는 버마 로드(Burma road)였다. 이 길은 장제스를 원조한다는 의미에서 ‘원장(援蔣) 루트’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곳을 일본군이 확보한다면 중국군은 물자 공급을 받지 못하고 후방도 공격받게 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었다.<sup>8</sup>

버마는 일본군의 최초 점령 목표는 아니었으나, 다른 지역에서의 작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새로운 공격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먼저 일본군은 사실상 일

8 기세찬, 2013, 「인도-버마전역과 중국원정군」, 『군사』 88호, 224쪽.

본의 괴뢰국이나 다름없었던 태국에 제15군을 진입시켜 공격을 준비시켰고, 1942년 1월 20일 밤 태국과 버마의 국경을 넘었다. 국경에 위치한 주요 도시인 모올메인 함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되었다.<sup>9</sup> 영국과 중국, 미국은 일본군으로부터 버마를 방어하기 위해 연합군을 편성하고 스틸웰(Joseph W. Stillwell)을 사령관으로 하는 인도·버마·중국(CBI) 전구를 창설하였다. 하지만 연합군이 제대로 된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전인 3월 8일에 이미 랑군이 일본군의 손에 넘어갔고, 3월 하순에는 버마 남부 전체가 점령당하였다. 연합군은 급히 영국군과 중국에서 파견된 중국원정군으로 10만 명 규모의 방어군을 편성하였지만, 일본군의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합군 사이의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령관으로 임명된 스틸웰이 군사 경험도 적고 작전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sup>10</sup>

일본군은 랑군 공략에 제15군 휘하의 제55사단과 제33사단을 투입하였고, 이후 버마 북부 공략을 위해 제18사단과 제56사단을 증원하였다. 일본군은 매우 빠르게 진격하며 연합군을 추격하였고, 1942년 5월 8일에는 버마 북부의 미치나를 점령하면서 연합군을 완전히 패배시켰다. 연합군은 와해되어 인도와 중국 남부로 후퇴하였다. 일본군은 중국 서남부 윈난성을 공격하여 텡충[騰衝]과 송산[松山] 일대를 점령하고 요새를 구축하여 중국군을 고립시키는 것에 만족하고 공격을 마무리지었다.

1942년 중순 버마를 완전히 점령한 직후 버마에 주둔한 일본군은 제15군 휘하의 4개 사단으로 약 1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었다. 이후 일본군은 버마 방어를 위해 병력을 꾸준히 증강시켰는데, 1943년 3월 27일에는 버마방면군이 창설되어 버마의 수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 인도의 연합군을 공격하여 인도 북동부를 점령한다는 임팔 작전을 수립한 뒤에는 이 작전을 위해 대규모 병력이 증원되었다. 임팔 작전이 진행된 194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버마방면군은 3개

9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1967, 「ビルマ攻略作戰」, 朝雲新聞社, 91쪽.

10 기세찬, 2013, 앞의 글, 229쪽.

군, 10개 사단으로 구성되었다.<sup>11</sup> 후생성에 따르면 버마 방면에 파견된 일본군 병력의 총수는 육해군을 합쳐 23만 8천 명이었는데,<sup>12</sup> 전시 일본군의 각 사단이 대략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버마에 최대 20만 명의 일본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군은 버마를 점령하자마자 위안소 설치를 준비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중일전쟁을 거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었고, 위안소는 일본군에 속한 일종의 부속시설이 되었다. 위안소는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군 내의 성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개전 직후 일본군이 버마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점령지에서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육군은 위안소의 시급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sup>13</sup> 하지만 일본 본토나 만주, 중국에 위안소를 설치했던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일본은 물론이고 만주나 중국 일부 지역은 이전부터 일본의 영향력이 강했던 지역이었고, 이들 지역에서 ‘위안부’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은 일본 공창제의 확대 과정과 무관하지 않았다.<sup>14</sup> 반면에 새로운 아시아의 점령지는 이전에 일본의 영향력이 거의 없던 곳이었기에 위안소도 완전히 새로 만들어져야 했다. 즉 해외에 파병된 많은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를 설치하려면 대규모 ‘위안부’의 동원이 요구되었다.

버마에서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해 일본군은 현지의 여성들을 동원하기도 했

---

11 버마방면군에는 제15군, 제28군, 제33군의 3개 군과 제2사단, 제15사단, 제18사단, 제31사단, 제33사단, 제49사단, 제53사단, 제54사단, 제55사단, 제56사단의 10개 사단이 있었다. 이 외에도 버마방면군 직할로 편성된 여단들이 존재했다. 이 중 제49사단은 경성에서 편성된 부대로 다수의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12 김도형, 2014, 「일제 말기 필리핀·버마지역 한인 병사의 강제동원과 귀환」,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47호, 169쪽.

13 요시미 요시아키, 2006, 앞의 책, 81~85쪽.

14 박정애, 2018, 「만주 지역 일본군 위안소와 조선인 ‘위안부’ 피해 실태」,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수정정책』, 동북아역사재단, 69~75쪽.

지만, 그보다 더 많은 여성들을 식민지와 점령지로부터 끌고 왔다. 특히 버마에는 조선인 여성들의 대규모 동원이 있었다. 이 동원 과정은 연합군이 작성한 보고서인 「일본인 포로 심문보고서 49호(이하 「심문보고서 49호」)」와 「동남아시아 번역심문센터 심리전 심문회보 2호(이하 「심문회보 2호」)」에 나타나 있다.<sup>15</sup> 이 보고서들은 연합군이 버마 북부 미치나에서 조선인 ‘위안부’ 20명과 일본인 업자 2명을 포로로 잡은 뒤 심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보고서 속의 ‘위안부’ 피해자와 업자의 진술은 당시 조선인 여성을 버마로 동원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sup>16</sup>

먼저 「심문회보 2호」에 따르면 조선에서 여러 일본인 업자들에게 먼저 ‘위안부’ 모집을 제안한 것은 조선군사령부였다. 업자들은 이 제안에 따라 버마로 ‘위안부’를 동원할 수 있는 허가권을 신청했고, 이 허가에 따라 여성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심문보고서 49호」에는 일본인 업자들에 의한 동원이 시작된 시점을 1942년 5월 초로 명시하고 있다. 1942년 5월 초는 버마 북부에서 연합군의 패배가 확실시되던 시점으로, 버마에 대한 점령과 동시에 위안소 설치 및 ‘위안부’ 동원이 계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업자들은 조선 전국을 다니며 여성들을 동원했는데, 그 방식은 여성이나 혹은 그 가족에게 약 300엔에서 1,000엔의 선불금을 지불하고 6개월에서 1년 동

15 SEATIC Interrogation Bulletin No.2, 정진성 편, 2018a, 『일본군‘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I』, 선인, 505~527쪽; OWI PWT Interrogation Report No.49, 정진성 편, 2018b, 『일본군‘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II』, 선인, 507~522쪽. 이하의 동원에 관한 내용은 이 두 문서를 모두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16 「심문보고서 49호」를 작성한 주체는 미국의 정보기관인 전시정보국(Office of War Information, OWI)이다. 전시정보국은 미국 국내외의 전시 선전을 담당하는 조직이지만 버마에서는 예외적으로 심리전팀(PWT Team)을 만들고 일본군 포로 심문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심리전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본군 포로로부터 심층적인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위안부’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 정보는 「전시정보국 전초기지 보고서(OWI Outpost Reports)」로 작성되었다. 전시정보국은 「심문보고서 49호」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위안부’ 제도에 관한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안 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위안소에 간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업자들은 병원에서 부상병을 돌보거나 군인을 위한 일이고 손쉬운 일이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여성들을 속였다. 이러한 감언이설에 속어 1942년 7월 부산항에 모인 여성의 수는 703명이었다.

연합군 보고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동원 과정에 조선군사령부와 일본군이 깊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먼저 조선군사령부는 ‘위안부’ 동원을 제안, 신청, 허가하는 방식으로 업자들에게 여성을 동원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부산항에 모인 여성들을 버마의 위안소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일본군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였다.<sup>17</sup> 조선군사령부는 ‘위안부’와 업자의 도항 허가는 물론이고 무료 승선권도 제공하였고, 다른 일본군이 업자들에게 수송, 배급, 의료에 있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서한도 주었다.

703명의 여성들과 약 90명의 업자들은 1942년 7월 10일 4,000톤급 수송선에 탑승하여 부산항을 출발하였다. 배는 타이완과 싱가포르를 거쳐 1942년 8월 20일에 버마의 랑군에 도착하였다. 랑군으로 향하는 배에서도 조선인 여성들은 자신들이 위안소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배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문옥주는 1940년 만주 동안에 끌려가 1년간 위안소에 있다가 고향에 돌아와 있었는데, 같은 위안소에 있었던 친구들이 남쪽의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벌자고 하는 제안에 따라 배를 타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여성들도 식당에 돈 벌러 간다고만 알고 있었다. 버마로 향하는 수송선의 내부는 매우 열악했지만 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나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다.<sup>18</sup>

17 1942년 4월 22일자 육군성의 육아밀(陸亞密) 제1283-1호는 남방 점령지를 향한 업자와 ‘위안부’의 도항을 육군성이 관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渡航手續に關する件」, 1942.11.18. WAM(軍\_056) 본 연구에서 일본의 공문서는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였다. WAM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am-peace.org/>)에는 일본의 공문서를 발췌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1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편, 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 155~156쪽.

여성들은 랑군항에 도착한 이후에 위안소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업자를 따라 각 일본군 부대로 보내졌다.

버마로 동원된 것은 조선인 여성만이 아니었다. 식민지 타이완과 점령지 중국의 여성들 또한 유사한 방법을 통해 버마로 동원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조선인 여성을 태운 배는 버마로 향해하면서 타이완과 싱가포르를 경유했는데 타이완을 지나며 싱가포르로 향하는 여성 22명을 태웠다. 이 여성들이 싱가포르를 거쳐 버마까지 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원된 타이완인 ‘위안부’도 있었다. 한 일본군 상등병의 회고에 따르면, 그가 버마의 위안소에 갔을 때 한 타이완인 ‘위안부’가 “우리는 여학교를 나온 후에 정신대나 보조간호부로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여기로 끌려왔다”라고 울며 호소했다고 한다.<sup>19</sup> 버마에는 다수의 중국인 ‘위안부’도 있었다. 버마의 중국인 여성들은 미치나와 펜웨건 지역에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이들 모두 광둥(廣東, Canton)에서 왔다. 「심문회보 2호」는 미치나의 중국인 ‘위안부’ 21명이 조선인 여성과 같은 조건으로 광둥에서 팔려왔다고 적고 있다. 펜웨건(Penwaggon)에서 중국인 여성들을 포로로 잡은 뒤 촬영한 사진의 설명에는 이들이 광둥에서 붙잡혀 강제로 ‘위안대(Comfort Corps)’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sup>20</sup> 중국 광둥에서도 식민지 조선과 유사한 방식의 대규모 조직적 동원이 있었으리라 추정되는 대목이다.

일본군은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많은 여성을 동원했지만, 버마 현지에서도 많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였다. 연합군은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영국군 소속 카렌족 병사 2명에 대한 심문에서 카렌족 여성의 ‘위안부’ 동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진술을 얻었다. “일본인들은 버마인들과 카렌인에게 여성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지원했는데, 존경받는 집안의 딸도 있었다. 처음에 그들 중 몇몇은 정말 간호사 일

19 하야시 히로후미, 2011, 「전쟁체험기와 부대사를 통해 본 ‘중군위안부」,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엮음, 강혜정 번역, 『일본의 군 위안부 연구』, 198~199쪽.

20 NARA RG 208 Entry AA Box 314.

을 했지만, 주로 일본군의 위안소에서 이용되었다. 장교와 사병을 위한 위안소는 분리되어 설치되었다. 포로는 메이묘의 거리에서 이런 여성들 10명을 보았고, 보초에게서 여성들이 카렌족으로 간호사와 위안부 일을 번갈아가며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해주었다. 포로는 카렌족이 이러한 사실에 매우 격분했다고 말했다.”<sup>21</sup> 여성들에게 간호사 일을 제안하고 ‘위안부’로 끌고 가거나 ‘위안부’가 간호사 일을 하는 것은 조선인 피해자들의 증언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또 버마의 웨보에서는 일본군이 버마인 여성을 모아놓고 매우 힘든 일들을 시켰다. 즉 여성들이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스스로 ‘위안부’가 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동원한 것이다.<sup>22</sup> 이처럼 버마인 여성의 동원도 취업 사기나 인신매매를 통해 이루어졌다.

## 2. ‘제4차 위안단’과 조선에서의 동원

1942년 7월 버마로의 조선인 ‘위안부’ 동원은 ‘제4차 위안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제4차 위안단이라는 표현은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 등장한다. 일기의 1944년 4월 6일자에는 “재작년 위안대가 부산에서 출발할 때 제4차 위안단의 단장으로 온 츠무라[津村] 씨가” 라는 내용이 있다.<sup>23</sup> 제4차 위안단의 존재는 일본군이 업자들과 함께 식민지 조선에서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적어도 1차, 2차, 3차 위안단이 존재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안단이 구성되어 전장의 위안소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인의 일기 이외에 제4차 위안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기

21 OWI Outpost Report WDC-289,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330~342쪽.

22 OWI, Conditions in Japanese Occupied Burma, NARA RG 226 Entry NM 54-16 Box 1459.

23 안병직 번역·해제, 2013,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168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안단이 조직되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얼마나 많은 위안단이 버마로 보내졌는지 확인하기는 힘들다. 버마로의 동원을 보여주는 문서 자료에 한계가 있다면, 버마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버마로 끌려갔던 이들의 동원 시기나 동원되었을 당시 함께 갔던 사람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다른 위안단의 존재 또한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마로 동원되었던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확인하였다. 2019년 10월 현재까지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이다. 이들 중 정부에 낸 피해신고서 이외에 별도의 증언집이나 정부 보고서의 형태로 피해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증언한 120명과 북한에서 피해를 증언한 40명의 피해 사실을 검토하였다.<sup>24</sup> 총 160명의 피해자 중 버마 지역으로 동원되었던 피해자의 수는 8명으로, 검토 대상의 5%였다.<sup>25</sup> 한국인 피해자의 대다수가 중국이나 만주, 일본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버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동원된 피해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표 1〉은 버마로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표시한 것이다. 증언자의 이름은 가명일지라도 참조한 증언집에서 표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동원 시기는 증언을 바탕으로 표기하였으며, 시기가 나타나 있지 않

24 본 연구에서 검토한 증언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편, 1993~1999,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3』;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200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2004,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한국정신대연구소 엮음, 1995/2003,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2』;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1995, 『깃발힌 인생의 웨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편, 2013, 『들리나요? 열두소녀의 이야기』; 여성가족부, 2002, 『“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 -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집』.

25 한국 정부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이들 8명 이외에도 버마 지역으로 동원된 피해자가 더 있지만, 증언 내용이 제한적이고 자료 이용에도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1〉 버마로 동원된 피해자의 정보

증언자	(버마) 동원 시기	(버마) 동원 지역	출처	비고
문옥주	1942년 7월 초	만달레이, 아카브, 프롬, 랑군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버마전선 일 본군 위안부 문옥주』	2차 동원
이용녀	1942년	랑군 근처의 마을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김태선 (가명)	1944년 10월	랑군 북쪽의 부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신현순	불명 (1942~1944년 사이)	랑군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3』	뉴기니를 거쳐 동원
윤경애	1941년 말 이후	라시오	『깃발한 인생의 웨침』	
정송명	1943년 8월 말	메이크틸라	『깃발한 인생의 웨침』	
박영심	불명 (1942년 경)	라시오, 원난성 송산	『깃발한 인생의 웨침』	난징을 거쳐 동원
D○○	불명 (1944년 경)	버마 시골 마을	『들리나요? 열두소녀의 이야기』	싱가포르를 통해 동원

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추정되는 시기를 적었다. 피해자 중 문옥주는 만주 동안으로 1차 동원된 뒤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버마로 2차 동원되었고, 신현순과 박영심, D○○은 다른 지역으로 동원되었다가 버마로 이동하였는데 표에서는 버마로 이동했을 때의 시기를 표시하였다. 동원 지역은 증언 내용에 기초하여 표기하였는데 그 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선인 피해자들의 증언 속에 나타난 동원 시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42년 7월 전후, 1943년 8월 그리고 1944년이다. 다른 지역을 거쳐 동원된 경우에는 조선에서 출발하는 위안단의 형태와는 다르겠지만 이 또한 버마에 ‘위안부’의 충원이 필요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먼저 1942년 7월 ‘4차 위안단’으로 동원된 것이 확실한 피해자는 문옥주이다. 이용녀와 윤경애 또한 같은 시기에 혹은 전후로 하여 버마로 동원되었다. 윤경애는 1941년 말

평양의 노동안내소에 ‘모집’되었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호송되어 부산으로 끌려갔다고 증언하였다.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1941년에 버마로의 동원이 가능하지 않고 1942년 중순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시기로 볼 수 있다.<sup>26</sup> 이용녀는 1942년 큰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일본의 좋은 곳에 가서 돈을 벌라는 식당 주인의 제안에 응하면서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 이용녀는 주인으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신매매의 형태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업자가 건넨 선불금은 식당 주인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다.

문옥주와 이용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942년에 동원된 피해자들은 주로 취업사기의 형태로 동원되었다. 「심문보고서 49호」의 피해자들도 모두 업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른 연합군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버마를 통해 중국 윈난성 남부로 동원된 조선인 ‘위안부’들을 심문한 결과인 전략첩보국(OSS) 보고서 「쿤밍의 조선인과 일본인 전쟁포로」에 따르면 1942년 7월 버마로 동원된 여성들은 “명백하게 강요와 거짓을 통해 위안부가 되었다.”<sup>28</sup> 보고서는 여성들이 싱가포르에서 일할 여성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모집되었지만 이것은 사기였다고 밝힌다.<sup>29</sup>

26 또 윤경애는 전략첩보국 보고서 「쿤밍의 조선인과 일본인 전쟁포로」에 유사한 이름 (Yun Kyoung-I)이 남아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1942년 7월에 조선을 출발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27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1995, 앞의 책, 8쪽;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편, 1993, 앞의 책, 217쪽.

28 OSS, Korean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 1945.04.26. NARA, RG 226 Entry A1 154 Box 185.

29 일본군‘위안부’의 동원에 있어 ‘강제성’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일본 우익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협의를 강제성’, 즉 일본 군인이나 경찰 등에 의한 폭력적인 연행이라는 방식의 동원은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이나 경찰이 개입된 동원은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등장하고 있다. 정진성, 2007, 「미하원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협의를 강제성”과 그 역사적 진실」, 『사회와 역사』 76호를 참조. 또 취업사기나 유인, 인신매매에 의한 방식도 명백히 ‘강제동원’에 포함된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법적 기준에 비

버마로 동원된 조선인 피해자 중 동원 시기가 확실하게 확인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제4차 위안단’으로 동원되었다. 버마로의 동원 시기를 보여주는 연합군 자료는 두 가지로 하나는 「심문보고서 49호」이고, 다른 하나는 「쿤밍의 조선인과 일본인 전쟁포로」이다. 전자의 경우 심문 대상이었던 조선인 ‘위안부’ 20명 모두가 1942년 7월에 동원되었다. 후자의 경우에도 심문 대상이었던 조선인 여성 23명 중 15명이 1942년 7월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쿤밍의 조선인과 일본인 전쟁포로」에 나타난 조선인 여성의 동원 시기

조선 출발 일자	인원수(명)
1938년	1명
1939년 8월	1명
1940년 3월	1명
1941년 11월	1명
1942년 7월	15명
1943년 9월	4명

출처: OSS, Korean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sup>30</sup>

〈표 2〉는 「쿤밍의 조선인과 일본인 전쟁포로」에 나타난 여성의 동원 시기를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쿤밍에서 중국군이 관리한 포로수용소 내에 있던 조선인과 일본인 포로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이곳의 조선인 여성들은 중국과의 접경지대인 버마 북동부로부터 중국 쑹산, 텡충에 이르는 중국군 관할 지역에서 포로가 된 이들이었다. 이 보고서에는 비교적 다양한 동원 시기가 등장한다. 1942년 7월에 동원된 사람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추어 보아도 위법적인 행위였다.

30 OSS, Korean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 1945.04.26. NARA, RG 226 Entry A1 154 Box 185.

1943년 9월에 4명이 동원되었다. 1941년 이전에도 4명이 조선을 출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들의 경우 버마로 바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위안소에 있다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고서의 명단 속에 있었던 피해자 박영심은 1939년 8월에 난징의 위안소로 끌려갔다가 1942년에 버마의 위안소로 이동하였다.

제4차 위안단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1943년 9월경 조선에서는 버마로의 ‘위안부’ 동원이 있었다. 정송명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송명은 1943년 8월 말 마에다라는 일본인이 ‘정신대’로 6개월만 일하러 가자고 하는 말에 속아 부산으로 끌려갔다. 부산에서 400여 명의 여성들이 함께 배를 탔는데 이 중 200명은 싱가포르에서 하선하였고, 나머지 200명은 배를 갈아타고 버마의 랑군항으로 갔다.<sup>31</sup> 증언 속 여성의 수가 어림잡작이라 하더라도, 조선인 여성의 대규모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관리인의 일기에서도 관련한 정황이 나타난다. 1943년 7월 초 ‘위안부’ 동원을 위해 조선에 갔던 업자 여러 명은 12월에 싱가포르를 경유해 버마로 돌아가고 있다.<sup>32</sup> 이들 업자들은 버마에서 위안소를 경영하다가 조선으로 돌아가 다시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하였고, 버마로 돌아가기 위해 싱가포르를 경유하면서 싱가포르에 있던 일기의 저자를 만난 것이다. 1943년 말의 동원은 일본군의 이동 상황과 관련이 있다. 버마의 일본군은 1942년 중순 4개 사단이었으나, 1944년 3월부터 시작된 임팔 작전을 준비하면서 10개 사단 규모로 증원되었다. 1943년 말은 대규모로 증원된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의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버마로의 조선인 ‘위안부’ 동원은 1944년에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1944년 이후의 동원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증언 이외에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구

31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앞의 책, 37쪽.

32 안병직은 이 또한 제○차 위안단이 부산항을 출발한 일자로 보아도 좋다고 설명한다. 1944년 7월에도 경성에서 출발하는 업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버마로 가는지는 불분명하다. 안병직 번역·해제, 2013, 앞의 책, 24~25쪽.

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1944년 중순 이후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일본군은 버마 북부에서부터 차례로 패배하며 후퇴했기 때문에 버마로의 동원은 1944년 중순까지로 제한되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버마로 동원된 조선인 ‘위안부’의 대부분이 ‘제4차 위안단’이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그 이전의 위안단, 즉 제1~3차 위안단의 경우 버마로 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료나 피해자의 증언에서도 7월 이전의 대규모 동원은 확인할 수 없고, 버마를 점령한 시점을 생각해 보아도 그 이전 시기의 대규모 동원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 다른 위안단들이 존재했다면 중국 혹은 아시아·태평양의 다른 점령지로 보내졌을 것이다. 두 번째는 1943년 9월을 전후로 하여 또 한 번의 대규모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수백 명의 조선인 여성들이 모집되어 싱가포르와 버마로 보내졌다. 그 이외의 시기에 버마로 동원된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규모로 선단이 출발하거나, 다른 아시아 지역의 위안소가 업자나 일본군의 이동에 따라 버마로 이동하고 있다.

### Ⅲ. 버마의 일본군 위안소

#### 1. 일본군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일본군은 새롭게 점령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육군 관할과 해군 관할로 나누고 육군 관할 지역인 필리핀이나 말레이 반도에는 군정감부를, 해군 관할인 인도네시아와 태평양 지역에는 민정부를 설치하였다. 군정감부나 민정부는 일본군과의 협조 아래 현지에서 위안소의 관리나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sup>33</sup> 하지만 버마에는 민사 업무를 담당한 기관이 달리 없었는데, 이것은 버마가 괴뢰국의

---

33 하중문, 2001, 앞의 글, 464쪽.

형태로 통치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버마를 침공하면서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버마의 통치 또한 버마인들에게 맡기겠다는 약속을 하였는데, 이 약속은 1943년 8월 1일 버마를 형식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바모(Ba Maw)를 수상으로 하는 버마 정부는 일본과 동맹 조약을 맺고 버마 국군(BNA)을 창설하는 등 일정한 주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버마의 독립은 만주국이 그랬던 것처럼 허울뿐인 것으로, 버마 정부 내에서는 일본인 고문들이 실권을 행사했고 일본군도 버마 영토 내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일본의 버마 통치는 사실상 일본군에 의한 군정이나 다름없었다.<sup>34</sup>

그렇기 때문에 버마에서는 일본군 각 부대들이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 이것은 여러 자료에서 나타난다. 「심문회보 2호」에는 미치나의 위안소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제114연대 사령부이고, 위안소의 책임연락장교는 마가수에 대위였다고 나타나 있다. 버마에 주둔한 독립보병 제451대대의 대대장 도쿠라[戸倉] 중좌의 진중일기에는 위안소를 나카무라 소위가 담당한다는 내용이 있다.<sup>35</sup> 만달레이에 주둔한 제5야전 수송 사령부의 주둔지 업무 규정에서도 위안소의 설치와 사용일 지정은 사령관이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sup>36</sup>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서 위안소 업자는 연대본부에 위안부 수입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안소가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며, 콘돔의 배부도 병참사령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37</sup> 연합군 문서에서도 위안소는 “각 사단들에 배속되어 있다” 혹은 “각 연대에 소속되었다”, “여단 이상의

34 W. G. Beasley, 정영진 옮김, 2013, 『일본제국주의』,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302쪽; 김성원, 2003, 「영국과 일본의 대미얀마 식민정책과 반향」, 『비교문화연구』 14호, 14~15쪽.

35 「戸倉中佐陣中日記」, 1944.1.12. WAM(その他\_011).

36 第五野戰輸送司令部, 「第五野戰輸送司令部駐屯地業務規程」(五輸防第28號), 1943.10.31. WAM(軍\_269).

37 안병직, 2013, 앞의 책, 32~33쪽.

일본군 부대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나타난다.<sup>38</sup>

이처럼 버마에서 위안소는 일본군에 속해 있었고, 위안소를 설치·이동·감독하는 권한은 모두 일본군 사령관에게 있었다. 위안소의 관리 및 경영만 업자에게 위임한 형태였다. 최소한 대대 이상, 일반적으로는 연대급의 부대들이 위안소를 관리하는 실질적인 주체였다. 버마의 위안소에서 업자의 경영권은 약했고, 군의 명령에 따라 위안소가 설치되거나 이동하였다.<sup>39</sup> 따라서 버마의 위안소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일본군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위안소를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림 1〉은 연합군 자료,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피해자 증언을 바탕으로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던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sup>40</sup> 연합군의 자료를 통해서도 주로 버마 북부와 전선지대의 위안소를, 관리인의 일기를 통해서도 중남부 일대의 위안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버마의 위안소를 전선지역과 후방의 위안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38 OWI Outpost Report WDC-271,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328쪽; OWI Outpost Report WDC-400,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405쪽; CSDIC, 1st Prelim Interrogation Report on Japanese PW HQ 15 Ind Corps PW/FC-136, 1945.02.21., NARA RG 165 Entry NM84-177 Box 915.

39 「심문회보 2호」에는 일본군이 위안소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미치나의 사령관이었던 마루야마 대좌는 위안소에서 ‘위안부’가 받는 분배 비율을 낮게 조정하고, 위안소의 요금을 낮추며, 자신의 이름과 같았던 위안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40 〈그림 1〉의 지도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백지도(d-maps.com)를 바탕으로 필자가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연합군 문서는 주로 버마 북부, 관리인의 일기는 버마 남부 위안소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있다. 다만 버마에는 이 지도에 표시된 것 이상으로 많은 지역에 위안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공문서에서는 만달레이를 비롯하여 세 지역의 위안소가 확인된다. 또 WAM에서 2016년 7월부터 전시한 『地獄の戰場ビルマの日本軍慰安所』의 카탈로그에 따르면, 버마에는 확인되는 것만 66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문서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군 병사의 회고나 현지 주민의 증언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66개 지역 중 필자의 지도와 겹치지 않는 지역은 4곳으로, 더하면 총 70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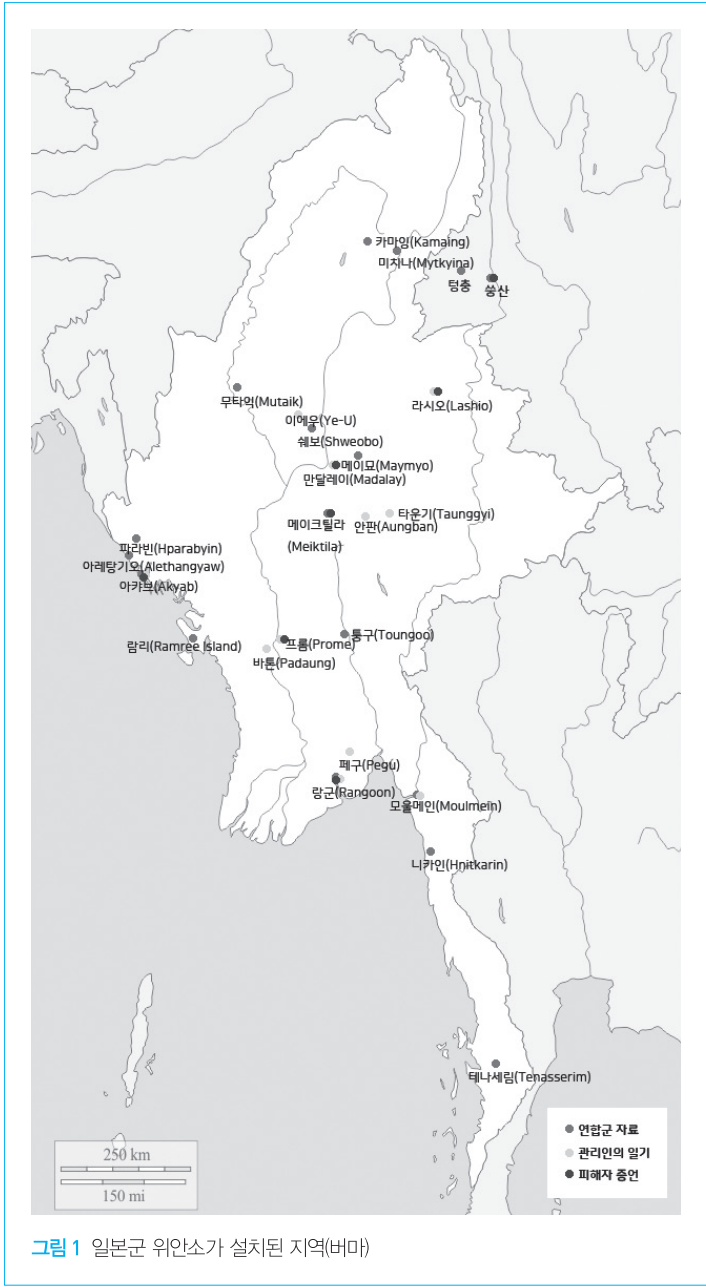


그림 1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된 지역(버마)

「심문보고서 49호」에 따르면 버마의 일본군 위안소들은 “일본군 부대 근처 상당한 규모의 도시들에 배정”되었다.<sup>41</sup> 버마를 장악하기 위해 일본군 부대들이 버마 전체에 파견되어 있었으나, 사령부를 비롯한 핵심 부대들은 주요 도시에 자리를 잡았고 전투 병력들은 전선지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영국의 식민 지배 당시 버마의 주요 도시들은 철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영국령 버마의 수도인 랑군에서 시작하여 과거 버마 왕조의 수도였던 만달레이까지 이어지는 경로가 중심이었다. 철로는 각각 서쪽으로는 프롬, 동남쪽으로는 모울메인, 동북쪽으로는 라시오, 북쪽으로는 미치나까지 연결되었는데, 이 도시들은 모두 일본군 주요 부대들이 주둔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위안소가 설치된 곳들이었다. 한 일본군 군조는 “철로를 따라 위치한 거의 모든 주둔지에 위안소가 있었다”라고 설명하였다.<sup>42</sup>

버마의 주요 도시에는 여러 위안소들이 설치되었다. 예를 들어 랑군은 가장 많은 위안소가 설치된 도시 중 하나였고 또 많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동원된 곳이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는 랑군에 있었던 위안소가 8개 확인되는데, 이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은 조선인이 경영하는 위안소였다.<sup>43</sup> 피해자 문옥주는 이 위안소 가운데 조선인이 경영했던 ‘랑군 회관’에 있었는데, 랑군 회관은 커다란 2층 건물로 30명 이상의 ‘위안부’가 있었고 모두 조선인이었다고 증언하였다.<sup>44</sup> 또 신현순은 랑군의 해군 위안소로 동원되었는데, 이곳은 여성이 80명이나 있는 대형 위안소였다. 위안소가 있던 랑군의 군 병원에서 매주 실시되는 성병 검사 때는 랑군과 주변 도시에서 몰려온 여성들이 몇백 명이나 되었다고 증언하였다.<sup>45</sup>

---

41 OWI PWT Interrogation Report No.49,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516쪽.  
 42 SEATIC Psychological Warfare Bulletin (Publication) No.116, 정진성 편, 2018a, 앞의 책, 363쪽  
 43 안병직 번역·해제, 2013, 앞의 책, 30쪽.  
 44 모리카와 마치코·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2005, 앞의 책, 119쪽.  
 4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편, 1999,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후방의 도시는 전투나 폭격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위안부’의 이송도 용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안소는 후방의 도시에 있었다. 연합군 문서 속의 일본군 병사들도 위안소가 주로 전장이 아닌 도시에 있었다고 진술한다. 한 일본군 오장은 “위안부는 군 주둔지 주변의 도시에 모였다. (중략) 위안부는 전투지대에 파견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했고, 다른 병사 또한 “큰 마을에 있는 후방 부대들은 위안소가 가까이 있으니 운이 좋은 것이었다. 전방이나 작은 마을에는 위안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전투지역으로 파견되는 부대들에게는 “위안소에서 지내는 하루의 ‘휴식’이라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46</sup> 이처럼 일본군 부대들은 주요 도시의 위안소를 거쳐 전장으로 이동했고, 전장에는 상대적으로 위안소가 적었다.

일본군의 입장에서 버마의 전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중국 군과의 접경인 중국 윈난성 남부의 라모 일대, 두 번째는 미·중 연합군과의 접경인 미치나 북서부의 후캉(Hukawng) 계곡, 세 번째는 영국군과의 접경인 버마 서부 아라칸(Arakan)주 일대이다. 이 중 두 번째 접경인 후캉 계곡은 정글지대로 위안소가 거의 없었고 일본군도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다른 두 지역에는 여러 위안소가 있었다. 그중 아라칸주의 주도 아카브(Akyab)는 버마와 인도를 이어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이곳은 곧 버마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되었다. 일본군 제33사단 보병 제213연대는 1942년 5월 아카브를 점령하고 이곳에 주둔하였는데, 영국군이 1942년 말부터 아라칸 지역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여 1945년 탈환할 때까지 세 번에 걸쳐 작전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브는 항상 폭격의 위협에 노출된 위험한 도시가 되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가 시작되는 장소가 아카브이다. 일기의 저자 야마모토[山本]는 1943년 1월 당시 아카브에서 그의 처남이 경영하는 간파

군위안부들 3』, 한울, 310쪽.

46 OWI Outpost Report WDC-406,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376쪽; OWI Outpost Report WDC-407,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387쪽; OWI Outpost Report JRA-172,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209쪽.

치[掘八] 클럽이라는 위안소를 관리하고 있었고, 이곳에 약 18명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sup>47</sup> 아카브에는 다른 조선인 위안소도 있었는데, 커다란 2층 건물에 자리한 위안소에 문옥주가 있었다. 문옥주는 아카브에서의 경험을 지옥과 같다고 묘사하면서 거의 매일 폭격기에 의한 공습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본인도 폭탄의 탄피에 맞아 수술을 해야 할 정도였다.<sup>48</sup>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지만 일본군은 계속해서 아카브로 ‘위안부’를 동원하였다. 위안소 관리인의 1943년 7월 23일 일기에는 1942년 이후 60~70명의 ‘위안부’가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다.<sup>49</sup> 1942년 중순 이후 문옥주가 속한 위안소와 야마마토의 위안소 모두 버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반면, 일본군은 아라칸 방어를 위해 제55사단을 투입하면서 병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위안소가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연합군의 문서에 따르면 아카브에서 ‘위안부’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인 여성을 동원하기도 하였다.<sup>50</sup>

전선의 위안소는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다른 지역보다 ‘위안부’의 교체도 자주 일어났다. 중국군과의 전선인 윈난성 쑹산에서는 전투 과정에서 많은 ‘위안부’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곳에 있었던 박영심의 증언에 의하면 쑹산으로 끌려간 조선인 여성 12명 중 8명이 폭격과 폭력, 질병으로 사망하였다.<sup>51</sup>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군은 위안소 운영을 지속하도록 하였고, 안전한 후방으로 위안소를 이동시키지도 않았다.

앞서 후방의 주요 도시와 전장의 위안소를 살펴보았지만, 버마의 일본군 위

47 안병직 번역·해제, 2013, 앞의 책, 46~47쪽.

48 모리카와 마치코·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2005, 앞의 책, 105~113쪽.

49 안병직 번역·해제, 2013, 앞의 책, 96쪽.

50 MID Medical Condition on AKYAB Island during Japanese Occupation,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429쪽; CSDIC Consolidated Report No.27, 1944.04.15., NARA RG 554 Entry 153 Box 84.

51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앞의 책, 80쪽.

안소는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었다. <그림 1>과 같이 각종 자료로 확인되는 지역만 하더라도 25곳이나 되고, 일본군 병사의 회고나 현지 주민의 증언을 반영한다면 더 많은 지역의 위안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문서로 확인되는 지역의 위안소의 수는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서 27개소, 연합군 문서에서 최소 31개소이므로, 결국 얼마나 많은 위안소가 버마 전역에 있었는지 가늠하기 힘든 수준이다.<sup>52</sup> 일본군 위안소의 체계는 후방으로부터 전방까지 촘촘하게 짜여 있었다.

그렇다면 각 위안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심문보고서 49호」에 나타난 각 위안소 업자들이 담당할 여성은 8~22명이었고, 「심문회보 2호」에서는 여성들이 20~30명의 무리로 나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53</sup> 심문 대상이 있었던 미치나에는 3개의 위안소가 있었는데, 교에이 위안소에는 22명, 긴수이에는 20명, 모모야에는 21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긴수이 위안소는 바쿠신로와 통합된 것으로, 원래는 각각 10명 정도의 ‘위안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합군 문서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는데, 각 연대의 위안소에 20명이 있었다는 병사의 진술과 각 위안소에는 7~9명의 ‘위안부’가 있었다는 53사단 의무 장교의 진술이 있다.<sup>54</sup> 문옥주의 증언에 의하면 만달레이의 위안소에는 17명의 여성이 있었고, 랑군의 위안소에는 30명 이상의 여성이 있었다.<sup>55</sup>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버마에는 한 위안소에 보통 적게는 7명, 많게는 30명 정도의 ‘위안부’가 있었다.<sup>56</sup>

52 연합군 자료에 나타나는 위안소의 경우 숫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의 위안소로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53 SEATIC Interrogation Bulletin No.2, 정진성 편, 2018a, 앞의 책, 523쪽; OWI PWT Interrogation Report No.49,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516쪽.

54 OWI Outpost Report WDC-403,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420쪽; MID, Health Maintenance of Japanese Army in Burma No. 1230, 1945.04.04., NARA RG 226 Entry NM54 16 Box 1418.

55 모리카와 마치코·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2005, 앞의 책, 77쪽.

56 버마로 동원된 조선인 ‘위안부’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센다는 버마로 동원된 ‘위안부’가 총 3,200명이고 그중 2,800명이 조선인이라고 추정

## 2. 위안소의 체계와 인적 구성

버마의 위안소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었다. 일본군은 식민지 조선에서 조직적 동원을 하였고, 타이완이나 점령지였던 중국 그리고 본토인 일본에서도 여성들을 데려왔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버마가 아시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가 많이 확인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연합군에 의해 촬영된 조선인 ‘위안부’ 사진의 상당수는 버마 전선의 것이고,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심문 보고서도 버마의 것이 가장 상세하다. 센다는 일찍이 버마의 ‘위안부’ 중 다수가 조선인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센다는 버마에 있었던 일본군 출신의 호리에를 인터뷰하였는데, 그는 버마에 “조선인 위안부 10, 버마인 위안부 4, 중국인 위안부와 인도인 위안부 2, 일본인 위안부 0.8 정도의 비율이 아니었나”라고 추정한다.<sup>57</sup> 조선인 ‘위안부’가 전체의 절반 정도라는 이야기이다. 병사의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병사들이 마주했던 ‘위안부’의 상당수가 조선인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 연합군 문서상에 나타난 ‘위안부’의 인적 구성

문서 제목	지역	구분
SEATIC Interrogation Bulletin No.2	미치나	조선인, 중국인
SEATIC Psychological Warfare Bulletin No.116	버마 중부	조선인, 중국인
OWI Outpost Report WDC-29	미치나	조선인, 만주인
OWI Outpost Report WDC-271	불명	조선인
OWI Outpost Report WDC-289	메이묘	버마인
OWI Outpost Report WDC-400	불명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한 바 있다. 센다는 이 추정치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센다 가꼬오, 편집부 옮김, 1992, 『증언: 여자정신대8만명의 고발』, 다물, 171쪽.

57 센다 가꼬오, 1992, 위의 책, 183쪽.

OWI Outpost Report WDC-403	불명	일본인
OWI Outpost Report WDC-406	불명	조선인
OWI Outpost Report WDC-407	불명	조선인, 일본인
OWI Outpost Report JRA-9	미치나	조선인
OWI Outpost Report JRA-103	미치나	조선인
OWI Outpost Report JRA-372	모울메인	일본인
OWI PWT Interrogation Report No.49	미치나	조선인
OWI Conditions in Japanese Occupied Burma	쉐보	버마인
MID Medical Condition on AKYAB Island during Japanese Occupation	아카브	조선인, 일본인, 버마인
MID Medical Condition on RAMREE Island during Japanese Occupation	람리	버마인
MID Japanese Occupation of the SHWEBO Valley in Burma	쉐보	버마인
CSDIC 1st Prelim Interrogation Report PW/FC-136	람리	버마인
CSDIC Consolidated Report #26	불명	조선인, 일본인
CSDIC Consolidated Report #27	아카브	조선인, 일본인
CSDIC Consolidated Report #36	메이묘	조선인, 일본인
OSS Interrogation - General Conditions	테나세림	조선인, 만주인, 일본인
OSS Burma General Conditions Report No. M-365	니카인	버마인
Y-Fos Fld HQ G-2 Report No. 91	팅충	조선인
Y-Fos G-2 Periodic Report Sept 10, 1944	쑹산	조선인, 일본인

〈표 3〉은 연합군이 일본군 포로나 버마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심문에서 얻은 ‘위안부’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정보이다. 총 25개의 보고서 중 조선인 ‘위안부’가 등장하는 보고서는 17개로 전체의 68%나 된다. 보고서에 나타난 동원 지역은 버마 북부가 많기는 하지만, 테나세림과 같이 말레이반도에 가까운 지역에도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 반면에 중국인 ‘위안부’는 5개(만주를 포함), 일본인은 9개, 버마인은 6개 보고서에서 각각 발견되고 있다. 연합군은 버마에 다수

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본군 병사로부터 이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버마가 특히 조선인 ‘위안부’의 동원이 많았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의 다른 지역을 다룬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및 네덜란드령동인도군정보부(NEFIS)의 보고서와 비교할 수 있다. 연합군번역통역부는 주로 남태평양과 필리핀의 ‘위안부’ 및 위안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보고서 중 ‘위안부’의 인적 구성이 표기된 문서는 총 35개이다. 이 중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가 확인되는 보고서는 24개이다.<sup>58</sup> 이 또한 68%로 버마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많은 조선인 ‘위안부’가 동원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연합군번역통역부 보고서의 절반 정도는 뉴브리튼섬에 위치한 일본 해군기지 라바울(Rabaul)의 위안소에 관한 것이기에 정보가 제한적이다. 또 인도네시아, 그중에서도 자바와 보르네오, 할마헤라 지역의 위안소 정보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네덜란드령동인도군정보부 보고서 중 ‘위안부’의 인적 구성이 나타난 보고서는 총 28개이다. 그런데 28개의 보고서 중 조선인이 언급된 보고서는 단 하나도 없다. 이것은 조선인 ‘위안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덜란드령동인도군정보부가 조선인 여성들을 다른 국적(일본인 혹은 중국인)의 여성들과 구분하고 있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9</sup> 또 이 보고서 중 일본인과 중국인 여성이 등장하는 보고서의 수는 12개로 이곳의 ‘위안부’를 조선인으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절반 이하의 비율이므로 버마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

그렇다면 버마에서 조선인 ‘위안부’의 구성비는 얼마나 되었을까. 버마 전체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알 수는 없지만, 남아 있는 몇몇 자료를 비교할 수 있다. 먼저 「심문회보 2호」에 따르면 미치나에는 3개의 위안소에 ‘위안부’ 63명이 있었는데, 이 중 조선인 위안소가 2개소,

58 국사편찬위원회, 2017, 『남서태평양지역 총사령부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문서 1』, 31쪽.

59 백재예, 2016,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연합국의 일본군·위안부 인식에 관한 연구: ATIS, NEFIS 심문 보고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62쪽.

중국인 위안소가 1개소이며 ‘위안부’의 수는 조선인 42명, 중국인 21명이었다. 위안소와 ‘위안부’의 비율 모두 정확히 2:1이다. 일본군이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남기고 있는 만달레이의 경우, 1945년 1월 2일자 「만달레이 주둔지 업무 규정」의 별지에는 9개 위안소의 인적 구성과 상호가 남아 있는데, 이 중 5개는 군 지정 위안소이고 나머지 4개는 군 준지정 위안소였다. 군 지정 위안소에는 일본인 ‘위안부’가 있는 위안소 1개소, 조선인이 3개소, 광둥인(중국인)이 1개소였고, 군 준지정 위안소에는 모두 버마인 ‘위안부’가 있었다.<sup>60</sup> 버마인 위안소를 제외한다면 1:3:1의 비율이다. 또 아카브에는 일본인 위안소가 1개소, 조선인 위안소가 2개소, 중국인 위안소가 1개소가 있었는데, 1 : 2 : 1의 비율이다.<sup>61</sup> 세 지역 모두 조선인 위안소가 절반 이상이며, 일본인과 중국인 위안소는 각각 한 곳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버마 위안소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한 위안소에 여러 출신지의 여성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원 방식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을 동원한 업자들이 군대를 따라다니며 위안소 경영까지 하는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업자가 자신이 데려온 지역의 여성들만을 관리하였던 것이다. 각종 문서나 피해자의 증언 대부분을 통해 한 지역 출신의 여성들로 구성된 위안소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다른 모습이다. 뉴브리튼섬 라바울의 타케이시 위안소 경우에 일본인과 조선인이 한 위안소에 있는데 그 둘의 요금이 달랐으며, 필리핀의 위안소에서도 일본인과 필리핀인 여성이 한 위안소에 있었다.<sup>62</sup> 중국의 진중일지에서는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여성이 한 위안소에 있었던 것도 확인된다.<sup>63</sup> 한 위안소에 여러 출신지의 여성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하여 차등적 요금을 부과하는 체제를 만든 것은

60 「マンダレー駐屯地勤務規程(マ駐安第54號)」, 1945.01.02., WAM 軍\_271.

61 모리카와 마치코·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2005, 앞의 책, 105쪽.

62 ATIS Research Report No.120(1945.11.15.), 국사편찬위원회, 2017, 앞의 책.

63 「獨立攻城重砲第2大隊第2中隊 陣中日誌 昭和13年3月1日-3月31日」, WAM 軍\_32.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형태 중 하나였다.

버마의 위안소는 여성의 출신지에 따라 구분되었다. 예컨대 일본인 ‘위안부’가 있었던 위안소는 대부분 장교 전용이 되었다. 「심문회보 2호」에 따르면 메이묘에는 일본인 여성이 있는 위안소가 두 곳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스이코엔은 장교 전용 위안소였다. 만달레이에 있던 일본인 위안소 우메노야도 장교 위안소였다. 문옥주는, 아카브의 일본인 위안소는 장교 전용이었고 일본인 게이샤가 열 명 정도 있었는데 모두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sup>64</sup> 버마에는 일본인 ‘위안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장교들이 이를 독점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942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일본인 ‘위안부’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버마에서 일본인 ‘위안부’는 한정된 지역에만 보내졌다. 예를 들어 버마 북부 지역에는 일본인 ‘위안부’가 전혀 없었다. 버마 북부의 후강 계곡에서 붙잡힌 한 일본군 하사관은 “일본군을 위한 위안부는 모두 조선인”이라고 대답했고, 버마 중부 만달레이와 메이묘에 있었던 한 병사는 “대부분의 ‘위안부’는 조선인”이고 “일본인 여성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sup>65</sup> 이처럼 버마에서는 일본인 ‘위안부’가 없는 자리를 조선인 ‘위안부’가 대체하고 있다.

반대로 버마인 여성들은 조선인 여성조차 동원하기 힘든 외진 지역의 위안소에 동원되었다. 버마 서부의 램리섬에는 위안소 두 곳이 있었는데, 랑군에서 끌려온 버마인 여성 10~15명이 있었다. 만달레이 서북부의 쉐보에도 병사용 위안소에 버마인 여성들이 있었다.<sup>66</sup> 버마 외부에서 동원된 여성들을 이송하기

64 모리카와 마치코·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2005, 앞의 책, 106쪽.

65 OWI Outpost Report WDC-406,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376쪽

66 MID Medical Condition on RAMREE Island during Japanese Occupation,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435쪽; CSDIC 1st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on Japanese PW 1945.2.21, 정진성 편, 2018a, 앞의 책, 504쪽; OSS Japanese Occupation of the SHWEBO Valley in Burma, 1945.01.29.,

쉽지 않은 오지에서는 일본군 병사들이 멋대로 현지의 여성을 모아 위안소를 만드는 사례도 있었다.<sup>67</sup>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한 목적 중 하나는 현지에서의 성폭력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일본군이 현지인 여성을 동원하는 과정은 성폭력과 연계되어 있었다.<sup>68</sup> 1945년 7월 7일 모올메인 근처의 마을 칼라곤(Kalagon)에서 일본군이 주민 600명을 학살하고 여성 생존자 10명을 ‘위안부’로 끌고 간 사건이 영국의 전범재판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sup>69</sup>

또 버마인 ‘위안부’가 일본군이 아닌 버마인 병보(兵補)를 상대하기도 하였다. 일본군이 작성한 「만달레이 주둔지 업무 규정」에는 버마인 위안소 네 곳이 확인되는데, 그중 한 곳인 신버마관[新緬館]은 ‘버마 병보 전용’이었다. 병보는 점령지의 주민을 동원하여 만든 일종의 보조병력으로 신분은 군속이었다. 이들은 주로 노무 동원에 활용되었지만 버마에서는 일본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일도 있었다. 버마인 병보를 위한 위안소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 규정이 유일하다.<sup>70</sup>

이처럼 버마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는 일종의 인종주의적 혹은 민족 차별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일본군은 여성을 출신 지역에 따라 나누고 군의 위계에 따라 위안소를 차등적으로 배치하였다. 내지와 반도, 지나와 남방이라는 일본 제국의 인종적 위계질서는 ‘위안부’ 제도를 움직이는 요소였다.<sup>71</sup> 일본군은 위

NARA RG 226 Entry NM-54 16 Box 1297.

67 센다 가코오, 1992, 앞의 책, 186쪽.

68 버마에서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은 다음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林博史, 1996, 「英軍による日本軍性的暴力の追及」, 『戦争責任研究』 第14號, 日本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69 Robert Cribb, 2016, “The Burma Trials of Japanese War Criminals, 1946-1947”, Kerstin Von Lingen(ed.), *War Crimes Trials in The Wake of Decolonization and Cold War in Asia, 1945-1956*, Palgrave macmillan.

70 林博史, 1994, 「ビルマ・マンダレーの日本軍慰安所規定」, 『戦争責任研究』 第6號, 日本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75쪽.

71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다른 전시성폭력에서 보이는 인종/민족 갈등과는 다른 인종주의적 혹은 민족 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

안소 이용을 일종의 권리로 간주했기 때문에 일본군 내부에서도 ‘위안부’라는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벌어졌다. 몇몇 지역에서 장교들이 위안소를 독점하는 것이 병사들에게 주요한 불만사항이었고, “심지어 최고의 위안부들은 해군과 공군으로 간다”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으며 병사들 사이에서 “경쟁 때문에 고참병이 위안소를 방문하려는 신참 병사들을 때리는” 일도 흔했다.<sup>72</sup>

#### IV. 조선인 ‘위안부’의 귀환

이 장에서는 버마로 동원되었던 조선인 ‘위안부’의 귀환 과정을 검토한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군의 패배, 전쟁의 종결과 함께 붕괴하였다. 하지만 동원 지역에 남겨진 여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제도로 인한 피해를 계속해서 감내해야만 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갑자기 떠나버리고 ‘위안부’들만 먼 타지에 남겨지거나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되어야만 했던 상황은, 일본군이 전장에 동원된 ‘위안부’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취급했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위안부’ 제도로 인한 피해의 연장선에서 ‘위안부’가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귀환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버마의 위안소에 있었던 피해자 중 종전 이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sup>73</sup> 버마에서는 위안소를 도망친다 하더라도 자력으로 귀

---

어 왔다. 요시미는 ‘위안부’ 문제가 여성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식민지 정책의 문제 그리고 타민족 멸시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종주의 혹은 민족 차별의 문제는 식민지에서 조선인 여성의 동원과 관련하여 언급되거나 혹은 유럽인 ‘위안부’에 대한 서구의 차별적인 대응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72 OWI Outpost Report JRA-172,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208쪽; OWI Outpost Report JRA-205,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245쪽.

73 다른 지역에서는 종전 이전에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적어도 위안소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조선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는 위안소로부터 탈출하거나 병에 걸려서 혹은 다른 이유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만주 지역의 경우 만주

환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 이 지역은 한반도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현지 주민과 언어도 통하지 않았으며 위안소 외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다. 배를 타고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일본군이 발행한 도항 증명서가 없다면 승선할 수 없었다.<sup>74</sup> 계약 종료나 폐업으로 인해 돌아온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미치나로 동원되었던 조선인 ‘위안부’는 계약에 따르면 선불금과 이자를 갚았을 경우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가 생겼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전쟁 상황으로 인해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1943년 6월에 돌아갈 조건을 충족한 ‘위안부’가 1명 있었으나 남으라는 설득에 떠나지 않았다.<sup>75</sup>

버마로 동원된 피해자 중에는 버마로 동원되었다가 다른 지역의 위안소로 이동한 사례도 없다. 피해자 신현순과 D○○가 각각 싱가포르와 뉴기니를 거쳐 버마로 동원되었던 것처럼 일본군이 1942년 이후 점령한 지역들 사이에서 위안소의 이동이 있었다. 하지만 버마에서는 ‘위안부’의 충원만 있을 뿐이고, 버마를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버마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 대부분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

결국 종전 직후 버마에 있었던 모든 조선인 ‘위안부’는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본군이 패전할 때 전장에 남겨지거나 일본군과 함께 후퇴하였다. 연합군은 일본군과 함께 발견된 여성들을 포로수용소로 보냈다. 포로수용소의 생활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되었다. 이후 연합군이 제공한 귀환선을 타고서야 조선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

에서 ‘위안부’ 생활을 마친 88명 가운데 31명이 종전 이전에 위안소를 이탈할 수 있었다. 박정애, 2018, 앞의 글, 91쪽.

74 문옥주의 증언에는 도항 증명을 받은 사례가 등장한다. 문옥주는 랑군이 위험해져자 다른 조선인 ‘위안부’ 5명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군의관에게서 폐병이 들었다는 거짓 진단서를 받았다. 그리고 귀국 허가를 받아 사이공으로 이동했다가 결국 귀환을 포기하고 돌아왔다. 일행 중 2명만이 귀국을 위해 사이공에 남았다. 이들이 귀국할 수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버마에서도 종전 이전에 승선 허가를 받아 돌아온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75 SEATIC Interrogation Bulletin No.2, 정진성 편, 2018a, 앞의 책, 524쪽.

## 1. 연합군의 포로가 된 과정

일본군은 1944년 3월 인도 북동부의 임팔을 공격하는 임팔 작전을 통해 버마에서의 전세를 바꾸어보고자 했지만, 이 작전은 일본군의 대패로 끝났다. 임팔 작전 이후 일본군은 더 이상 버마를 방어할 수 없게 되었고 버마 전선은 붕괴하였다. 스틸웰이 지휘하는 미·중 연합군은 버마 북부로 진격하고 중국군 또한 중국 윈난성 남부를 공격하여, 일본군은 1944년 말 버마 북부를 상실하였다. 영국군의 공세도 시작되어 1945년 5월에는 랑군이 영국군의 손에 넘어가면서 일본군은 버마에서 패배하게 된다. 일본군은 전선이 급속히 붕괴되는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후방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전선에 남겨진 ‘위안부’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최후의 순간까지 전장에 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패잔병들의 대열에 끼어 무작정 도망가는 것이었다.

버마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중국 윈난성 남부의 쑹산과 텅충에서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최후를 함께하도록 강요받았다. 쑹산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중국군으로부터 버마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요새가 있었고, 텅충은 정방형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다. 1944년에 중국군이 이곳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면서 이 지역은 치열한 전장이 되었다. 쑹산의 일본군 보병 제113연대와 텅충의 보병 제148연대는 1944년 9월 전멸할 때까지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전멸하는 순간까지 ‘위안부’가 함께 있었다. 쑹산과 텅충에서는 전투 후 많은 조선인과 일본인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일본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sup>76</sup> 살아남은 여성들은 중국군의 포로가 되어 윈난성의 성도인 쿤밍의 포로수용소로 보내졌다.<sup>77</sup>

76 방선주, 2018, 「등충 섬멸전 중의 한인위안부들」(2000), 방선주선생님저작집간행위원회 편, 『한국현대사 쟁점 연구』, 선인, 114~115쪽.

77 쿤밍 포로수용소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박영심과 윤경애 모두 포로수용소에서의 생활을 매우 모욕적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포로수용소를 방문했던 전시정 보국 요원 코지 아리요시(Koji Ariyoshi)는 20명의 여성들이 중국군들의 조롱을 받

버마 북부의 미치나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미·중 연합군은 인도 레도(Ledo)에서 원난성 군령을 연결하는 레도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미치나를 공격하였다. 연합군은 1944년 5월부터 미치나 공격을 시작했는데, 시가지 점령에 실패하면서 3개월간 공방전을 펼치게 된다. 미치나를 수비한 일본군은 보병 제114연대였는데, 사령부의 사수 명령에 따라 후퇴하지 않고 전멸 직전까지 싸웠다. 미치나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위안부’들은 참호 속에서 지냈으며, 심지어는 그곳에서조차 한두 명은 계속 일을 하였다. 위안소가 폭격될 때 몇 명이 부상당하거나 죽기도 했다. 미치나 함락 직전인 1944년 7월 31일 밤 업자들과 ‘위안부’ 63명은 이와라디강을 건너 도시를 탈출했으나, 건너편 강변에 머물렀다. 이들은 세 무리로 나뉘어 중국인 여성들은 중국군에게 항복하고, 조선인 한 무리는 일본군을 따라갔으며, 나머지 조선인은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다.<sup>78</sup> 포로가 된 이들은 미치나 비행장의 임시 포로수용시설에 보내졌다가 추가 심문을 위해 인도의 레도 수용소(Ledo stockade)로 보내졌다. 이곳에서의 심문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가 바로 「일본인포로 심문 보고서 49호」이다.

전장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연합군의 포로가 되는 것은 버마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대부분의 ‘위안부’는 일본군이 패배할 때 스스로 혹은 일본군과 함께 남쪽 방향으로 도망쳤다. 도망치는 길은 험난하였다. ‘위안부’들이 정글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물에 빠져 사망하거나 풍토병에 걸려 죽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이용녀는 종전을 맞이했을 때 군인들이 위안소를 버리고 갔고, 조선인 남성들이 와서 이들을 모두 데리고 나갔다. 이들 일행은 열흘쯤 걸어서 랑군

---

으며 피죄죄한 몰골로 있는 것을 보았다. 코지는 수용소에서 여성들의 ‘위안부’ 동원에 대해 질문을 했다. 여성들은 그에게 몸을 누일 벧집이나 씻을 물 그리고 치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다. Koji Ariyoshi, 2000, *From Kona to Yenon: The Political Memoir of Koji Ariyoshi*, Edited by Alice M. Beechert and Edward D. Beechert,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158~159.

78 OWI PWT Interrogation Report No.49, 정진성 편, 2018b, 앞의 책, 520~521쪽.

에 도착한 뒤 랑군의 포로수용소에 들어갔다. 김태선도 1944년 12월 일본군이 위안소를 헐어버리자 업자와 동료 3명과 함께 일본군을 피해 도망쳤다. 랑군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동료 2명은 목숨을 잃고, 6개월간 헤맨 끝에 영국군이 점령한 랑군에 도착해 포로수용소로 들어갔다.<sup>79</sup>

일본군은 버마를 상실할 때 인도차이나의 사이공이나 태국의 방콕으로 후퇴하였다. 피해자들 중에는 이들과 함께 태국으로 도망간 사례도 있다. 문옥주는 랑군의 위안소에서 일본군의 후퇴 명령을 받고 태국행 배를 탔다. 배와 기차를 타며 도착한 곳은 방콕이었다. 방콕에서는 ‘위안부’들을 한군데 집결시켰고, 이들 중 일부는 아우타야 병원으로 보내져 간호부 일을 하게 했다.<sup>80</sup> 문옥주도 이 병원에 함께 있었는데, 아우타야 병원에 간호사로 등록된 여성은 총 463명이었다.<sup>81</sup> 이 여성들 중 상당수는 버마에서 온 ‘위안부’였을 가능성이 크다. 문옥주는 병원에서 해방을 맞아 학교에 만든 포로수용소로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신현순도 랑군의 폭격이 심해지자 그곳에서 도망쳐 조선인 ‘위안부’ 3명과 일본 군속과 함께 방콕까지 갔고, 정송명도 19명의 조선인 ‘위안부’와 함께 정글을 건너 태국으로 도망쳤다.<sup>82</sup> 피해자들의 증언을 정리하면 8명의 피해 생존자 중에서 전장에서 포로가 된 것은 박영심과 윤경애 2명뿐이고, 3명은 버마 랑군에서, 다른 3명은 태국에서 각각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

7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편, 1993, 앞의 책, 236~237쪽.

80 모리카와 마치코·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2005, 앞의 책, 140~157쪽.

81 KBS, 시사기획 창 “끌려간 소녀들 버마 전선에서 사라지다”(2015.08.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27107&ref=A>, 2019.08.30. 확인).

8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편, 1999, 앞의 책, 311~313쪽;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1995, 앞의 책, 39쪽.

## 2. 포로수용소 생활과 귀환

일본의 항복과 함께 연합군은 버마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엄청난 수의 일본군 및 민간인 포로들을 잡았다. 영국군이 주축이 되었던 동남아시아 연합군 최고사령부(SEAC)는 버마, 안다만 및 니코발 제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차이나, 네덜란드령 동인도 지역의 포로를 담당했는데, 종전 직후인 1945년 10월 이 지역 전체의 포로의 총수는 71만 8,313명이었고 그중 버마에 수용된 포로의 수는 6만 7,450명이었다.<sup>83</sup> 이 포로들을 한 번에 송환하는 것은 비용 문제, 가용 가능한 선박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연합군은 포로들을 수용소에서 관리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귀환시키고자 준비하였다.

일본인 포로의 송환 계획은 NIPOFF 작전(Operation NIPOFF)으로 수립되었다. 동남아시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포로 귀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포로를 관리할 방안을 만들었다. 1946년 3월에 작성된 동남아시아 연합군 최고사령부 합동계획참모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합군의 계획은 버마 각 지역의 중심 도시에 일본인 포로나 민간인 억류자들을 우선 집결시키고, 송환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순차적으로 귀환시키는 것이었다. 버마에서는 일본인 포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버마 재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뒤의 순위가 부여되었다. 다만 영국 전쟁성(War Office)이 조선인과 타이완인 포로들은 일본인 포로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명령했고, 우선순위로 귀환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조선인을 당장 귀환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포로수용소 내에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부터 분리하고 이후 귀환시키는 것이 계획되었다.<sup>84</sup>

영국군은 격주로 포로의 수용 상황을 조사하고 귀환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83 TNA WO 203/5469.

84 TNA WO 203/4467.

만 영국군의 귀환 관련 보고서에 조선인은 일본인과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 영국군의 기록에 남아 있는 1946년 6월 18일 당시 버마 남부에 수용된 조선인의 수는 321명에 불과하였다. 일본인 포로를 3만 5천 명 수용했을 정도로 수용규모가 가장 컸던 랑군의 아롱(Ahlone) 수용소에도 206명의 조선인만이 확인되고 있다. 학병 출신으로 버마에 있었던 이가형의 회고에 의하면, 이들은 모올메인의 수용소에 있다가 1946년 5월 21일에 랑군의 아롱 수용소로 이동하였다. 이곳에는 한인 지원병과 군속·일본군‘위안부’ 등 250명이 있었다고 한다.<sup>85</sup> 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영국군 문서에 따르면 1946년 3월 30일 당시 인도차이나에는 7만 명의 포로가, 태국에는 11만 6천 명의 포로가 있었는데 이 중 조선인 포로는 216명으로 집계되었다.<sup>86</sup> 반면 전략첩보국(OSS)에서 1945년 9월에 조선인 포로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작성한 문서에는 태국에 있는 조선인의 수는 총 7,400명으로 포로감시원들이 900명, 일본군 병사가 5,000명, 그리고 일본군‘위안부’가 1,500명이었다.<sup>87</sup>

그렇다고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랑군에 있었던 110 포로수용소(110 P.O.W. CAGE)의 전투 일지(War Diary)에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다. 랑군 시내에 위치한 중앙 감옥(Central Jail)은 일본군이 연합군 포로를 수용하던 장소였는데, 영국군이 해방한 뒤 이곳에 110 포로수용소를 설치하였다. 이 수용소는 2,000~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주로 일본인 전범 용의자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수용소 기록 속에 조선인과 중국인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945년 7월부터 1946년 4월까지 이 수용소를 거쳐간 일본군‘위안부’는 모두 38명으로, 그중 36명은 중국인이었다. 그런데 중국인 ‘위안부’는 포로수용소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군 혹은 중국인 대표에게 인계되었다. 연합국의 시민이기 때문

85 김도형, 2014, 앞의 글, 34쪽.

86 TNA WO 203/4467.

87 OSS, Korean Organization, NARA RG 226 Entry NM-54 19-A Box 296.

에 포로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2명의 조선인 ‘위안부’는 1946년 4월 26일까지 이 수용소에 약 8개월간 있었고 이후 일본인 수용소였던 랑군의 코킨(Kokine) 수용소로 이송된다.<sup>88</sup>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영국군도 조선인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를 다른 포로들과 구분지어 관리하고 있었다.

일본인으로부터 조선인들이 분리된 포로수용소에서는 일본군 소속이었던 조선인, 군속, 포로감시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 태국의 수용소에서는 조선인 포로 대표에 의한 자치 생활이 시작되었고 풍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었다. 태국의 수용소에 있었던 문옥주는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매일”이었다고 기억하였다. 랑군의 수용소에 있었던 이용녀도 수용소 출입이 자유로웠으며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는 나날을 보냈다고 증언하였다.<sup>89</sup> 남성 포로의 경우 수용소에서 노역을 해야 하는 일도 있었으나 여성 포로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부과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1946년 초부터 일본인 포로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한다.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조선인들은 연합군이 제공한 큰 배를 타고 오랜 시간을 항해해 조선에 도착하였다. 보통 영국군이 제공한 배에는 일본인들이 함께 탔으며, 일본에 들렀다가 조선의 부산항 혹은 인천항으로 이동하였다. 때로는 조선이 아니라 일본에 내려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연결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인도에서의 귀환 상황도 이와 유사하였다. 미치나에서 붙잡혀 레도로 보내졌던 조선인 ‘위안부’들은 심문이 끝난 뒤 인도의 데올리(Deoli) 수용소로 보내졌다. 이곳은 주로 일본인 민간인들이 수용되어 있던 곳이었다. 1945년 2월 국제적십자사가 수용소를 시찰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버마에서 일본군이 후퇴하며 버린 조선인 ‘위안부’ 22명이 수용소의 병원 건물에 있었다고 적혀 있

88 TNA WO 172/9343, WO 172/11148.

89 모리카와 마치코·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2005, 앞의 책, 154쪽;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편, 1993, 앞의 책, 223쪽.

다.<sup>90</sup> 이 여성들은 일본인 민간인들과 분리된 곳에 있기를 희망하였다. 당시 데올리 수용소의 한 분과를 맡은 영국 선교사 노라 잉게(Norah Inge)도 몇몇의 일본군 ‘위안부’가 별도 구역에 수용되어 있다는 구술을 남겼다.<sup>91</sup>

인도의 수용소에 있었던 일본인과 조선인 포로들은 모두 1946년 5월에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1946년 5월 17일에는 인도 서부의 카라치(Karachi)항에서 조선인 여성과 아동 24명이 탑승하였다. 데올리에 있던 여성의 귀환 시점으로 보인다.<sup>92</sup> 연합군 수송선을 타고 버마로 동원되었던 조선인 ‘위안부’는 마침내 이렇게 귀환할 수 있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반이 넘는 포로수용소 생활의 끝이었고, 버마로 동원된 지 약 4년 만의 귀환이었다.

## V. 맺음말

버마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연합군의 보고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심문 기록,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일본군의 기록, 피해자의 증언들은 여러 시각에서 당시의 사실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엮어내는가이다. 본 연구는 부족하지만 연합군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 자료들을 엮어 버마의 ‘위안부’ 제도와 버마에서의 피해 실태를 다양한 자료의 교차를 통해 제시하고 한 시도이다.

버마는 식민지 여성의 체계적인 대규모 동원이 확인되는 지역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위안부’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제4차 위

---

90 KBS, 시사기획 창 “국가는 그들을 버렸다”(2018.08.21.)(<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7505&ref=A>). 방송에 따르면 조선인 ‘위안부’와 함께 있었던 업자인 기타무라 부부는 근처의 일본군 수용소였던 비카너 수용소로 보내졌다.

91 Tessa Morris-Suzuki, 2015, 앞의 글, p. 2.

92 TNA WO 203/6347.

안단'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에서의 '위안부' 동원은 업자에 의한 취업사기와 인신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일본군의 개입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일본군은 '위안부' 모집과 이송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항 허가와 승선권까지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선 각지에서 많은 여성들을 모아 한 번에 버마의 위안소로 동원하였다.

버마에서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실질적인 주체는 일본군이었다.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감독의 모든 영역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군의 필요에 따라 버마 전역에 위안소를 배치하였다. 버마의 주요 대도시에는 여러 위안소들이 설치되었고 일본군들은 이런 도시의 위안소를 이용하면서 전선으로 나아갔다. 전장에도 위안소가 있었는데, 이곳의 '위안부'들은 항상 폭격과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버마의 위안소 체계는 후방부터 전방까지 촘촘하게 뻗어 있었다.

버마는 특히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가 많이 확인되는 지역이다. 연구에서 분석한 증언 중 버마에 있었던 피해자는 8명으로 전체 증언자의 5%에 지나지 않지만, 버마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연합군 보고서들도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버마에 있는 위안소 중 적어도 절반 이상에는 조선인 여성만이 있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온 '위안부' 피해자도 다수가 있었다. 버마에는 일본인, 중국인, 타이완인, 버마인 여성들도 '위안부'로 동원되었다. 일본군은 여성의 민족·인종에 따라 위안소를 구분하고 각지에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버마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쟁이 끝나기 이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전장에서 일본군과 최후를 함께하였고, 혹은 일본군에게서 버려져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해야 했고, 결국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다. 연합군의 포로 및 귀환 관련 문서 속에는 '위안부'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만이 나타날 뿐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오랜 포로생활을 견디고 나서야 피해자들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한편 이렇게 하여 버마에서 돌아온 이들이 있지만 그 피해를 증언한 사람은 많지 않다. 피해자들

에 대해 남겨진 기록과 증언의 부재 사이에 남은 간극은 앞으로 연구자들이 메꾸어 나가야 할 숙제이다.

지금까지 일본군‘위안부’ 제도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연합군 자료와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이다. 이것은 자료의 한계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각 지역에 대한 여러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버마 이외에도 일본군이 점령한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지역에 대한 세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각 연구들이 서로 비교 가능하게 된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추가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2017, 『남서태평양지역 총사령부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문서 1』.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 日本軍 「慰安婦」關連公文書(<https://wam-peace.org>).
- 여성가족부, 201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 정진성 편, 2018a, 『일본군'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I』, 선인.  
\_\_\_\_\_, 2018b, 『일본군'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II』, 선인.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
-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NA) 자료.
- KBS, 시사기획 창 “끌려간 소녀들 버마 전선에서 사라지다”(2015.08.10.).  
\_\_\_\_\_, 시사기획 창 “국가는 그들을 버렸다”(2018.08.21.).
-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1967, 『ビルマ攻略作戦』, 朝雲新聞社.  
\_\_\_\_\_, 1968, 『インパール作戦』, 朝雲新聞社.

### 단행본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편, 2013, 『들리나요? 열두소녀의 이야기』.
- 모리카와 마치코·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김정성 옮김, 2005, 『버마전선 일본군'위안부' 문옥주』, 아름다운 사람들.
- 센다 가코오, 편집부 옮김, 1992, 『증언: 여자정신대8만명의 고발』, 다물
- 안병직 번역·해제, 2013,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2006,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
- 윤명숙, 최민순 옮김, 2015,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 정진성, 2016,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현백, 2004, 「나치의 강제매춘정책과 인종주의」, 『역사비평』 2004년 봄호(통권 66호).
-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1995, 『짓밟힌 인생의 워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1)』.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편, 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
- 
- \_\_\_\_\_ , 1999,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 西野瑠美子, 2003, 『戦場の「慰安婦」-拉孟全滅戦を生き延びた朴永心の軌跡』, 明石書店.
- Ariyoshi, Koji, 2000, *From Kona to Yenan: The Political Memoir of Koji Ariyoshi*, Edited by Alice M. Beechert and Edward D. Beechert, University of Hawaii Press.
- Beasley, W. G., 2013, 정영진 옮김, 『일본제국주의』,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WAM, 2017, 『地獄の戦場ビルマの日本軍慰安所』.

## 논문

- 강정숙, 1997, 「일본군 위안소의 지역적 분포와 그 특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 기세찬, 2013, 「인도-버마전역과 중국원정군」, 『군사』 88호.
- 김도형, 2014, 「일제 말기 필리핀·버마지역 한인 병사의 강제동원과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호.
- 김성원, 2003, 「영국과 일본의 대미얀마 식민정책과 반향」, 『비교문화연구』 14호.
- 박정미, 2011,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7권 2호.
- 박정애, 2015,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사학연구』 120호.
- \_\_\_\_\_, 2018, 「만주 지역 일본군 위안소와 조선인 ‘위안부’ 피해 실태」,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편,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수정정책』, 동북아역사재단.
- 방선주, 1992, 「미국 자료에 나타난 한인 ‘중군위안부’의 고찰」, 『國史館論叢』 제79집,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18, 「일본군‘위안부’의 귀환」(1997), 방선주선생님저작집간행위원회 편, 『한

- 국현대사 쟁점 연구』, 선인.
- \_\_\_\_\_, 2018, 「등중 섬멸전 중의 한인위안부들」(2000), 방선주선생님저작집간행위원회 편, 『한국현대사 쟁점 연구』, 선인.
- 백재예, 2016,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연합국의 일본군‘위안부’ 인식에 관한 연구: ATIS, NEFIS 심문 보고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7, 「체계적으로 관리된 성폭력, 일본군 위안부 제도-연합군번역통역부(ATIS) 심문 보고서를 통한 재고찰」, 『사회와 역사』 114호.
- 정진성, 2003, 「전시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 \_\_\_\_\_, 2007, 「미하원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협의를 강제성”과 그 역사적 진실」, 『사회와 역사』 76호.
- 하야시 히로후미, 강혜정 번역, 2011, 「전쟁체험기와 부대사를 통해 본 ‘중군위안부」,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엮음, 강혜정 번역, 『일본의 군 위안부 연구』.
- 하중문, 2001, 「일본군‘위안부’의 동원 체계」, 『성곡논총』 제32집 상권.
- 淺野豊美, 1999, 「雲南・ビルマ最前線における慰安婦達-死者は語る」,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慰安婦」關係資料委員會 編, 『慰安婦問題調査報告』.
- 林博史, 1994, 「ビルマ・マンダレーの日本軍慰安所規定」, 『戦争責任研究』 第6號, 日本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 \_\_\_\_\_, 1996, 「英軍による日本軍性的暴力の追及」, 『戦争責任研究』 第14號, 日本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 Cribb, Robert, 2016, “The Burma Trials of Japanese War Criminals, 1946-1947”, Kerstin Von Lingen(ed.), *War Crimes Trials in The Wake of Decolonization and Cold War in Asia, 1945-1956*, Palgrave macmillan.
- Morris-Suzuki, Tessa, 2015, “You Don’t Want to Know About the Girls? The ‘Comfort Women’, the Japanese Military and Allied Forces in the Asia-Pacific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 13, Issue. 31, No. 2, August 3.

## 연합군 자료를 통해 본 버마의 일본군‘위안부’ 제도

공준환

본 연구는 연합군 자료를 중심으로 버마의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밝힌다. 이를 위해 버마로의 ‘위안부’의 동원,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위안부’의 귀환 과정을 각각 살펴보았다.

버마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새롭게 점령한 지역으로, 일본은 연합군으로부터 버마를 방어하기 위해 다수의 일본군을 주둔시켰다. 일본군은 이곳에 많은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과 점령지였던 중국으로부터 여성들을 동원하였다. 조선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여성을 동원하였는데, 동원은 업자가 담당하였지만 일본군의 개입과 협조가 있었다. 여성들을 동원하는 방식은 취업사기나 인신매매의 형태였다.

버마에서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실질적인 주체는 일본군이었다. 일본군은 군의 필요에 따라 버마 전역에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위안소는 버마의 주요 대도시로부터 최전방의 전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운영되었다. 버마의 위안소에는 조선인 여성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이 있었고, 중국인, 버마인, 일본인 ‘위안부’도 있었다. 피해자의 출신 민족을 기반으로 위안소가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군은 버마에서 패배할 때 ‘위안부’를 전장에 남겨두거나 방치하였다. 버마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력으로 귀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후 모두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들은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장기간 수용되었다가 연합군 수송선을 타고 조선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주제어:** 버마, 일본군‘위안부’ 제도, 위안소, 연합군 자료, 동원, 귀환, 포로수용소

## ABSTRACT

# A Study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in Japanese-occupied Burma based on Allied Documents

Kong Joon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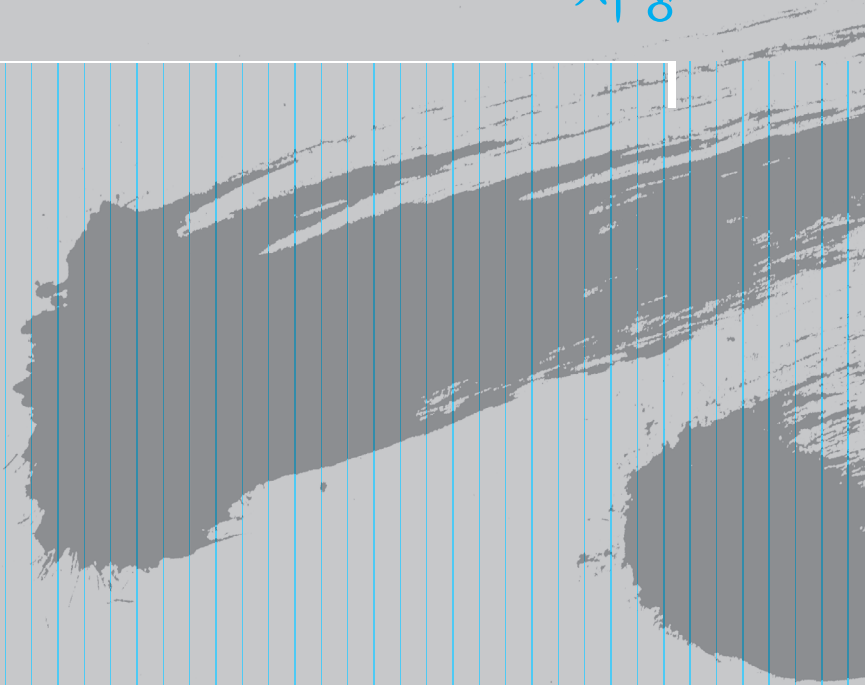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focusing on the affected areas, and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how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was operated in Japanese-occupied Burma. Burma was occupied by the Japanese Empire during the Asia-Pacific War, where the mass mobilization of the Korean comfort women began in July 1942. The mobilization of the comfort women, including Koreans, was undertaken by middlemen, but it was facilitated with the active intervention and cooper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colonial authorities. The mobilization mostly took the form of job fraud or human trafficking. The actual subject that managed the comfort stations in Burma was the Japanese military. Japanese troops set up multiple comfort stations across Burma as needed. Most of the comfort stations

were established in safe rear cities, but some of the stations located on the battlefield. Documents of the Allied Forces show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 comfort women in Burma. Over half of the comfort stations in Burma had Korean women. In addition, a number of Japanese, Chinese and Burmese comfort women were mobilized in Burma, and Japanese troops deployed them throughout the country. There are few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who left Burma until the Japanese defeat. They became prisoners of the Allied Forces and were detained at war camps for a long time and then returned to Korea by the ships of the Allied Forces.

**Keywords:** Burma,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Comfort station, Allied Documents, Forced Mobilization, Repatriation, POW camps



# 서평





일본인 학자,

한국의 뉴라이트를 겨누다

-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 도리우미 유타카,

지식산업사, 2019

최재성 | 청암대학교 연구교수

- I.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과 『반일 종족주의』
- II. 식민지 근대화론과 일본 우익의 주장
- III.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용과 의의
- IV. 향후 과제



## I.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과 『반일 종족주의』

2019년 9월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도리우미 유타카 지음, 2019, 지식산업사)이 출판되어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여러 언론이 저자를 인터뷰하고, 저서를 소개한 것이 그 관심을 증명한다.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에 앞서 발행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일부분을 이루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고 있어서 더 주목받았다.

두 책의 출판 시기는 미묘하다. 먼저 『반일 종족주의』는 해방 74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 또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진 7월이라는 시점에 발행되었다. 한국 정부와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사 학계를 겨냥한 시기 선택이었다고 보인다. 특히 강제동원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를 옹호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한 반발이 그 원인이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4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가진 일본 정부는 결국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때에 나온 『반일 종족주의』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 반문명과 반인륜의 일본 제국주의에 치열하게 저항하며 발전해 온 한국 민족주의를 한낱 ‘반일 종족주의’로 폄하하는 내용의 이 책은 과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던 이영훈, 김낙년, 주익종 등 경제사학자들이 저술한 책이다. 전체 내용은 경제사 이외의 분야에도 걸쳐 있지만, 식민지기 경제사와 관

련한 주제인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일제의 식민 지배 방식, 강제동원 등을 다루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일제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최근에 새롭게 나온 주장이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뉴라이트’를 자처하는 세력이 내세웠던 주장이다. 2005년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라는 한 학자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매우 다행스런 일로, 원망하기보다는 **축복**”이라느니, “한국의 민족문화가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 **강화**”되었다는 따위의 발언을 하였다. 일본 극우파 잡지에 기고한 「공산주의·좌파사상에 뿌리내리고 있는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 한일병합을 재평가하라」라는 글에서였다(강조는 인용자, 이하 같음).

또 2008년 교과서포럼이라는 단체는 “일제의 지배도 총칼로 한국인의 재산을 빼앗는 전근대적 폭력적 수탈이 아니라 **근대적 재산제도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준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한국의 지배를 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식민지에서 일본인 자본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이** 벌어졌다. 한국인은 경제성장의 주도세력은 아니었지만, 방관자만도 아니었다. 기회가 베풀어지자 **한국인 기업가도 성장**하였으며, **한국인 기술자와 숙련노동도 성숙**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반일 종족주의』는 이와 같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을 답습한 책이다. 2019년 9월에 출판된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은 『반일 종족주의』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 II. 식민지 근대화론과 일본 우익의 주장

### 1.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책이 반박 대상으로

삼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 내용과 그 주장을 편 뉴라이트의 조직화 과정을 개관해보고자 한다.

2005년 1월 교과서포럼(공동대표 박효중, 이영훈, 차상철)이 만들어졌다. 이어 2006년 2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 발간되었다. 같은 해 5월과 11월에 각각 뉴라이트재단(이사장 안병직)이 설립되고, 대안교과서 시안 검토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기존 역사 교과서는 ‘**자학사관**’, ‘**좌편향**’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후소샤 교과서를 출판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자국의 기존 역사교과서를 공격하며 내세운 주장과 판박이이다. 교과서포럼은 2008년 3월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출판하였다. 이에 『역사비평』 2008년 여름호를 통한 역사학자들의 종합적 비판이 있었고, 『시대정신』(뉴라이트재단 기관지) 2008년 가을호를 통한 뉴라이트의 반박이 있었다. 2011년 교과서포럼 인사들이 한국현대사학회를 만들었다. 2013년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를 둘러싼 논란 끝에 뉴라이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가 교육부 검정을 통과하였다.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2008)에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용이 집중 서술되어 있다. 그것을 소개하자면, 첫째 한국근대사(1876~1945)에 대해 기존 교과서가 지배와 저항으로 단순화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새로운 근대문명에 대한 학습기**’, ‘**근대문명의 제도적 확립기**’, ‘**현대문명의 역사적 기원**’으로 지칭하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를 미화하였다.

둘째,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광무 연간(대한제국) 양전사업과 토지조사사업(조선총독부)을 대조·비교하여, 광무양안은 전근대적인 것이고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대부분의 소유권자가 신고한 대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84쪽)고 강조하였다.

셋째, 산미증식계획에 대해 “쌀은 일본에 수탈된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라 일본에 수출되었으며, 그에 따라 일본인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쌀을 대신해서 만주에서 조와 콩이 대용식품으로 수입되었다. (중

략) 1인당 열량 섭취가 줄어들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98쪽)라고 서술하였다. 수탈이 아닌 수출, 소득 증대를 강조하고, 식량 부족에 처했던 조선인의 열량 섭취가 줄지 않았다고 강변하였다.

넷째, 경제 성장률에 대해 “전체적으로 식민지 한국의 연평균 총생산은 인구 성장률 1.3%를 능가하는 3.6%의 성장을 보였다.”(99쪽)라고 적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처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내 우익들의 주장과 흡사하다.

## 2. 일본 우익의 주장

일제 멸망 후에 일본 우익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주장을 반복, 강조하였다. 1953년 제3차 한일회담 당시 일본 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는 “일본의 조선통치는 조선인에게 은혜를 베풀 **점**”이 있다고 했고, 1965년 제7차 한일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는 “36년간은 착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의로 한 것이다. (중략) 일본은 조선에 **공장이나 가옥, 산림** 등을 다 두고 왔다.”라고 하였다. 또 1974년에 다나가 가쿠에이[田中角榮] 수상은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김 양식**을 비롯해 더 나아가 **일본의 교육제도, 특히 의무교육제도** 같이 지금까지도 지켜가는 훌륭한 것”이라고 표현했으며, 1979년 일본 경단련(經團聯) 회장 사쿠라다 다케시[櫻田武]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과거 일본 식민지시대의 **훌륭한 교육 덕분**”, “36년간의 **일본 통치의 공적**”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1986년에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 문부상은 “기초적인 교육에 대해서도 일본은 **많은 예산을 투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총무처 장관은 “그러나 일본은 좋은 일도 했다. **고등농림학교**를 세웠다. 서울에는 **제국 대학도 만들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수준을 높인 것이다**. 기존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 도로, 철도, 항만정비를 비롯해 산에 나무도 심었

다.”라고 했고, 2003년에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도쿄도지사는 “식민지 주의라고 해도 매우 앞선 것이었고 인간적이었다.”라고 발언하였다.

해방 후 일본 우익들의 주장은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핵심으로 하는 ‘식민사관’의 틀과 그 궤도를 같이하는 것이다.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에 따르면,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은 천 년 전 일본 고대의 모습과 같은 상태에 정체되어 있으며 또 한국사는 타율로 점철되어 자율적으로 근대화할 수 없으므로,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필요하며 식민 통치를 통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식민사관의 틀과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일본 우익들의 인식 이 식민사관의 틀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인식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 Ⅲ.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용과 의의

#### 1. 이 책의 구성과 내용

앞에 서술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제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을 살펴 보자.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설

제1장 1910년 이전 일본인 청부업자의 성장과 조선 진출

제1절 일본인 청부업자의 발생과 성장

제2절 일본인 청부업자의 조선 철도 건설 진출

제2장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청부업자 보호정책

제1절 재정지출에서 토목 관련 비용의 규모

제2절 일본인 청부업자 보호와 조선인 청부업자 억압

- 제3절 관리 출신 일본인 청부업자
- 제3장 일본인 청부업자의 이윤 창출 활동
  - 제1절 일본인 청부업자 단체와 공사 예산 확보 활동
  - 제2절 일제하 조선인 노동자의 저임금과 일본인 토목청부업자의 부당 이익
  - 제3절 일본인 토목청부업자의 이윤 창출 사례
  - 제4절 일제하 수리조합사업과 일본인 토목청부업자들
- 제4장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분류와 반론
- 결어

위 목차를 보면, 앞뒤에 서설과 결어가 있고, 그 사이에 본문은 모두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에 따르면, 서설과 본문 4장 중 앞의 3개의 장은 2013년에 통과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일제하 일본인 토목청부업자의 활동과 이윤 창출』) 내용이고, 제4장은 2015년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서설에서는 이 연구에 착수하게 된 동기가 서술되어 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식민지기 재조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제 격차는 현격했고 조선인은 빈곤 상태에 있었는데, 저자는 그 빈곤의 원인을 천착하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재정(세출), 특히 철도 부설과 산미증식계획(수리조합사업)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토목공사를 담당한 일본인 토목청부업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본론인 제1~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청부업자들은 조선 철도 건설을 계기로 조선에 정착하였다. 철도부설권이 일본에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토목청부업자는 소멸되었다(제1장). 또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재정 지출의 약 20%의 금액이 영선비·토목비·철도 건설 개량비·토지 개량비·사방 사업비 등에 쓰였다. 조선총독부는 공정한 토목 정책을 표방하기는 했으나 일본인 청부업자들만을 보호하는 방침을 택해 조선인 청부업자는 성장하지 못했다(제2장).

제조 일본인 청부업자들은 일본 본국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여 수리조합사업과 철도 12년 계획이 제국의회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선인 노동자들은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파악하여 작성한 통계에 비해 30~50% 수준만을 지급받았고, 그 차이만큼 청부업자가 합법적으로 착취하였다. 그럼에도 토목업자들은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또 강제 무임노동도 있었다(이들은 비합법 착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 토목청부업자는 담합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수리조합사업을 통해 조선인 지주의 땅이 일본인 지주와 일본인 청부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대량 유출되었다. 이는 조선인 지주 토지의 구조적 수탈이다(제3장).

제4장은 제목 그대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5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반론을 가한 것이다. 5가지 식민지 근대화론은 ① 식민지 조선 경제 발전론, ② 일제에 의한 경제 발전론, ③ 조직적 수탈 부재론, ④ 일제 권력의 경제 악용 부정론, ⑤ 경제 이익의 평등 파급론이다. 저자의 반론을 보면, ①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은 인정하되, 그 수치는 더 낮게 수정해야 한다고 한다. ②에 대해서는 일제는 조선의 공업 발전을 억제하는 방침을 일관되게 취했고, 1930년대에 만들어진 공장도 일본 내 공장도 경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③ 이하는 다음 ‘의의와 한계’에서 언급하겠다.

서설과 제3장까지의 내용을 거칠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담당한 일본인 토목청부업자가 부당이익을 취함으로써 재조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제 격차가 커졌고, 조선인들은 빈곤 상태에 있었다.

## 2. 의의와 한계

이제 이 책의 의의를 살펴보자. 첫째, 20세기 한-일 역사를 모르는 일본인들이 한-일 역사 갈등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저자가 밝혔듯이 저자의 연구 동기 가운데 하나는 “일본인도 납득할 수 있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증거와 논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 책이 “증거와 논리”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였다. 2001년 한일 역사 분쟁을 일으켰던 후소야 출판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한국병합 후 일본은 식민지로 한 조선에서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행하고, 토지조사를 개시했다.”라는 서술을 통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노골화하였다. 저자는 바로 이 철도 부설과 수리조합 건설 과정에서 토목업자의 부당 이익에 중점을 두어, 이것이 재조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제 격차를 크게 했고 조선인들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논증하였다. 이는 국내 식민지 근대화론자에게도 해당되는 점이다.

셋째,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비판하는 수탈론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있다. 이 시각은 앞에서 소개한 제4장의 다섯 가지 식민지 근대화론 중 ③~⑤의 반박에서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먼저 ③에 대해서는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수탈이 없었으나, 철도와 도로공사에서 있었던 토지 강제 기부가 곧 수탈이었고, 산미증식계획의 쌀 수탈도 정당한 가격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차만큼 수탈당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④에 대해서는 국가주권이 개입하는 경제 분야 중 대표적인 재정과 금융 부문에서 일본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부분, 조선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탈이라고 보았다. 또 일상 경제생활에서 권력이 개입하는 사례-조선인 노동자가 임금 미불 등을 당했을 때 구제 수단이 없거나 조선인 상점에서 일본이 구매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헐가 매도를 하는 경우-, 또는 ‘일본인끼리의 연대감’(원문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한자로는 連帶感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익숙한 표현은 ‘연대 의식’일 듯함-평자)에 따라 조선인의 손실이 생기는 것을 들어 논박하였다. ⑤에 대해서는 조선인 경제와 일본인 경제로 나뉘어 조선인을 억제하고 수탈·착취할 수 있는 이중 구조가 존재했으므로, 경제 발전의 이익이 조선인에게 평등하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반박하였다.

수탈론 지지와 관련해서 저자의 이 관점은 ‘수탈’ 개념을 둘러싼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자는 먼저 허수열의 주장(“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은 교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폭력을 동반하는 경제외적인 방법으로 잉여가치를 빼앗아 간다는 뉘앙스를 가진 수탈의 개념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에 대해, “이는 일본의

경제적 악행을 부정한 셈으로 결과적으로 조선인들이 가난해졌다고 해도 일본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폭력이나 권력, 협박 등으로 빼앗는 것”이라는 기존 수탈 정의에만 얽매이지 말고, 구조적 폭력 지배에 주목하자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정치권력에 의한 경제 영역에서의 부당 관여·개입,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당한 방식, 부작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책의 한계를 살펴보자. 먼저 수탈 문제를 ‘수탈자 일본인 대 피수탈자 조선인’으로 도식화하여 민족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식민지에서는 민족 모순이 주요 모순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 대 노동’의 대립도 기본이 되는 모순이다. 따라서 조선인 수탈자도 중요한 존재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이 책의 주제(일본인 토목청부업자)에 충실하였기 때문이겠지만, 저자는 금융 부문에 대해서 실증보다는 추정을 제시하였다. 일본인에게는 5%, 조선인에게는 10%의 대출금리가 있을 때, 일본인이 5%로 차입하여 8%로 조선인에게 재대여하면 3%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서술이 그것이다(역시 ‘수탈자 일본인 대 피수탈자 조선인’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 부문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로서도 그렇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덧붙여 금융 부문과 관련해서 ‘서민금융기관’을 내세웠던 금융조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금융조합의 조합원인 중농 계급이 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비조합원인 빈농에게 고리대금을 놓기도 하고, 연체 또는 미상환시 차압을 통해 파산시키기도 하였다. 이 일로 인해 금융조합은 1920년대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고리대적 착취기구’라는 지탄을 받았다. 또 도시금융조합의 ‘조합원 외 예금’이 촌락금융조합의 대출 재원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현상을 두고 당대 언론은 ‘부자는 빈자를, 도회는 농촌을 흡취’한다거나 ‘부유한 도시 상인이 농촌 빈민을 착취’한다고 비판하였다.<sup>1</sup>

## IV. 향후 과제

### 1. 토지조사사업에서 수탈 문제

아래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처하기 위한 장래 과제를 세 가지 정도로 꼽고자 한다. 먼저 토지조사사업에서 수탈 문제는 그동안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로부터 가장 거센 비판을 받은 주제이다. 그런데 토지조사사업 시기 당대 최고 권력 이던 조선총독부와 일부 개인이 폭력적으로 토지 소유 관계를 창출한 부분이 있다. 그에 대해 박문규는, “소수의 수조권자와 부농이 토지 사유권을 취득한 반면에 지금까지 현실적인 토지 점유자이며 경작자인 수백만의 농민이 토지의 점유권을 상실하고 토지에서 해방되고 동시에 토지에 대한 오직 한 가지 경작권의 보증(중략)까지도 상실하고 타방에서 일어난 입회지의 사적 분할 및 국가에 의한 영유(중략)와 함께 완전히 추방되고 말았던 것이다.”<sup>2</sup>라고 하였다. 박문규의 이 견해는 총독부 관리였던 히사마 겐이치[久間健一]가, 그의 저서에서 그대로 인용(“조선에서의 토지소유제 확립은 과거에 토지의 현실적 보유자였고 또 경작자였던 농민을 희생시키고, 당시의 수조권자를 바로 토지소유권자로 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서 소수의 수조권자와 부민(富民)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다수의 농민은 토지에서 이탈되었다.”<sup>3</sup>)하여 자신의 논거로 삼았다.

당시 역둔토 등의 국유화는 수조권과 경작권 가운데 경작권자인 농민을 배제하고, 수조권만을 소유권으로 인정하여 총독부 소유로 한 것이었다. 또 ‘입회

- 
- 1 최재성, 2006, 『식민지 조선의 사회 경제와 금융조합』, 경인문화사, 98~99·124쪽.
  - 2 오미일 편, 1991, 『식민지시대 사회성격과 농업문제』(풀빛, 143쪽)에 수록된 박문규의 「토지조사사업의 특질 - 반봉건적 토지소유제의 창출과정에 관한 분석」. 이 글은 원래 박문규가 「農村社會分化の起點としての土地調査事業に就て」라는 제목으로 1933년 12월 경성제대 법문학회 발행 논집 『朝鮮社會經濟史研究』에 발표한 것이다.
  - 3 久間健一, 1935, 『朝鮮農業の近代的様相』, 西ヶ原刊行會, 2~3쪽.

지의 사적 분할 및 국가에 의한 영유'에 따라 농민이 추방된 대신에 총독부와 개인이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수탈'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 라 불려야 할 것인가. '1물 2권'이 '1물 1권'이 되었다는 것으로 '근대성'을 부여 하는 이면에 경작권을 박탈당한 농민이 있다. 그 농민으로서는 '수조권'을 소유 권으로 하는 것만이 '근대'적인 것이고, '경작권'을 소유권으로 하는 것은 '비근대'적인 것이냐고 물을 법하다.

## 2. 농민의 궁핍화와 경제 '성장'

1914년과 1928년을 비교해보면, 당시 농촌 중간층인 자작농과 자·소작농은 14년간 63.1%(22%와 41.1%)에서 50.3%(18.3%와 32%)로 12.8%가 감소한 반면, 소작농은 35.1%에서 44.9%로 10% 가량 크게 증가하였다.<sup>4</sup> 다시 4년 후인 1932년에 이르면, 자·소작농 호수는 25.3%로 더 줄어들고, 소작농 호수는 52.8%로 대폭 늘었다.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감소된 자·소작농 호수 6.7%가 순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거기다 1.2%의 자작농까지 순소작농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직전이던 1942년 통계를 보면, 소작농 53.8%, 자소작농 23.9%로 1932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sup>5</sup> 이와 같이 식민지 조선 농촌에서는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에 걸쳐 농촌 중간층(자작농, 자·소작농)의 감소와 소작농의 퇴적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자작농 감소 현상을 맞아 1910년대에는 조선총독이 각 도장관에게 보낸 훈령을 통해 '자작농민 보호 증식'을 강조했고, 1930년대에는 '자작농 창정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제 측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그 추세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朝鮮總督府殖産局, 1921, 『朝鮮の農業事情』, 21쪽; 朝鮮總督府殖産局, 1930, 『朝鮮の農業事情』, 25~26쪽.

5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354쪽.

이와 같은 현상은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조선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산미증식계획’, ‘조선공업화정책’ 등의 추진으로 인해 통계 수치상으로 1920~1930년대 총생산량(액)은 증가하였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렇다면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누구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었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인 다수의 궁핍화 이면에 이뤄진 경제 성장의 과실은 일본인·조선인 지주와 자본가에게 돌아갔다. 조선인 대중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절대 다수의 궁핍한 조선 민중들에게는 ‘그림 속의 떡’일 뿐이었다. 그 상황을 두고 ‘근대화’를 찬미할 수 있을까.

### 3. 강제 동원

강제동원에 대한 논쟁은 주로 중일전쟁 이후 ‘전시 총동원 체제기’의 ‘징용’, ‘정신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 사례에서 보듯이 일제 강점 초기인 1910년대에도, 일본인 모집원들이 조선 농촌 곳곳에 들어가 농촌에서 이탈될 처지에 놓인 궁핍한 조선인 농민을 대상으로 행하였던 ‘구조적인’ 노동력 수탈이 있었다. 1910년 이전에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의 숫자는 1천 명을 넘지 않았다. 그들은 대체로 유학생들이었다. 그런데 1910년 이후에는 수천 명으로 불었고, 1920년에는 3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들은 토지(농촌)로부터 쫓겨난 농민들이었고, 일본의 하층 노동자로 편입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1910년대에 대거 일본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은,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에 상세하다. 만세전에 묘사된 부분을 발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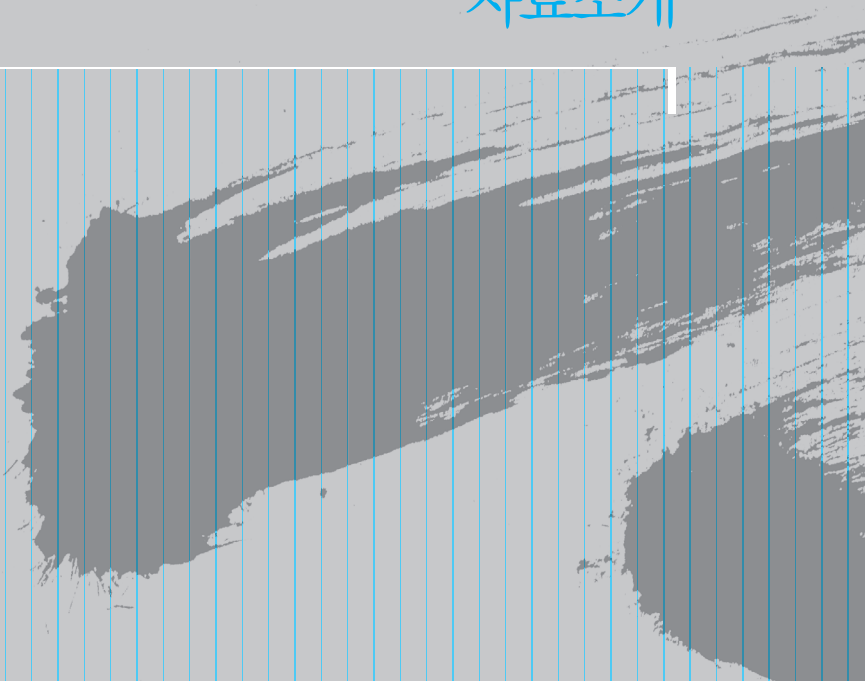
1910년대에 조선 농촌에 들어가 조선인 농민들을 모집하여 일본에 노동자로 보내는 일본인 모집원들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내지(일본)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보(조선 쿠리, 노동자)들을 붙들어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함경, 강원, 그 다음은 평안도에서” 모집했는데, 그중 “경상남도가 제일 쉽다”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남쪽은 일본인이 제일 많이 들어

가서 모든 세력을 잡기 때문에, 북선 지방은 인구도 적거니와 아직 일본인의 세력이 남쪽같이 는 미치지를 못했으니” 그러했다. 방적회사 여공은 임금도 싼 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제일 헐하고, ‘광부 같은 것’이 모집원의 돈벌이가 되었다. 1천 명만 맡아가지고 가면, 2~3개월 동안에 1천 3~4백 원, 많으면 근 2천 원을 벌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 5백 명 모집해서 주고 8~9백 원, 8백 명을 홋카이도 탄광에 보내고 근 2천 원” 수입을 올렸다. “요보는 말을 잘 듣고 힘드는 일을 잘하는 데다가 임은(賃銀)이 헐하니 안성맞춤”이었다. 일본인 모집원들은 조선 농민이 일본에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빛까지 갚아주었다. 그래서 한번 따라나서기만 하면 선불로 빛을 갚아주었기 때문에 조선 농민은 ‘독 안에 든 쥐’ 꼴로 일본인 모집원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비록 소설 속 서술이지만, 생생하며 사실적이다. 소설 속 묘사이므로 그대로 사료로 인용하기는 어렵지만, 당대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일본인 모집원들이 이렇게 조선 안에서 활개를 치는데도, 식민 권력의 대치는 ‘방치와 부작위’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몰락한 조선 농민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마치 지고(至高)의 가치처럼 상찬해 마지않는 ‘근대적’ ‘자본주의적’ 일본 노동시장에서도 ‘구조적 폭력’ 속에 놓여 있었다. ‘인신매매적’ 노동력 약탈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 세 가지 주제 외에도 저자의 제안처럼 단순히 “폭력이나 권력, 협박 등으로 빼앗는 것”에 한정하지 말고, 정치권력에 의한 경제 영역에서의 부당 관여·개입,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당한 방치, 부작위 등을 포괄하여 생각하면, 연구 대상은 여러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다. 할 일이 많다.

# 자료소개





# 타이국립공문서관 소장 일본군‘위안부’ 자료 소개

서현주 |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

- I.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타이 최고사령부 문서 공개
- II. 한국인 여성 명부와 일본군‘위안부’
- III. 수용소 생활과 귀환
- IV. 일본군과 타이 일본군 ‘위안소’
- V. 향후 과제

## I.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타이 최고사령부 문서 공개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수집해온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들의 목록은 2019년 『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집 IV』으로 발간되었고, 동북아역사넷을 통해 웹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타이국립공문서관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sup>1</sup> 재단은 2011년 8월 방콕 소재 타이국립공문서관(National Archives of Thailand)의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계기가 된 것은 두 해 전에 발표된 팻뽀 푸통(Patporn Phoothong)의 석사학위논문이었다. 팻뽀 푸통은 2009년 8월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타이 사회의 불관용 발견하기: 타이 ‘위안부’ 사례 연구(Discovering the intolerance of Thai society: case study of Thai “comfort women”)」에서 그 무렵 공개된 타이 최고사령부의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문서들 중에 당시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들이 있다고 서술하였다.<sup>2</sup> 팻뽀 푸통이 논문에서 제시한 자료 목록을 일차적 근거로 삼아 타이국립공문서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 II. 한국인 여성 명부와 일본군‘위안부’

타이국립공문서관 소장 자료 가운데 먼저 관심을 끄는 것은 여성들의 이름이 기

- 1 이 글은 줄고 「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타이 지역」(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 연구센터 편, 2018, 『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집 IV-중국 지역·타이완 지역·타이 지역 자료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 2 팻뽀 푸통(Patporn Phoothong), 2009, Discovering the intolerance of Thai society: case study of Thai “comfort women”,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록된 명부이다. 현재 각각 영어와 타이어로 쓰인 두 종류의 명부(이하에서는 전자를 영어 명부, 후자를 타이어 명부로 지칭)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1년 조사 당시 복사가 허용되지 않아서 뺏뺏 푸통이(학위논문에서) 영어로 텍스트화한 내용들을 원본과 대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뺏뺏 푸통이 정리한) 영어 명부의 이름과 나이 등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였다. 그러나 타이어 명부를 영어로 바꾸어 정리한 것의 대조는 타이어 해독과 시간 등의 문제로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뺏뺏 푸통이 영어로 번역한 타이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두 개의 명부를 비교해보려고 한다.

영어 명부에는 한국인 여성 287명과 어린이(1~8세) 18명, 총 305명의 이름과 성별, 나이가 기재되어 있다. 타이어 명부는 「(1945년) 10월 22일부터 (1946년) 1월 29일까지 아우타야 수용소에 입소한 한국인 및 타이완인 명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수용소 입소자의 임무, 이름, 나이, 국적, 소속, 수용소 입소 날짜, 비고 등의 여러 항목이 정리되어 있다. 이 타이어 명부는 한국인 남성 987명과 타이완인 남성 14명, 한국인 여성 292명과 어린이 18명, 타이완인 여성 9명과 어린이 1명의 명단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타이완 남성들은 전투 보조 2급으로 임무를 표시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보조여간호사로 기재되어 있다. 타이어 명부에 한국과 타이완인 남성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뺏뺏 푸통의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 글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사실이다. 한국인 남성들의 경우 연령이 최저 19세에서 최고 53세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20대 771명(78.1%), 30대 199명(20.2%), 40대 14명(1.5%), 50대 2명(0.2%)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대다수가 군인·군속으로 추정된다. 1천여 명에 육박하는 군인·군속 명단을 우수명부(留守名簿) 등 기준에 확보되어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와 비교하여 분석한다면, 타이와 인근의 미얀마 등지로 동원되었던 한국인 군인·군속의 실태 파악이 상당히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타이어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여성들의 연령은 10대 11명(3.8%), 20대 244명(83.6%), 30대 32명(11.0%), 40대 4명(1.4%), 미상 1명 등으로 20~29세가 80%를 넘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 같은 연령 구성은 영어 명부도 동일하

다. 영어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287명의 여성 중 10대 4명(1.4%), 20대 236명(82.2%), 30대 41명(14.3%), 40대 4명(1.4%), 미상 2명으로, 20대가 80% 이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로 나타난다. 타이어 명부와 영어 명부의 한국인 여성 명단을 비교해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두 명부 공통 기재 인물의 연령을 비교해보면 영어 명부 쪽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sup>3</sup> 이로써 영어 명부가 타이어 명부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작성된 여성 명부가 관심을 끄는 것은, 명부에 기재된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방송공사(KBS)에서는 2015년 8월 기밀해제된 타이 군부 문서에서 한국인 '위안부' 463명의 명부를 발견했다고 보도하였다.<sup>4</sup> 명부에 기재된 여성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포함된 것은 확실하다. 우선 연합군 문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연합군은 1945년 11월 “한국과 타이완의 여성들은 선량한 민간인과 위안부(comport girls), 간호사이든 일본군과 관련된 사람들이든 모두 아우타야 수용소로 보낼 것”이라는 한국인과 타이완인 처리 지침을 내렸다. 이 문서를 통해 한국과 타이완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가 아우타야 수용소로 보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 1).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 아우타야 수용소에 있었다고 증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와 김복동도 있다. 또 두 명부 속 여성의 80% 이상이 20대인 점,

3 영어와 타이어 명부에서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중 일부의 나이를 비교해보면, 아래처럼 4명 중 3명의 영어 명부 나이가 타이어 명부보다 한 살씩 많게 나타난다.

영어 명부		타이어 명부	
이름	나이	이름	나이
Kang Kap Ryong	33	Kang Kub Liang	32
Ku Yon Bun	23	Gu Yen Bun	22
Ku Ohk	25	Ku Ok	26
Gu Phan Su	29	Gu Pan Chu	28

4 「한국인 위안부 463명 명부 발견」, 『KBS』(인터넷), 2015년 8월 7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26622&ref=D>

일본군이 패전 전후 일본군‘위안부’의 존재가 연합군에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이들의 신분을 간호부로 위장하려 했던 점 등도 명부 속 여성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명부 속 여성들은 전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까?

아유타야의 육군병원에서 간호부로 3~4개월을 지내다 해방을 맞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는 “어느 학교에 모여 생활했는데 천 명 정도 있었던 같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조금 많았고, (중략) 군인, 군속, 민간인 등 남녀노소가 모여 있었다. (중략) 그중에서 위안부는 육칠십 명 정도였던 것 같다”<sup>5</sup>라고 말했다. 위의 연합군 한국인과 타이완 처리지침에서 아유타야 수용소로 보내진 여성 중에 ‘위안부’나 간호사가 아닌 민간인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40대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부 속 여성들을 모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보기는 힘들다. 명부 속 여성들의 실태를 명확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명부의 원본 대조 작업과 한글 번역, 영어 명부의 한글 번역과 두 명부의 비교를 통한 동일인 여부 확인, 유수명부 등 다른 명부와의 교차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신청을 했으나 관련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 명부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재심의를 거쳐 뒤늦게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사례<sup>6</sup>는 이러한 작업의 현실적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준다.

한편 미 국립공문서관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타이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전체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있다(자료 2-1, 2-2). 「한국인 조직(Korean Organization)」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문서에서 전략첩보국(OSS)

5 모리카와 미치코 글, 김정성 옮김, 2005, 『버마전선 일본군‘위안부’ 문옥주』, 아름다운사람들, 153쪽.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위, 위안부 피해자 1명 추가 인정」, 『서울신문』(인터넷), 2015년 12월 17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7800243>

은 “해리 짐(Harry M. Jim)<sup>7</sup>-전후 타이에서 조직된 한국인 조직인 한국인협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의 대표-이 1945년 9월 현재 약 7,400명의 한국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1,500명이 일본군 ‘위안부(prostitutes with the Japanese troops in Siam)’라고 말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자료를 처음 발견한 방선주는 “미얀마에서 살아남은 일본군 8개 사단 부대들은 영인군(英印軍)과 미군 등에 밀려 타이 쪽으로 후퇴하게 되는데, 보수적으로 따져 한인 군‘위안부’가 1개 사단에 200명이었다고 쳐도 타이에 후퇴한 군‘위안부’는 1,600명은 되어야 된다. 또 타이는 동남아 군‘위안부’ 배급의 중간 기지였으며 일본군이 다수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미얀마와 타이의 일본군에 배당된 한인 ‘위안부’는 최소한 2,000명은 있어야 했는데, 일본 패전 당시 이곳의 한인 ‘위안부’는 1,5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적어도 1,000명 정도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다”<sup>8</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선주는 당시 타이에 적어도 2,500명의 일본군‘위안부’가 있어야 하나, 해리 짐이 1,500명이라고 말하는 점으로 보아 최소 1,000명 정도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소개한 여성 명부 외에 칸차나부리와 우본 수용소 입소자 명단을 확보하고,<sup>9</sup> 유수명부 등 다른 기록에 들어 있는 타이와 버마 지역 동원 여성들의 명단을 파악하여 교차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7 해리 짐은 타이국립공문서관 소장 자료에도 등장한다. 「Pocket Money and Living Allowances of Koreans」에는 아유타야의 한국인 대표로, 「Koreans & Formosans」에서는 방콕과 아유타야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통행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8 방선주, 1997, 「일본군‘위안부’의 귀환: 중간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243쪽.

9 칸차나부리 수용소에 대해서는 타이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알려진 노수복의 증언, 우본 수용소에 대해서는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 2018,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푸른역사, 33쪽 참조.

### Ⅲ. 수용소 생활과 귀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군은 방콕 인근의 고도 아우타야를 비롯하여 칸 차나부리, 우본 등에 한국인들을 수용하였다. 타이국립공문서관에는 연합군이 아우타야로 보낸 군인, 군속, 위안부 및 민간인 들의 수용소 생활과 한국으로의 귀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있다. 207 군사사절단이 1945년 10월 26일에 작성한 「Korean Conc Area-Ayuthia」에는 아우타야의 한국인 수용소가 매우 혼잡하고 의료시설이 거의 없으며 의약품의 보급도 빈약하고 위생설비도 매우 초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타이완인을 더 이상 불러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자료 3). 이 자료를 통해 아우타야 한국인 수용소의 열악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1945년 12월 23일 합동참모본부 제2연락사무소에서 아우타야 수용소를 점검하고 보고한 문서는 한국인 수용자들의 실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자료 4). 이 문서에 따르면 1945년 12월 22일 현재 수용소에는 군인 129명, 민간인 56명, 군속 760명, 여자 218명, 아동 13명, 총 1,176명의 한국인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0</sup> 한국인과 타이완인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1중대에 150명씩 8중대로 나뉘어 있으며 여성은 제7중대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를 앞의 타이어 명부와 비교해보면 타이완인 남성과 어린이만 인원수가 같고, 모든 그룹(한국인 남성·여성·어린이, 타이완인 여성)에서 타이어 명부의 수가 더 많다. 이것은 두 문서의 작성 시기-전자는 1945년 12월 22일, 후자는 1946년 1월 29일 이후-사이에 수용소 입소자가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우타야 수용소에 있던 한국인들의 귀환 과정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자료가 타이국립공문서관에 있다. 이들 자료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들은 1946년 5월 11일 아우타야 수용소를 떠나 임시 열차로 방콕에 도착, 5월 12일 클롱 토이

---

10 타이완인은 남자 14명, 여자 5명, 아동 1명, 총 20명이다.

(Klong Toi) 부두로 이동했으나, 타이 주재 영국군 본부의 명단 확인 과정 때문에 중국무역협회로 옮겨 하루를 묵고 다음날인 5월 13일에 사라 바쉬(Sarah Bache)호에 승선하였다. 한국인 1,411명, 타이완인 204명, 합계 1,615명이 귀환하였다(자료 5-1, 5-2, 5-3). 한국인 승선자 수가 타이어 명부에 나타난 한국인 총수(1,297명)보다 많은 것은 사이공 등 다른 곳에서 온 한국인들도 태웠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IV. 일본군과 타이 일본군 ‘위안소’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군이 설치하고 관리·감독하였으며, 일본군이 직접 일본군 ‘위안소’를 경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타이국립공문서관에도 이 같은 일본군과 일본군 ‘위안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1944년 7월 22일에 작성된 제목 부재 타이어 문서를 보면 쫄탈롱꼰대학교 땅에 세워진 개인 주택을 일본군이 임대해서 매음굴(위안소)로 사용하자, 대학과 집주인이 타이 내 일본 군인용 매음굴을 관리하는 호리노우치 중위를 만나 이전을 요구하였다고 나온다. 호리노우치 중위는 옮겨갈 집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두 달 후 새로운 집을 구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타이 공무원 앞에서 임대료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다(자료 6-1, 6-2, 6-3). 이 자료는 일본군 중위 호리노우치가 타이 내 ‘위안소’ 관리를 담당했으며, ‘위안소’로 사용할 건물의 계약을 타이 당국이 주선했다는 점, 나아가 ‘위안소’가 설치된 두 곳의 구체적 위치(번지수)까지 알려주고 있다.

「군 지정 영업자에 관한 건 통첩」이라는 제목으로 야마타 구니타로(山田國太郎) 타이 주재 일본대사관 무관이 일태동맹연락사무국장에서 보낸 문서도 일본군이 ‘위안소’ 운영에 관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자료 7). 문서의 내용은 군 지정영업자를 군전용과 군이용의 두 종류로 나누어 지정하였으니 편의 제공을 바란다는 것이다. 군전용은 군인, 군속만 사용하고 일반인의 사용은 금지하며,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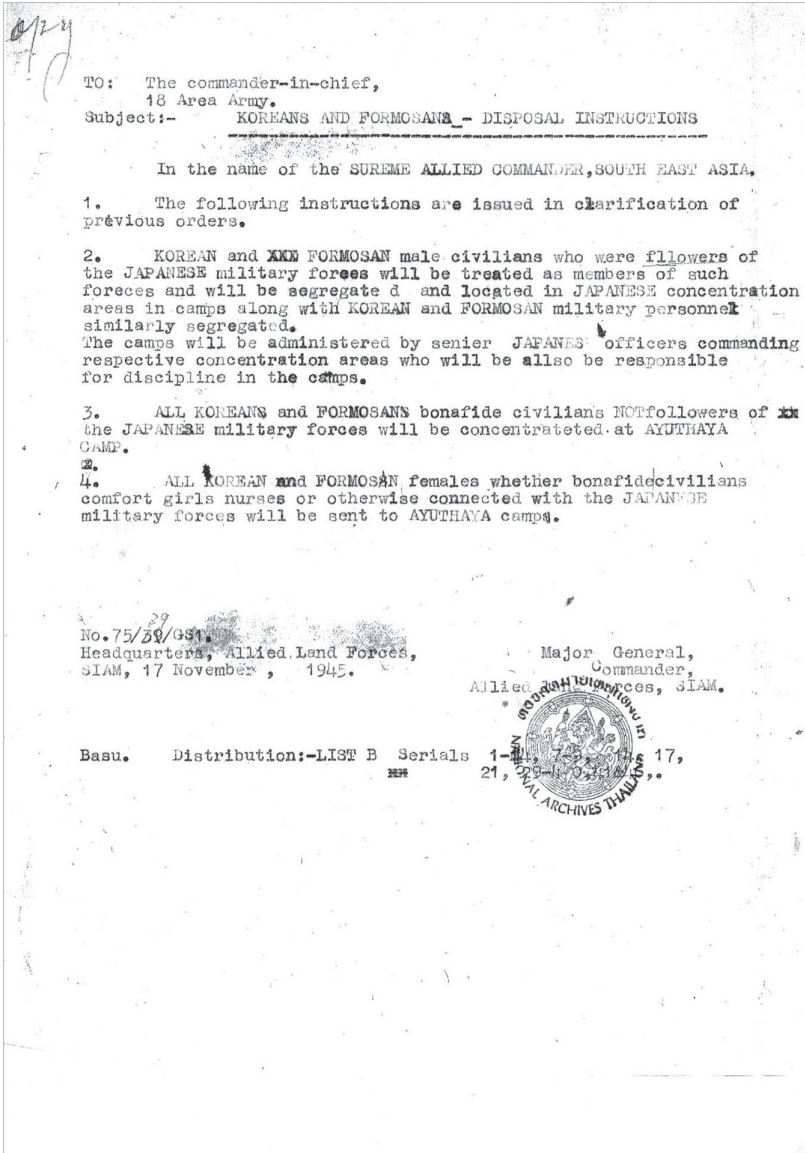
이용은 군인, 군속 및 일반인의 사용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덧붙여 있다. 별지로 첨부된 「군 지정 영업자 일람표(1944년 4월 10일 현재)」에 영업 형태가 구락부로 표기된 군 지정 영업자가 ‘위안소’ 경영자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군이 ‘위안소’의 개설이나 운영만이 아니라 ‘위안부’의 이동도 관리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다(자료 8-1, 8-2). 이 문서들은 미얀마에 있던 타이인 일본군 중업부의 귀국과 관련하여 타이 주재 일본대사관 무관의 입국허가 요청, 이를 받은 일태동맹연락사무국의 입국 허가 검토 요청, 공안부 부사령관의 입국 허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 V. 향후 과제

2011년에 이루어진 타이국립공문서관 자료 조사는 기간이 짧아 당초 열람하고자 했던 전체 자료를 볼 수 없었다. 그 후 뺏뺏 푸통이 서울대학교 정진성연구팀의 일원으로 타이국립공문서관의 자료를 조사했으나, 소장처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 자료 복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확보한 여성 명부의 정밀 분석, 다른 명부와의 교차 분석 작업과 함께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타이국립공문서관 자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자료



자료 1

~~CONFIDENTIAL~~

STRATEGIC SERVICES UNIT, WAR DEPARTMENT  
formerly  
OFFICE OF PACIFIC SERVICES  
WASHINGTON, D. C.  
INTELLIGENCE DISSEMINATION

R1A

~~CONFIDENTIAL~~

G.I.D. XL 20584

NUMBER A-61983

COUNTRY	Siam	ORIGINAL RPT.	ZM 192	20584
SUBJECT	Korean Organization	DATE OF INFO.	6 September 1945	
		DATE OF RPT.	7 September 1945	
		DISTRIBUTED	15 October 1945	
ORIGIN THEATRE	Bangkok IB	CONFIRMATION SUPPLEMENT		
SOURCE SUB SOURCE EVALUATION	Z - X-2 as stated F-5	NO. OF PAGES ATTACHMENTS	2	XV

1. Informant is Harry Moon Sil Jim (Japanese name OKAMOTO) who claims to be Korean by birth, and to have gone to Honolulu in 1925, where he was educated at Iolani School. He returned to Korea in 1933. He is the elected president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described below.
2. When Japan declared war she mobilized Koreans and utilized some as guards of prisoners of war. Korean guards were not in the Army, but attached as civilian employees. Their pay was Siamese Baht 120 per month, of which only Baht 20 was received by them, the balance being withheld by the Japanese. During the latter part of August 1945 Korean guards were discharged by the Japanese, and are now endeavoring to gain favor with the Allies and have forme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which is intended to cooperate with the Allies. This Association hopes to become the National Korean Army, which the leaders say, wishes to ally itself with the other Allied armies.
3. A thousand or more guards were sent to Siam, and located in the prisoner of war camps scattered along the line of the Burma-Siam Railway. The guards were considered as inferior to the lowest Japanese soldier, and were severely handled by the Japanese and frequently beaten. Living condition were difficult and the guards were very unhappy, some thirty escaped during the last six months of the war.
4. All guards did not receive the same pay, as a particularly satisfactory guard's pay was raised. Of the Baht 120 average pay, 80 was withheld and sent to the man's family in Korea and 20 deposited in the Japanese Field Army Post Office. At the time of discharge the guards were given Baht 200 and on 4 September Baht 150 of the money deposited in the Field Post Office was given each man.
5. As they were stranded with little money and no transportation back to Korea they endeavored to gain Allied favor, in order to obtain food and transport, and so organize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Two Korean representatives from each camp were sent to Bangkok, where on 4 September they elected officers and formally organized the Association. The list of elected officials follows:

~~CONFIDENTIAL~~

CLASSIFICATION

✓	///	✓															
JMD	DHI	A-2	STATE	TREAS.	OWI	FEA	ANS	MC	FGC	JICA	L	JANAC					

DECLASSIFIED

E.O. 11652, Sec. 3(E) and 5(D) of (E)

Authority AND 730013

By *CD [Signature]* NARS, Date *12/14/74*

자료 2-1

## STRATEGIC SERVICES UNIT, WAR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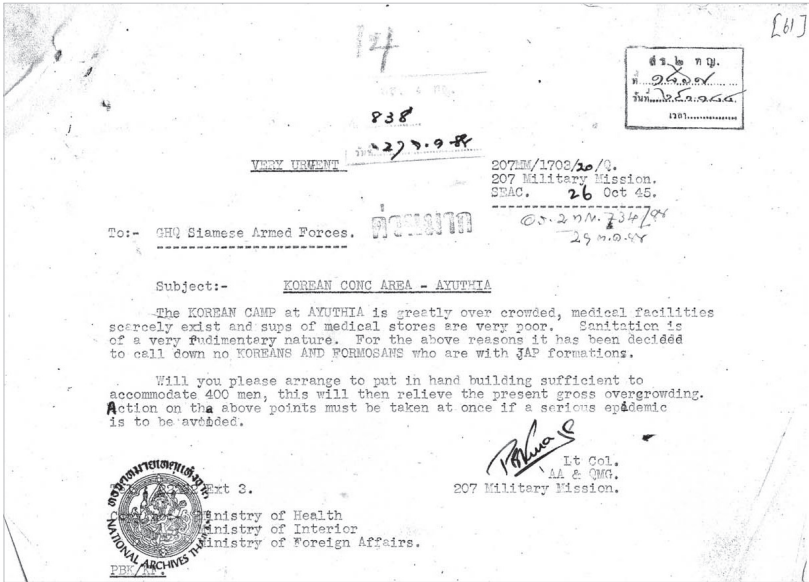
A-61983

-2-

- |    |  |  |
|----|--|--|
| 6. | President<br>Vice President<br>Department of Interior<br>Department of Foreign Affairs<br>Department of Finance<br>Department of Communications<br>Department of Declarations<br>Department of Welfare<br>Department of Superintendance<br>Department of Education | Harry Moon Jim<br>Ikhyim Lee<br>Chongayung Lee<br>Yongchin Kim<br>Yongkee Paik<br>Yongkap Lee<br>Youngchan Kho<br>Pumsung Whong<br>Zeikee Park<br>Chongtai Kim |
|----|--|--|
7. Each camp contributed a sum of money to finance the Association; and each was to organize it self and be under a Commander and Assistant Commander. It is hoped by the Association that they could shortly transform themselves into a National Korean Army.
8. The Koreans upcountry were concentrated by the Siamese Police in uncertain areas, while at date of report those in Bangkok were still dispersed about the city, although plans had been made to concentrate the one hundred and fifty Korean Guards in the city in a single place.
9. Many of the Koreans are guilty of serious war crimes, and on the whole they mistreated and unnecessarily tormented the prisoners of war.
10. At the date of report the Koreans in Siam numbered as follows:
- |  |              |
|--|--------------|
| ex-prisoner of war guards, 150 in Bangkok    | 900          |
| soldiers in the regular Japanese Army        | 5,000        |
| prostitutes with the Japanese troops in Siam | 1,500        |
|  | <u>7,400</u> |

~~CONFIDENTIAL~~

자료 2-2



자료 3

บันทึก  
 1) ข้อมูลจาก... [142]

22.0.0.88 ...

1) ข้อมูล...

- น.อ. ...
- จ.ท. ...
- จ.ท. ...
- จ.ท. ...

2) ข้อมูล...


1. Jang Chang      7. Kim Jang Tae  
 2. Kim Hwan Bey    8. Min Bang Wang  
 3. Kim Hong Sapp    9. Pro Gun Sapp  
 4. Kim Hong Sapp    10. Kim Jang Jim  
 5. Kim Song Tae     11. Jim Jim H.W.  
 6. Yun Jim H.W.

3) ...

4) ... 22.0.0.88

...	129	...	14
...	56	...	5
...	760	...	1
...	218	...	20
...	13	...	
	<u>1176</u>		

5) ...



자료 4



[106]

ซึ่ง ในคืน 18 พ.ศ. ๕๑ ทางราชการ ออ. ได้ส่งเจ้าหน้าที่มาสำรวจเรือสำเภาที่  
และคืนนั้นได้ทราบคดี ณ พักที่สถานพาณิชย์ ณ และที่แห่งเพื่อ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สำรับ  
ลงเรือในตู้รุ่งขึ้นคือมี

๕. เวลา ๐600 ของ 18 พ.ศ. ๕๑. 4 เรือสำเภาเดินทางมาถึงเกาะ  
หนึ่งคือเรือ โทเทท์เรือสำเภาหนึ่ง ลำ จึงได้มีเรือเพียงสองลำเท่านั้น ทางราชการ  
ออก. จึงสั่งเพิ่มเรือสำรับลงเรือหนึ่งลำคือหนึ่งลำเข้าช่วยด้วย

๖. แจ้งจากทางราชการ ออ. มีความประสงค์จะส่งตัวแก่เรือ  
๕7 คน จากเรือมาลงเรือช่วยด้วย ซึ่งเมื่อเรือได้มาถึงเวลาตี ๕๖ คน ซึ่งคำสั่ง  
เรือไม่แนวนอนด้วยเมื่ง เพื่อเรือเรือช่วยด้วย

10. ชาวเกาหลี ๕๕ คน ซึ่งถูกส่งมาไว้ ในเรือร่วมกับชาวไต้หวัน ๗  
ในเรือในตู้ช่วย ๗ อยู่ด้วย ๕๖ คนแล้ว จึงรวมเป็นชาวเกาหลีซึ่งลงมาถึง  
ในเรือสำรับ ๕๕ คน

11. บอกจำนวนชาวเกาหลีและไต้หวัน ซึ่งลงมาถึงในเรือสำรับ  
ดังนี้

ชาวเกาหลี	1,411 คน
ชาวไต้หวัน	๒๐4 คน
รวม	1,615 คน

1๒. ในบรรดาชาวเกาหลีและไต้หวัน มีผู้พิการอยู่สองคนในเรือคือ  
และจัดการส่งต่อไปไว้ที่คน ๗ มากเหลือ (ตามข้อลงที่กรมประมงของราชการ) (๑)  
ตั้งแต่ 18 พ.ศ. ๕๑ มีจำนวนดังนี้

ชาวเกาหลี	1 คน
ชาวไต้หวัน	๓ คน
รวม	๔ คน

1๓. ชาวเกาหลีหรือลงมาถึงในเรือ รวม ๕๕ คนใน กระทั่งไต้หวัน  
ความประสงค์กับ สถานการต่างแดนโดยสถานพาณิชย์ ๗ อยู่โดยอาการทางหนึ่ง ในเรือ  
สำรับ ๗ ในเรือสำรับ ๗ และในเรือสำรับ ซึ่งอยู่ในเรือสำรับ 1,๕๐ บาท นับ  
18 พ.ศ. ๕๑ นี้มีดังนี้

14. ในบรรดาชาวเกาหลี ๕๕ คนนี้ ได้ลงเรือถึง (1) ของคนในเรือ  
ชาวเกาหลี ๑ และนาย <sup>๕๐๐/1๖๕</sup> เป็นหัวหน้าชาวเกาหลี ๕๒ คน  
๕๓ คน เป็นบุตรชายคนหัว ออ. และบุตรชายอีกสามคน (IAU)  
การที่ 1 ตัว รวบรวมรายชื่อและที่ของลงแล้ว

1๕. สมาคมพาณิชย์ ๗ เมื่อได้ลงมาถึงเรือชาวเกาหลีซึ่งลงมาถึงใน



자료 5-2





ร้อยไร่ไร่ในปัจจุ บอย ๆ นายพญาบุญมีนเจ้าจักร ในเรื่องเดียวกัน  
 ตกลง โสภะของพญาบุญมีนเจ้าจักรแห่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เมื่อมีโอกาส ณเมืองไคร้ในเรื่องนี้  
 ข้าพเจ้าขอถวายพระพรในบุญเมตตาด้วยพระทัยอันเต็มใจและความรักเป็นของ  
 มหาวชิราลัยในความเป็นมาของเสด็จ องค์ชาติไว้ด้วยความเคารพความเห็นอก  
 เห็นใจเป็นอย่างดี ไคร้ไม่ช้าก็หมดเวลา จะพยายามขยายสถานที่เก็บของพญาบุญมีน  
 แห่งนี้ออกจากบ้านหลังนี้เสียเร็วที่สุดเท่าที่จะทำได้ ซึ่งในการนี้เจ้าเป็นจะต้อง  
 มีมาแต่สิ่งใหม่สำหรับใช้ทดแทนที่เสียก่อน เขาขอแต่เปลี่ยนเวลาไป เพื่อหา  
 บ้านใหญ่ใหม่ซึ่งก็หาได้แล้ว

ต่อมา ราวปลายเดือนมิถุนายน ค.ศ. นายพญาบุญมีนเจ้าจักรกับกรม  
 พ. พ. อ. อ. แจ้งว่า โสภะบ้านสำหรับขยายสถานที่เก็บของพญาบุญมีนใหญ่ใหม่  
 ไร่นาวุฒิ ต.ต.ต.ต. ในสมัยเสด็จ ฤกษ์งามของบอยเมียว ซึ่งทางกองพญาบุญมีน  
 ได้ เขาคงใจไม่มาตั้งแต่เริ่มสงครามมาจนบัดนี้ ในลักษณะเป็นทรัพย์สินของเสด็จ  
 ขอใหม่ไว้รักษาและช่วยต่อความตลอดจนจักร ในเรื่องซึ่งมาเขามาหลังนี้  
 กับฝ่ายเจ้าของบ้าน ซึ่งว่าโศภะมาพบกันเมื่อวันก่อนแล้ว

ความทางสองส่วนใจความว่า เขาของบ้านหลังนี้ ร้อยไร่ไร่ ฤกษ์งาม  
 บ้านหลังนี้มาถึงนี้ มีจำนวนเลขที่ 60 ของเสด็จ ต.ต.ต.ต. พระบุตร เจริญใจของ  
 บ้านเลขที่ ๖๐ พ.ต.ต.ต.ต. ร.ร.ร.ร.ร.ร. เขาอยู่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มาแล้ว ต่อมา  
 เมื่อ ๖ มิ.ย.๒๗ น.บ.ก.ช. ถูกทิ้งระเบิดในเวลาสองวัน บ้านหลังนี้ถูกระเบิด  
 ตกหน้าบ้านเลขที่ ๖๐ พ.ต.ต.ต.ต. ซึ่งขอคืนบ้านหลังนี้แก่ผู้เป็นเจ้าของแล้วขอพบ  
 ไปใหม่นอกเมืองตลอดมาจนบัดนี้ เป็นเป็นเช่นนี้ บ้านหลังนี้กว้างใหญ่ จึงเมื่อ  
 ฝ่ายอื่นไปก็เพื่อขอเขาในครั้งนี้ ทางฝ่ายเจ้าของบ้านจึงยินยอมให้เขาให้ความ  
 ความคงการ

หลังจากได้มีการเจรจาตกลงในเรื่องราคาค่าเช่าบ้าน ต่อตกลงตาม  
 ทำเนียม และให้มีการตกลงในเรื่องเงินค่าเช่าต่าง ๆ เกี่ยวกับกิจการเช่าบ้านหลังนี้  
 ระหว่างเจ้าของบ้านและฝ่ายอื่นในสมัย ๒๗. ได้บรรลุเห็นด้วยแล้ว ทั้งสองฝ่าย  
 ได้ตกลงทำสัญญาเช่าบ้านต่อกันเป็นหลักฐานตามแบบสัญญาเช่าบ้านของ พ.ต.  
 แห่งที่เรียบรอยไปแล้ว เมื่อ 16 ก.ค. ๒๗ และให้ว่า  
 เป็นที่เรียบรอยของพญาเจ้าหน้าของ พ.ต. ในวันเดียวกันนี้  
 ที่ไหนเมื่อ ต่อมาพร้อมด้วยแล้ว เป็นอันว่า เจ้าของบ้าน  
 ตัวบ้านเดิมฝ่ายอื่นในชาวยุ ในวันนั้นเป็นตมา



자료 6-2

เมื่อการปรากฏตัว ฝ่ายอื่นใหม่มีบ้านสำหรับจะโยกย้ายไปอยู่ใหม่  
 ได้แล้วเจนนี ผมจึงได้นำเรื่องขึ้นพูดต่อเบื้องไปเลยที่เดียวว่า ขอให้เลิกการ  
 ไปมาซึ่ง มีจ. และเจ้าของบ้านดังกล่าวข้างตน สหเสงความประสงค์มานั้น  
 เสียตั้งแต่บัดนี้เป็นต้นไป ร.ท. โยริ ในระงูจิ ก็ยินยอม เห็นอันว่า บ้านหนึ่ง  
 ที่ไกลกว่าเป็นสาระสำคัญในเรื่องนี้ ไคมมทสภาพจากถาวรใจเป็นสถานที่สำหรับ  
 ห้างโลเกนชองก้องทัตย์ในแคว จึงแต่บัดนี้เป็นต้นไป เป็นยลคำเทร็ดสมความ  
 ปรารถนาของจุลาลงกรมมหาวิทยาลัย และของเจ้าของบ้านแล้วประการ  
 จึงขอนำเรียนเพื่อทราบ. พร้อมนี้ได้เสนอร่างหนังสือตอบ มจรณาเพื่อ  
 ลงนามควยแล้ว.

๑๑/๑๒/๒๕๓๗  
 ๒๕๓๗  
 NATIONAL ARCHIVES THAILAND ๒๕๓๗

자료 6-3

๗ ๕๕๕  
(คำแปล)

กรมพระเจ้าน้องยาญ  
เลขที่ ๕๕๕  
วันที่ ๑๕-๐-๑๗  
กรมพระเจ้าน้องยาญ

โทรเลขที่ ๑๕๐

วันที่ ๑๕ เมษายน ๒๔๑๗

เรื่อง แจ้งเกี่ยวกับ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ค้าที่ทางการกำหนดให้ค้าในกิจการ

จาก คุณหาโร ขามาคะ บุคทนามบประจําสถานเอกอัครราชทูตยี่ปุ่น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ถึง เจ้ากรมประศาสน์งานต้นขมิตร

ทางการทนามยี่ปุ่นกำหนดให้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ค้าในกิจการหมู ๒ ประเภท  
คือ ไซดเพาะก่องทัต และก่องทัพอัดยี่ไซ 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ค้าที่ทางการทนามกำหนดไว้  
เป็นประจํา มีรายชื่อกตั้ง โบนบขางทวย พร้อมกันนี้ ขอใคอนุเคราะห้ให้ความสวคกคย  
อึ่ง ไซดเพาะก่องทัตนั้น ไซใคเพาะทนามและขาราชการพลเรือนกลา  
โหมเท้านั้น ไมอนุชทใคคนอื่น ๆ ไซ ก่องทัพอัดยี่ไซ นั้น ทังทนาม ขาราชการพลเรือน  
กลาโหม และคนยี่ปุ่นทัวไมไซใค

เกี่ยวกับขนาดของกรวโรหญูปในเวลานี้ ขอใคพิจารณา



นบยี่  
๑๕ เม.ย. ๑๗

ca

자료 7

四

義副第一三號	泰國人 歸國ニ関スル件照會	昭和十八年二月二十四日 駐泰帝國大使館附出	日泰同盟連絡事務局長殿	首題ノ件左記ノ通 緬甸ヨリ 歸國	セシメ支障ナキヤ 照會ス	左記	國籍職業 泰國人 日本軍従業婦	本人姓名 クレーバーマン 当二十三年	(MRS. M. KREIBERMAN)	目的地 P. R. Francis Esq.,	Consul General	No. 2. Chartered Bank of India,	Bangkok
--------	---------------	-----------------------	-------------	------------------	--------------	----	-----------------	--------------------	----------------------	-------------------------	----------------	---------------------------------	---------

陸軍



5. 10  
1947. 11. 186

(4)

자료 8-1

4)

日本國目的  
 日本人ノ義兄  
 日本人ノ實父  
 為歸國スル者  
 (Shinobu)



陸軍

5)

자료 8-2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형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연구(책임)자 : \_\_\_\_\_ (인)

##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정책실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강성호**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경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재윤**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이준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6호(2019. 12)

초판 1쇄 인쇄 2019년 12월 26일

초판 1쇄 발행 2019년 12월 31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